

#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

2024. 7.

금 융 민 원 센 터

##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 이용 안내

이 책자는 금융회사 설립 및 경영 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일반인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인허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허가 신청시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에 자주 접수되는 인허가 업무를 금융회사 유형별 (금융지주, 은행, 금융투자, 보험, 서민금융·여신전문금융, 전자금융·신용정보·신용평가, 공통)로 정리하였습니다.

각 인허가 업무별로 개요,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 작성요령, 기존판단사례, 유권해석, 법규오해 사례 및 관련 법규 등의 순으로 기술하여 해당 인허가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 참고용 자료임을 알려드리며,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금융지주

- (1)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 1
- (2)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등 편입 승인 ..... 20
- (3)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 제외) 대주주 변경 승인 ..... 32

## 2. 은행

- (1) 은행업 인가 ..... 55
- (2)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 89
- (3) 비금융자회사 출자 승인 ..... 126

## 3. 금융투자

- (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인가 ..... 131
-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 272
- (3)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 317
- (4)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겸업 등록 ..... 404
- (5)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 ..... 447
-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 495
- (7)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변경 승인 ..... 572

## 4. 보험

- (1) 보험업 영위 허가 ..... 594
- (2)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 621
- (3)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승인 ..... 647

##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 (1)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 662
- (2)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 674
- (3) 상호저축은행 자본금 감소 인가 ..... 689
- (4) 신용카드업 허가·등록 ..... 692
- (5) 비카드 여신금융전문업 등록 ..... 711
- (6)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 ..... 721
- (7) 신용카드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 727
- (8) 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 747
- (9)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인가 ..... 760
-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778

## 6. 전자금융, 신용정보, 신용평가

- (1)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 865
-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 899
- (3)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허가 ..... 942
- (4) 신용평가업 인가 ..... 982

## 7. 공통

- (1) 금융회사의 타회사 주식 소유 승인(금산법) ..... 1001

# 1. 금융지주

## (1)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 I.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개요

#### 1.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의의

-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 회사를 지배하며 고도의 공공성을 지니므로 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3조)

#### 2. 금융지주회사 정의

- 금융기관<sup>1)</sup> 또는 금융업 밀접회사<sup>2)</sup>를 주식(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sup>3)</sup>하는 것을 주된 사업<sup>4)</sup>으로 하며 1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서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sup>5)</sup>(법 제2조 제1항)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영 제2조 제1항)

2) 전산·정보처리회사, 자산관리회사, 조사연구회사,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GP 등(영 제2조 제2항)

3) 금융지주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가 합하여 "계열회사(공정거래법)"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것(영 제2조 제3항)

4) 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일 것(영 제2조 제4항)

5)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영 제2조 제5항)

### 3. 금융지주회사 업무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법령이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영리 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법 제15조)
  - 경영관리 업무로는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경영성과 평가, 경영 지배구조 결정,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등이 있음(영 제11조 제1항 1호)
  -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로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이를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에 대한 출자, 자회사등의 금융상품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sup>1)</sup>, 전산·법무·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sup>2)</sup> 등이 있음(영 제11조 제1항 2호)

< 1) 금융상품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등 업무의 세부 내용 [영 별표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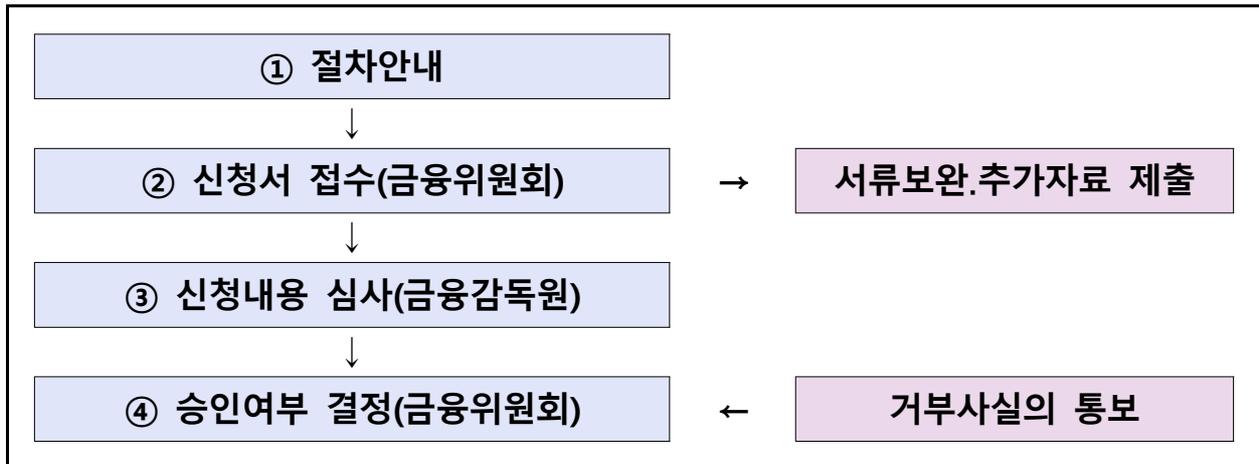
- 자회사등의 금융상품 개발·판매를 위한 기획·조사·분석
- 자회사등과의 설비·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지원
- 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공
- 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
-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 대한 임대
- 자회사등이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의 소유 및 제공

< 2) 전산·법무·회계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의 세부내용 [영 별표3] >

- 전산시설 등 전산 관련 업무
- 회계관리업무
- 인사관리 및 연수
- 홍보업무
- 총무업무
- 신용위험의 분석·평가
- 조사분석업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
- 법률 및 세무 업무

## II.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절차

### 1. 설립인가 절차 흐름도



- 1) 심사기간 : 2개월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 2) 중간보고 : 감독원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2개월이 경과된 안건의 심사 진행상황 및 예상 종료 시점을 매월 금융위원회에 보고

## III.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심사기준

\* 법 제3조·제4조, 영 제4조·제5조 등 참조

### 가.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

-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사업계획 세부 심사기준 (감독규정 [별표 1의7]) >

-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 주력자회사에 대한 효율적 경영관리와 충분한 지배력 행사가 가능할 것

-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

---

#### 나. 재무·경영 상태의 건전성(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

---

- 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다음의 최소 준수비율 이상일 것

##### 1. 2013년 12월 1일 이후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 비율
3.5%	4.5%	8.0%

##### 2. 2014년 1월 1일 이후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 비율
4.0%	5.5%	8.0%

##### 3. 2015년 1월 1일 이후

보통주 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 비율
4.5%	6.0%	8.0%

또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아래 기준 이상일 것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K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5의2③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25의3① 및 ③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 비은행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 100% 이상일 것
-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 자회사등이 주력자회사\*인 경우 : 당해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통하여 영위하는 금융업종중 가장 큰 업무비중(신탁계정을 제외한 자산규모 기준, 동일업종 자회사가 2이상인 경우 합산)을 차지하는 금융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은행지주의 경우 은행 자회사)
  - 자회사등이 주력자회사가 아닌 경우 : 당해 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다음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비주력 자회사등의 재무건전성 기준 >**

·은행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8%, 기본자본비율이 6%, 보통주자본비율이 4.5% 이상일 것
·투자매매·중개업자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보험회사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그외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 이상일 것

## 다. 대주주 요건

-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포함,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포함)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영 제5조 제2항)

<대주주 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별표1) >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및 기금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이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li> <li>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li> <li>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li> </ol>

	<p>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p>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p> <p>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	<p>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6. 대주주가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p>가. 인가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p> <p>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p> <p>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p>

	<p>국민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p> <p>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7.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p>	<p>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3호나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5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바. 제6호의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6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비고>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표 제1호마목 또는 제5호라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에는 이 표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이 표 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라.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

-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 되는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의 5)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 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

- ① 주권상장법인 간의 교환·이전 :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 ②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의 교환·이전 :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 ③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의 교환·이전 : 주권상장법인은 위 ①의 기준에 의한 가격, 非주권상장법인은 위 ②의 기준에 의한 가격

## IV.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 작성 요령

### 1. 인가 신청서 양식

〈별지 제5호 서식〉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 신청서				
신청 내 용	상 호			
	본 점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팩스: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자 본 (납입자본금)	백만원(                  백만원)		
	자회사 및 손자회사			
<p>「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 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붙 임 :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요현황(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 포함)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금융위원회 귀중</p> <p>사본수신 : 금융감독원장</p>				
<p><input type="checkbox"/>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li> <li>2. 금융지주회사 발기인회의의사록 또는 창립총회의사록(주식이전의 경우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의안)</li> <li>3.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인등의 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감사인등의 보고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있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li> <li>4. 자본금납입증명서(현물출자이행확인서 포함)</li> <li>5.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li> <li>6.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li> <li>7.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방법 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li> <li>8.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li> <li>9.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출자금액, 자기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 기준에 근거한 비율), 부채비율, 대주주 자격요건 확인서류 및 출자재원 확인서류 포함)</li> <li>10. 신청인의 주주현황 및 계열회사현황</li> <li>11.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주식명세서</li> <li>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등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li> <li>13. 주식이전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li> <li>14.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p style="text-align: center;">* 1, 2, 8, 10, 11호의 첨부서류는 사본1부 제출</p>				

(붙임)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요현황

1. 금융지주회사

○○회사	본점소재지			설립(예정)일	
	임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직원수			시설현황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납입자본금)	
		자회사주식가액의 합계액		자회사주식가액의 합계액 /자산총액의 비율(%)	
주요주주	주요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2. 자회사

○○회사	본점소재지			설립일		
	상장일			자본(납입자본금)		
	자산		부채		지주회사지분율	
	임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직원수				시설현황	
	영위업무의 종류					

3. 손자회사\*

○○회사	본점소재지			설립일		
	상장일			자본(납입자본금)		
	자산		부채		모회사지분율	
	임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직원수				시설현황	
	영위업무의 종류					

\* 손자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별도 기재

## 2. 인가 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 <신청내용>

신청 내용	상 호	①		
	본 점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팩스:
	대 표 자	②	주민등록번호	
	자본금(납입자본금)	③		
	자회사 및 손자회사	④		

① 신청인 또는 설립 예정인 금융지주회사의 상호를 기재. 단, 금융지주회사의 상호가 확정되는 않은 경우에는 예정 상호 앞에 '가칭'임을 밝힘

\* (예시) (가칭) 주식회사 OO금융지주

② 신청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 예정인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를 기입. 단,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회사의 대표이사를 각각 기재

③ 신청인의 인가 신청시점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시점을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을 자본금 항목에 기재하고,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을 괄호안 납입자본금에 기입

④ 신청인 또는 설립 예정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구분하여 각각 기재

\* (예시) 자회사 : OO은행, OO증권  
손자회사 : OO자산운용

## <붙임\_금융지주회사>

○○회사	본점소재지			설립(예정)일	
	임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①			
	임직원수	②	시설현황	③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⑤	부채	
				자본금(납입자본금)	④
		자회사주식 가액의 합계액	⑤	자회사주식가액의 합계액/자산총액의 비율(%)	⑥
주요주주	주요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⑦				

- ① 설립 예정인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을 모두 기재
- ② 설립 예정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시점 임원과 직원의 수를 기입
- ③ 설립 예정인 금융지주회사의 소유 부동산, 전산 시스템 주요 기기 등 물적시설 명세를 기재(기재 항목이 많을 경우, 별도의 지면을 할애하여 첨부 가능)
- ④ 인가 신청서상 '신청내용' 항목의 '자본금(납입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
- ⑤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시점 대차대조표상 자회사별 주식가액을 기재한 후 합계를 표시
- ⑥ '재무현황'의 ⑤(자회사주식가액의 합계액)를 '자산'으로 나눈 비율
- ⑦ 인가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 <붙임\_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회사	본점소재지			설립일			
	상장일	①		자본금(납입자본금)			
	자산	②	부채		지주회사지분율	③	
	임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직원수				시설현황		
	영위업무의 종류		④				

### ※ 회사별 작성

- ①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 이거나, 금융위가 인정하는 해외시장\*에서 상장·등록한 경우 최초 상장일을 기재

\* 해외시장의 안정성·유동성·투명성, 외국 거래소의 공시수준·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14의2 참조)

- ②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인가 신청일 기준 최직근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 보고서상 수치를 기입

- ③ 작성대상 회사가 자회사인 경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한 지분율은 금융지주회사의 소유 주식(지분)수/자회사의 총발행주식(지분)수로서 산정하며

작성대상 회사가 손자회사인 경우 모회사(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상호를 기재한 후,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한 지분율을 기재

- ④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정관상 영위 업무를 기재하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부기

### 3. 인가 신청서 첨부서류 구비·작성 요령

1.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금융지주회사 발기인회의의사록 또는 창립총회의사록(주식이전의 경우 주식이전승인 주주총회의안)
3.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인등의 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감사인등의 보고에 관한 법원의 재판이 있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
4. 자본금납입증명서(현물출자이행확인서 포함)
5.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7.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계산서(자금조달 방법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8.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9.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출자금액, 자기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기준에 근거한 비율), 부채비율, 대주주 자격요건 확인서류 및 출자재원 확인서류 포함)
10. 신청인의 주주현황 및 계열회사현황
11.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주식명세서
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등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13. 주식이전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4. 기타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1, 2, 8, 10, 11호의 첨부서류는 사본1부 제출

#### ① 임원에 관한 사항

- (이력서) 사실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필 또는 직인이 찍힌 서류를 제출
- (경력증명서)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회사, 직위,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②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

회사의 영위업무 및 전략, 수익전망에 기초한 재무현황, 자금 조달·운용 계획 및 방법, 인력 및 물적시설 현황, 경영지배 구조 현황, 내부통제 현황,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법적 제한 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 추정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

- ③ 금융지주회사등(금융지주회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하는 개념, 이하 동일)의 주주현황

주주(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기재)의 성명 또는 명칭, 주주별 주식종류별 소유주식수 현황, 주식종류별 지분율 현황, 총발행주식수, 주주현황 기준일 등을 명기

- ⑤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주식명세서

소유 주식종목(회사명), 금융지주회사등과의 관계, 영위 업종(한국 표준산업분류표 활용), 1주당 액면금액,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대차대조표상 가액, 회계처리 방법(지분법, 공정가액법, 원가법 등) 등을 기재

-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등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겸직제한, 사외이사의 선임,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법령 사항의 준수 여부를 기재한 후, 공공기관의 입증 서류 및 임원의 자필 서명(직인)을 첨부

- ⑦ 주식이전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식교환 참여 회사별 주식교환비율 산출근거, 주식가치 산정 기준시점, 평가담당 외부기관, 주식가치 산정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의견서(외부기관 대표자 자필 서명(직인) 포함), 외부 평가기관 선정의 적정여부 확인서(주식교환 참여 회사 및 외부 평가기관의 대표자 자필서명(직인) 포함)

- ⑧ 자본금납입증명서 관련 사항

(주금납입증명서, 주금납입통장 사본) 납입은행이 발급한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함

## V. 기존 판단사례

### 1. 사업계획 요건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 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영위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금융지주회사법상 요구되는 자기자본비율 달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 사업연도별 사업목표와 영업전략 등이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른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음

\* 핵심 사업부문의 역량강화, 자회사등간 고객정보 공유를 통한 연계영업 강화 등

◆ **인허가 사례 (금융위 결정내용)**  
**1-(1) 금융지주 설립인가**

<b>신 청 회 사</b>	OO금융지주(가칭)	<b>신 청 일</b>	-
<b>처 리 부 서</b>	금융그룹감독실 지주금융그룹감독팀	<b>금융위 결정일</b>	2018. 11. 7.
<b>주 요 골 자</b>	<input type="checkbox"/> OO은행 등이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OO금융지주(가칭)를 설립하고자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 관계부처(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설립을 인가		
<b>안 건 내 용</b>	<p style="text-align: center;"><b>(주)OO금융지주(가칭)의 설립 인가</b></p> <p>(주)OO금융지주(가칭)의 설립 신청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 : (주)OO금융지주(가칭)</li> <li>2. 본점 소재지 : 서울시 O구</li> <li>3. 인가내용 : (주)OO금융지주(가칭)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6개 자회사 및 16개 손자회사, 1개 증손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 : (주)OO은행, △△(생략)</li> <li>- 손자회사 : (주)OO카드, △△(생략)</li> <li>- 증손회사 : □□</li> </ul> </li> <li>4. 부대조건 : 납입자본금의 잠식이 발생한 □□의 경우 (주)OO금융지주(가칭) 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확인받을 것</li> <li>5. 인가일 : 2018.11.7.</li> </ol>		

## VI. 관련 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2, §3, §4, §5의2, §6, §15, §43의2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2, §3, §3의2, §3의3, §4, §5, §5의2, §11, §17, §18, §19, §19의2, §21의2, §28, §33의2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2~§12, §13의6, §14의2, §14의3, §25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2, §3, §3의2, §5의4, §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의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6, §10, §11, §1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의2, §8의3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금융지주

## (2)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 I. 자회사등 편입승인 개요

#### 1.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의미

- 금융지주회사의 부실한 자회사등 편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 그룹의 건전경영을 도모하고자
  -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여 자회사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의 편입승인을 받도록 함

#### 2. 편입승인 신청 주체

- 금융지주회사가 새로이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또는 자회사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에도 금융지주회사가 편입승인 신청주체임

#### 3. 편입승인의 예외 (사후신고)

\* 법 제18조 제1항, 영 제14조 제1항·제2조 제2항, 감독규정 제1조의2 등 참조

-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편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금융위의 편입승인을 득해야 하나,

영위업무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회사등을 자회사로 편입한 경우, 금융위에 사후 신고 절차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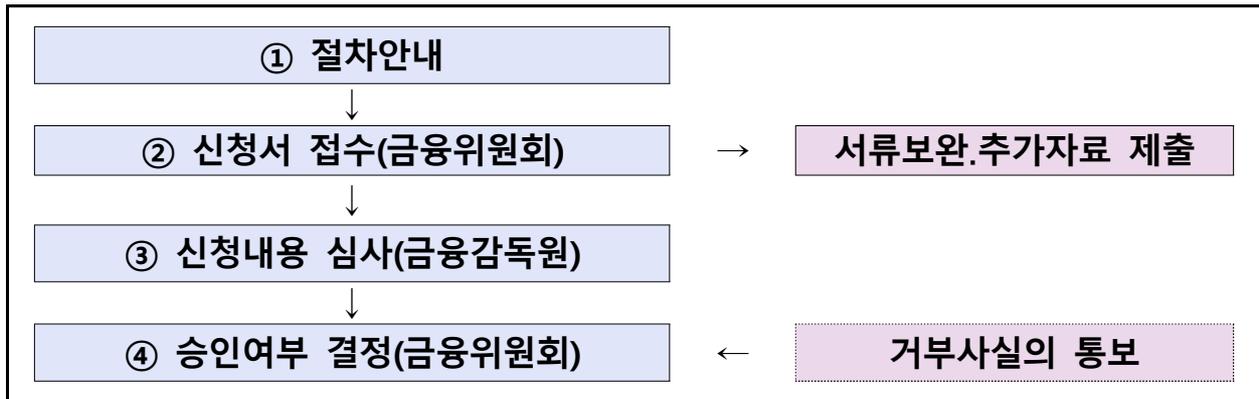
- 설립시 금융위의 인가·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 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 금융지주회사등 사이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 자회사등 사이의 합병·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 등의 경우
  -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 금융업 영위 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운용 등 그 업무집행사원이 행하는 업무
    - 그 밖에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i)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 따른 업종, ii) 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른 업무 iii)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각 호,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 (해당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 편입신고일 관련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16.9.31) >

- 금융지주회사는 신고대상 금융자회사를 편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기준일이 되는 편입한 날이라 함은
  - 기존회사인 경우 구주 취득일 또는 신주 납입기일의 익일을 의미하고,
  - 신설회사인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의미하나, 인.허가, 등록 등을 요하는 회사인 때에는 인.허가일, 등록일 등을 의미합니다.

## II. 자회사등 편입승인 절차

### 편입승인 절차 흐름도



- 1) 심사기간 : 2개월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 2) 중간보고 : 감독원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2개월이 경과된 안건의 심사 진행상황 및 예상 종료 시점을 매월 금융위원회에 보고

## III. 자회사등 편입승인 심사기준

\* 법 제17조, 영 제13조, 감독규정 제10조 및 [별표 1-7] 등 참조

구분	세부요건	확인사항
사업 계획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연도별 사업목표 및 영업전략 등의 적정성 여부</li> <li>● 영업계획 및 자산운용이 적정성 여부</li> <li>● 수익전망의 합리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의 적정할 것등</li> </ul> </li> <li>● 내부통제제도 구축계획의 적정성 여부</li> <li>● 인력운용계획의 적정성 여부</li> <li>● 물적설비 및 전산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조달방법이 적정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 등 소요자금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출자, 자금차입 및 내부유보 계획 등이 적정할 것</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되는 자회사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 여부</li> <li>●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 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자회사가 새로이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입되는 자회사가 관련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지 여부 (공정위협의)</li> </ul>
재무 및 경영관리 상태의 건전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회사의 자기자본이 금융위가 정하는 자본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지주회사인 경우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최소 준수비율 이상일 것, 그리고 자본보전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하는 자본비율을 준수할 것 (세부 기준은 설립인가 참조)</li> <li>● 비은행지주회사인 경우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이상 여부</li> <li>● 편입 대상회사가 해당 업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정성 기준 충족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회사의 경영 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경영상태가 양호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여부</li> <li>● 편입회사에 적용되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 해당 여부</li> <li>● 종합평가등급이 등급 또는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종합평가등급이 기준 등급 이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li> <li>● 인가신청일 현재 경영실태평가결과가 없는 경우 감독원장의 종합적인 고려시 당해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의 적정성 여부</li> </ul>
주식교환비율 적정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교환에 의하여 편입할 경우 주식교환 비율이 적정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하고 그 적정성에 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는지 여부(설립인가 참조)</li> </ul>



(붙임)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주요현황

1. 금융지주회사

○○회사	본점소재지			설립(예정)일	
	임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직원수			시설현황	
	재무현황 (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납입자본금)	
		자회사주식가액의 합계액		자회사주식가액의 합계액 /자산총액의 비율(%)	
주요주주	주요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2. 편입대상 자회사

○○회사	본점소재지			설립일	
	상장일			자본(납입자본금)	
	자산		부채		모회사지분율
	임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직원수			시설현황	
	영위업무의 종류				

3. 편입대상 손자회사\*

○○회사	본점소재지			설립일	
	상장일			자본(납입자본금)	
	자산		부채		모회사지분율
	임원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임직원수			시설현황	
	영위업무의 종류				

\* 편입대상 손자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별도 기재

## 2. 승인 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 ① 신청인

편입대상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여부에 관계없이 승인신청서상 신청인은 금융지주회사임

### ② 편입대상회사 상호, 자기자본, 본점소재지

설립중인 회사의 경우 잠정안을 기재(단, 상호의 경우 금융관련 법령에 의거 사전 설립 인가·허가·등록이 필요한 경우 당해 금융관련법령상 금융회사 상호 사용금지)

### ③ 취득예정주식수(예정지분율) 및 지분율

편입대상회사가 우선주도 발행했을 경우 발행주식총수 기준, 보통주기준, 우선주기준으로 구분해서 기재

### ④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최직근 분기말 기준으로 작성(단, 최직근 분기말 이후 유상증자 및 대규모 차입 등 확정사항 발생시 동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되 증빙서류 첨부)

### ⑤ 편입대상회사 임원현황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공란으로 기재(단, 창립총회에 상정할 임원 선임안이 확정되었을 경우 기재)

### ⑥ 편입대상회사 임직원수/시설현황/영위업무

예정사항을 기재

※ 금융지주회사등의 주요현황은 '설립인가 핸드북' 참조

### 3.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1.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2.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자회사편입 결정 이사회 의사록 사본
4. 편입대상회사의 주식취득 확인 서류(현물출자이행확인서 등,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계약서 승인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5.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포함) 및 예상수지 계산서(자금조달방법등 구체적인 세부계획 포함)
7.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주주 현황(소유주식수, 상호간 관계 포함)
8.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등의 준수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10. 주식교환의 경우 주식교환비율이 적정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외부평가기관이 당해 회사와 이해상충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1.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자회사등 편입승인 심사항목의 '확인 사항' 및 '설립인가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

## IV. 기존 판단사례

### 1. 사업계획 요건

- 자회사등으로 편입되는 회사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 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편입대상 회사의 사업목표와 영업전략 등이 금융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거나,
  - 연계영업 강화를 통한 판매채널 확장, 신규 상품의 개발 등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음

## ◆ 인허가 사례

### 1-(2)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①

신청회사	OO금융지주	신청일	2016년 4월
처리부서	금융그룹감독실 지주금융그룹감독팀	완료일	2016년 6월
신청내용	<p><input type="checkbox"/> OO지주는 OO증권, OO저축은행을 자회사로, OO선물을 손자회사로 각 편입하고자 금융위원회에 편입승인을 신청함</p> <p>○ OO증권의 9개 자회사에 대한 손자회사 편입 신고는 별도로 진행 (편입 후 30일 이내)</p>		
심사내용	<p><input type="checkbox"/> 주요 쟁점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회사등 편입 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임</p> <p>○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②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③ 주식교환비율의 적정성임</p> <p>○ 심사 과정에서 자회사등 편입을 위한 주식매수대금이 경영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p> <p><input type="checkbox"/> 구체적인 심사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에서는 지주의 사업 계획 외에 편입될 자회사등의 사업 계획의 검토를 요함</p> <p>○ 간략하게만 내용 기재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술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최대한 상세한 기술 요함</p> <p>○ 특히, 추정 재무제표의 각 수치상 중요한 변화가 있는 부분이나 비중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p> <p><input type="checkbox"/>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관련하여 자금 조달 및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업권에 따라 상이하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p> <p>○ 특히, 도표만으로 작성하여 제출시 그에 대한 설명 자료를 보충적으로 심사 중 요청할 수밖에 없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음</p> <p><input type="checkbox"/> 내부 유보 자금을 통한 인수가 아닌 경우 해당 인수로 인하여 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함</p>		

## ◆ 인허가 사례

### 1-(2)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 편입 승인 ②

신 청 회 사	△△금융지주	신 청 일	2022년 4월
처 리 부 서	금융그룹감독실 지주금융그룹감독팀	완 료 일	2022년 6월
신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지주는 △△손해보험을 자회사로 편입하고자 금융위원회에 편입승인을 신청함  <input type="checkbox"/> △△지주는 □□사로부터 □□사가 보유한 △△손해보험의 지분(00.00%)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		
심 사 내 용	<p>&lt;심사과정&gt;</p> <input type="checkbox"/> △△지주가 △△손해보험의 편입 승인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지주가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송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자금조달의 적정성 등 <input type="checkbox"/> 심사결과 송부 전 △△지주와 협의단계에서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자금조달 방식에 관하여 질의 <input type="checkbox"/> 필요서류 및 후속 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보완사항 요청		
	<p>&lt;심사내용&gt;</p>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의 타당성 <input type="checkbox"/>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input type="checkbox"/> 자금조달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 및 경영전략에 따른 예상 수익이 추정 대차대조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심사 ⇒ 충족  <input type="checkbox"/> △△지주의 경영지도비율기준 충족 여부·△△손해보험의 지급여력 비율기준 충족여부 심사 ⇒ 충족  <input type="checkbox"/> 부채를 통한 자회사 주식소유 등으로 금융지주 경영건전성 저해 우려가 있는지 여부 심사 ⇒ △△지주는 △△손해보험의 인수자금을 자체 보유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적정		

## V. 관련 법규

### 금융지주회사법

§2, §16~§19, §43의2, §48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2, §3, §12, §13, §14, §15, §21의2, §27, §28, §33의2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2~§10, §14의2, §14의3, §25, §35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2, §3, §5의4, §6, §1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의5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6, §10, §11, §19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금융지주

## (3)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 제외) 대주주 변경 승인

### I. 금융지주회사(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개요

□ 부적격 주주의 경영참여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그룹의 경영 건전성 침해 가능성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주주 승인 제도를 도입('07.8월)

\* 舊 금융지주회사법 §7의2 대주주 변경승인 관련 내용은 '16.8.1.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으로 통합

□ 금융위의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 금융위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II. 금융지주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 및 심사기준

#### 1. 대주주 승인절차 흐름도



## 2. 대주주 승인 심사기준

\* 법 제31조, 영 제26조, 감독규정 제15조 및 제16조 등 참조

### □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범위

- ① 최대주주
- ② 주요주주 (10% 이상 주주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③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④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최대주주와 대표자

### □ 심사기간 : 60일 (신청서 보완기간 등\* 제외)

- \* ①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② 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③ 형사소송,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④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 □ 대주주 변경시 승인 요건

-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 및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4]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제26조제3항 관련)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p>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무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p>	<p>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p> <p>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p>	<p>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p>	<p>가.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지주회사인 경우를 포함한다)</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주식취득 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7.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요건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호가목의 요건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5호나목·다목의 요건 바. 제6호의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6호나목의 요건

<비고>

1. 위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표 제1호다목 또는 제5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이 표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3. 이 표 제5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4]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제15조제3항 관련)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 제1호 관련)

가.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 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

- (가)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
- (나)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50%이상 일 것
- (다)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 (라) 대주주가 (가) 내지 (다)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2. 대주주가 기금인 경우(영 별표1 제2호 관련)

가.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3. 대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영 별표1 제3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채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 (1) 유상증자
-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 (3) 내부유보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라. 제1호다목(1), (2),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2)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

####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 제4호 관련)

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다. 제1호다목(1), (2) 및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한다.
- (4)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

5.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1 제5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
- (2)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을 적법하게 영위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구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영 별표1 제6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 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제4호나목, 다목,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7.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1 제7호 관련)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4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6호나목, 라목의 요건(단, 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충족할 것

## 8. 특례

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불구하고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 (1) 해당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
- (2) 해당인이 기금인 경우: 제2호의 요건
- (3) 해당인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
- (4) 해당인이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4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 (5) 해당인이 외국인인 경우: 제5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대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 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직위에 임명할 수 없다.)
-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다.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대주주 변경승인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해당 금융투자업자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 또는 제3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200”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라.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II. 금융지주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작성 요령

#### 1. 승인 신청서 양식

<별지 제8호 서식>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문서번호 20 .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내용 1부. 끝.

신청인 (인)

주 소

연락처

대리인 (인)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내용

#### 1. 신청인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내국인인 개인의 경우>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생년월일	
주 소			

#### 2.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구 분	법인명 (성 명 <sup>2)</sup> )	관 계 <sup>3)</sup>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 <sup>4)</sup> (직 업)	비 고
본 인					
특수관계인 <sup>1)</sup>					

주 1)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기재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종 <sup>1)</sup>	금융기관 <sup>2)</sup> 해당여부	자산 <sup>3)</sup>	부채 <sup>3)</sup>	자본 <sup>3)</sup>	당기순이익 <sup>3)</sup>
○○○						
△△△						
×××						
⋮						
계						

- 주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3) 신청일 이전 최근 대차대조표(분기별 임시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4. 주식취득예정 금융회사 주식발행 현황

금융회사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5.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계획

구 분	법인명 (성명)	관계 <sup>1)</sup>	승인신청일 현재 소유주식 현황(A)			추가로 취득 하고자 하는 주 식 수(B)	추가취득후 소유주식수 (C=A+B)	추가취득 예정시기	추가취득 방 법 <sup>2)</sup>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백만원)				
본 인						( ) <sup>3)</sup>	( ) <sup>3)</sup>		
특수관계인	:					( )	( )		
	소계					( )	( )		
계						( )	( )		

- 주 1)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3) ( )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재

6. 주식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액

구 분	추가 취득 예정주식수	예상소요액(백만원)		기 타
		최근 1개월 평균주가기준 ( ) <sup>1)</sup>	신청일 현재 주가기준 ( ) <sup>1)</sup>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주 1) ( )에는 주당가격 기재(단위 : 원)

【첨부서류】 최근 1개월 평균주가 산출근거자료

7.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부 동 산	기 타	계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8.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9. 향후 소유계획 및 추가 취득계획

10.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점검표

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 제1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sup>1)</sup>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100분의 200 이하) <sup>2)</sup>	(부채/자기자본) %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3)</sup>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4)</sup>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주 1) ①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규정 별표4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 ②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  
 (가)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 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  
 (나)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 일 것  
 (다)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 대주주가 (가) 내지 (다)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 2)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②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영 별표1 제2호 관련)

항 목	내 용
<p>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p>	
<p>(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p>	
<p>(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sup>1)</sup></p>	
<p>(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p> <p>(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p> <p>(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sup>2)</sup></p>	
<p>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p>	

주 1)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③ 대주주가 금융기관 및 기금등 외의 내국법인<sup>1)</sup>인 경우(영 별표1 제3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부채/자기자본)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라. 대주주가 다음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2)</sup>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마.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3)</sup>	

주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

2)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악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

④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 제4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지 제1호서식 붙임2 참조)	
나.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 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 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 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 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 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 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 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1)</sup>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 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 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 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 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 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 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 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 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 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함	
(4)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2)</sup>	

주 1)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  
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⑤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sup>1)</sup>(영 별표1 제5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sup>2)</sup>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구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3)</sup>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4)</sup>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주 1)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①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  
 ②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③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을 적법하게 영위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⑥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sup>1)</sup>(영 별표1 제6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지 제1호서식 붙임2 참조)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마.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 <sup>2)</sup>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바.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함	
4)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3)</sup>	

주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  
 2)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⑦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영 별표1 제7호 관련)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 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3호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4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마. 제5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 제6호나목, 라목의 요건(단, 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충족할 것

---

**【첨부서류】**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가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정관
  -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 다. 위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서류
  - 가. 외국 기업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 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 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 2.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위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외국 기업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4.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 IV.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별표 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4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은행

### (1) 은행업 인가

#### I. 은행업 인가 개요

##### 1. 은행업 인가의 의미

□ 은행업은 예금자보호, 자금수급에 있어서의 국민경제적 기능 수행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산업이므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함)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은행경영의 건전성 유지,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은행이 설립된 이후에도 은행의 중대한 조직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금융위의 인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분할, 합병, 전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도 및 은행업 폐지, 은행의 해산 등

##### 2. 은행업의 소유구조 제한

□ 금융기관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설정

○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배제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비금융주력자의 경우 4%)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함

\* 본인 및 특수관계인(친.인척, 비영리법인,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및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의결권 공동행사자 등)

-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 (1)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
    - (시중은행) 10%
    - (지방은행) 15%
    - (인터넷전문은행) 10%
  - (2)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 (시중은행) 4%
    - (지방은행) 15%
    - (인터넷전문은행) 10%

####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 ① 非금융부문의 자본비중이 25% 이상이거나 非금융부문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者
- ② ①이 4%를 초과하여 투자한 투자회사(뮤추얼펀드)
- ③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출자총액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합이 동 회사 출자총액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 ④ ③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 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투자목적회사

#### □ 동일인 소유한도의 예외

- 법률에 의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적용 배제
  -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은 경우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동일인)

- 10%(지방은행의 경우 15%), 25%, 33%를 각각 초과할 때  
마다 금융위의 승인을 요함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

- 의결권 불행사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을 얻어 10%까지  
초과보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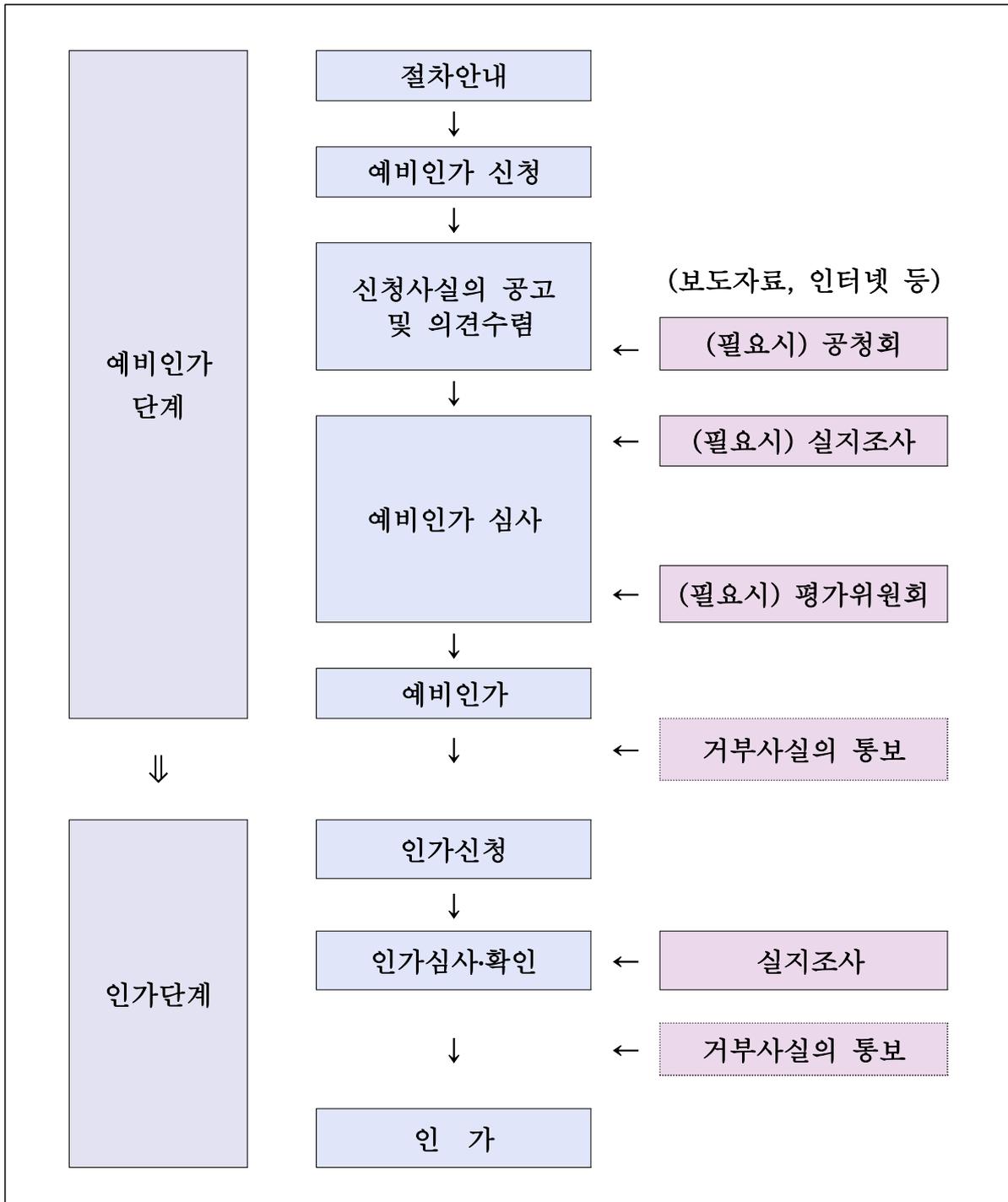
-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금융위 승인을 통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최대 34%까지 초과보유 가능\*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일 경우에는 정보통신업 비중이 50% 이상  
이어야 승인이 가능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없이 시중은행 주식의 10%  
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지방은행의 경우 15%) 초과 보유 가능
  - 2년 이내에 금융자본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환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자
  - 동일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 국가재정법상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 금융위 승인을 얻은 경우

## II. 은행업 인가 절차

### 은행업 인가절차의 일반 흐름도



## 1. 개요

□ 은행업 인가의 절차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됨

- 은행업 영위 등의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가 신청 전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
  - \* 예비인가는 인가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해 인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해지는 인가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인가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 금융위는 예비인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 신청시, 금융위는 예비인가 조건의 이행여부와 본인가 요건 충족여부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 2. 예비인가

### ① 절차안내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인의 인가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등 인가관련 제반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할 수 있음

### ② 예비인가 신청서의 접수

- 신청인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

### ③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보도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는 접수된 의견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음
-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 4] 예비인가의 심사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인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 금융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5] 예비인가

- 금융위는 신청인의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심사기준에 따라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
- 금융위는 예비인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
- “예비인가”는 인가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인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의사표시로 인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 3. 본인가

#### ⑦ 인가 신청서의 접수

- 신청인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

#### ⑧ 인가

- 금융위는 신청인의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심사기준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
- 금융위는 인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인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
- 금융감독원장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인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인가 대상행위를 실행하여야 함. 다만, 인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III.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 1. 주요 심사요건(요약)

요건	심사내용	근거법규		
		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자본금 요건	-최저자본금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8② 1, 2호 (인터넷 전문 은행의 경우 특례법 §4①)		§5, <별표2-2>1.
대주주 요건	-대주주 적격성 요건	§8② 3, 4호		§5, <별표2-2>2.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경영전략의 적정성 -경영건전성 기준 준수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 질서 준수 등	§8② 5호	§1의7①	§5, <별표2-2>3.
임원요건	-임원결격사유	§8② 6호		<별표2>1. 다.
인적· 물적 요건	-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 성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보안설비 등	§8② 7호	§1의7②	<별표2>2.

#### 2. 단계별 세부내역

##### < 예비인가단계 >

1. 예비인가 신청	○ 금융위, 은행업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	
2. 신청사실공고	○ 금융위, 신청사실 공고 (필요시 공청회)
↓	
3. 검토 의뢰	○ 금융위, 금감원에 심사 검토 의뢰



4. 금감원 심사	세 부 심 사 요 건	확인서류
자본금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li> <li>○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li> </ul>	- 자본금 납입확약서 등
대주주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금융기관 관련 책임이 없을 것</li> <li>○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상 소유규제 (§15, §15의3, §16의2)에 적합할 것</li> </ul>	-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전략 및 수익전망이 적정할 것</li> <li>○ 경영지도기준 충족이 가능할 것</li> <li>○ 이사회 및 경영지배구조가 적정할 것</li> <li>○ 내부통제,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체계가 적정할 것</li> <li>○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li> </ul>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임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기인 및 임원이 은행법상 임원 자격요건 (§18 등)에 부합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증명서, 자격증, 확인서 등</li> <li>-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차) 사실조회 회보서</li> </ul>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가신청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인력 (전문인력 포함)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li> <li>○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 시설 및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li> <li>○ 은행업 영위를 위한 적정한 전산 설비를 갖출 것</li> </ul>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평가위원회\*를 통한 질적요건 충족도 심사**

\* 은행업감독규정 제7조(인가업무의 수행) 제7조(인가업무의 수행) 감독원장은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b>5. 심사결과 통보</b>	○ 금감원, 금융위에 심사·확인 결과 통보
-------------------	-------------------------



<b>6. 예비인가결정</b>	○ 금융위, 예비인가 여부 결정 및 통보
------------------	------------------------

**신청인, 예비인가 내용대로 사업 준비**

**< 본인가단계 >**

<b>7. 인가신청</b>	○ 금융위, 은행업 인가 신청서 접수
----------------	----------------------



<b>8. 검토 의뢰</b>	○ 금융위, 금감원에 심사 검토 의뢰
-----------------	----------------------



<b>9. 금감원 심사</b>	○ 원칙적으로 예비인가와 동일, 인적·물적설비요건 등 일부요건에 대하여는 실지조사
------------------	---



<b>10. 심사결과 통보</b>	○ 금감원, 금융위에 심사·확인 결과 통보
--------------------	-------------------------



<b>11. 인가여부 결정</b>	○ 금융위, 인가 여부 결정 및 통보
--------------------	----------------------

### 3.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 은행업을 주로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의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은행법상 인가기준에 대한 특별규정이 적용됨
  - 원칙적으로 일반은행업 인가기준과 동일하나, 자본금 액수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가능 비율 등 일부 요건에서 차이가 있으며,
  -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은행보다 규모나 업무범위가 작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적용
- 또한, 온라인·비대면 영업을 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인가조건을 부과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시 주요고려사항

##### ① 사업계획의 혁신성(Innovation)

- 기존 금융관행을 혁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

##### ②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Stability)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춘 주주로 구성되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갖추었는지 여부

##### ③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Consumer Convenience)

-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이나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비자가 점포 방문을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여부

##### ④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Competitiveness)

- 차별화된 금융기법,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금융산업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 ⑤ 해외진출 가능성(Global Expansion)

-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 뿐 아니라 아시아 등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한 사업 계획과 실천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4. 세부 심사기준

### 1. 자본금 및 자금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 자본금 규모가 1,000억원(지방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250억원) 이상일 것
  -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경영할 때 동 자본금을 유지해야 함
-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 2.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할 것
  -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은행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의 허가·인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었던 자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음\*

\* 다만, 당해 대주주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부실책임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면제받은 자인 경우 제외

□ 대주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할 것

- 대주주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10%(지방은행은 15%)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 영 <별표1>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대주주가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특례법) 제5조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 : 특례법 별표의 요건
-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 (지방금융기관 제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제외)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동일인이 최대 주주이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영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대주주가 금융기관의 주주 1인을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 (지방금융기관 제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 제외)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인 경우 : 영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할 것

**<동일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여부>**

구분 (동일인 기준)	지분율	심사여부 (심사요건)
비금융주력자 아닌 자	10% 초과 (지방은행은 15% 초과)	•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임 (은행법 시행령 [별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인 주식초과보유 승인(법 §15③)도 받을 필요</li> <li>※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과 주식초과보유 승인 심사요건이 동일하므로, 동일인 주식초과보유 승인을 받으면 적격성 심사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판단</li> </ul>
	4% 초과 (최대주주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임 (은행법 시행령 [별표2])</li> <li>※ 지방은행 설립시에는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님</li> </ul>
비금융주력자	4%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님</li> </ul>
	10% 이하 (의결권 불행사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격성 심사대상이 아님</li> <li>• 다만,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 불행사 조건부 주식초과보유승인(법 §16의2②)을 받을 필요 (은행법 시행령 [별표2])</li> </ul>
	10% 초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임 (인터넷전문은행법 [별표])</li> <li>• 동일인 주식초과보유 승인(법 §15③)도 받을 필요</li> <li>※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과 주식초과보유 승인 심사요건이 동일하므로, 동일인 주식초과보유 승인을 받으면 적격성 심사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판단</li> <li>•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 기업집단 중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 자산 총액이 기업집단 중 비금융회사 자산총액의 50%일 것</li> </ul>
	<p>※ 한편, 비금융주력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하여 <b>‘비금융주력자 아닌 자와 동일하게 취급됨’</b></p> <p>① 2년내 비금융주력자 아닌 자로의 전환계획을 제출하여 금융위 승인을 얻은 자</p> <p>② 외국인의 은행 주식보유비율 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자</p> <p>③ 기금 또는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으로서 은행 주식보유 관련 금융위 승인을 얻은 자</p>	

###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 위험관리와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와 업무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참조)
  -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은행이용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이사회구성계획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구성방법에 부합할 것
  -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 \* ■ 영위업무의 범위가 적정할 것
  - 영업내용이 은행법 등 각종 금융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
  - 영업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타 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의 범위가 적정할 것(「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준수 필요)
  - 대고객 채널 및 접근매체의 적정성
  - 금융상품의 개발·판매·사후관리단계에서 소비자보호체계를 갖출 것
  - 전산사고 등 발생시 고객피해 구제방안이 적정할 것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

#### 4.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 발기인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19조·제26조·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 5.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 □ 인력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을 것
- 자본금 규모 및 추가자본 확충계획에 비추어 점포수, 인원수, 영위업무의 범위가 적정할 것
- 리스크관리, 여신심사, 파생상품 등 특정부문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 □ 영업시설에 관한 사항

-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체계의 구축이 적정할 것
-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출 것
- 정관이 관계법규에 부합하고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 (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 신설은행이 은행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은행과 수탁자 간의 업무위탁 계약서 등에 감독기관의 수탁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가 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

-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 「전자금융거래법(§21)」 및 「전자금융감독규정(§7 ~ §37)」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참고

-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통신설비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

## 6. 금융기관 설립을 신청한 외국 금융회사 또는 당해 외국 금융 회사의 지주회사에 관한 사항

---

- 은행 설립에 대하여 본국 감독당국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동의를 받을 것
- 본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 재무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국제적인 신인도가 인정될 것
-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및 영업점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
- 은행 관리 및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

---

## 7. 외국은행 최초지점 신설

---

- 외국은행 본점에 관한 사항
  - 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를 있을 것
  - 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보유하고, 모든 국내외 영업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

□ 외국은행 지점에 관한 사항

- 외국은행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기금,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기금은 갑기금과 을기금\*을 구분하고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함(「은행업감독규정」§11)
  - \* 을기금은 원화자금 및 본점으로부터의 1년이상 장기차입금으로 자본총계의 200% 이내에서 인정됨(「은행업감독규정」§11④)
-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하는 영업시설 및 전산체계를 갖출 것
-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필요 여신심사체계를 갖출 것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 외국은행 국내지점, 본점 및 관계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

□ 외국은행지점 대표자에 관한 사항

- 경영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성실성 등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법규준수 면에서 하자가 없을 것
  - \* (적격요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의 요건을 구비할 것

---

## 8. 외국은행 최초지점 이외의 지점 신설

---

□ 외국은행 본점에 관한 사항

- 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를 있을 것

- 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 외국은행 추가 국내지점에 관한 사항

- 국내에 이미 설치된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경영상태 및 관계법규 준수상태가 양호할 것
- 외국은행 추가 국내지점의 운영에 필요한 영업기금, 조직, 업무운영체계 및 내부통제제도를 갖출 것
- 외국은행추가지점의 영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 외국은행 추가 국내지점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외국은행의 추가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경영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성실성 등 경영능력을 구비하고 법규준수 측면에서 하자가 없을 것

\* (적격요건)「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의 요건을 구비할 것

---

## 9. 외국은행지점의 폐쇄

---

- 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내국인 근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절할 것

## IV. 은행업 인가 신청 구비서류

### 1. 인가 신청서

<제1호 서식> <신설 2010.11.17> <개정 2016. 7. 20, 2023. 2. 13.>

작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은행업의 인가 신청서

20 . . . .

문서번호

수 신 : 금융위원회

참 조 : (은행과)금융산업국장

제 목 : 은행업 인가 신청

「은행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은행업을 경영하고자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은행업 인가 신청 내용 1부. 끝.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

(붙임)

## 은행업 인가신청 내용

1. 신청인 현황

2. 상호

3. 본점과 지점 등 영업시설의 소재지

4. 은행업 인가요건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나.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라. 발기인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마.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바. 금융기관 설립을 신청한 외국 금융회사 또는 당해 외국 금융회사의 지주회사에 관한 사항

5. 기타사항 (은행업 영위 형태 등)

## 첨부서류

1. 인가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6.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제26조까지, 제33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7.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8. 주주명부
9.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을 입증하는 서류
10.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 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 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2.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14.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
15. 신청인이 외국 금융회사(지주회사 포함)인 경우
  - 가. 신청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금융위·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명령·지시와 금융기관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
  - 다. 신청금융회사의 정관
  - 라. 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마. 경영진 명단 및 주요 이력
  - 바.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설치가 신청금융회사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
  - 사.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영업현황, 연차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
  - 아.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비율과 그 명세
  - 자. 신청금융회사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국내외 관계회사 현황 및 신청금융회사와 관계회사간 주요 금융거래 현황
  - 차. 신청금융회사의 대한민국과의 거래관계

## 2. 구비서류

구 분	예비인가	인 가
은행업  영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기인(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예비인가 신청서</li> <li>2. 정관이나 정관안</li> <li>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li> <li>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li> <li>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li> <li>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li> <li>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제15조의3·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li> <li>9.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예정)와 명칭을 적은 서류</li> <li>10. 발기인 전원의 이력서(발기인이 법인인 경우 그 연혁,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대표자의 이력서)</li> <li>11.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li> <li>12. 추진일정</li> <li>13. 목적변경취지서</li> <li>14.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가신청서</li> <li>2. 정관</li> <li>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li> <li>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li> <li>5.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li> <li>6.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내부규범 등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23조까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li> <li>7.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제15조의3·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li> <li>8. 주주명부</li> <li>9.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을 입증하는 서류</li> <li>10.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li> <li>1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li> <li>12.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1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입증하는</li> </ol>

구 분	예비인가	인 가
	<p>15. 법인등기부등본</p> <p>16. 신청인이 외국금융회사(지주회사 포함)인 경우</p> <p>가. 신청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p>나. 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다. 경영진 명단 및 주요 이력</p> <p>라.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설치가 신청금융회사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p> <p>마.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영업현황, 연차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p> <p>바.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비율과 그 명세</p> <p>사. 신청금융회사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국내외 관계회사 현황 및 신청금융회사와 관계회사간 주요 금융거래 현황</p> <p>아. 신청금융회사의 대한민국과의 거래관계</p>	<p>서류</p> <p>14. 기타 예비인가사항의 이행을 입증하는 서류</p> <p>15. 신청인이 외국 금융회사(지주회사 포함)인 경우</p> <p>가. 신청금융회사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p> <p>나.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금융위·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명령·지시와 금융기관 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p> <p>다. 신청금융회사의 정관</p> <p>라. 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마. 경영진 명단 및 주요 이력</p> <p>바. 대한민국내 금융기관설치가 신청금융회사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p> <p>사.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영업현황, 연차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p> <p>아.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비율과 그 명세</p> <p>자. 신청금융회사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국내외 관계회사 현황 및 신청금융회사와 관계회사간 주요 금융거래 현황</p> <p>차. 신청금융회사의 대한민국과의 거래관계</p>

구 분	예비인가	인 가
외국은행 최초지점 신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비인가신청서</li> <li>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4.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li> <li>5.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li> <li>6.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li> <li>7.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li> <li>8. 지점운영계획 및 영업계획</li> <li>9. 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기 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는 관리계획</li> <li>10. 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li> <li>11. 추진일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가신청서</li> <li>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대한민국내의 영업활동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령, 정부관계당국,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명령·지시 및 금융기관상호간의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각서</li> <li>4. 신청금융기관의 정관</li> <li>5.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li> <li>6. 본국에서 은행업영위를 인가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7. 경영층 명단 및 주요 이력</li> <li>8.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li> <li>9.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li> <li>10.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li> <li>11. 지점운영계획 및 영업계획</li> <li>12. 신청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취급현황 및 기 진출 해외점포에 대한 관리현황 또는 관리계획</li> <li>13. 신청금융기관의 한국과의 거래관계</li> </ol>

구 분	예비인가	인 가
외국은행 추가지점 신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비인가신청서</li> <li>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li> <li>4.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li> <li>5.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li> <li>6.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li> <li>7. 추진일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가신청서</li> <li>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설치하고자 하는 지점의 대표자가 될 자의 성명과 권한 및 그 권한을 표시하는 정당한 위임장과 이력서</li> <li>4. 한국내 지점설치가 신청금융기관의 본국 관련법규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감독당국의 승인 서류</li> <li>5. 최근 3년간 영업현황 및 연차보고서</li> <li>6. 최근 3년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명세</li> <li>7. 지점 운영계획 및 영업계획</li> </ol>
외국은행지점 폐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비인가신청서</li> <li>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인가신청 전월말 및 신청일 현재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li> <li>4.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li> <li>5. 지점폐쇄 및 청산절차에 관한 일정</li> <li>6. 당해지점 직원과 자산부채에 대한 조치 계획</li> <li>7. 추진일정</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가신청서</li> <li>2. 신청금융기관의 대표자로 서명한 자가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인가신청 전월말 및 신청일 현재 당해지점의 대차대조표</li> <li>4.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li> <li>5. 예금자에 대한 조치와 그 자산 부채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li> <li>6. 당해지점 직원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서류 및 조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ol>

주) 외국은행의 경우

- ① 신청서 및 외국어 첨부서류(연차보고서 제외)에 대한 공증인의 공증과 신청서 및 인가서의 각서에 대한 영사관의 인증을 받을 것
- ② 신청서 및 외국어 첨부서류(연차보고서 제외)에 대한 한글 번역본을 첨부

## V. 기존 판단사례

### 1. 의결권 공동행사 여부

- 컨소시엄 구성원 간에 주식보유비율 변동을 위한 계약을 하는 경우 합의·계약에 의한 의결권 공동행사로 보아 동일인으로 간주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주식보유비율 변동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의결권 공동행사 관계로 보기는 곤란

## VI. 유권해석

### 1. 은행주식 취득자금의 적정성 관련

□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주식을 4% 초과보유하려면 해당 자금이 최근 1년 이내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이어야 함(은행법 시행령 별표2)

○ “최근 1년 이내 유상증자”가 “차입금”의 예시인지, “차입금이 아닌 자금”의 예시인지 여부가 불명확\*

\* (차입금설) 최근 1년 이내 유상증자한 자금을 통한 은행주식 4% 초과 취득이 금지

(차입금이 아닌 자금설) 최근 1년 이내 유상증자한 자금을 통한 은행주식 4% 초과 취득 가능

□ “차입금이 아닌 자금”의 예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1년 이내 유상증자한 자금을 통한 은행주식 4% 초과 취득 가능

○ 유상증자는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대표적 수단이므로 “차입금”의 예시로 보는 것은 법 문언을 넘어서는 해석

○ 은행주식 취득을 위해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내부유보금에 비해 차별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 없음

## 2.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부채비율 산정기준 관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4% 초과보유 요건 중 “주주가 속하는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 요건과 관련하여
  - 주주가 속하는 기업집단에 해외 계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비금융회사의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불명확

- 기업집단 내 해외 계열사도 원칙적으로 대상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며,
  - 이 경우 포함되는 해외 계열사의 범위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 기업집단의 재무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부채비율 산정시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의 자본과 부채를 각각 합산한 뒤 부채비율을 산정

## VII. 법령오해 사례

### 1. 발기인 소속 임원의 법령 위반 전력 심사 여부

□ 발기인이 은행업 설립 인가를 신청할 경우 발기인 소속 임원들의 법령 위반 전력도 심사하는지 여부가 문제

□ 은행업 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신설회사이므로, 발기인이 동 회사를 대리하여 신청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임원은 아니므로 **발기인 소속 임원들의 법령 위반 전력은 심사하지 않음**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2 은행업인가기준

####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위험관리와 은행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와 업무 방법이 마련되어 있을 것

8)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 2. 4% 이하 의결권 행사 비금융주력자의 심사 관련

0

- 4% 이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금융주력자의 경우에도 한도초과 보유주주 초과보유요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 은행법상 4% 이하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금융주력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음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당해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포기조건으로 은행주식 10%를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은행법 §16의2②)
- 공동의결권행사 약정 등으로 다른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경우(은행법 시행령 §1의4①9.)
-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 보유\*하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은행업감독규정 [별표2-2] 2-나-2]

\* 대주주 여부 판단시 비금융주력자가 의결권을 포기한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므로 4%주식만 보유한 주주라 하더라도 4%를 초과하여 의결권 행사 가능

\*\* ① 최대주주인 경우, ②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경우, ③ 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인 경우(시행령 §1의6)

□ 한편, 4% 이하의 의결권만 행사하는 주주에게도 동 주주가 다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등은 추가 요청 가능

## VIII. 관련 법규

### 은행법

§8, §9, §11, §15, §16의2, §58 ~ §63

### 은행법 시행령

§1의7, §5, , §24의8, §26

### 은행업감독규정

§4, §5, §10 ~ §12, §14, §15

###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4, §5

###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5, §6, §12 ~ §23, §26, §28

###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16, §19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은행

### (2)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 I.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개요

##### 1. 승인의 의미

-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배제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비금융주력자의 경우 4%)를 초과 보유\*\*하지 못함

\*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말함(친.인척, 비영리법인,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및 그 임원, 계열회사 등)

\*\*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함

##### ○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 (시중은행) 10%(다만,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경우에는 4%)
- (지방은행) 15%

##### ※ 비금융주력자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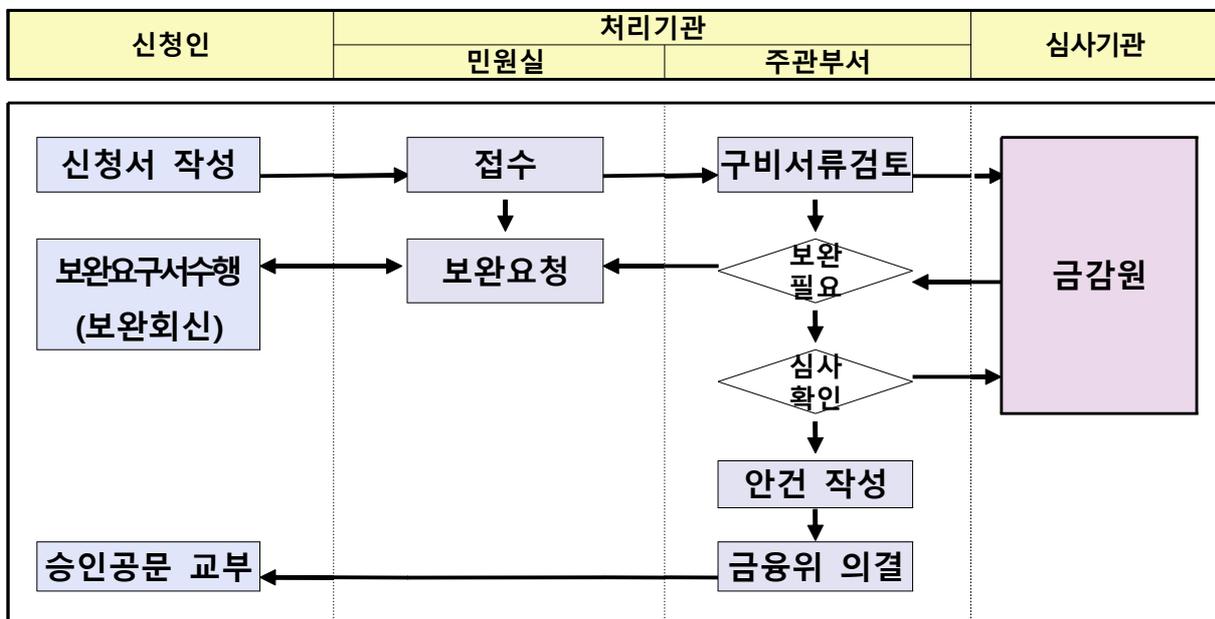
- ① 非금융부문의 자본비중이 25%이상이거나 非금융부문의 자산합계가 2조 원이상인 者
- ② ①이 4%를 초과하여 투자한 투자회사(뮤추얼펀드)
- ③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출자총액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합이 동 회사 출자총액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사모투자전문회사
- ④ ③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 보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투자목적회사

- 다만, 법률에 의해 동 한도 적용을 배제받는 경우\*와 금융위로부터 한도초과 보유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상기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 은행지주회사

## II. 한도초과보유 승인 절차

승인업무 처리 흐름도



### III.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기준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0. 21.>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제5조 관련)

구 분	요 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p>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날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p> <p>다.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35조의2제1항에 적합할 것</p> <p>라.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그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2.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	<p>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않을 것</p> <p>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기금등인 경 우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제1호, 제2 호, 제3호 및 제7 호 외의 내국법인 인 경우	<p>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 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p> <p>라.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내국인으로 서 개인인 경우	<p>가. 주식취득 자금이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p> <p>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6.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외국인인 경 우	<p>가. 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p> <p>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p> <p>다.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p> <p>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마.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7.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등 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

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 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4호가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다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라목 및 제6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비고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4. 이 표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외국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 신청할 때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이 표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 이 표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비금융주력자

나.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다만, 서로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이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별표] <개정 2020. 5. 19.>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제5조 관련)

구 분	요 건
<p>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p>	<p>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날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아닐 것</p> <p>다.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제8조제1항에 적합할 것</p> <p>라.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li> <li>2)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li> </ol> <p>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해당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p>
<p>2.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p>	<p>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p> <p>나.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인 경우	
3.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은행법」에 따른 기금등인 경우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p>가.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의 자금일 것</p> <p>라.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내국인으로서는 개인인 경우	<p>가. 주식취득 자금이 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p> <p>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해당 개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 승인이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지 않을 것,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해당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p>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p>가. 외국에서 은행업,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보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이거나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p> <p>나. 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p> <p>다.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p> <p>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마.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7.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인 경우</p>	<p>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마. 제5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4호가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다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라목 및 제6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비고

1.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를 판정할 때에는 해당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2. 자본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3.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의하여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4. 이 표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외국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 신청할 때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이 표 제7호를 적용하는 경우 이 표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비금융주력자

나.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다만, 서로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이에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

## IV.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서

<제29호 서식> <개정 2008. 3. 26, 2009. 6. 30, 2009. 10. 8, 2010. 11. 17, 2016. 1. 28, 2017. 4. 20, 2018. 1. 26, 2019. 1. 17.>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은행과)금융산업국장

제 목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

「은행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 은행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고자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의4제2항 및 제8항에 의거 불임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붙 임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내용 1부. 끝.

신 청 인 (인)

대 리 인 (인)

(붙임)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청내용

1. 신청인\*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 신청인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본인”을 말함

<내국인 개인의 경우>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생년월일	
주 소			

\* 신청인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본인”을 말함

## 2. 동일인 현황

	법인명 <sup>2)</sup> (성명)	관계 <sup>3)</sup>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종 <sup>4)</sup> (직업)	비고
본인 특수관계인 <sup>1)</sup> · ·					

주 1) 특수관계인중 자연인 및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의 경우 해당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작성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 기재

4)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 3.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종 <sup>2)</sup>	비금융회사 해당여부 <sup>3)</sup>	자산총액 <sup>4)</sup>	자본총액 <sup>4)</sup>	재무건전성 비율 <sup>4)</sup>
○○○ <sup>1)</sup>					
△△△					
×××					
· · ·					
계					
비금융회사 소계				( )	

주 1)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회사를 기재

2)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비금융회사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금융회사”를 말함

4) 신청일 이전 최근 대차대조표(가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 ( ) 내는 자본총액의 계에 대한 비금융회사 소계의 비중(%)을 기재

### 3-2. 동일인종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자의 현황

\* 주식취득예정 은행 주식보유비율이 4%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가. 회사 현황

상 호		업무집행사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소 재 지		존립기간	
출자총액 (백만원)		최대출자자 (지분율)	
주요출자자 (지분율)			
회사의 운용개요			

#### 나. 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주, %)

구 분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액 (지분율)	소 속 대기업 집단명	소속 동일인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소속 동일인 보유 해당 은행 주식수 (지분율)
무한책임 사원						
유한책임 사원						
출 자 총 액 : _____				소속 동일인 보유 해당 은행 주식 : _____ 합계(지분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출자액 : _____						

**다. 무한책임사원 등이 속하는 동일인 현황\***

\* 무한책임사원,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을 대상으로 각각 작성

(단위 : 백만원)

	업종 <sup>2)</sup>	비금융회사 해당여부 <sup>3)</sup>	자산총액 <sup>4)</sup>	자본총액 <sup>4)</sup>
○○○ <sup>1)</sup>				
△△△				
×××				
· · ·				
계				
	비금융회사 소계			(    )

- 주 1)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회사를 기재  
 2)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비금융회사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에서 정하는 “비금융회사”를 말함  
 4) 신청일 이전 최근 대차대조표(가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 (    ) 내는 자본총액의 계에 대한 비금융회사 소계의 비중(%)을 기재

**3-3. 동일인중 투자목적회사\*인 자의 현황**

\* 주식취득예정 은행 주식보유비율이 4%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가. 회사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등록연월일 (등록번호)	
소재지		존립기간	
자본금 (백만원)		최대주주(사원) (지분율)	
주요주주(사원) (지분율)			

나. 주주(사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주주(사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출자액 (지분율)	비금융주력자 여부	비고*

다. 임원 현황

성명 (한자)	직위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현근무처(직위)	주요경력	추 천 자

4. 주식취득 예정 은행의 주식발행 현황

은행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5.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계획

	법인명 (성명)	관계 <sup>1)</sup>	승인신청일 현재 보유주식 현황(A)			추가로 취득 하고자 하는 주 식 수(B)	추가취득후 보유주식수 (C=A+B)	추가취득 예정시기	추가취득 방 법 <sup>2)</sup>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본 인						( )	( )		
특수관계인	:					( )	( )		
	소계					( )	( )		
계						( )	( )		

주 1)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관계 및 동 관계를 규정한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각호의 번호기재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 ( )내는 지분율,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보유지분율(%)을 소수점 세자리까지 기재

6. 주식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액

	추 가 취 득 예정주식수	예상소요액(백만원)		기 타 ( )
		최근 1개월 평균주가기준 ( )	신청일 현재 주가기준 ( )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 ( )내는 주당가격 기재

첨부서류 : 최근 1개월 평균주가 산출근거자료 1부.

7.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부 동 산	기 타	계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8.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관여 여부

9. 향후 추가 취득 및 보유 계획

## 10. 초과보유요건\* 점검표

\* 은행법 시행령 <별표1> 요건 및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 요건

(금융기관)

항 목		내 용
자기자본비율 등 <sup>1)</sup>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sup>2)</sup> 및 등록사유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출자비율 해당금액 <sup>3)</sup>	백만원
	신용공여사유 <sup>4)</sup>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최대·주요주주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sup>5)</sup>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령 등 <sup>6)</sup>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 <sup>7)</sup>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및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sup>8)</sup>		백만원

- 주 1) 해당 기관이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해당 기관이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  
해당 기관이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  
상기 기관 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자기자본비율 등
-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날짜 기재
- 3) (신청인이 보유하는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 /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은행의 자기자본)
- 4)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단서, 동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를 기재
- 5)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 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조세범 처벌법」의 위반(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반 포함)으로 처벌받은 내용 포함
- 7)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는지 여부
- 8)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방송업/공영우편업/뉴스제공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인 자의 자산총액 합계액과,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 합계액을 각 기재
- ※ 자본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계산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항 목		내 용
비금융주력자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에 자산운용 위탁 여부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출자비율 해당금액	백만원
	신용공여사유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최대·주요주주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 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및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백만원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기금등)

항 목		내 용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출자비율 해당금액	백만원
	신용공여사유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최대·주요주주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 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 작성요령은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내국법인)

항 목		내 용
부채비율 <sup>1)</sup>		
해당 기업집단내 비금융회사의 부채비율 <sup>2)</sup>		
주식취득 자금조달	조달방법	
	조달금액	
	(자본총액) <sup>3)</sup>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출자비율 해당금액	백만원
	신용공여사유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최대·주요주주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 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및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백만원

주 1)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본총액으로 나눈 비율

2) 신청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인 경우 작성 (해당 기업집단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의해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함)

3) 최근 결산기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신청인의 자본총액

※ 나머지 항목의 작성요령은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내국인 개인)

항 목		내 용
주식취득 자금조달 방법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출자비율 해당금액	백만원
	신용공여사유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최대·주요주주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 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 <sup>1)</sup>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및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백만원

1)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개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경우 작성

※ 나머지 항목의 작성요령은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외국인)

항 목		내 용
업종 <sup>1)</sup>		
자산총액 <sup>2)</sup>		
국제적 신인도 <sup>3)</sup>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날짜 및 그 사유		
최근 3년간 자기자본비율 <sup>4)</sup>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출자비율 해당금액	백만원
	신용공여사유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최대·주요주주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및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백만원

주 1) 지주회사인 경우 자회사의 업종 기재

2)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작성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경우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3)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발표한 해당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등급 등을 기재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경우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4)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또는 순자본비율(증권회사) 및 지급여력비율(보험회사) 등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비율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함)

※ 나머지 항목의 작성요령은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와 동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주주· 사원명 <sup>1)</sup>	구분 <sup>2)</sup>	항 목 <sup>3)</sup>	내 용	
(주)△△△	금융기관 (업무집행사원)	자기자본비율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록일 및 등록사유		
		은행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신용공여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출자비율 해당 금액	백만원
			신용공여사유	
		최근 5년내 신청인이 최대·주요주주인 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 내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 영위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및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	백만원			
∴	∴	∴	∴	
∴	∴	∴	∴	
∴	∴	∴	∴	

주 1) 한도초과보유요건 심사대상이 되는 주주 및 사원\*

\*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및 출자지분 30% 이상이거나 동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는 유한책임사원, 한도초과보유주주인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및 동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30% 이상이거나 동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나 사원(영 별표1 제7호)

2) 한도초과보유요건의 심사대상인 주주 또는 사원의 법적 성질\* 및 업무집행사원, 유한책임사원(출자지분 30% 이상이거나 동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사실상 지배), 주주(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30% 이상이거나 사실상 지배) 여부 기재

\* 금융기관, 투자회사 등, 기금 등, 내국법인, 내국인, 외국인

3) (위 표에 기재된 구분, 항목 등은 예시임) 주주 및 사원의 법적 성질에 맞추어 앞에 열거된 금융기관 등의 점검표와 동일하게 각 항목을 기재하되, 외국인 중 금융회사가 아닌 자에 대한 항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점검표 항목에 '내국법인'에 대한 점검표 중 '부채비율' 항목과 '주식취득 자금조달'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

※ 각 항목의 작성요령은 각각의 주주·사원에 적용되는 점검표의 내용과 동일

### 1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추가요건\* 점검표

\* 은행법 제15조의3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 가. 업무집행사원의 일반적 요건 현황

항 목		내 용
법인 등록번호		
자신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있거나 그 재산 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 기구 등의 다른 사원 또는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법인 설립일		
최근 5년내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날짜 및 위반내용		
최근 5년간 신청인이 최대·주요 주주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인·허가 등이 취소된 날짜 및 그 내용		
자신이 업무집행사원 으로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능력	출자 약정액 합계액	백만원
	설립 후 누적 출자 약정액 합계액	백만원
최근 3년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278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동법 <별표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여부		
최근 5년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기업 등의 해당 여부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금융질서문란 거래정보 거래자 등으로 등록된 사실 여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해당 여부		

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결격요건 현황

(1) 임원 현황

성명 (한자)	현직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학력	주요경력	비고
○○○					
△△△					
×××					
⋮ ⋮ ⋮ ⋮ ⋮ ⋮					

(2) 임원결격사유 점검표

성명 (한자)	직위		
결격사유		해당여부	비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이하 같음)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p>4)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이하 같음)</p>		
<p>5) 2)부터 4)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함)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부터 3년</p>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터 3년</p>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1) 또는 2)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1) 또는 2)에서 정하는 기간</p>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 었더라면 1)부터 3)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부터 3)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 첨부서류

### <공통>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준하는 서류
3.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제표 및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반기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4-2. 동일인 중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자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 등기부 등본
    -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동일인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포함)

- 4-3. 동일인 중 투자목적회사인 자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가. 투자목적회사의 정관, 등기부 등본, 주주(사원)명부
- 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식(지분)의 4%를 초과하여 취득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 등기부 등본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동일인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포함)
5. 해당 법인이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8>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용정보조회표 등) <외국인은 제외>
6. 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은행법」 제35조의2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주식취득 대상은행의 확인서 등).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단서, 동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16조의4제6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주식취득 대상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인서 등)
7. 동일인이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회계법인 등의 확인서 및 최근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인 경우 결합재무제표 포함)
8. 금융기관의 주식보유가 은행의 지배주주로 적합한지 여부 및 해당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류
9. 다음의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 가.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은행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로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8>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판결문 사본 또는 경제적 책임부담을 입증하는 서류)
- 나.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한다)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기관>

10.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이상,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이상,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이상일 것
  - 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 다.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 <투자회사>

10. 비금융주력자의 보유지분이 4%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주주명부 등)
11.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에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위탁(예정) 집합투자업자 명의 협약서 등)

#### <내국 법인>

10.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1.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200% 이하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12.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해당 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 현황

#### <내국인 개인>

10. 주식취득 자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 <외국인>

10. 법인의 경우 설립일, 대표자, 종업원수, 자본금, 자산규모, 주요주주, 국내 투자 현황 등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개인의 경우 이력서
11. 주식 취득예정 해당법인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제표 등 총자산 및 영업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은행업의 경우 세계 순위, 기타 금융업의 경우 해당국가 동종업종 평균자산규모 및 해당금융기관의 순위 등 포함)
12. 해당 외국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감독기관 등의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서
  - 가. 해당 외국의 금융회사이거나 해당 국가 금융회사의 지주회사임
  - 나.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
  - 다. 해당 외국의 관련규정상 대한민국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8>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
  - 라. 은행업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기타 금융업의 경우 해당 금융업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감독당국의 자체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최근 3개년도분)
    - \* 금융기관의 지주회사는 해당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 회사를 기준
  - 마.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결과(최근 2회분)
13. 승인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 및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4. 승인신청 당시 해당법인의 해당은행의 주식보유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

1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등의 주주 또는 사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1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등의 주주 및 사원 내역
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등의 주주 및 사원의 특수관계인 내역
1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사원 현황
1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등의 투자내역
15.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과 관련한 다음의 자료
  - 가. 업무집행사원의 정관, 등기부 등본, 주주(사원 명부)
  - 나. 금융회사 임원 약력표 등을 포함한 이력서\*(사진부착 및 본인 확인)
    - \* 피한정후견인 등 결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서에 '등록기준지(본적)'를 반드시 기재
  - 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해당 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등)

- 라.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 이상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 마. 현 근무처의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재직증명서, 5년 미만인 경우 이전 근무처의 확인서(경력증명서 등)
  - 바. 외국인의 경우 법규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준하는 이전 근무지의 관련 법규상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소속기관 또는 이전 근무지의 확인서 등)
  - 사. 이사, 감사,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경우 이사회결의서 또는 주주총회결의서 등
  - 아. 기타 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본인 및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
16. 기타 승인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인허가 사례

### 2-(2)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신 청 회 사	OO은행	신 청 일	2014. 9. 30.
처 리 부 서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완 료 일	2014. 10. 17.
신 청 내 용	<p><input type="checkbox"/> △△△는 OO지주의 한도초과보유주주였으나, OO지주의 100% 자회사인 OO은행이 OO지주를 흡수합병(OO지주 소멸, OO은행 존속)하면서 OO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됨</p> <p>○ 이에 따라 OO은행 주식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p>		
심 사 내 용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 공식절차 및 사전협의내용</p> <p>○ '14.6.7. OO지주와 OO은행은 합병예비인가를 신청(예비인가와 관련된 사전협의를 14.4.월 및 5월에 여러번 진행되었고, 동 협의시 한도초과보유승인은 본인가신청과 동시에 하기로 협의)</p> <p>○ '14.7.30. 금융위, 합병예비인가 의결</p> <p>○ '14.9.30. OO지주와 OO은행은 합병(본)인가를 신청, △△△는 OO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신청(사전협의를 14.9월 여러번 진행됨)</p> <p>○ '14.10.17. 금융위, 합병본인가 및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p> <p><input type="checkbox"/> 주요 쟁점사항</p> <p>○ △△△를 포함한 동일인의 범위 및 이를 확정하는 절차</p> <p><input type="checkbox"/> 위원회의 보완 요청사항</p> <p>○ △△△이 외국금융회사이므로 동사의 본국감독당국에 △△△의 건전성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p> <p><input type="checkbox"/> 주요심사내용</p> <p>○ △△△의 건전성, 국제적 신인도, 은행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p>		

## ◆ 인허가 사례 (금융위 결정내용)

### 2-(3)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처리 기간 제외

신 청 회 사	(주)OO	신 청 일	-
처 리 부 서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	금융위 결정일	2019. 4. 17.
주 요 골 자	<p><input type="checkbox"/> (주)OO는 (주)△△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 하였으나 심사과정 중 (주) OO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위반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2월 부터 조사 등 절차를 진행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기간 제외</p>		
안 건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b>(주)OO의 (주)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처리기간 제외 결정안</b></p> <p>(주)OO의 (주)△△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승인 신청 관련 은행법 시행령 제4조의3,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간을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input type="checkbox"/>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OO가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날부터 (주)OO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위반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2월부터 진행중인 조사 등 절차가 끝나는 날(다만, (주)OO의 다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조사 등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그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조사 등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li> </ul> <p><input type="checkbox"/>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OO가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날부터 (주)OO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되고 위반 사실이 확정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li> <li>○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절차의 내용이 (주)OO의 (주)△△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됨</li> </ul>		

## VI. 유권해석

### 1.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대상 범위 관련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동일인 주식 보유한도 초과 보유 승인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하여 심사할 수 없음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별표에 따르면 “주식을 보유한 자”가 심사대상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 신청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해당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등을 요건으로 규정할 뿐, 계열주에 대해서도 요건을 적용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법문언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초과 보유 승인심사에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계열주”는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V. 관련 법규

### 은행법

§15, §16, §16의2

### 은행법 시행령

§4, §4의2, §4의3, §5, §8, 별표1

###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5, 별표

###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은행

### (3)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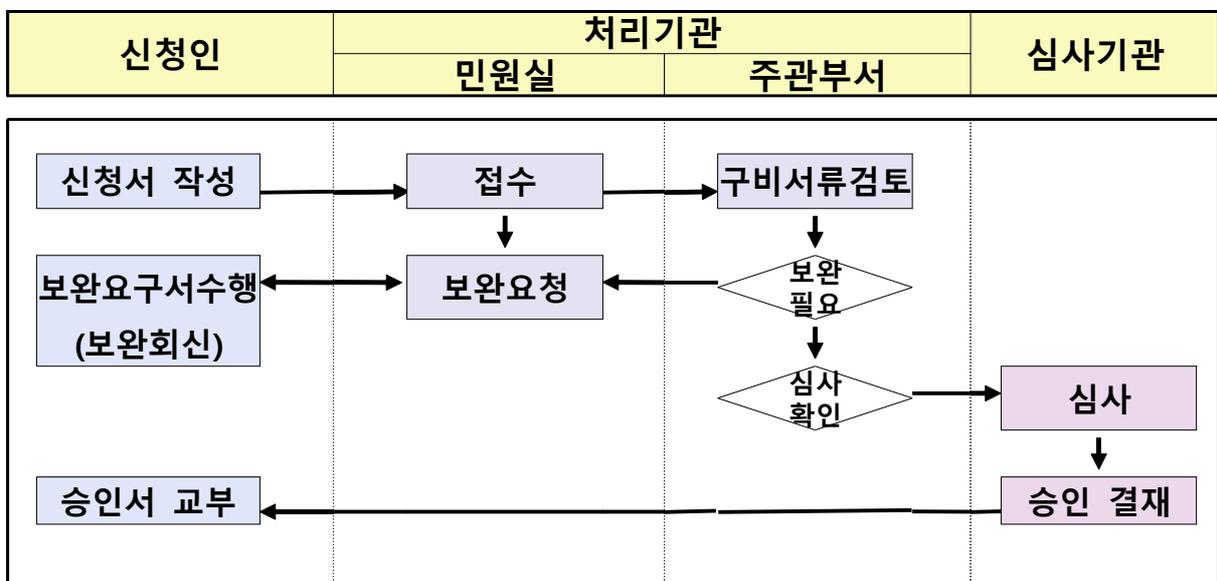
#### I. 비금융 자회사 출자 승인 개요

-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다만 금융기관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비금융업종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가능함

#### < 비금융 자회사 출자 승인의 의의 >

- 금융기관은 다른회사(비금융업종 회사)에 대한 출자가 제한되지만,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다른회사 발행주식의 15%)을 초과한 지분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출자목적 및 규모, 금융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출자를 승인함

#### II. 비금융 자회사 출자 승인 절차



## □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신청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금융기관이 주식을 추가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 취득예정일 30일전까지 승인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수의 변동 등의 사유로 15%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승인신청서를 제출

## Ⅲ. 비금융 자회사 출자 승인 심사기준

### □ 출자 목적의 적정성

-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등

### □ 출자 규모의 적정성 등

- 15% 초과 자회사 총 출자액 < 은행자기자본의 20% 등

### □ 은행경영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 등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여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등

### □ 출자지분 처분 계획의 적정성 등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에 해당되는 경우

-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

## IV. 비금융 자회사 출자 승인 신청서 작성 요령

### 1. 승인 신청서 양식

<제119호 서식> <신설 2016. 7. 20.>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신청서

문서번호

20 . . . .

수 신 : 금융위원회

참 조 : (은행과)금융서비스국장

제 목 : 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 신청

「은행업감독규정」 제51조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한 출자승인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출자회사의 개요
2. 출자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3. 출자목적
4. 취득방법 및 금액
5. 은행법,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규정의 준수여부
6.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7. 출자회사의 영업현황 및 향후 전망
8. 출자지분 처분계획
9. 기타 특기사항

○ ○ 은 행 은 행 장 (인)

첨부서류 :

1. 출자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 기타 참고자료

## **2. 승인 신청서 항목**

1. 출자회사의 개요
2. 출자주식의 종류 및 주식수
3. 출자목적
4. 취득방법 및 금액
5. 은행법, 상법,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규정의 준수여부
6.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
7. 출자회사의 영업현황 및 향후 전망
8. 출자지분 처분계획
9. 기타 특기사항

## **3. 승인 신청서 첨부서류**

1. 출자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 기타 참고자료

## V. 관련 법규

### 은행법

§37

### 은행법 시행령

§21

### 은행업감독규정

§51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금융투자

#### (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인가

##### 1. 금융투자업 인가 개요

- 자본시장법 시행 후 현행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 회사(기관)별 규율체계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 체제”로 전환
  -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 재분류된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등), 투자자(전문, 일반투자자)를 기준으로 금융기능을 분류하여 ‘금융기능별’로 진입을 규제\*

\* 예)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투자중개업’

\*\* 신규진입과 마찬가지로 영업행위, 건전성 규제도 동일하게 금융기능별 규제

##### 1. 경제적 실질에 따른 재분류

-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및 투자자의 유형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분류

##### 1. 금융투자업 [法 제6조] : 6가지

- ① (투자매매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 \*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투자매매업에 해당** (法 제7조, 令 제7조 1항)  
 令 §7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1. 기초자산이 통화 또는 외국통화로서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그 기초자산과 다른 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될 것
  2. 증권 발행과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
  3.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될 것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을 충족할 것

② (투자중개업)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 증권거래법상 모집, 매출 주선은 인수업에 해당하였으나,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

③ 집합투자업 :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

\* <간투법상 간접투자자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정의 비교>

간투법	자본시장법
① 명칭 : 간접투자	집합투자
②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15.1.1. 개정, 종전: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③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④ 증권, 파생상품 등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 제외	다른 법률에 의한 사모펀드, 자산유동화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④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⑤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업

\*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않음(法 §7 ④)

- i)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 ii)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 iii)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 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은 경우
- iv)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법 제229조 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 v)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⑥ (신 탁 업)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신탁법 제2조)

## 2. 금융투자상품 [法 제4~5조] : 증권, 파생상품

□ 포괄적으로 ①이익·손실회피 목적의 ②금전지급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로 ③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

○ 위험의 크기를 기준으로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

< 범위 확대 >

: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

(증권거래법) 유가증권,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그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위험 등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 (法 §4-⑩)

### 1] 증권

□ 금융투자상품 중 추가지급 의무가 없어 최대 투자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 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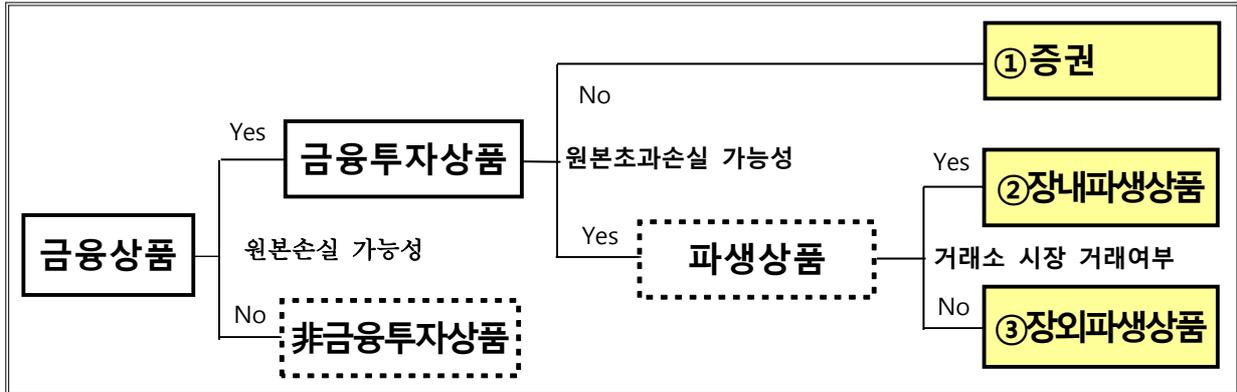
명 칭		정 의	예
증권	채무증권	지급청구권을 나타내는 것	국채,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 등
	지분증권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것	주식, 진주인수권, 출자증권, 출자지분 등
	수익증권	수익권을 나타내는 것	신탁수익증권, 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증권의 예탁을 받은 자가 발행하는 증권	KDR, GDR, ADR 등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증권		이익을 기대하여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	집합투자증권, 비정형간접투자증권, 주식, 출자지분 등
파생결합증권 (Securitized Derivatives)		기초자산의 가격 등의 변동과 연계되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의 계약상의 권리	주가연계증권(ELS), ELW, 환율연계증권, 역변동금리채 등

### 2] 장내 파생상품

□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령 §5)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 ③ 장외 파생상품

□ 파생상품으로서 장내 파생상품이 아닌 것



⇒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금융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시행령 <별표1> 비교1.)

\* 法 §4⑦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

### 3. 투자자 [法 제9조] : 일반, 전문투자자

□ 투자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

- 투자 위험의 감수능력은 전문성과 소유자산 규모 등에 의해
  - 국가, 한국은행, 주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금융공기업, 지자체 등을 전문투자자로 인정(法 제9조제5항 및 슈 제10조)하고
  -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개인도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일정수준 이상\*이면서 금융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음

\* 법인은 100억원, 개인은 50억원(개인은 투자경험도 1년 이상일 것을 요구)

\*\* 이 경우 투자자 보호 측면을 감안하여 2년마다 신고 갱신을 요구(sunset)

- 전문투자자중 국내외 주권상장법인, 기금관리·운용법인, 공제사업자, 자발적 전문투자자 등은 일반투자자로 전환 가능
- 다만,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 기금관리·운용법인, 공제사업자, 지자체 등도 일반투자자로 취급

## 2. 금융기능별 규제

- 재분류된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및 투자자 유형을 조합한 「금융기능별 인가 업무단위를 구성」

### 규제 기본원칙

- ① 동일한 금융기능(금융투자업+금융투자상품+투자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인가요건이 적용되도록 금융기능별 진입 요건 마련
- ② (Add-on(변경인가) 방식) 기존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업무 단위를 추가함으로써 業域 확장 가능
  - (ㄱ)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거나(투자매매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에 대해서는 인가제 채택
  - (ㄴ)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및 일반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에 대해서는 등록제 채택
- ③ (세분화·전문화) 실제 업무영위 현황 등을 감안하여 업무 단위는 적절한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특정 영역에 전문화된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허용\*
  - \* (예시) 인수업, 채권·주식 전문중개업 등
- ④ (인가유지요건) 진입요건은 진입 이후에도 계속 충족해야하는 유지요건으로 규정하여 진입시 적격성이 지속되도록 함
  - \* 일부 요건(자기자본, 대주주) 완화

## II. 인가·등록 업무단위

### 1. 기본방향

- 시행령상 법률에서 규정한 구성요소를 실제 금융투자업 영위 현황을 감안·조정하여 총 78개 업무 단위로 설정
  - 각 업무단위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
    -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일반투자자에 대해 영업이 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도 영업이 가능
  - ATS 매매체결대상상품 매매·중개, RP대상 증권 중개, 채권중개 전문회사의 채무증권 장외 중개업은 전문투자자만 대상
- 향후 세부 업무단위 추가 필요시 단위를 신설하기 용이하도록 사전 편찬식 체제를\* 마련하되
  - \* 인가·등록단위별 코드를 사전편찬식으로 부여하여 무한대의 세분화가 가능(예 : 증권채무증권·회사채·상장회사채·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회사채... 등의 코드를 11211...식으로 부여 →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코드번호에 영향 없이 새로운 코드 창출 가능)
  -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등장시 별도 인가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단위'도 별도 마련
    - \* (예시) 투자매매·중개업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으로 세분하고 포괄단위로 '증권' 단위를 설정

## 2. 세부 인가 업무단위

### ① 투자매매업 관련

#### <투자매매업>

- 채무증권, 지분증권, 집합투자증권만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무 범위 허용
  - 증권예탁증권은 예탁대상인 증권의 취급이 허용된 경우 당연 허용
  - 투자계약증권은 개념상 여타 유형의 증권개념도 포괄하므로 여타 모든 증권의 취급이 허용된 경우 허용

#### <(인수업 포함) 투자매매업>

- 인수업은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인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의 영위가 필수적인바
  - 인수업을 포함한 투자매매업 전체 인가 필요
- 파생상품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는 속성을 지니므로 인수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어 인수업은 증권에 대하여만 허용
  - 채무증권, 지분증권에 대하여는 특화·전문화가 가능하도록 별도 취급 허용

## ② 투자중개업 관련

- 투자매매업과 유사하게 취급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구분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와 채권전문중개회사\*\*(Inter Dealer Broker, IDB) 업무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인가단위로 설정

\* (ATS)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 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매매가격 결정 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매매거래를 체결

\*\* (IDB)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장외에서 채무증권 매도·매수자의 호가와 수량을 공표하여 매매거래를 체결

## ③ 집합투자업 관련

- 운용가능한 집합투자기구("펀드") 종류별\*로 인가단위 구성

\* 증권 및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 운용 가능한 펀드 종류를 기준으로 인가단위를 설정하고 인가단위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종류 및 최소보유인원을 차등화

## ④ 신탁업 관련

- 수탁 가능한 재산\*은 기존 신탁업법과 동일성을 유지

\*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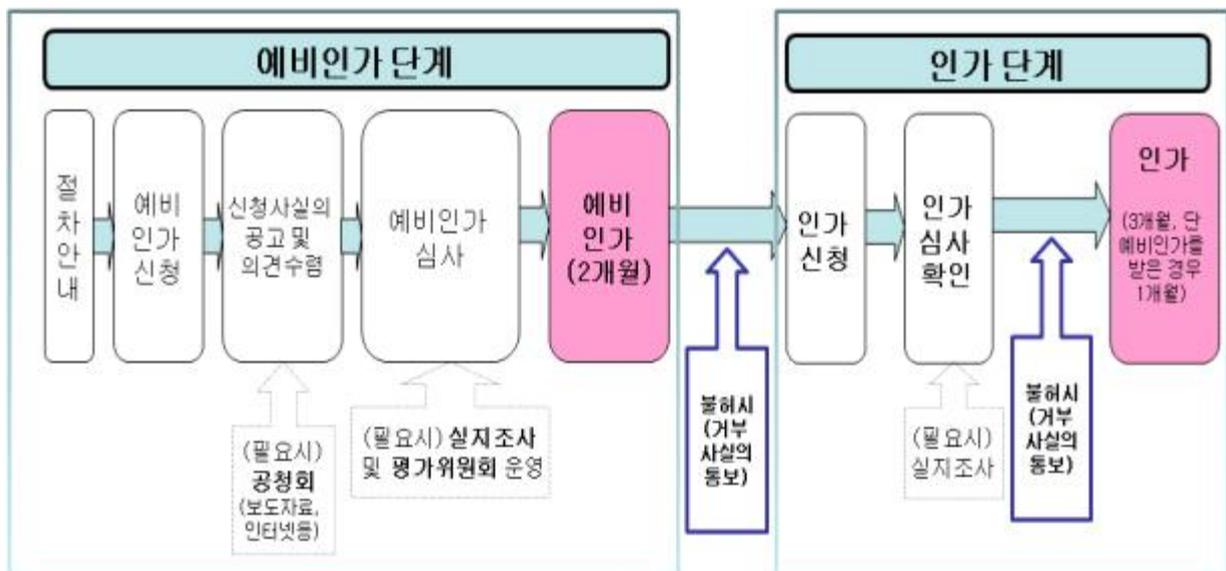
-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기준으로 인가단위를 설정하고 인가단위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의 종류 및 최소보유인원을 차등화

\* 모든 재산 / 금전 / 금전 외 재산 / 동산.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

### 3. 기 타

- 상위 단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위 단위는 별도의 인가 없이 영위가능
  - 예를 들어 인수가 포함된 증권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경우 RP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인가 불필요
  - 기존 펀드판매업은 수행가능 금융기관을 직접 열거하는 대신 집합투자증권 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으면 수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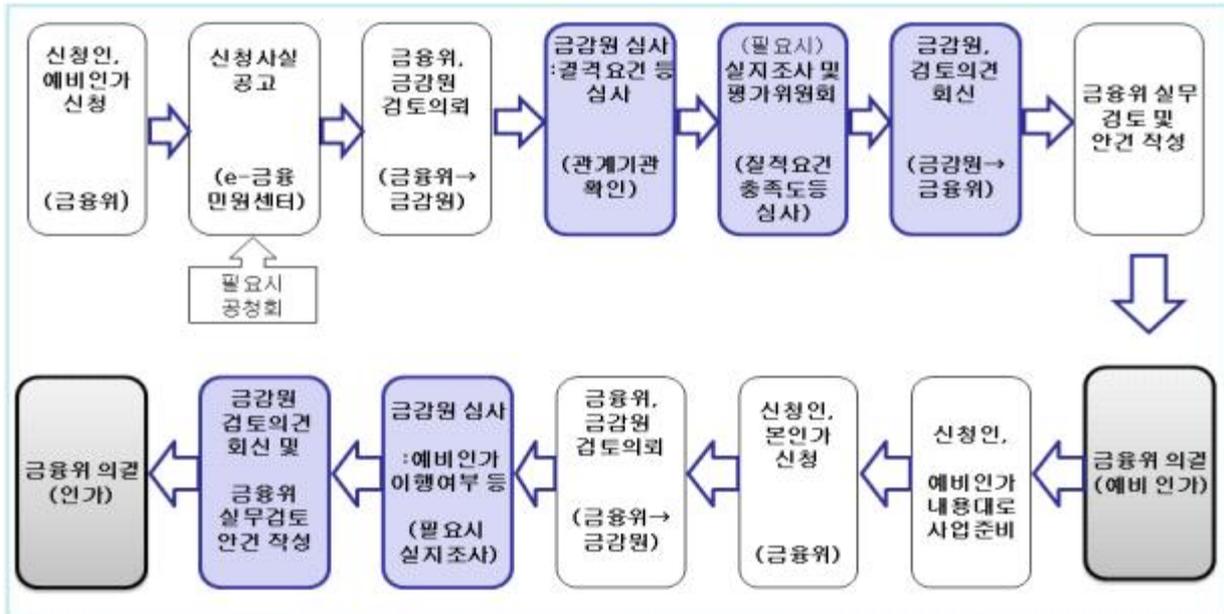
### III. 인가등록 업무단위



\*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法 제14조)

## IV.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1. 일반 심사절차



※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 준비시 금감원의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 이용 가능

####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 운영 개요>

- (상담내용) 인허가 신청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심사요건·절차, 인허가 매뉴얼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항 상담
- (상담방식) 유선,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
- (신청전화) 02-3145-8312 (감독총괄국 감독혁신조정팀)

※ 사전상담은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며, 신청인은 사전 상담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가능

## 2. 인가 심사요건(요약)

요건	개요	근거법규		
		법 <sup>1)</sup>	시행령 <sup>2)</sup>	규정 <sup>3)</sup>
법인격 요건	-상법상 주식회사 등	§12② 1호	§16①,②	§2-1①
대주주 요건	-대주주 적격성 요건	§12② 6호	§ 1 6 ② , ⑥ , ⑦ < 별 표 2 >	§2-1② <별표3>
자기자본 요건	-인가 단위별 최저 자기 자본	§12② 2호	§16③ <별표1>	
인력 요건	-임원결격사유	§12② 5호		<별표2>1.다
	-전문인력요건	§12② 4호	§16⑤ 1호	<별표2>1. 가.나.라. 마.바.사
물적 요건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보안설비 등	§12② 4호	§16⑤ 2호	<별표2>2.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수지전망 타당성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 질서 준수 등	§12② 3호	§16④	<별표2>3.
건전경영 ·사회적 신용요건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12② 6의2호	§16⑧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장치 등	§12② 7호, §44, §45	§16⑨, §50, §51	<별표2>4., §4-6, §4-7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 3)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 3. 단계별 세부내역

#### < 예비인가단계 >

1. 예비인가 신청	○ 금융위,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2. 신청사실공고	○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 신청사실 공고 (필요시 공청회)
3. 검토 의뢰	○ 금융위, 금감원에 심사 검토 의뢰

4. 금감원 심사	심사요건	확인서류
법인격 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예비인가신청서 등
자기자본 요건	○ 인가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 (설립시 자본금 기준)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인력 요건 (전문인력·임원)	○ 法 제12조제2항제4호, 승 제16조제5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인력요건에 해당할 것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경력증명서, 인력 자격증, 확인서 등 -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물적 요건	○ 法 제12조제2항제4호, 승 제16조제5항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등을 구비할 것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준수할 수 있을 것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대주주 요건	○ 시행령 <별표2> 및 금융투자업규정 <별표3>의 요건을 갖출 것	- 재무건전성 기준, 부채비율 기타 사실확인서 등 -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b>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b>	◦ 法 제12조제2항제6호의2, 승 제16조 제8항에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경영건전성 기준, 관련 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기타 사실확인서 등
<b>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b>	◦ 法 제12조제2항제7호, 승 제16조제9항,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할 것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적절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갖출 것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통한 질적요건 충족도 심사**

\* 금융투자업규정 제2-4조(인가업무의 수행)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b>5. 심사결과 통보</b>	◦ 금감원, 금융위에 심사·확인 결과 통보
-------------------	-------------------------



<b>6. 예비인가부결정</b>	◦ 금융위, 예비인가 여부 결정 및 통보(증선위 심의 필요)
-------------------	-----------------------------------

**신청인, 예비인가 내용대로 사업 준비 (6개월 이내 신청 (승 §18④))**

### 〈 인가단계 〉

<b>7. 인가신청</b>	◦ 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서 접수
----------------	------------------------



<b>8. 검토 의뢰</b>	◦ 금융위, 금감원에 심사 검토 의뢰
-----------------	----------------------



9. 금감원 심사	심 사 요 건	확 인식 류
<b>법인격 요건</b>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인가신청서 등
<b>자기자본 요건</b>	◦ 인가·등록단위별 최저 자기자본 (설립시 자본금 기준)	- 등기부등본, 주금납입 증명서 등

<b>인력 요건 (전문인력· 임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法 제12조제2항제4호, 승 제16조 제5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lt;별표2&gt;에서 정하는 인력요건에 해당할 것</li> <li>○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lt;별표2&gt;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증명서, 인력 자격증, 확인서 등</li> <li>-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li> <li>- (필요시)실지조사</li> </ul>
<b>물적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法 제12조제2항제4호, 승 제16조제5항 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lt;별표2&gt;에서 정하는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등을 구비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실지조사</li> </ul>
<b>사업계획 타당성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경영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준수할 수 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li> </ul>
<b>대주주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lt;별표2&gt; 및 금융투자업규정 &lt;별표3&gt;의 요건을 갖출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건전성 기준, 부채비율 기타 사실확인서 등</li> <li>-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li> </ul>
<b>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法 제12조제2항제6호의2, 승 제16조 제8항에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건전성 기준,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기타 사실확인서 등</li> </ul>
<b>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法 제12조제2항제7호, 승 제16조제9항, 금융투자업규정 &lt;별표2&gt;에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할 것</li> <li>-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li> <li>- 적절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갖출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li> <li>- (필요시)실지조사</li> </ul>



<b>10. 심사결과 통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감원, 금융위에 심사·확인 결과 통보</li> </ul>
--------------------	---



<b>11. 인가여부 결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위, 인가 여부 결정 및 통보</li> </ul>
--------------------	--

## 4.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활용) 인가 신청을 고려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신청인에 대해서는 심사 신청 서류 준비 최소화
- (주의사항) 본 내용은 포괄적인 인가단위를 기준으로 예시된 것이므로
  - 신청자는 이를 필요충분한 인가 심사기준으로 인식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 인가신청 이전에 금융감독원 인가심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 투자매매·중개업 ⇒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총괄팀(02-3145-7572, 7575)  
집합투자업, 신탁업 ⇒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인허가팀(02-3145-6711 ~ 6713)

### 1. 법인격 요건

- (심사요건) 상법 상 주식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국금융투자업자로서 지점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자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 외국은행 국내지점,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집합투자증권의 투자 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함)
  - 신용협동조합
  - 농협 및 수협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 새마을금고
  - 체신관서
-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 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자
- (심사방법) 예비 및 본인가시 법인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가서류 등으로 확인

## 2. 대주주 요건

- (심사대상) 신청인의 법적실체에 따라 심사대상을 달리 규정

### (1) 주식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 대주주

- ①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정의)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②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정의)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
    - \* 다만,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법 제12조 2항 6호 가에 의해 포함)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회사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 \* 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포함
  -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국내에 지점 등을 설치한 외국 금융투자업자 ⇒ 외국 금융  
투자업자 본점

□ (심사요건)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 대주주의 법적 실체(금융기관, 내국법인, 내국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펀드 또는 SPC인 경우)에 따라 각각의 심사요건을 규정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외은지점,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본점)를 기준으로 심사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추가(변경인가)시 대주주 요건을 완화

※ 대주주 요건 정리는 [표 1] 참조

□ (심사방법) 인가 신청시의 제출서류 및 확인서, 국내외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확인

\*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기관과  
해외 본국 감독기관 등

[표 1] 대주주 요건 정리

구 분	근거 법규조항		요건
	시행령 <별표 2>	규정 <별표 3>	<참고 3>의 확인서 번호
A. 신규인가의 경우			
(1) 최대주주/주요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가. 금융기관	1호	1호 가목	A-(1)-가
나. 내국법인	2호	1호 나목	A-(1)-나
다. 개인	3호	1호 다목	A-(1)-다
라. 외국법인(외국금융투자업자)	4호	1호 라목	A-(1)-라
마. 기관전용사모펀드/SPC인 경우 GP 등			
① 금융기관	5호 가목	1호 마목 (1)	A-(1)-마-①
② 내국법인	5호 나목	1호 마목 (2)	A-(1)-마-②
③ 개인	5호 다목	1호 마목 (3)	A-(1)-마-③
④ 외국법인	5호 라목	1호 마목 (4)	A-(1)-마-④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최대주주의 대표자			
가. 금융기관		1호 바목 (1)	A-(2)-가
나. 내국법인		1호 바목 (2)	A-(2)-나
다. 개인		1호 바목 (3)	A-(2)-다
라. 외국인		1호 바목 (4)	A-(2)-라
마. 기관전용사모펀드/SPC인 경우		1호 바목 (5)	A-(2)-마
B. 업무추가(변경인가)의 경우			
(1) 최대주주			
가. 금융기관/내국법인/개인	1호 라목, 마목 1)*,3)		B-(1)-가
나. 외국법인(외국금융투자업자)	1호 마목 1)*,3) 4호 라목*		B-(1)-나
다. 기관전용사모펀드/SPC인 경우 GP 등			
① 금융기관/내국법인/개인	1호 마목 1)*,3)		B-(1)-다-①
② 외국법인	1호 마목 1)*,3) 4호 라목*		B-(1)-다-②
(2) 최대주주 이외의 대주주			
가. 금융기관/내국법인/개인	1호 라목, 마목 3)		B-(2)-가
나. 외국법인, 기관전용사모펀드 또는 SPC의 GP 등	1호 마목 3)		B-(2)-나

\*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 등으로 완화된 요건 적용

### 3. 자기자본 요건

□ (심사요건) 인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함

※ 인가·등록 업무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은 [표 2] 참조

-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일 자기자본에서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
- 변경인가시 필요 최저자기자본은 이미 영위하고 있는 인가·등록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 합계의 70%와 신규 신청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 합계를 합산\*하여 산출

\* (예시) 증권 투자매매·중개업(1-1-1, 2-1-1)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1-2-1, 2-2-1)을 영위하려는 경우 필요한 최저자기자본은  $(500+30) \times 0.7 + (100+20) = 491$ 억원임

-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필요 최저자기자본은 본업에서 요구하는 자본수준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심사방법) 예비인가 심사시 사업계획서상 자본확충 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사
- 예비인가 후 본인가 심사시 등기부등본 또는 주금 납입 증명서로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되
  - 기존 회사인 경우 영업보고서(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회사는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 등)로 심사

**[표 2] 인가·등록 업무단위 및 최저 자기자본**

코드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투자자	자기자본			
1-1-1	투자매매업	인수포함	증권	일반+전문	500 <sup>1)</sup>		
1-11-1					채무증권	일반+전문	200 <sup>1)</sup>
1-111-1							국공채
1-12-1					지분(집합제외)	일반+전문	250 <sup>1)</sup>
1-13-1					집합투자증권	일반+전문	50 <sup>1)</sup>
11-1-1		인수제외	증권	일반+전문	200 <sup>1)</sup>		
11-11-1					채무증권	일반+전문	80 <sup>1)</sup>
11-111-1							국공채
11-112-1					사채	일반+전문	40 <sup>1)</sup>
11-12-1					지분(집합제외)	일반+전문	100 <sup>1)</sup>
11-13-1					집합투자증권	일반+전문	20 <sup>1)2)</sup>
11r-1r-1					RP대상증권	일반+전문	60
12-112-1					인수만	증권	일반+전문
1-2-1			장내파생	일반+전문	100 <sup>1)</sup>		
1-21-1					주권기초	일반+전문	50 <sup>1)</sup>
1-3-1	장외파생		일반+전문	900 <sup>1)</sup>			
1-31-1				주권기초	일반+전문	450 <sup>1)</sup>	
1-32-1				주권외기초	일반+전문	450 <sup>1)</sup>	
1-321-1				통화·이자율기초	일반+전문	180 <sup>1)</sup>	
1a-1-2				투자매매업 (ATS)		전문	300
2-1-1	투자중개업 (RP중개)	증권 (증권)	일반+전문	30 <sup>1)</sup>			
2r-1-2				채무증권	전문	5	
2-11-1					일반+전문	10 <sup>1)</sup>	
2-12-1		지분(집합제외)	일반+전문	10 <sup>1)</sup>			
2-13-1		집합투자증권	일반+전문	10 <sup>1)</sup>			
2-2-1		장내파생	일반+전문	20 <sup>1)</sup>			
2-21-1				주권기초	일반+전문	10 <sup>1)</sup>	
2-3-1		장외파생	일반+전문	100 <sup>1)</sup>			
2-31-1				주권기초	일반+전문	50 <sup>1)</sup>	
2-32-1				주권외기초	일반+전문	50 <sup>1)</sup>	
2-321-1	통화·이자율기초			일반+전문	20 <sup>1)</sup>		
2a-1-2	투자중개업 (ATS)		전문	200			
2i-11-2i	투자중개업 (장외채권중개)	증권	전문	30			
3-1-1	집합투자업	모든펀드	일반+전문	80 <sup>1)</sup>			
3-11-1				증권펀드(MMF포함)	일반+전문	40 <sup>1)</sup>	
3-12-1				부동산펀드	일반+전문	20 <sup>1)</sup>	
3-13-1				특별자산펀드	일반+전문	20 <sup>1)</sup>	
3-14-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모든펀드	적격 <sup>3)</sup>	10			
4-1-1	신탁업	모든신탁재산	일반+전문	250 <sup>1)</sup>			
4-11-1				금전만신탁	일반+전문	130 <sup>1)</sup>	
4-12-1				금전제외신탁	일반+전문	120 <sup>1)</sup>	
4-121-1				부동산신탁	일반+전문	100 <sup>1)</sup>	
5-1-1	투자자문업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예치금	일반+전문	2.5			
5-21-1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 매매, 예치금 등	일반+전문	1	
6-1-1	투자일임업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예치금	일반+전문	15			
6-1-2				전문	5		

- 1)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1/2 경감 (코드 번호는 0-0-2 형태)
- 2)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1/2 경감 적용
- 3)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 각 호의 투자자

## 4. 인력 요건

- (임원요건)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심사항목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⑤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⑥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 
3.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4. 각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 

⑦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 

⑧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

⑨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 
- ⑩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 

- ⑪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 

□ (전문인력요건) 금융투자업자는 규정 <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미달한 경우 결격)해야 함

- 변경인가 및 업무단위 추가등록의 경우 기보유한 인가단위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전문인력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 실무사례 : 신청 회사는 기존 증권 중개업(2-1-1,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 5명 등 필요)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장외파생상품 중개업(2-3-1, 투자권유자문인력 2명 등 필요)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서 투자권유자문인력 2명에 대해서만 전문인력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였음

- ☞ 기보유한 인가단위의 전문인력(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 5명)을 포함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 7명 등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할 필요

□ (심사방법) 예비인가 심사시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 임원 및 임원 예정자의 결격 여부를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경력증명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본인가 심사시 당해 임직원의 채용 등 그 이행여부를 채용 계약서, 전문인력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으로 심사하고 예비인가 내용의 이행여부를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

## 5. 물적 요건

- (심사요건)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 (점검내용)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 설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등을 점검\*
  - \* 물적 설비는 계량적 예시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서류검토, 실지조사 등에서 점검하는 항목을 제시하는 것이며, 인가 신청인(겸영금융투자업자 등) 및 인가 신청 내용에 따라 점검항목은 수정 가능
- 코스콤 또는 이와 동등한 능력을 지닌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전산설비 및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

심사항목	점검 내용
<b>(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b>	
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 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 구축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업무 영위에 적합한 전산시스템 보유 및 가용성·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산기</li> <li>- DB서버, 매매관련(시세관리, 주문관리, 결제관리, 원장관리 등) 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li> <li>-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li> <li>-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li> </ul> </li> <li>■ 내부 네트워킹, 전용회선 구축 등 통신시스템 구성</li> </ul>
② 침입탐지·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성이 검증된 보안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등</li> </ul> </li> </ul>

<p>③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이용자 확인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산기 및 각종 서버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및 사용 통제방안 구비</li> <li>-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log-in) 기록 유지 등 정보 유출대책 마련</li> </ul> </li> <li>■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 출입 통제(카드키, 비밀번호 이용 등) 및 미승인된 출입자의 방문일지 기록</li> <li>- 전산실 출입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CCTV 배치</li> </ul> </li> </ul>
<p>④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및 백업 자료 별도 보관·관리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정보 등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업자료의 소산보관장소 마련</li> <li>- 기간별 소산보관대책 마련</li> <li>- 백업과 관련한 외부업체와의 계약 등</li> </ul> </li> </ul>

## (2)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p>①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 확보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설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부서간 정보차단벽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부서간 별도층 배치 등 업무공간 구분</li> <li>- 이해상충부서간 출입통제(카드키 등)</li> </ul> </li> </ul>
<p>②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사무공간 등 충분한 업무공간 및 부서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확보</li> </ul>
<p>③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의 감독·검사 시 법적 장애가 없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 임대, 위탁 등 제한적 확보 여부 점검</li> </ul> </li> </ul>

## (3)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p>①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설비의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 보안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비상발전기 등 구비</li> <li>- 전산실 내 CCTV 사각지대 제거</li> <li>- 장애에 대비한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의 이중화</li> </ul> </li> <li>■ 사무실 및 전산실에 대한 365일 ×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미인가자 접근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장소 CCTV 설치 및 녹화기록 유지</li> </ul> </li> </ul>
<p>② 파업 등 불시사태 대비 비상계획 마련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P(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li> </ul>
<p>③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복구시스템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li> <li>-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센터 마련</li> <li>- 재해복구센터 내 단말기 등 백업체계 구축</li> </ul> </li> </ul>
<p>④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 마련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P를 포함한 재해복구 훈련 실시</li> <li>- 재해복구 훈련시 복구테스트 결과</li> </ul> </li> </ul>

(심사방법) 예비인가 심사시 사업계획서, 회사전체 전산설비 흐름도, 외부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 본인가 심사시 예비인가 내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

## 6.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 (심사요건) 수지전망과 경영건전성 기준,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유지,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할 것

심사항목	점검 내용
(1) 수지전망	
①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경영전략 마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경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 진입, 마케팅 등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li> <li>■ 경영전략의 내용이 시장상황, 경쟁상황 등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li> </ul>
② 사업계획이 객관적이고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한 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수수료 등을 추정</li> <li>■ 시설투자, 인력충원, 마케팅 등 초기투자비용을 고려</li> </ul>
③ 사업계획을 고려한 추정재무제표의 작성과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의 유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익 추정결과를 추정 재무제표에 일관성 있게 반영</li> <li>■ 사업계획과 추정재무제표의 내용이 일치하고, 추정 영업손익·비용의 증감이 일관성을 유지</li> <li>■ 신청 업무 관련 향후 3년간 영업손익과 이를 반영한 3년간의 회사 전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li> <li>■ 정상적·비관적·낙관적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시나리오별로 추정</li> </ul>

<p>④ 재무제표가 적기시정 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결과 금산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초과</li> <li>- 비관적 시나리오 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하회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대응책을 제시</li> </ul>
<p>⑤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기준을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 제5-50조, &lt;별표 15&gt;, &lt;별표 16&gt;의 위험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li> </ul>

(2)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보호

<p>① 이사회, 경영진의 구성 및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주주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경영진, 감사의 구성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li> <li>■ 영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견제와 균형관계 확보</li> </ul>
<p>② 영위하는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 체제를 구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감사위원회(감사), 준법감시인, 영업본부별, 부서별, 직원별 역할과 위임관계가 명확한 내부통제 체제의 구축</li> <li>■ 리스크관리·내부통제기준 및 절차의 문서화 여부</li> <li>■ 금융사고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과 부서의 직무를 적절히 분리하고 있는지 여부</li> </ul>
<p>③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 보장, 이사회 등 회의참석 및 자료 접근권 보장 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업무상 독립성 보장</li> <li>■ 준법감시인의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 보장</li> </ul>

<p>④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업 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 여부</li> <li>■ 사회적 평판과 윤리면에서 직을 수행할 만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li> </ul>
--	--

(3)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p>①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한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방법서에 기술하는 영업내용 및 방법이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하는 업무상 준수할 사항과 부합할 것</li> </ul>
<p>②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의무 여부 등</li> </ul> </li> </ul>
<p>③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소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신청인 및 임원에 대한 제재 여부 검토</li> </ul>

(4)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

<p>① 인가신청 업무 영위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현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계획 마련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분야별 필요인력 추정</li> <li>- 전문인력 스카웃 또는 자체 양성방안 마련</li> <li>- 교육대상자·대상기관·교육기간 등의 세부계획 마련</li> <li>- 필요예산 마련 및 사규(업무계획) 반영 등</li> </ul> </li> </ul>
--	--

- **(심사대상)** 예비인가 심사시 영위하고자 하는 인가단위에 맞는 사업계획서, 예상 수지계산서 등을 통해 순자본비율 및 레버리지 비율, 위험관리,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
  - 실무적으로 본인가 심사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재심사하지 아니하고, 예비인가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정 여부를 재심사

**7.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 (심사요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본인(금융회사)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심사항목**

(1) 건전한 재무상태

---

- ①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경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
- 

(2) 사회적 신용

---

- ①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②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

---

③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④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 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 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 

□ (심사방법) 인가 신청시의 제출서류 및 확인서, 국내외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확인

\*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기관과 해외 본국 감독기관

## 8.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 (심사요건)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심사항목	점검 내용
(1) 내부통제기준	
<p>①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파악,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li> <li>■ 내부통제조직의 설치 여부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상시 파악 및 평가시스템 구축 여부</li> <li>■ 신규 업무 또는 신상품 취급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li> </ul>
<p>②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의 적정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 고지방법, 거래 제한 및 주의 목록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및 절차</li> <li>■ 정보 유출 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계약 등에 비밀유지의무 조항 삽입 등</li> </ul> </li> </ul>
<p>③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가능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감시인을 통한 이해상충 발생 요소의 정기 및 수시평가 의무화 여부</li> <li>■ (관련된 인가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매매·과당매매 점검 여부</li> <li>- 조사분석자료 관련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점검 여부</li> <li>-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리 등</li> </ul> </li> </ul>

(2) 정보교류차단

①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의 적절한 설치 여부

-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업무)의 명확한 정의 및 차단·허용사항의 명확화
-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임직원 겸직 여부
-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의 공동 이용 여부
  - 공간·설비 등에 있어서 정보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 등의 구축 여부
  - 교류차단 대상정보가 전산적으로 공유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저장 및 관리, 열람 시스템 구축 여부
- 정보교류 차단업무 담당부서가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②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 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 여부

- 정보교류 차단부서간 교류금지 정보 제공 여부
  - 정보 제공 여부 확인
  - 예외적 정보교류시 통과절차 및 준수사항, 준법감시인 확인사항 등의 규정화 및 확인절차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 제공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사전 승인절차, 정보제공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정보의 업무외 목적사용 금지 등
- 회의 및 통신 규제의 적절성
  - 회의 및 통신내용의 기록 유지와 준법감시인의 확인 의무화 등

□ (심사방법) 예비인가 심사시 사업계획서, 내부통제기준 등을 통해 심사한 후

○ 본인가시 실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 등을 확인

## V. 기존 판단사례

### 형사처벌 관련 판단사례

- A사가 '09.4월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를 신청한 사례에서,
  - A사의 최대주주인 B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2건, 총 1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

- 대주주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회사나 경영진의 의도적 위법행위가 아니라 직원의 금융 관련법령 위반행위로 회사가 양벌규정에 의해 벌금을 부과 받은 것임

※ 다만, '10.6월 변경인가시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어 현재는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결격에 해당

## VI. 유권해석

### 1. 최대주주 개념 명확화

-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 본인이 최대주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인과 복수의 특수관계인들 중 최다보유자 1인만을 최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총 주식수가 동일한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함
  - 관계법령상 최대주주를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총 주식수가 동일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 2. 외국인(개인)의 대주주 가능 여부

---

- 자본시장법 제12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의한 별표2에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는 바, 대주주가 가능한지 여부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외국인 개인인 경우에 인가정책 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허용하고 있지 않음**

### 3. 주요주주 판단 관련

- 상장법인 A의 주식을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합산하여 14%가량 (각자 2% X 7명)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A사의 주요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하며, 소유지분 산정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포함하지 않음
  - 다만, 특수관계인 명의의 지분이 본인의 계산(예: 주식의 계약명의신탁 등)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포함되어 주요주주에 해당 될 수 있음

※ 다만,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다면 최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인 경우에는 주요주주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VII. 참고사항

### 1. 외국금융투자업자 등의 지점 추가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6조(인가요건 등)            ⑩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이하 이 항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라 한다)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u>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본다.</u> 이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은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u>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2-10조(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등 신설신고서) ①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영 제16조제10항 후단에 따라 <u>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날의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의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점등의 명칭과 소재지            2. 지점등에서 영위하려는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3. 지점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4. 지점등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지점 설치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점등의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지점등이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 외국금융투자업자 등이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금융투자업자로 보며
- 추가로 두려는 날의 7일 전에 금융위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 2. 인가 유지 요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p><b>제15조(인가요건의 유지)</b>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p> <p><b>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b>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li> <li>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li> <li>제15조에 따른 인가요건 또는 제20조에 따른 등록요건의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li> <li>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li> </ol>	<p><b>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b>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해당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li> <li>법 제12조제2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주주가 별표 2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li> <li>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본다.</li> </ol> </li> </ol> </li> </ol> </li> </ol> <p>②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p>

-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등록을 받은 이후에도 인가·등록 요건을 계속 유지할 필요
    -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등록요건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는 인가·등록 취소가 가능
    - 다만, 자기자본·대주주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한 완화된 요건을 적용
- ※ 전문인력수(금융투자업 규정 별표 라. 및 사.)는 이 규정 시행('17.3.22.) 후 금융투자업 인가(변경인가)를 받는 금융투자업자부터 적용

**인가유지 요건의 완화**

가. 완화된 자기자본 요건

-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70%이상 유지하되 동 조건은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적용
  - 다만,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자본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나. 완화된 대주주 요건

- 대주주의 출자능력(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이상), 재무건전성, 부채비율(200%) 요건은 출자 이후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 배제 하되 사회적 신용요건은 완화하여 적용
  -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최근 5년간 법, 금융관련법령, 공정 거래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관련 **완화된 요건**(벌금형 → 5 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적용(법 시행후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
- 금산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다만, 경제적 책임부담을 지는 경우에는 배제)

### 3 업무제한 조건의 취소·변경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p><b>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b></p> <p>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는 <b>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b>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⑥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거나 제5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투자업인가의 내용</li> <li>2.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만한다)</li> <li>3. 금융투자업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li> </ol>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2-5조(인가조건의 부과)</b>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b>지분의 유지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b>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li> <li>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li> <li>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li> </ol> </li> <li>2. 제1호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 자본시장법에 따른 업무인가시 일부 증권회사·자산운용사 등에 대하여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한 사례가 있음

※ 업무제한 조건이 부과된 주요 사례 (예시)

- (i) 증권사의 선물업(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인가시 국내 한정조건으로 인가
- (ii) 자산운용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재인가 당시 집합투자업 인가업무단위 중 일부업무에 한정하여 영위하도록 조건(예: MMF 제외 등)을 부과

- 금융투자업자가 동 업무범위 제한 조건의 취소·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취소·변경에 따라 확대되는 업무에 상응하는 인가 요건\*, 이를 허용할 정책적 타당성 요건\*\*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동 조건의 취소·변경 여부를 결정

\* 사업계획 타당성, 인력·물적 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 (i) 조건을 취소·변경할 만한 사정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 (ii) 인가조건을 취소·변경하더라도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 4

##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모 운용사 전환 기준

구분	사 모 운 용 사 → 단종 공모 운용사	사 모 운 용 사 → 종 합 운 용 사	단종 공모 운용사 → 종 합 운 용 사
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업 + 일임업 : 3년 (단, 운용업 1년 필수)</li> <li>- 운용업 + 리츠업 : 3년 (단, 운용업 2년 필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용업 : 5년</li> </ul>	
수탁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수탁고(NAV) + 일임계약고*(평가액) 1.5천억원<sup>1)**</sup></li> <li>1) 운용업 영업기간(최근 1년간) 중 펀드수탁고는 평균 1천억원 이상</li> <li>- 펀드수탁고(NAV) + 리츠수탁고*(평가액) 1.5천억원<sup>2)**</sup></li> <li>2) 운용업 영업기간(최근 2년간) 중 펀드수탁고는 평균 1천억원 이상</li> <li>* 계열사 수탁고 1/2만 인정</li> <li>** 36개월(월말 기준) 평균</li> </ul>	<p>[공통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펀드수탁고(NAV) + 일임계약고*(평가액) 1.5조원**</li> <li>* 계열사 수탁고 1/2만 인정</li> </ul> <p>[개별 요건]</p> <p>(증권 공모운용사) 1.5조원 중 공모펀드 0.5조원** 이상</p> <p>(부동산 or 특자 공모운용사) 증권, 부동산 및 특자 펀드 각 1.5천억원** 이상</p> <p>(사모 운용사) 증권, 부동산 및 특자 펀드 각 1.5천억원** 이상</p> <p>** 60개월(월말 기준) 평균</p>	
준법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내 기관경고 이상 제재 없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2년내 기관경고 이상 제재 없을 것</li> </ul>	-

※ 업력 및 준법의식은 인가 신청일 기준(단, 수탁고는 인가 신청 직전월 기준)

## 5 업무 단위 추가등록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p><b>제16조의2(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b> ①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b>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경영 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b>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에 이를 등록(이하 “업무 단위 추가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하려는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제2항 각 호의 <b>요건(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b>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li> <li>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li> <li>3.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b>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b> ① <u>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같은 표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1a-1-2 및 2a-1-2는 제외한다)를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의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b>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각각을 기준</b>으로 하여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가. 투자매매업</u> 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다.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li> <li>2. <u>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b>투자중개업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인가업무 단위 중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b></u></li> </ol> <p>② <u>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제2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u></p> <p>※ 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li> </ol>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p>⑥ 제5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⑦ 제3항의 검토기간 및 제6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p> <p>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결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그 등록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중개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내용</li> <li>2.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정한다)</li> <li>3.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내용(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정한다)</li> </ol> <p>⑨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⑩ 제1항에 따라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21. 6. 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li> <li>3. 임원에 관한 사항</li> <li>4. 경영하려는 인가업무 단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li> <li>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li> <li><b>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b></li> <li>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li> <li><b>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b></li> <li>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li> <li>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li> <li>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li> <li>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li> <li>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li> <li>5.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li> <li>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li> </ol> <p><b>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b>9.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경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b></li> <li><b>10.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b></li> <li>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12.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li> </ol>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하여 업무 단위를 추가 하는 경우 업무 단위 추가등록 적용

○ 旣인가받은 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업\* 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 등록제 적용대상

\*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 투자중개업

(추가시) 인가대상업무단위

		투자매매업 (인수포함)	투자매매업 (인수제외)	투자매매업 (장외파생)	ATS	투자중개업
(추가시) ↑ ↓ 추가등록대상업무단위	채무증권	채무증권	채무증권	주권기초	매매체결대상	채무증권
	국채·지방채· 특수채	국채·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지분증권
	지분증권	지분증권	주권외기초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 RP대상 증권				

○ 이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성(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 심사 면제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p>제16조의3(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여 금융투자업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을 양수하는 자가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춘 것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21. 6. 8.]</p>	<p>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란 <u>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u></p> <p>②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이란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u>외국 금융투자업자</u>: <u>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변경</u>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제1항에 따른 <u>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u>으로 변경되는 경우</li> <li>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u>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u>로 변경되는 경우</li> </ol> </li> <li>2. 제1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u>국내법인</u>: <u>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u>로 변경되는 경우</li> </ol> <p>③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인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법 제12조제2항제3호</u></li> <li>2. <u>법 제12조제2항제4호</u></li> </ol>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p><b>3. 법 제12조제2항제6호. 다만, 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나 목 및 다목의 요건은 제외한다.</b></p> <p>[본조신설 2021. 12. 9.]</p> <p><b>※ 참고</b>  자본시장법  <b>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b>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li> <li>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li> </ol> </li> <li>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li> <li><b>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b></li> <li><b>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b></li> <li>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li> <li><b>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li> <li>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li> </ol> </li> <li>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li> <li>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li> </ol>

- 국내에 진입한 외국증권사가 조직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  
(‘지점→법인’, ‘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 인가심사 완화
  - 외국증권사 국내법인은 외국증권사의 완전자회사(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를 말하며,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 내 본점 변경으로 제한
  - 이 경우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인적·물적·전산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성(건전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 심사 면제
- \* 본점 변경의 경우 변경된 본점의 재무요건에 대해서는 심사 필요

# 〈참고1〉 신청서 양식

## 1. 예비인가 신청서

□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1호>

### 예비인가 신청서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신탁업)

<p>1. 상 호</p> <p>■ 첨부서류</p> <p>1-1.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p> <p>1-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예비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p>																										
<p>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예정)소재지</p> <p>■ 첨부서류</p> <p>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예정)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p>																										
<p>3.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p> <p style="text-align: right;">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8%;">직위</th> <th style="width: 8%;">성명</th> <th style="width: 12%;">주민등록번호</th> <th style="width: 10%;">소유주식수 (비율)</th> <th style="width: 8%;">주요 경력</th> <th style="width: 8%;">상근 여부</th> <th style="width: 8%;">담당 업무</th> <th style="width: 8%;">전문인력 여부</th> <th style="width: 8%;">임원자격 적합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td> </tr> </tbody> </table> <p>기재상의 주의</p> <p>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 및 이 규정 별표 2 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p> <p>■ 첨부서류</p> <p>3-1.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p> <p>3-2.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p>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p>4.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p> <p>■ 첨부서류</p> <p>4-1.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p> <p>※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인가업무 단위와 추가하려는 인가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하되, 업무방법은 추가하려는 인가업무에 대해서만 기재한다.</p>																										

## 5. 재무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5-2.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증권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다만,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영업기금 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1부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6-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 등 인력채용계획
  - 시설계획(사무공간 배치계획,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을 기재

### ■ 첨부서류

- 7-1.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 서류 1부
- 7-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이 구비된 경우 그 임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 1부.

##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8-1.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8-2.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9-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9-2.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9-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10. 그 밖의 기재사항

### ■ 첨부서류

- 10-1. 업무규정(안)(채권중개전문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의 경우) 1부
- 10-2.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10-3.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10-4.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 10-5.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0-6.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2. 인가 신청서

### □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2호>

#### 인가(변경인가) 신청서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신탁업)

#### 1. 상 호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3.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2 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4.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4-1.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인가업무 단위와 추가하려는 인가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하되, 업무방법은 추가하려는 인가업무에 대해서만 기재한다.

## 5. 재무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 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제출한다.

##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6-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부

6-2. 집합투자업의 경우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등 집합투자관계인과 체결계약서(안) 1부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6.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인력채용계획 이행 현황(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첨부서류

7-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7-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8-1.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8-2.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 8.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재를 생략한다. 다만, 영 제19조의5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 제4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9-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9-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9-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10. 그 밖의 기재사항

#### ■ 첨부서류

- 10-1. 업무규정(채권중개전문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의 경우) 1부
- 10-2.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10-3.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각 1부
- 10-4.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 10-5.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 10-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0-7.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10-8.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16조의3 특례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6조의3 및 영 제19조의5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예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 예비인가 신청서와 상위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3. 업무 단위 추가등록 신청서

#### □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2호의3>

#### 업무 단위 추가등록 신청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 1. 상 호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이사회 의사록 등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3.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2 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4. 추가등록하려는 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4-1. 추가등록하려는 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종전에 영위하던 인가업무 단위와 추가등록하려는 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하되, 업무방법은 추가등록하려는 업무에 대해서만 기재한다.

**5. 재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인력채용계획 이행 현황(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첨부서류**

6-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7-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7-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7-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8.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8-1. 업무규정(채권중개전문회사 및 전자증권중개회사의 경우) 1부

8-2.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8-3.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각 1부

8-4.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8-5.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8-6.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8-7.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예비인가 신청시의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 예비인가 신청서와 상위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4. 외국금융투자업자들의 지점 등 신설 신고서

### □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4호>

#### 외국금융투자업자들의 지점 등 신설 신고서

<p>1. 상 호</p> <p>■ 첨부서류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서류 1부</p>
<p>2. 지점등의 소재지 및 연락처</p> <p>■ 첨부서류          2-1. 지점등의 위치·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p>
<p>3. 지점등이 영위하려는 인가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p> <p>■ 첨부서류          3-1.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p>
<p>4. 지점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원현황(전체직원의 수를 관리직, 영업직등 회사의 특성에 맞게 분류기재)</li> <li>-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li> <li>- 시설계획(사무공간 배치계획,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li> </ul> <p>■ 첨부서류          4-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4-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등의 서류 1부</p>
<p>5.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p> <p>■ 첨부서류          5-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5-2.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5-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p>
<p>6. 그 밖의 기재사항</p> <p>■ 첨부서류          6-1.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영문제출가능서류는 영문, 국문서류를 함께 제출</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9항(또는 제271조의2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p> <p>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p>

## 〈참고2〉 사업계획 요약 양식

※ 투자매매·중개업 신청 시 기준 예시

업무단위 추가등록의 경우도 작성 필요

### 1. 신청 개요

회사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 :</li> <li>◆ 영문 :</li> </ul>		
소재지			
	인가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현재 영위중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인가신청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p>*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p>		
임원구성	직위	성명	주요이력
최대주주			
주주구성 <sup>1)</sup>	주주명	지분율	구분 <sup>2)</sup>

주1) 대주주요건 심사대상 및 5% 이상은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고 나머지는 통합하여 기타로 표시

2)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구분

3) 칸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삽입 또는 삭제하여 적절하게 조정

## 2. 심사대상 대주주 현황

대주주 현황	주주명	구분 <sup>1)</sup>	의결권 있는 주식수	비율(%)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예) 배우자, 자녀 등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주요주주				

주 1)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외국인' 등으로 구분

※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지점인 경우 : 외국금융투자업자명칭 기재

※ 필요시 대주주 등 신청인의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도표 첨부

### 3. 자기자본 현황

① 자기자본(202×.××.××. 신청일 현재) : (1) + (2) - (3) =    억원

(1) 최근 사업연도말(202×.××.××.) 현재 자기자본 :    억원

(2) 자본금의 증감분 :    억원\*

(3) 경영금융투자업자의 본업에 대한 요구 자본금 :    억원\*\*

\*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

\*\* 경영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은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업금융투자업자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② 최저 자기자본 : (1) + (2) =    억원

(1) 기존 인가단위에 대한 유지 자기자본 :    억원

(단위: 억원)

인가단위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투자자 유형	최저 자기자본	유지 자기자본*
합 계					

\* 인기업무 단위별 최저 자기자본의 70%

(2) 추가 인가단위에 대한 최저 자기자본 :    억원

(단위: 억원)

인가단위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투자자유형	최저자기자본
합 계				

## 4. 전문인력 현황

### 1. 전체 인력현황[신청일 기준]

구분	인원	해당 업무 경력별 <sup>1)</sup> 인원수				비고 <sup>2)</sup>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5년 미만	5년 이상	
자산운용업무						
기업금융업무						
조사분석업무						
투자권유자문인력						
위험관리업무						
내부통제업무						
전산업무						
장외파생후선업무						
전문인력 소계						
재무관리						
인사/총무						
기타						
영업지원 소계						
등기임원						
총 계 <sup>3)</sup>						

주 1) 경력은 당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근무 기간도 포함

2) 주식팀, 채권팀 등 해당경력자가 배치되는 부서명칭

3) 등기임원, 미등기임원, 직원을 합한 전체 임직원 수

### < 자격증 소지자 현황 >

구분	공인 회계사	변호사	금융투자 분석사	재무위험 관리자	투자자산운용사 (일임운용인력 제외)
자격증 수					

(작성요령)

① 복수 자격자의 경우 중복기재 가능

②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의 경우 국제자격증도 포함

## 2. 신청 인가업무를 위한 인력 현황(신청일 기준)

인력 소속	내부 인력 <sup>1)</sup>	기 확보 인력 <sup>2)</sup>	채용 예정 인력 <sup>3)</sup>
자산운용	홍길동(입사일)	홍길동(입사일)	홍길동(입사예정일)
기업금융업무			
조사분석업무			
투자권유자문인력 <sup>4)</sup>			
장외과생후선업무			
합계			

(작성요령 )

- ① 4년 이상 해당업무 경력을 가진 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단, 위험관리전문인력, 내부통제전문 인력은 5년 이상 해당업무 경력을 가진 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 ②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에서 규정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 주1) 기존 인력 중 신청 인가업무를 담당할 예정 인력을 기재  
 2) 신청 인가업무 영위를 위해 채용을 완료한 인력을 기재  
 3) 본인가 신청 전까지 확보할 인력을 기재  
 4) 투자권유자문인력은 ‘홍길동 외 00명’으로 기재

## 3. 신청 인가업무를 위한 인력의 경력 현황(신청일 기준)

성명	채용 여부	소속	직급	해당 업무 경력 <sup>1)</sup>	자격증 <sup>2)</sup>	비고 <sup>3)</sup>
홍길동	채용	영업부	부장	* 총 7년 1.○○증권 3년(영업팀) 2.○○선물 4년(영업팀)	투자자산운용사	
...						

(작성요령 ) “2. 신청 인가업무를 위한 인력 현황”에 기재한 인력에 대한 경력 현황을 기재

- 주1) 투자권유자문인력은 ‘홍길동외 00명’으로 기재하고 개인별 경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용 인력의 경우 ‘해당 업무 경력’을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단, 위험관리전문인력, 내부통제전문인력은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기재
- 2)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에서 규정된 전문인력과 관련한 전문자격증에 한함
- 3) 해당업무 경력 2년 이상 인력 중 금융·재무 또는 전산관련 석사학위 이상 보유시 기재, 단, 위험관리전문인력, 내부통제전문인력은 3년 이상인 경우 기재

## 5. 물적 설비 현황

\*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등의 해당 페이지를 상단에 명기한 후 인가심사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관련 내용
<p>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업무 영위에 적합한 시스템 보유 및 가용성·안정성 확보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li>- 주전산기, DB서버, 매매관련(시세관리, 주문관리, 결제관리, 원장관리 등) 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li> <li>-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li> <li>-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li> </ul>
<p>②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성이 검증된 보안시스템 구축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li>-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등</li> </ul>
<p>③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이용자 확인 및 통제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④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정보 등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업자료의 소산보관장소 마련</li> <li>- 기간별 소산보관대책 마련</li> <li>- 백업과 관련한 외부업체와의 계약 등</li> </ul>
<b>(2) 업무공간과 사무장비</b>	<b>관련 내용</b>
<p>①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부서간정보차단벽 설치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li>-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층 배치 등 업무공간 구분</li> <li>- 이해상충부서간 출입통제(카드키 등)</li> </ul>
<p>②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공간 및 부서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확보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li>- 총 면적 및 전용면적, 총 면적 및 전용면적 대비 직원 1인당 사무공간 면적(단위:m<sup>2</sup>)</li> </ul>
<p>③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b>(3)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b>	<b>관련 내용</b>
<p>①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 보안설비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li>-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비상발전기 등 보유현황</li> <li>- CCTV 위치, 기록 보존기간</li> <li>- 장애에 대비한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의 이중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및 전산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미인가자 접근 차단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p>②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P(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p>③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복구시스템 구비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li>- DR센터(위치), 백업체계구축 등</li> </ul>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p>④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P마련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li>- BCP를 포함한 재해복구 훈련 실시</li> <li>- 재해복구 훈련시 복구테스트 결과</li> </ul>
<b>(4) 기타</b>	<b>관련 내용</b>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p>①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 6.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등의 해당 페이지를 상단에 명기한 후 인가심사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1) 수지전망 및 경영건전성	관련 내용
<p>①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기술하고, 경쟁상황 극복방안(경쟁사 대비 우위)등을 서술</li> </ul>
<p>②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에 대한 추정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경영전략 등의 실현 가능성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③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장규모, 시장 점유율, 수수료 등을 추정하고 이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④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과 추정재무제표의 내용이 일치하고, 추정 영업손익·비용의 증감이 일관성을 유지</li> <li>■ 신청 업무 관련 향후 3년간 영업손익과 이를 반영한 3년간의 회사 전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li> </ul>

⑤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

- 사업계획상 향후 3년간 순자본비율 추정 결과

**추정 NCR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영업용순자본(A)			
총위험액(B)			
잉여자본(C=A-B)			
필요유지자기자본(D)			
순자본비율(E=C/D)			
당기순이익			

※ 부동산 신탁사는 종전대로 영업용순자본 비율을 적용

- 사업계획상 향후 3년간 레버리지비율 추정 결과

**추정 레버리지비율**

(단위 : 억원, %)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총자산(A)			
자기자본(B)			
레버리지비율 (C=A/B)			

**(2)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보호**

**관련 내용**

①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

- 이사회, 경영진, 감사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내규 등에 관하여 서술

<p>② 인가받은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자체의 내부통제관련 기준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③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업무상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④ 준법감시인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업 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⑤ 사외이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업 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⑥ 감사(감사위원)가 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업 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b>(3)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b></p>	<p style="text-align: center;"><b>관련 내용</b></p>
<p>①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②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③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 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b>(4) 전문인력 양성계획</b></p>	<p style="text-align: center;"><b>관련 내용</b></p>
<p>①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교육대상자·대상기관·교육기간 등의 세부계획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b>(5) 기타</b></p>	<p style="text-align: center;"><b>관련 내용</b></p>
<p>①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 7. 이해상충 방지체계 현황

\*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등의 해당 페이지를 상단에 명기한 후 인가심사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1)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관련 내용
<p>①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운영, 내부통제조직의 설치 여부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상시 파악 및 평가시스템 구축 여부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②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 고지방법, 거래 제한 및 주의 목록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③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 발생 요소의 정기 및 수시평가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④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2)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용
<p>①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 (Chinese Wall)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업무)의 명확한 정의 및 차단·허용사항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li>- 공간·설비 등에 있어서 정보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 등의 구축 여부</li> <li>- 교류차단 대상정보가 전산적으로 공유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저장 및 관리, 열람 시스템 구축 여부</li> </ul>
<p>②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교류 차단부서간 교류금지 정보 제공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li>- 정보 제공 여부 확인</li> <li>- 예외적 정보교류시 통과절차 및 준수사항, 준법 감시인 확인사항 등의 규정화 및 확인절차</li> </ul>
<p>③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p>	<p>☞ p. ~ p. (사업계획서 본문의 해당 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 〈참고3〉 임원·신청인·대주주 확인서 양식

### 1. 임원 확인서

#### 임원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 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 또는 감사위원</li> <li>2.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li> <li>3.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li> <li>4. 각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li> </ol>	

<p>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자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li> <li>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li> <li>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li> </ol> </li> <li>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li> <li>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li> <li>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li> </ol> </li> <li>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li> <li>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li> </ol>	
<p>해당 금융투자업자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p>	
<p>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p>	
<p>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p>	

본인은 상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 2. 신청인(본인) 확인서

### 신청인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3. 대주주 확인서

#### A. 신규인가

#### (1) 최대주주/주요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가. 금융기관[A-(1)-가]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채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채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기준이 없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동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제표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채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p>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나.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A-(1)-나]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채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당해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채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p>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p> <p>(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p>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p>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다. 내국인으로서 개인[A-(1)-다]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소득재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	--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라. 외국법인[A-(1)-라]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인가신청일 현재 인가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을 것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 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	--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 ① 업무집행사원 등이 금융기관[A-(1)-마-①]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기준이 없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동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채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	--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②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법인[A-(1)-마-②]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당해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③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인으로서 개인[A-(1)-마-③]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④ 업무집행사원 등이 외국법인[A-(1)-마-④]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 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 가. 금융기관[A-(2)-가]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나.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A-(2)-나]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다. 개인[A-(2)-다]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라. 외국인[A-(2)-라]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 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 ① 업무집행사원 등이 금융기관[A-(2)-마-①]  
⇒ [A-(1)-마-①]과 같음
- ②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법인[A-(2)-마-②]  
⇒ [A-(1)-마-②]과 같음
- ③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인으로서 개인[A-(2)-마-③]  
⇒ [A-(1)-마-③]과 같음
- ④ 업무집행사원 등이 외국법인[A-(2)-마-④]  
⇒ [A-(1)-마-④]과 같음

## B. 변경인가(업무추가)

### (1) 최대주주

가. 금융기관/내국법인/개인[B-(1)-가]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p>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p> <p>(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p>	
<p>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나. 외국법인[B-(1)-나]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 ① 업무집행사원 등이 금융기관/내국법인/개인[B-(1)-다-①]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② 업무집행사원 등이 외국법인[B-(1)-다-②]

⇒ [B-(1)-나]와 같음

## (2) 최대주주 이외의 대주주

가. 금융기관/내국법인/개인[B-(2)-가]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p>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p> <p>(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p>	
<p>「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나. 외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B-(2)-나]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 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 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 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 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6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참고4〉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요건 관련 법규

## 1. 법인격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b>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b>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p>	<p><b>제16조(인가요건 등) ①</b> <u>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li> <li>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li> <li>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li> <li>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li> <li>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li> <li>6.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li> <li>7.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li> <li>8. <u>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u></li> </ol>	<p><b>제2-1조(인가요건) ①</b> <u>영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u></p>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신용협동조합</li> <li>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li> <li>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조합 중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조합</li> <li>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li> <li>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li> </ol>

## 2. '대주주' 및 '외국 금융투자업자'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는 것</p> <p>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p>	<p>제16조(인가요건 등)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li> <li>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li> </ol> <p>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li> <li>2.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li> </ol>	<p>제2-1조(인가요건) ② 영 제16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②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p> <p><b>제16조(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b>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u></p>	<p>②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이하 "외국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별표 2 제4호나목</u>부터 <u>마목</u>까지의 요건을 갖출 것</li> <li>2.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본국의 감독기관의 감독내용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에 맞을 것</li> </ol> <p><b>제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b>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주주가 <u>별표 2 제1호</u>부터 <u>제3호</u>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u>마목1)·3)</u>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del>마목1)</del>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별금형"은 "5억원의 별금형"으로 본다.</li> <li>2. 대주주가 <u>별표 2 제4호</u> 또는 <u>제5호</u>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del>마목1)</del>·3) 및 <u>제4호</u>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li> </ol>	<p>③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u>별표 3 제1호</u>라목과 같다.</p>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p> <p>3. 대주주가 <u>별표 2</u>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p> <p>4.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본다.</p>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2]**

**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

구분	요건
<p>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li> <li>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임원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li> <li>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li> </ol>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서 개인인 경우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 다)인 경우	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인가 받으려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4호라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3]

### 대주주의 요건

(제2-6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2-12조제1항, 제7-41조의2제2항, 제8-79조제3항 및 제8-85조제3항 관련)

####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 별표 4 및 별표 5에서 같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2)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나목(4)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유상증자

(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다) 내부유보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5)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라)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6) 건전한 신용질서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나.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영 별표2 제2호 관련)

- (1) 가목(1), (4)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나)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 (3) 당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채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2 제3호 관련)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2)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 (나)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 (3) 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 (4)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 (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라)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라.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2)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2 제4호 관련)

- (1)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 인가신청일 현재 인가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을 것
-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4)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행정처분은 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가)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기관경고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나)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또는 업무정지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가목(5) 및 (6)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2 제5호 관련)

(1) 가목의 금융기관인 경우 : 가목(2), (3), (5) 및 (6)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나목의 내국법인인 경우 : 가목(5) 및 나목(2)·(3)·(4)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다목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가목(6) 및 다목(1)·(4)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라목의 외국법인인 경우 : 가목(5)·(6), 나목(4)(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및 라목 (3)·(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1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그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목(5) 및 (6)의 요건

(2) 그 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가목(5) 및 나목(2)의 요건

(3) 그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가목(5), 다목(1) 및 (4)의 요건

(4) 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라목(4) 및 (5)의 요건

(5) 그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다목의 요건

사. 가목(5)·(6) 및 나목(2)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 (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 2. 경영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의 요건

가. 주주구성, 경영지배구조 및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의 합리적 개편방향등을 감안하여 경영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만을 적용할 수 있다.

- (1) 대주주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중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 (2) 대주주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4)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중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나. 가목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업 경영인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따르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3. 금융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시의 대주주(당해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당사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인 경우에 한한다)의 요건[시행령 제16조제6항 2호 등 관련]

가. 대주주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마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중 제1호가목(5)(가) 및 (나)와 관련한 요건. 이 경우 제1호가목(5)(가)의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로 본다.

나. 대주주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4)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중 라목(4) 및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이 경우 라목(4)는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본다.

## 4.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자기자본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p>	<p>제16조(인가요건 등)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p>	

##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1]

###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 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0
1-1-2	투자매매업	증권	전문투자자	250
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75
1-111-2	투자매매업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	전문투자자	37.5
1-12-1	투자매매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1-12-2	투자매매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	125
1-13-1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13-2	투자매매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25
11-1-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0
11-1-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증권	전문투자자	100
11-11-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11-11-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40
11-111-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0
11-111-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 증권	전문투자자	15
11-112-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11-112-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20
11-12-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1-12-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	50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11-13-2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10
11r-1r-1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제1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1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
12-112-2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사채권	전문투자자	30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1-2-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1-21-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1-21-2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900
1-3-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450
1-3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50
1-32-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25
1-321-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80
1-321-2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90
1a-1-2	투자매매업	법 제8조의2제5항 및 이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300
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0
2-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15
2r-1-2	투자중개업	증권	전문투자자	5

2-11-1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1-2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5
2-12-1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2-2	투자중개업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전문투자자	5
2-13-1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13-2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전문투자자	5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2-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전문투자자	10
2-21-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
2-21-2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5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2-3-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전문투자자	50
2-3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50
2-32-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주권 외의 것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25
2-321-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2-321-2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통화·이자율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전문투자자	10
2a-1-2	투자중개업	법 제8조의2제5항 및 이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200
2i-11-2i	투자중개업	채무증권	전문투자자	30
3-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80
3-11-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1호·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40
3-12-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3-13-1	집합투자업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0
4-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0
4-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125
4-1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30
4-1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5
4-12-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20
4-12-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60
4-121-1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00
4-121-2	신탁업	법 제10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	전문투자자	50

비고

- 제7조제1항의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은 1-1-1 또는 1-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1-3-1 또는 1-3-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1-11-1, 1-11-2, 1-111-1, 1-111-2, 1-12-1, 1-12-2, 1-13-1, 1-13-2,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12-1, 11-12-2, 11-13-1, 11-13-2, 12-112-1, 12-112-2, 2-11-1, 2-11-2, 2-12-1, 2-12-2, 2-13-1, 2-13-2 및 2i-11-2i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 11r-1r-1은 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만 해당한다.
- 2r-1-2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증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1a-1-2 및 2a-1-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 2i-11-2i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전문투자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2-1-1, 2-1-2,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하며, 2-1-1, 2-1-2, 2-11-1 및 2-11-2는 이 영 제179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11-13-1 및 11-13-2의 최저자기자본은 해당 최저자기자본의 2분의 1로 한다.
-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적용할 때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본금(이에 준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삭제 <2015.10.23.>
- 삭제 <2015.10.23.>
-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1a-1-2 및 2a-1-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채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3-12-1, 3-13-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1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4. 인력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b>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b>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p> <p>5. 임원이 「<u>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u>」 제5조에 적합할 것</p>	<p><b>제16조(인가요건 등) ⑤</b>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는 것</p>	<p><b>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b>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u>별표 2</u>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u>별표 2</u>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b>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p> <p>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p> <p>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p> <p>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p>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p> <p>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p> <p>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p>	<p><b>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b> 별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li> <li>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li> <li>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li> <li>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li> <li>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li> </ol>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p>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p>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p>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p>	<p>③ <u>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 규모가 <u>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u>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b>제2조(임원의 자격요건)</b> 영 제7조제3항제3호에서 “<u>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u>”이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인 경우를 말한다.</p>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제2항 및 제8-85조제1항·제2항 관련)

####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직접 영위하는 직원은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영위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자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투자업인가 신청이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인가업무 단위	자산운용 전문인력	기업금융 전문인력	조사분석 전문인력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	장외파생후선 전문인력
1-1-1, 1-1-2	5	5	2	3	-
1-11-1, 1-11-2 1-111-1, 1-111-2 12-112-1, 12-112-2	2	2	-	1	-
1-12-1, 1-12-2	3	3	2	2	-

11-1-1, 11-1-2	3	-	1	-	-
11-11-1, 11-11-2 11-111-1, 11-111-2 11-112-1, 11-112-2 11r-1r-1	1	-	-	-	-
11-12-1, 11-12-2	2	-	1	-	-
1-2-1, 1-2-2 1-21-1, 1-21-2	2	-	-	-	-
1-3-1, 1-3-2 1-31-1, 1-31-2 1-32-1, 1-32-2 1-321-1, 1-321-2	2	-	-	-	1
1a-1-2	3				-
2-1-1, 2-1-2	-	-	1	5	-
2-11-1, 2-11-2 2r-1-2, 2i-11-2i	-	-	-	2	-
2-12-1, 2-12-2	-	-	1	3	-
2-2-1, 2-2-2 2-21-1, 2-21-2	-	-	-	2	-
2-3-1, 2-3-2 2-31-1, 2-31-2 2-32-1, 2-32-2 2-321-1, 2-321-2	-	-	-	2	1
2a-1-2				3	-

※ 비고

1. 이 표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이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자산운용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자산운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이 표에서 “기업금융전문인력”이란 영 제68조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에서 정하는 기업금융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기업금융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기업금융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이 표에서 “조사분석전문인력”이란 조사분석자료 작성 또는 이를 심사·승인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조사분석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조사분석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이 표에서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이란 투자권유 또는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이 표에서 “장외파생후선전문인력”이란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확인, 필요서류 교환 및 결제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장외파생후선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말한다.

마.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인가(등록) 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출 것

인가(등록)업무 단위	전문인력의 종류	최소보유 인원수(명)
3-1-1	증권운용전문인력	5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3-11-1	증권운용전문인력	4
3-12-1	증권운용전문인력	2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3-13-1	증권운용전문인력	3
3-14-1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4-1-1	증권운용전문인력	5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
4-1-2	증권운용전문인력	3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4-11-1	증권운용전문인력	3
4-11-2	증권운용전문인력	2
4-12-1 및 4-121-1	증권운용전문인력	3
	부동산운용전문인력	2
4-12-2 및 4-121-2	증권운용전문인력	2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

※비고

1. 이 표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이 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 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6)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 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협회가 정하는 증권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다.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1의2. <삭제 2015.10.21>

2. 이 표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을 말한다.

가.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운용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이하 “부동산운용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

2)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3) 1) 및 2)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2) 부동산의 관리업 또는 개발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당해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상근 임직원이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및 전문 컨설팅기관으로 부동산의 중개·자문 등에서 발생한 매출이 최근 3년간 5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마. “1”의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의2. 이 표에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협회가 정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1)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관·회사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2호 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3.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특별계정으로서 그 규모가 5,000억원 이하이거나 영 제2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3-14-1의 요건을 적용한다.

4. 이 표 및 별표 13 제1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이 표 및 별표 13 제1호에서 정한 운용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운용전문인력의 수에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5. 4-121-1 및 4-121-2 업무만 인가받은 신탁업자인 경우 “증권운용전문인력 인원수” 대신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인원수”를 갖추어야 한다.

6. 집합투자업과 신탁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는 각각의 인가(등록)업무 단위별 운용전문인력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7. 집합투자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이하 이 호에서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되는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 및 그 증권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매입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설립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인력 중 2인이 별표 13에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8. 4-1-1, 4-1-2, 4-11-1, 4-11-2, 4-12-1 및 4-121-1, 4-12-2 및 4-121-2 요건과 관련하여 신탁업자 중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로서 별표 13 제2호 및 제3호의 전문인력을 갖춘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9. 3-1-1, 3-11-1, 3-12-1, 3-13-1, 3-14-1 요건과 관련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7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같은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3명 이상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하 별표13의 “해외자원개발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명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춘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2인 이상의 투자운용인력”은 “증권운용전문인력”을 말한다.

바.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법 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5인 이상(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3인 이상) 갖추 것

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라목, 마목 또는 바목의 인력 외에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추 것

구 분	위험관리 전문인력	내부통제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투자매매업	2	2	2
투자중개업	1	1	2
집합투자업	1	1	1
신탁업	1	1	1

※ 비고

- 이 표에서 “위험관리전문인력”이란 시장위험·운영위험·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위험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다. 공인회계사,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이 표에서 “내부통제전문인력”이란 법령 준수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내부통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내부통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이 표에서 “전산전문인력”이란 IT기획·개발·운영·정보보호 등 전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전산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4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소지자
4.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중 가장 많은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수를 적용한다.
5. 1-1-1, 1-3-1 및 2-1-1를 모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 내부통제전문인력 및 전산전문인력을 각각 3인으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표의 집합투자업에 요구되는 전문인력기준을 적용한다.
7.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내부통제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
8.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동법 제28조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를 두면, 내부통제전문인력 및 위험관리전문인력 각각 1인을 갖춘 것으로 본다.
9. 전산설비를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종합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전문인력 1인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10.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4조에 따라 등록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전산 설비를 위탁하면 전산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1. 1a-1-2 또는 2a-1-2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은 이 표를 따르며, 내부통제 전문인력은 3인, 전산전문인력은 10인으로 한다. 또한, 1a-1-2 및 2a-1-2 를 동시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따른다.
12. 이 표는 법 제8조제9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자금중개회사 및 외국환중개회사는 제외한다)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에 한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 물적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b>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b>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p>	<p><b>제16조(인가요건 등) ⑤</b>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p> <p>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p> <p>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p> <p>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p> <p>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p>	<p><b>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b>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제2항 및 제8-85조제1항·제2항 관련)

#### 2. 물적 설비

#####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추어 줄 것
-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 다. 보안설비

-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추어 줄 것
-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 5. 다자간매매회사에 대한 추가요건

##### 가. 물적 시설 중 전산시스템 구축

- (1) 장래 주문약정건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을 것
- (2) 외부인의 불법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하였을 것
- (3) 시스템의 백업체제를 완비하고, 시스템의 용량초과나 장애 등의 발생방지체제 및 문제발생시 대응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것

## 6.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b>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b>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p>	<p><b>제16조(인가요건 등) ④</b>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li> <li>2. 삭제 &lt;2010. 6. 11.&gt;</li> <li>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li> <li>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중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li> <li>5.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li> </ol>	<p><b>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b>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u>별표 2</u>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u>별표 2</u>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b>[장외파생상품 인가 시 추가요건]</b></p> <p><b>제5-50조(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①</b>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u>별표 15</u>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별표 15</u>에 따른 종합평가결과가 "양호" 이상일 것</li> <li>2. <u>별표 15</u>의 "1. 평가항목" 중 다음 각 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li> <li>나. 위험측정 및 관리실무</li> <li>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전산시스템</li> </ol> </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은 <u>별표 16</u>과 같다.</p>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제2항 및 제8-85조제1항·제2항 관련)

#### 3. 사업계획

##### 가. 수지전망

-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 나. 경영건전성 기준

- (1) 채무상대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상호금융업감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해야 할 건전성 비율 중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에 관한 기준과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높은 기준을 상회할 것
-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5-50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인가업무 단위별로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다.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 (2) 인가받은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라.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마.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바.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

#### 5. 다자간매매회사에 대한 추가요건

##### 나. 사업계획 중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건전금융질서 저해 방지

- (1) 업무방법서 또는 내규 등이 법 및 영에서 정하는 업무기준을 적절히 반영하여 정비되어 있을 것
- (2)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가 확립되어 있을 것
- (3) 상호에 '거래소', '코스닥', '시장' 등과 같이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5]

## 위험관리 종합평가기준

(제5-50조제1항 관련)

### 1. 평가항목

대항목(3개)	중항목(12개)
1.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 현업 부서조직 및 인력, 후선 업무부서 조직 및 인력
2.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절차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위험 측정 및 관리실무, 내부통제관련 실무, 위기상황대비 대책
3.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 2. 평가방법

가. 중항목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점~5.0점으로 평가한다.

기준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평가점수	1.0~1.4	1.5~2.4	2.5~3.4	3.5~4.4	4.5~5.0

나. 대항목의 평가점수는 중항목의 평가점수를 단순평균하여 산출한다.

다. 종합평가점수는 대항목의 평가점수를 아래의 가중치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대항목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가중치	30%	40%	30%

라. 종합평가결과는 종합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종합평가점수	1.0~1.4	1.5~2.4	2.5~3.4	3.5~4.4	4.5~5.0
종합평가결과	우수	양호	보통	취약	위험

### 3.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등의 평가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되, 제1호의 중항목 중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장외파생거래 현업 및 후선 업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국내지점의 구축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1호의 중항목 중 그 밖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본사 및 계열사의 구축실태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중항목 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본사를 기준으로 서면심사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중 위험관리위원회, 내부통제조직 및 인력·내부통제에 관한 규정·내부통제 관련실무·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중 감사업무와 관련된 사항

나. 가목의 평가를 위하여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 중 본사 또는 계열사를 기준으로 가목의 평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본사에 관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체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직, 조직별 업무분장, 담당임직원, 주요경력, 전산시스템에 관한 구축도, 한도설정·배분·관리체제에 관한 절차도, 규정(기준) 및 한도배분 현황, 관련 규정 등

다.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은 장외파생상품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한 본사의 연대책임 협약서 및 서명자의 결제권한에 관한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5-1조제2호에 따른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로서 위험관리체계가 양호하고 시장조성실적이 우수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위험관리실무 중 금리관련 위험관리실무에 대한 평가시 상기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5. 인가업무 단위별 위험관리기준 평가방법

가. 투자매매업

- (1) 제1호의 평가항목 중 모든 중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일부 장외파생상품 및 일부 투자자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업무 단위(1-3-2, 1-31-1, 1-31-2, 1-32-1, 1-32-2, 1-321-1 및 1-321-2)에 대하여는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투자중개업

- (1) 제1호의 평가항목 중 내부통제에 관한 중항목에 대하여 평가한다.
- (2) 일부 장외파생상품 및 일부 투자자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업무 단위(2-3-2, 2-31-1, 2-31-2, 2-32-1, 2-32-2, 2-321-1 및 2-321-2)에 대하여는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6]

##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기준 등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제5-50조제2항)

①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조직·인력\*

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위험관리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관리위원회 및 위험관리 담당부서는 위험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사회로부터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독립성 확보 등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업무 수행환경을 조성하고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부서등) 및 후선업무부서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견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li> <li>○ 위험관리업무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li> </ul>
내부통제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사(위원회)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 및 감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영진 및 다른 부서의 업무를 견제하는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li> <li>○ 감사업무 담당 임·직원은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업무부서 등),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부서 등에 대한 감사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업부서, 후선업무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일정수준 이해하고 있어야 함</li> <li>○ 준법감시인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준법감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른 조직과 독립적으로 임·직원의 법규위반, 부정행위, 그 밖에 운영 및 법률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며</li> <li>○ 준법감시담당 임·직원은 현업부서(장외파생상품 업무부서 등), 후선업무부서 등에 대한 법규준수관련 통제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업부서 및 후선업무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지식을 일정수준 보유하고 있어야 함</li> </ul>
현업부서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외파생상품 등 거래관련 정보를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부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해야 하며 일차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li> <li>○ 현업부서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li> </ul>
후선 업무부서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업부서의 거래(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하여 현업부서와 독립적으로 신속, 정확, 안전하게 사후처리 및 기록할 책임을 지며 손익평가의 정확성 유지, 거래확인, 필요서류의 교환 및 적절한 보관상태 유지, 거래 관련 결제업무 수행 등 현업부서의 거래에 대한 지원 및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li> <li>○ 후선업무부서 담당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부서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를 독립적·전문적·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li> </ul>

\* 임원에 관한 사항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경우 지점장으로 대체 가능

②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절차

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위험관리에 관한 규정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발생 가능한 위험을 독립적·효율적·전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책임과 권한 등)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험관리 관련 일반원칙, 조직, 실무, 위험한도 설정 및 관리, 성과측정 및 보상, 위험보고, 위기상황대비 대책, 위험관리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지침) 등에 명시하여야 함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 장외파생상품업무 등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적법하고 투명한 거래수준을 유지·관리하고, 선관주의 의무로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지침) 등에 명시하여야 함
위험 측정 및 관리실무	○ 위험관리 업무 담당부서는 장외파생상품등과 관련 위험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절차 및 통제체제를 적절하게 구축·운영하여야 함
내부통제 관련 실무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등과 관련하여 법규위반, 사기행위, 그 밖의 법률위험 발생에 사전·사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위기상황 대비 대책	○ 급격한 시장상황의 변화(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 신용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 신인도 하락, 규제 및 제도의 변화 등) 또는 예기치 않은 사건의 발생 등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 위험종류별 대량손실 위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③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관련 전산시스템

중항목	세부 평가기준
종합적인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 종합적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업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부서, 후선업무 부서가 상호 유기적으로 설계/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또한 전사적인 종합위험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정보의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 현업부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업무 부서, 후선업무부서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전사적인 전산시스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 경영진과 위험관리 담당 임직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노출된 위험을 적시에 측정 및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회사의 모든 단계별 위험관리 정책 및 규정의 준수여부를 적절하게 적출·통제할 수 있는 위험관리 전산시스템을 적절하게 구축하여야 하며 ○ 감사,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업무 담당부서가 장외파생상품 등 관련 내부통제 대상 부서의 회사 내·외의 법률 및 규정 위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거래를 수행할 가능성 등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통제시스템을 적절하게 구축하여야 함
전산시스템 보안 및 안정성	○ 위험관리 담당부서와 전산담당부서는 시스템에 대한 내·외부의 우발적·고의적인 사고, 침입 및 파괴행위에 대비해 시스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7.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p>	<p>제16조(인가요건 등)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1. 건전한 재무상태: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p> <p>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p>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 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li> <li>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 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li> <li>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li> </ol>	

## 8.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b>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b>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p>	<p><b>제16조(인가요건 등)</b> ⑨ <b>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b>(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p> <p>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는 것</p> <p>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추는 것</p>	<p><b>제2-6조(인가 심사기준)</b>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b>별표 2</b>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b>별표 2</b>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 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제2항 및 제8-85조제1항·제2항 관련)

#### 4.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 (4)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나. 정보교류 차단

- (1)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 (2)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3)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인허가 사례 (금융위 결정내용)**  
**3-(1) 부동산신탁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b>신청회사</b>	(가칭)OO자산신탁 등 12개사	<b>신청일</b>	-
<b>처리부서</b>	자산운용감독국 신탁감독팀	<b>금융위 결정일</b>	2019. 3. 3.
<b>주요 골자</b>	<input type="checkbox"/> (가칭)OO자산신탁 등 12개사가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고자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3개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결정하고 9개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불허		
<b>안건 내용</b>	<p style="text-align: center;"><b>(가칭)OO자산신탁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b></p> <p>(가칭)OO자산신탁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호 : (가칭)OO자산신탁 주식회사</li> <li>2. 인가업무 : 금융투자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가 업무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21-1 신탁업 동산·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li> </ul> </li> <li>3. 부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토지신탁업무는 본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후부터 영위할 것</li> <li>다만, 해당 업무가 제한되어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가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됨</li> <li>① 기관경고 : 조치 후 6개월간, ② 일부영업정지 : 영업정지 해제일로부터 1년간, ③ 전부영업정지 : 영업정지 해제일로부터 2년간</li> <li>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본인가를 신청할 것</li> </ul> </li> <li>4. 예비인가일 : 201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을 이행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신청하여야 함</li> <li>* 인력, 물적 설비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은 본인가 신청시 실시점검을 통해 확인 예정</li> </ul>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가칭)△△자산신탁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불허안</b></p> <p>금융위원회의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 방안」(18.10.24. 발표)에서 사전에 발표한 바에 따라,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예비인가 대상 3개 회사에 포함되지 않은 (가칭)△△자산신탁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불허한다.</p>		

### 3. 금융투자

####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 I.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 1. 법인격 요건

- (심사요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
- (심사방법) 예비 및 본인가 시 법인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가서류 등으로 확인

###### 2. 대주주 요건

- (심사대상) 「지배구조법」제2조제6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자본시장법」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6조제7항제1조에 따른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

- (심사요건)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 대주주의 법적 실체(금융기관, 내국법인, 내국인, 외국법인 등)에 따라 각각의 심사요건을 규정

※ (참고) 관계법규 중 「금융투자업규정」(별표3) 참조

- (심사방법)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및 확인서, 국내외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기관과 해외 본국 감독기관

### 3. 자기자본 요건

---

- (심사요건)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함

\* ATS 투자매매업(1a-1-2) 300억원, ATS 투자중개업(2a-1-2) 200억원

-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
- (심사방법) 예비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서 상 자본확충 계획 등을 기준으로 심사
  - 본인가 심사 시 등기부등본 또는 주금 납입증명서로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4. 인력 요건

---

- (임원요건) 임원이 「지배구조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참고) 관계법규 중 「지배구조법」제5조제1항 및 「금융투자업규정」(별표2)제1호다목 참조

- (전문인력요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요건을 충족(미달한 경우 결격)해야 함

※ (참고) 관계법규 중 「금융투자업규정」(별표2)제1호가목나목라목사목 참조

## 심사항목

(1)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인가업무 단위	자산운용 전문인력	기업금융 전문인력	조사분석 전문인력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	장외파생후선 전문인력
1a-1-2	3	-	-	-	-
2a-1-2	-	-	-	3	-

- 이 표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이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자산운용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자산운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이 표에서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이란 투자권유 또는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의 인력 외에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구분	위험관리	내부통제	전산
투자매매업	2	2	2
투자중개업	1	1	2

-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중 가장 많은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수를 적용한다.
- 1a-1-2 또는 2a-1-2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은 이 표를 따르며, 내부통제전문인력은 3인, 전산전문인력은 10인으로 한다. 또한, 1a-1-2 및 2a-1-2를 동시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따른다.

(심사방법) 예비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 임원 및 임원 예정자의 결격 여부를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경력증명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본인가 심사 시 당해 임직원의 채용 등 그 이행여부를 채용 계약서, 전문인력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으로 심사하고 예비인가 내용의 이행여부를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

## 5. 전산·물적 요건

- (심사요건)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점검내용)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등을 점검\*

\* 물적 설비는 계량적 예시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서류검토, 실지조사 등에서 점검하는 항목을 제시하는 것이며, 인가 신청인(겸영금융투자업자 등) 및 인가 신청 내용에 따라 점검항목은 수정 가능

- 코스콤 또는 이와 동등한 능력을 지닌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전산설비 및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

구분	심사항목	점검내용
(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 구축의 적정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업무 영위에 적합한 전산시스템 보유 및 가용성·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산기</li> <li>- DB서버, 매매관련(시세관리, 주문관리, 결제관리, 원장관리 등) 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li> <li>-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li> <li>-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li> </ul> </li> <li>■ 내부 네트워킹, 전용회선 구축 등 통신시스템 구성</li> </ul>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입탐지·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 구축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성이 검증된 보안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등</li> </ul> </li> </ul>

구분	심사항목	점검내용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이용자 확인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산기 및 각종 서버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및 사용 통제방안 구비</li> <li>-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log-in) 기록 유지 등 정보유출대책 마련</li> </ul> </li> <li>■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 출입 통제(카드키, 비밀번호 이용 등) 및 미승인된 출입자의 방문 일지 기록</li> <li>- 전산실 출입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CCTV 배치</li> </ul> </li> </ul>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및 백업자료 별도 보관·관리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정보 등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업자료의 소산보관장소 마련(내화 금고 등)</li> <li>- 기간별 소산보관대책 마련</li> <li>- 백업과 관련한 외부업체와의 계약 등</li> </ul> </li> </ul>
기존 (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래 주문약정건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는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절한 시스템 용량 확보 및 테스트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PU, 메모리, 디스크 등 용량 증설기준 마련</li> <li>- 시스템 부하 방지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li> </ul> </li> <li>■ 거래참가자,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의 통신망(API) 기준에 부합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성하고 데이터 처리에 대한 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위험상황 시나리오에 기반한 시스템 안정성 등 테스트 실시</li> </ul> </li> </ul>

구분	심사항목	점검내용
(2)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 확보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설치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부서간 정보차단벽 설치</li> <li>- 이해상충부서간 별도층 배치 등 업무공간 구분</li> <li>- 이해상충부서간 출입통제(카드키 등)</li> </ul>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확보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사무공간 등 충분한 업무공간 및 부서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확보</li> </ul>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의 감독·검사 시 법적 장애가 없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성 정도</li> <li>- 리스, 임대, 위탁 등 제한적 확보 여부 점검</li> </ul>
(3) 보안설비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의 확보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 보안설비</li> <li>-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비상발전기 등 구비</li> <li>- 전산실 내 CCTV 사각지대 제거</li> <li>- 장애에 대비한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의 이중화</li> <li>■ 사무실 및 전산실에 대한 365일 ×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미인가자 접근 차단</li> <li>- 주요 장소 CCTV 설치 및 녹화기록 유지</li> </ul>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업 등 불시사태 대비 비상계획 마련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P(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li> </ul>
기존 (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인의 불법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하였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에 대한 외부인의 불법접근을 차단하고, 전산자료 및 전산설비의 반·출입을 통제</li> <li>■ 해킹이나 악성코드 감염으로부터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의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li> </ul>

구분	심사항목	점검내용
(4) 보완설비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확보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복구시스템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li> <li>-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센터 마련</li> <li>- 재해복구센터 내 단말기 등 백업체계 구축</li> </ul> </li> </ul>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 마련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P를 포함한 재해복구 훈련 실시</li> <li>- 재해복구 훈련 시 복구테스트 결과</li> </ul> </li> </ul>
기존 (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백업체제를 완비하고, 시스템 장애 등의 발생방지체제 및 문제발생 시 대응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시스템에 대한 이중화 방안 설계 및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시 백업시스템 전환 등 업무연속성 확보</li> <li>- 기타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이중화 여부 등</li> </ul> </li> <li>■ 시스템 장애 등의 발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호·복구 대책을 수립</li> </ul>

□ (심사방법) 예비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서, 회사 전체 전산 설비 흐름도, 외부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 본인가 심사 시 예비인가 내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

## 6.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 (심사요건) 수지전망과 경영건전성 기준,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유지,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할 것

구분	심사항목	점검내용
(1) 수지전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경영전략 마련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경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 진입, 마케팅 등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li> <li>■ 경영전략의 내용이 시장상황, 경쟁상황 등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li> </ul>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이 객관적이고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한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수수료 등을 추정</li> <li>■ 시설투자, 인력충원, 마케팅 등 초기 투자비용을 고려</li> </ul>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을 고려한 추정재무제표의 작성과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의 유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손익 추정결과를 추정 재무제표에 일관성 있게 반영</li> <li>■ 사업계획과 추정재무제표의 내용이 일치하고, 추정 영업손익·비용의 증감이 일관성을 유지</li> <li>■ 신청 업무 관련 향후 3년간 영업손익과 이를 반영한 3년간의 회사 전체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li> <li>■ 정상적·비관적·낙관적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시나리오별로 추정</li> </ul>
(2) 경영건전성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무제표가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결과 금산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초과</li> <li>- 비관적 시나리오 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하회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 대응책을 제시</li> </ul>

구분	심사항목	점검내용
(3)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경영진의 구성 및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경영진, 감사의 구성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li> <li>■ 영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견제와 균형관계 확보</li> </ul>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위하는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 통제체제 구축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감사위원회(감사), 준법감시인, 영업본부별, 부서별, 직원별 역할과 위임관계가 명확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li> <li>■ 리스크관리·내부통제기준 및 절차의 문서화 여부</li> <li>■ 금융사고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과 부서의 직무를 적절히 분리하고 있는지 여부</li> </ul>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 보장, 이사회 등 회의참석 및 자료 접근권 보장 정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업무상 독립성 보장</li> <li>■ 준법감시인의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 보장</li> </ul>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업 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 여부</li> <li>■ 사회적 평판과 윤리면에서 직을 수행할 만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li> </ul>
기존 (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업무 방법과 조직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li> <li>■ 거래소와 복수시장 연계 시장감시 등을 위한 유기적 공조체계 구축 여부</li> </ul>
기존 (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에 '거래소', '코스닥', '시장' 등과 같이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을 포함시키지 않은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상호가 투자자 혼란을 초래하는지 여부</li> </ul>

구분	심사항목	점검내용
(4)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한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방법서에 기술하는 영업내용 및 방법이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하는 업무상 준수할 사항과 부합할 것</li> </ul>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li> <li>-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의무 여부 등</li> </ul>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소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신청인 및 임원에 대한 제재 여부 검토</li> </ul>
기존 (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방법서 또는 내규 등이 법 및 영에서 정하는 업무기준을 적절히 반영하여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에서 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의 및 특례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li> <li>- 시장운영, 청산·결제, 시장감시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연계업무 체계 구축</li> <li>■ 영업내용 및 방법이 투자자 보호 및 시장운영의 공정성·안정성 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지 여부</li> <li>- 거래유형·체결방법, 거래시간, 시장정보 제공, 주문보호·구제, 수수료 기준 등 시장운영 관련 사항</li> <li>- 거래참가자의 최선집행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호가·매매정보, 수수료 등)를 투명·공정하게 제공하는지 여부</li> </ul>

구분	심사항목	점검내용
(5) 전문인력 양성계획 등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가신청 업무 영위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현가능한 전문인력 양성계획 마련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도별·분야별 필요인력 추정</li> <li>- 전문인력 스카웃 또는 자체 양성방안 마련</li> <li>- 교육대상자·대상기관·교육기간 등의 세부 계획 마련</li> <li>- 필요예산 마련 및 사규(업무계획) 반영 등</li> </ul> </li> </ul>
(6) 기 타		
기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계획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이 기존 거래소와의 혁신성·차별성을 충실히 확보하고 있는지</li> </ul>

□ (심사방법) 예비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서, 예상 수지계산서 등을 통해 위험관리,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

- 실무적으로 본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재심사하지 아니하고, 예비인가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정 여부를 재심사

## 7.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

- (심사요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신청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신설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항목을 적용하지 않음

### 심사항목

#### (1) 건전한 재무상태

- 「자본시장법」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을 충족

#### (2) 사회적 신용

-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 (심사방법)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 및 확인서, 국내외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기관과 해외 본국 감독기관

## 8.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 (심사요건)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구분	심사항목	점검내용
(1) 내부통제기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파악,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li> <li>내부통제조직의 설치 여부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상시 파악 및 평가시스템 구축 여부</li> <li>신규 업무 또는 신상품 취급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li> </ul>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의 적정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해상충 고지방법, 거래 제한 및 주의 목록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및 절차</li> <li>정보 유출 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계약 등에 비밀유지의무 조항 삽입 등</li> </ul> </li> </ul>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가능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준법감시인을 통한 이해상충 발생 요소의 정기 및 수시평가 의무화 여부</li> <li>(관련된 인가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매매·과당매매 점검 여부</li> <li>- 조사분석자료 관련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 점검 여부</li> <li>-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리 등</li> </ul> </li> </ul>

구분	심사항목	점검내용
(2) 정보교류차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 (Chinese Wall)의 적정한 설치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업무)의 명확한 정의 및 차단·허용사항의 명확화</li> <li>■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임직원 검직 여부</li> <li>■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설비 등에 있어서 정보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 등의 구축 여부</li> <li>- 교류차단 대상정보가 전산적으로 공유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저장 및 관리, 열람 시스템 구축 여부</li> </ul> </li> <li>■ 정보교류 차단업무 담당부서가 독립된 부서로 구분되어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li> </ul>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 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교류 차단부서간 교류금지 정보 제공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 제공 여부 확인</li> <li>- 예외적 정보교류시 통과절차 및 준수사항, 준법감시인 확인사항 등의 규정화 및 확인절차</li> <li>-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 제공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사전 승인절차, 정보제공 기록의 유지 및 관리, 정보의 업무외 목적사용 금지 등</li> </ul> </li> <li>■ 회의 및 통신 규제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 및 통신내용의 기록 유지와 준법감시인의 확인 의무화 등</li> </ul> </li> </ul>

□ (심사방법) 예비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서, 내부통제기준 등을 통해 심사한 후 본인가 시 실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 등을 확인

(참고)

## 관계법규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다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생략>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이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거래소”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73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는 자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거래소시장”이란 거래소가 개설하는 금융투자상품시장을 말한다.

④ 거래소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2. 파생상품시장: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투자업의 종류(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을 말하되, 투자매매업 중 인수업을 포함한다)
2.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말하며, 신탁업의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신탁채산을 말한다)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을 말하되, 증권 중 국채증권, 사채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파생상품 중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투자자의 유형(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나. <생략>
  2. 인가업무 단위별로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나.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6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7.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利害相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및 제5항 후단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 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인가신청 또는 조건의 취소·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예비인가)** 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신청에 관하여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예비인가신청과 관련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의 신청서 및 그 기재사항·첨부서류 등 예비인가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예비인가심사의 방법·절차, 그 밖에 예비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최선집행의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차감 및 결제방법·결제책임 등 청산·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40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제40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07조를 준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부가 소유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소유하는 경우

⑥ 제383조제1항·제2항, 제408조 및 제413조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준용한다.

⑦ 다자간매매체결회사(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외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매매체결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
  - 가.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점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주
    - 1) <생략>
    - 2)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 나. <생략>

**제5조(금융관련법령)**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2018. 10. 30., 2019. 3. 26., 2019. 6. 25., 2020. 3. 31., 2020. 8. 25., 2021. 3. 23., 2022. 2. 17., 2022. 8. 23., 2023. 12. 5., 2024. 6. 18.>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공인회계사법」
- 2의2.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2의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2의4. 「국민연금법」(제124조 및 제128조제3항제4호로 한정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3의2.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3의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7의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7의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0의2.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15의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6. 「보험업법」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8. 「부동산투자회사법」
1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 22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4. 「은행법」
- 34의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 34의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 37의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삭제 <2022. 8. 23.>
4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 (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 2. <생략>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생략>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매매체결대상상품(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거래량(매매가 체결된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총수량을 매매가 이루어진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8조에서 같다)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5 이하일 것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

의 그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③ 법 제8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16조(인가요건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삭제
3.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중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

5.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⑤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주요직무 종사자(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⑥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⑦ 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경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⑨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절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⑩ <생략>

⑪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장내파생상품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2. 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3. 그 밖에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 또는 그 변경 사실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팩스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선집행기준의 세부내용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에 대해서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거래소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시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또는 이에 준하는 종목으로 지정한 매매체결대상상품

나.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권

다. 그 밖에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실적이 낮은 매매체결대상상품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

2. 거래참가자(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할 것

3. 거래소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할 것

4.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호가·수량의 공개기준 및 매매체결의 원칙과 방법 등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의 변동에 관한 제한의 범위는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청산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법 제

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등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거래에 따른 청산업무를 위하여 관련 내역을 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7.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수탁을 거부하여야 하는 사항 등 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8. 종목별 매일의 가격과 거래량을 공표할 것

9.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정지하는 기간과 그 사유 및 중단하는 날을 정할 것

10. 지정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11.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경쟁매매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매매체결대상 상품의 평균거래량이 제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할 것

1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7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매매가격·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⑥ 법 제7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나. 비금융회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⑦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란 매매체결대상 상품의 거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⑧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사업계획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이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적합하도록 하는 조치

2.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조치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보고, 업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 관련)

(단위: 억원)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자기자본
1a-1-2	투자매매업	법 제8조의2제5항 및 이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300
2a-1-2	투자중개업	법 제8조의2제5항 및 이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	전문투자자	200

비고

1. ~ 4. <생략>

5. 1a-1-2 및 2a-1-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6. <생략>

7. 2-1-1, 2-1-2,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하며, 2-1-1, 2-1-2, 2-11-1 및 2-11-2는 이 영 제179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8. ~ 11. <생략>

1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3. 1a-1-2 및 2a-1-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4. <생략>

[별표 2]

**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

구분	요건
<p>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li> <li>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1)에 따른 독립경영임원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li> </ol>

	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인가 받으려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비고**

1.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4호라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은 제외한다)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한다)
7. 장내파생상품

**□ 금융투자업규정**

**제2-5조(인가조건 등의 부과) 법 제13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제1호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인가 심사기준)**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대주주(영 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당해 국내지점의 본점을 말한다)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③ <생략>
- ④ 삭제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① 영 제66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나.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다.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3. 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등을 제공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4-48조의2(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영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1.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증권

2.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증권

3. 상장 또는 자본감소 등에 따라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최초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그 날을 포함하여 1일이 경과하지 않은 증

권

4.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주식 또는 발행인과 금융투자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특정 증권을 상장한 거래소시장에서 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을 하기로 한 경우 해당 증권

5.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법 제393조 및 제403조에 의한 거래소 규정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증권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8조의2제5항제2호와 제3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제7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 제7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내용

③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및 거래대금 등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8조의3(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주식소유 등)** 영 제78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별표 2]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제2항 및 제8-85조제1항·제2항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법 제28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요직무 종사자로서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직접 영위하는 직원은 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영위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자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원(경영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투자업인가 신청이 영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자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라.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인가업무 단위	자산운용 전문인력	기업금융 전문인력	조사분석 전문인력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	장외파생후선 전문인력
1a-1-2	3				-
2a-1-2				3	-

※ 비고

1. 이 표에서 “자산운용전문인력”이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운용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자산운용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공인회계사 또는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자산운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 3. <생략>

4. 이 표에서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이란 투자권유 또는 투자에 관한 자문 업무

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협회가 정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투자권유자문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생략>

마. ~ 바. <생략>

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라목, 마목 또는 바목의 인력 외에 다음의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구 분	위험관리 전문인력	내부통제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투자매매업	2	2	2
투자중개업	1	1	2

※ 비고

1. 이 표에서 “위험관리전문인력”이란 시장위험·운영위험·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 위험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위험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다. 공인회계사,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에 준하는 국제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이 표에서 “내부통제전문인력”이란 법령 준수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내부통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내부통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이 표에서 “전산전문인력”이란 IT기획·개발·운영·정보보호 등 전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전산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4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다.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소지자
4. 복수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중 가장 많은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수를 적용한다.
  5. ~ 6. <생략>
  7.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내부통제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다.
  8. <생략>
  9. 전산설비를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종합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전문인력 1인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전산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전산 관련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산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10. <생략>
  11. 1a-1-2 또는 2a-1-2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문인력은 이 표를 따르며, 내부통제전문인력은 3인, 전산전문인력은 10인으로 한다. 또한, 1a-1-2 및 2a-1-2 를 동시에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따른다.
  12. <생략>

## 2. 물적 설비

###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1)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 (2)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 (3)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 다. 보안설비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마.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

### 3. 사업계획

가. 수지전망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경영건전성 기준

(1)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상회할 수 있을 것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해야 할 건전성 비율 중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에 관한 기준과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 중 높은 기준을 상회할 것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5-5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별표 15 제5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특성 및 인가업무 단위별로 부담하는 위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1)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향,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2) 인가받은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3) 준법감시인의 업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사회 등 회의 참석 및 자료 접근권이 보장되어 있을 것

(4)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라.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

마. 사업계획 및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양성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바.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있을 것

#### 4. 이해상충방지체계

가.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4)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나. 정보교류 차단

(1)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을 것

(2)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

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5. 다자간매매회사에 대한 추가요건

### 가. 물적 시설 중 전산시스템 구축

- (1) 장애 주문약정건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시스템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였을 것
- (2) 외부인의 불법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하였을 것
- (3) 시스템의 백업체제를 완비하고, 시스템의 용량초과나 장애 등의 발생방지체제 및 문제발생시 대응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것

### 나. 사업계획 중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건전금융질서 저해 방지

- (1) 업무방법서 또는 내규 등이 법 및 영에서 정하는 업무기준을 적절히 반영하여 정비되어 있을 것
- (2)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가 확립되어 있을 것
- (3) 상호에 '거래소', '코스닥', '시장' 등과 같이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

## [별표 3]

### 대주주의 요건

(제2-6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2-12조제1항, 제7-41조의2제2항, 제8-79조제3항 및 제8-85조제3항 관련)

##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 별표 4 및 별표 5에서 같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2)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나목(4)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유상증자

(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다) 내부유보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5)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

사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라)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6) 건전한 신용질서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  
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  
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  
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나.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  
를 제외한다)인 경우(영 별표2 제2호 관련)

(1) 가목(1), (4)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나)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3) 당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  
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2 제3호 관련)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2)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나)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3) 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라)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라.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2)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2 제4호 관련)

(1)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인가신청일 현재 인가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을 것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4)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할 것. 이 경우 행정처분은 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가)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기관경고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나)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또는 업무정지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가목(5) 및 (6)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2 제5호 관련)

(1) 가목의 금융기관인 경우 : 가목(2), (3), (5) 및 (6)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나목의 내국법인인 경우 : 가목(5) 및 나목(2)·(3)·(4)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다목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가목(6) 및 다목(1)·(4)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라목의 외국법인인 경우 : 가목(5)·(6), 나목(4)(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및 라목 (3)·(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1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그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목(5) 및 (6)의 요건

(2) 그 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가목(5) 및 나목(2)의 요건

(3) 그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가목(5), 다목(1) 및 (4)의 요건

(4) 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라목(4) 및 (5)의 요건

(5) 그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마목의 요건

사. 가목(5)·(6) 및 나목(2)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 (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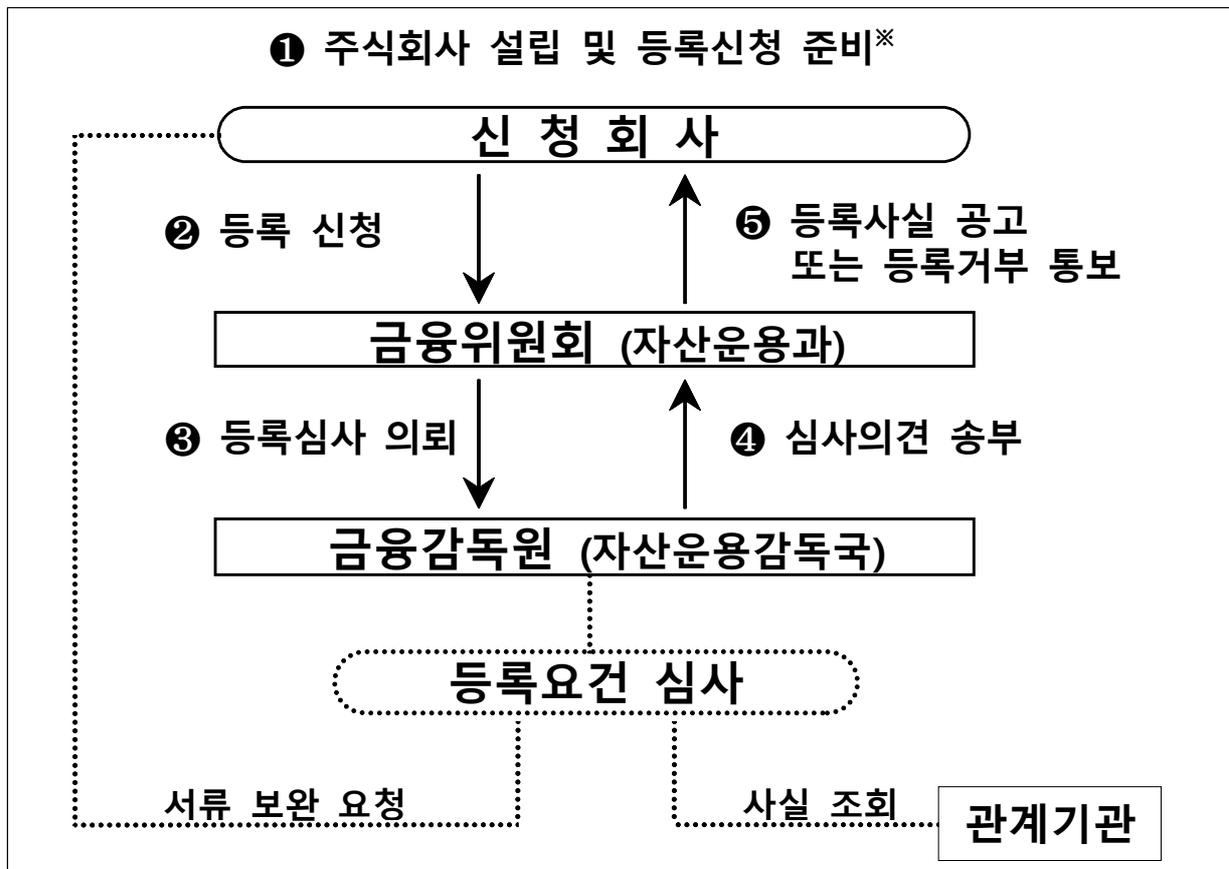
## 2. ~ 3. <생략>

4.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금융투자

#### (3)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 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절차 흐름도



※ 금감원은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인허가 사전협의(S.T.A.R.T)」 포털을 통해 온라인 사전협의를 진행함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ss.or.kr>) → 민원·신고 → 인허가/등록·신고 → 인허가 사전협의(S.T.A.R.T) 포털 → “사전협의 신청하기”

※ 금감원 담당자와의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감원 담당자가 신청내용을 확인 후 신청회사에 연락(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 II. 세부 등록절차

### ① 주식회사 설립 및 등록신청 준비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회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 인허가 사전협의(S.T.A.R.T) 포털 하단 배너("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절차 안내")에서 확인 가능

-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등록신청

- i) 신청회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ss.or.kr>) 접속\*하여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에서 사전협의 신청을 완료함

\* 민원·신고 → 인허가 사전협의(S.T.A.R.T) 포털 → "사전협의 신청하기" 클릭  
→ 권역별 "자본시장" 체크 → 업무종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선택

- ii) 사전협의 신청을 완료 후 등록신청 상세페이지\*에서 등록 관련 유의사항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신청내용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 사전협의 신청 완료 후 하단에 "등록신청 바로가기" 클릭 → "신청하기" 아이콘을 클릭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청내용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 추후 실지점검 과정에서 문서 원본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보관 필요

- iii) 금감원 담당자가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신청회사에 연락하여 사전협의 완료

### ②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 [신청회사 → 금융위]

-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협의 완료 후 금융위원회 「인허가등록신고 시스템」 홈페이지([www.fcsc.kr](http://www.fcsc.kr))를 통해 등록신청서 접수

- 금감원 사전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등록신청서 및 첨부파일은 금융위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에서 “금감원 사전협의 불러오기” 가능\*

\*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www.fcsc.kr](http://www.fcsc.kr)) 접속 → 등록신고 → 등록신고 신청 → 사전협의를 진행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신청 → 금감원 접수번호 등을 입력하고 “불러오기” 클릭

### ③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 [금융위 → 금감원]

- 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신청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과 관련한 요건충족 등에 대한 심사를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금감원에 의뢰

### ④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 [금감원 → 금융위]

- 금융감독원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제출서류 및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회사에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 심사가 종결되면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 심사과정에서 금감원 담당자가 자료보완을 요청한 경우, 사전협의 진행상황 조회화면에서 “보완요청 내용 상세보기”에서 보완 요구사항을 확인 가능

### ⑤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금융위 → 신청회사]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며 등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등록거부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 III.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요약)

요건	개요	근거법규		
		법1)	시행령2)	규정3)
법인격 요건	-상법상 주식회사 등	§249의3② 1호	§271의2 ①, ②	
자기자본 요건	-최저 자기자본	§249의3② 2호	§271의2③ <별표3>	
인력 요건	-임원결격사유	§249의3② 4호		§7-41의2① <별표2> 1.
	-전문인력	§249의3② 3호	§271의2④ 1호	§7-41의2① <별표2> 1.
물적 요건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사무장비, 보안설비·보완설비 등	§249의3② 3호	§271의2④ 2호	§7-41의2① <별표2>2.
대주주 요건	-대주주 적격성	§249의3② 5호	§271의2⑤ <별표2>	§7-41의2② <별표3>
건전경영 ·사회적 신용요건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49의3② 6호	§271의2 ⑦, ⑧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장치 등	§249의3② 7호, §44, §45	§271의2⑨, §50	§7-41의2① <별표2>4., §4-6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
- 3)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 IV. 단계별 세부내역

<b>1. 등록신청</b>	○ 금융위,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신청서 접수	
<b>2. 검토 의뢰</b>	○ 금융위, 금감원에 심사 검토 의뢰	
<b>3. 금감원 심사</b>	<b>심사요건</b>	<b>확인서류</b>
<b>법인격 요건</b>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등
<b>자기자본 요건</b>	○ 최저자기자본	-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금납입증명서 등
<b>인력 요건 (전문인력·임원)</b>	○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 영 제271조의2 제4항제1호,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인력요건에 해당할 것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규정 <별표2>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시험합격증, 교육수료증, 확인서 등 - 신원조회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등 - (필요시)실지조사
<b>물적 요건</b>	○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 영 제271조의2 제4항제2호,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사무장비, 보안설비, 보완설비 등을 구비할 것	- 관련 계약서 및 증빙자료 등 - (필요시)실지조사
<b>대주주 요건</b>	○ 영 <별표2> 및 규정 <별표3>의 요건을 갖출 것	-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등 - 기타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
<b>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b>	○ 신청인이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 영 제271조의2제7항, 제8항에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경영건전성 기준,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기타 사실확인서 등
<b>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b>	○ 법 제249조의3제2항제7호, 영 제271조의2 제9항,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할 것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적절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갖출 것	- 신청서상 내부통제기준 등 - (필요시)실지조사
<b>4 심사결과 통보</b>	○ 금감원, 금융위에 심사·확인 결과 통보	
<b>5 등록여부 결정</b>	○ 금융위, 등록 여부 결정 및 통보	

## V.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요령

### 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신청서(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2의 2호>)

#### 1. 상 호

상 호	
국문	영문
(가칭)	(가칭)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본점 소재지(전화 및 팩스번호 포함)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3. 대표자 및 임원(준법감시인 포함)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성명	기 간	회사명	부서명	직위

#### 기재상의 주의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준법감시인 포함)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4.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4-1.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5.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구 분	FY201△	FY201×	FY201◇	구 분	FY201△	FY201×	FY201◇
자산총계				영업수익			
부채총계				영업이익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 첨부서류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 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기준일:    년    월    일 현재)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문자격내용	증빙서류명칭 (등록번호/발급기관)	주요 경력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첨부서류

6-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7.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구 분	주 주 명	주식수	지분율(%)	비 고

■ 첨부서류

7-1.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명칭과 그 소유 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7-2.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8-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8-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8-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9.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9-1.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9-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9-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2.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 1. 상호

상 호	
국문	영문
① △△△△△△(주)	①
② (가칭) OOOO자산운용(주)	② (가칭)

- ① 등록신청일 현재 신청회사의 국문 및 영문 상호를 기재
- ② 등록 후 변경예정인 국문 및 영문 상호를 기재

#### <첨부서류>

- ① 정관 :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증 받은 정관
- ②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③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등 : 설립 또는 등록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증받은 서류
-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불가)

※ 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본점 소재지 (전화 및 팩스번호 포함)
①

- ① 예시) (012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00 (여의도동, XX빌딩)  
전화번호 : 02-111-1111    팩스번호 : 02-111-1112

#### <첨부서류>

- ①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 3. 대표자 및 임원 (준법감시인 포함)

임원수 :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선임 일자	임원자격 적합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① 대표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등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직위를 기재하며 등기임원에 대해서만 기재(준법감시인 포함)
- ②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기재
- ③ 임원이면서 출자자인 경우 그 소유주식수 및 출자비율을 기재
- ④ 대표경력만을 간략히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시의 양식을 참고하여 별도로 작성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을 자세히 기재(경력단절기간도 기재)

(예시)

성명	기 간	회사명	부서명	직위
홍길동	2016.12.21. ~ 현재	AA주식회사	주식운용부	차장
	2015.11. 1. ~ 2016.12.20.	(경력단절기간)	(미취업 상태)	
	2009. 1. 1. ~ 2015.10.31.	BB주식회사	채권운용팀	과장
진달래	2011. 2. 1. ~ 현재	BB주식회사	임원실	부사장

- ⑤ 상근임원인 경우 “상근”, 비상근임원인 경우 “비상근”으로 기재
- ⑥ 임원이면서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경우 “Y”, 전문인력이 아닌 경우 “N”으로 기재
- ⑦ 해당임원의 선임일자 기재
- ⑧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자격에 적합한 경우 “Y”로 기재  
- 단, 신청회사가 신청일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일임업자)이면서, 해당 임원이 '16.7.31 이전 선임됐을 경우, 자본시장법 제24조('16.7.31 삭제 이전 조문)의 임원자격 적용

## 〈첨부서류〉

- ① 이력서  
: 인감도장(개인)으로 날인한 이력서
- ②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 前직장의 경력증명서(원본) 및 現직장의 재직증명서(원본)  
\* 5년 기간내 경력단절기간(1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증명서(소속기관 확인서 포함) 미제출 사유(징계·처벌사실 등 포함)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확인한 서류 제출  
\*\* 준법감시인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각호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③ 신원조회 의뢰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등을 기재한 신원조회 의뢰서 (붙임1 참조)
- ④ 소속기관 확인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 소속기관의 처벌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제재사실 등을 표기할 경우 제외)
- ⑤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 임원 요건 확인서에 인감도장(개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회사 형태, 임원 선임일자에 따라 양식을 구분하여 제출 (단, 붙임 2-4 양식은 법인인감 날인)

구분	임원선임일자	제출양식	확인자	확인내용
신청일	'16.7.31 이전	붙임 2-1	임원 본인	자본시장법 제24조('16.7.31 이전 조문)
현재 금융회사	'16.8.1 이후	붙임 2-2	임원 본인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
		붙임 2-3	대표이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신설법인	-	붙임 2-2	임원 본인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
		붙임 2-3	대표이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 준법감시인이 지배구조법에 따른 요건(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제1호)을 충족함을 확인한 서류, 인감도장(개인)으로 날인(붙임 2-4 참조)

- ⑥ 신용정보조회서(원본)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방문·우편)받은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최근 5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사본 및 신용정보 열람(발급)신청서(본인 자필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

- ⑦ 개인 인감증명서(원본)

## 4.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① 등록업무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붙임3 참조)

## 5.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구분	FY201X	FY201◇	FY201△	구분	FY201X	FY201◇	FY201△
자산총계				영업수익			
부채총계				영업이익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 <첨부서류>

-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감사보고서)
  - ②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 설립 후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은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로 같음

감사보고서가 아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독립성을 갖춘 회계법인(ex.회사의 기장 대리 업체 등은 불가)에서 재무상태를 확인 받은 후 증빙서류(ex.재무제표확인원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신청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중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첨부된 경우 포함)를 통해 이미 공시된 자료의 경우 동 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자료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 6-1. 전문인력의 명단

(기준일: 년 월 일 현재)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자격내용	증빙서류명칭 (등록번호/발급기관)	전문인력 관련 주요 경력
1			①		②
2					
⋮					

① 증권운용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등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구체적 적용법조를 기재

(예시) ■ 증권(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마. 1. 가. 8))

■ 부동산(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마. 2. 다. 2))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마. 2의2. 1.) / 1. 가, 1))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1.인력에 관한 요건 중 “마” 및 별표13 참고

② 경력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주요  
경력을 간략히 기재

### <첨부서류>

① 전문인력의 자격확인서류

: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증(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금융투자  
전문인력 등록 확인서(과거 등록된 이력이 있는 경우), 시험합격증,  
교육수료증 등 자격확인서(붙임 4 참조)

※ 등록증, 시험합격증이 없는 경우 협회 등록 시 필요한 운용경력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갈음

②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현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전문  
자격 인정을 위하여 운용경력 또는 재직경력이 필요한 전문  
인력의 경우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 후 등록  
교육을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직·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도 포함)

③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의료보험증 사본 등

(기관장 직인이 표시되는 형태로 출력, 붙임 5 참조)

④ 그 밖의 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6-2.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① 사무공간 배치현황(부서명, 주출입문 등 표시, 붙임6 참조)
- ② 사무실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 ③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현황(전산설비 흐름도 포함)
- ④ 전산설비, 보안설비·보완설비 등 구입 증빙  
: 위탁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으로 설비 구비를 입증
- ⑤ 비상계획(BCP, Business Contingency Plan) 등

## 7. 대주주나 외국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구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1	홍길동	000,000	00.0	최대주주
2	(주)대한민국	00,000	00.0	주요주주
⋮				

- ①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 또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성명(명칭),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

### <첨부서류>

- ① 등록신청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②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 대주주 결격요건을 나열하고 각 항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을 본인 스스로 확인한 서류(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붙임7 참조)

③ 신용정보조회서(원본)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방문 · 우편)받은 '신용정보조회서' (최근 5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법인인 경우 '기업신용정보조회서' 제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사본 및 신용정보 열람(발급)신청서(본인 자필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

④ 그 밖의 대주주 요건(출자자금 소명 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추가 제출>**

- ①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 : 최대주주인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주주명부(기준일 명시)  
- 최대주주인 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② 최대주주 개황자료 : 주소, 대표자, 연혁,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자료 등
- ③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사실상 지배자가 스스로 확인한 서류 (붙임7 참조)

**<대주주 범위>**

구분	세부사항
<b>최대주주</b>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주주 상호간 특수관계인에 해당 시 복수의 최대주주 사례 발생 가능
<b>최대주주의 최대주주</b>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자 포함)
<b>최대주주의 대표자</b>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b>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b>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참고
<b>주요주주</b>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 등

##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 ②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용 작성
- ③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 대표이사가 확인한 서류 (붙임8 참조)
- ④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9.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① 합작계약서 등 : 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한 신청시에 한함
- ② 위임장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 ③ 신청인이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신청인 본인의 확인서, 붙임9 참조)
- ④ 신용정보조회서(원본)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방문·우편) 받은 '기업신용정보조회서'(최근 3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 ⑤ 그 밖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붙임1 > 신원조회 의뢰서 양식

### 신원조회 의뢰서

#### 조회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sup>1</sup>	등록기준지 <sup>2</sup>	조회기관 <sup>3</sup>

[기재시 유의사항]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등록번호 기재
2. 등록기준지(舊본적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현 등록기준지를 기재
3. 등록기준지 소재 조회기관 및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기재

#### 조회내용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 붙임2-1 > 임원 확인서 양식

### 임원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재임(재직) 중이었던라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직)한 임(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직)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자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한국은행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예금자보호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지주회사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공사채등록법, 공인회계사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관한법률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성 명 : (인)

## 〈 붙임2-2 〉 임원 확인서 양식

### 임원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지배구조법 또는 동법에 따른 금융 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 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임원으로 재직할 금융투자업자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본인은 상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7-41조의2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성 명 : (인)

〈 붙임2-3 〉 임원요건 충족 확인서(대표이사 법인인감 확인)

## 임원요건 충족 확인서

당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 중 당사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 ○ ○ (인)

〈 붙임2-4 〉 준법감시인 확인서

## 준법감시인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본인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본인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또는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준법감시인 ○ ○ ○ (인)

## < 붙임3 > 업무영위방법 작성요령

### 1. 신청 개요

회사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 :</li> <li>◆ 영문 :</li> </ul>		
소재지			
	인가(등록)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현재 영위중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등록신청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p>*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p>		
임원구성	직위	성명	주요이력
최대주주			
주주구성 <sup>1)</sup>	주주명	지분율	구분 <sup>2)</sup>

주1) 대주주요건 심사대상 및 5% 이상은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고 나머지는 통합하여 기타로 표시

2)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구분

3) 칸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삽입 또는 삭제하여 적절하게 조정

## 2. 심사대상 대주주 현황

대주주현황	주주명	구분 <sup>1)</sup>	의결권 있는 주식수	비율(%)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대주주와의 관계 예) 배우자, 자녀 등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주요주주				

주 1)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등으로 구분

※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지점인 경우 : 외국금융투자업자명칭 기재

※ 필요시 대주주 등 신청인의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도표 첨부

### 3. 자기자본 현황

① 자기자본 (기준일 : 20 .00.00 현재) : \_\_\_\_\_ 억원

※ 최근 사업연도가 없거나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증자 등의 사유로 자기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재

② 최저자기자본 : (1) + (2) = \_\_\_\_\_ 억원

※ 최저자기자본은 신청인이 투자자문·일임업 등 자본시장법상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

(1) 기존 인가·등록단위에 대한 유지 자기자본 : \_\_\_\_\_ 억원

(단위: 억원)

인가(등록)단위	금융투자업 종류	투자자 유형	최저 자기자본	유지 자기자본*
①	②	③		
합 계				

\* 유지자기자본 : 인가(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

- ① 인가(등록) 단위 : 5-1-1 등 해당하는 업무단위를 기재
- ② 금융투자업의 종류 : 투자자문·일임업 등 해당사항 기재
- ③ 투자자의 유형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등 기재

(2)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 10억원

## 4. 물적 설비 현황

\* 등록심사 요건 해당 내용을 표 안에 상세하게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 전산설비 등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

심사항목	관련 내용
<b>(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b>	
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 구축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업무 영위에 적합한 전산시스템 보유 및 가용성·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산기</li> <li>- DB서버, 매매관련(주문관리, 결제관리, 원장관리 등) 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li> <li>-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li> <li>-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li> </ul> </li> <li>■ 내부 네트워킹, 전용회선 구축 등 통신시스템 구성</li> </ul>
② 침입탐지·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성이 검증된 보안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등</li> </ul> </li> </ul>
③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이용자 확인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산기 및 각종 서버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및 사용 통제방안 구비</li> <li>-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log-in) 기록 유지 등 정보유출대책 마련</li> </ul> </li> <li>■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 출입 통제(카드키, 비밀번호 이용 등) 및 미승인된 출입자의 방문일지 기록</li> <li>- 전산실 출입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CCTV 배치</li> </ul> </li> </ul>
④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및 백업자료 별도 보관·관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정보 등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업자료의 소산보관장소 마련</li> <li>- 기간별 소산보관대책 마련</li> <li>- 백업과 관련한 외부업체와의 계약 등</li> </ul> </li> </ul>

## (2)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p>①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 확보 등 정보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설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부서간 정보차단벽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부서간 별도층 배치 등 업무공간 구분</li> <li>- 이해상충부서간 출입통제(카드키 등)</li> </ul> </li> </ul>
<p>②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사무공간(총 전용면적 및 1인당 전용면적 기재) 등 충분한 업무공간 및 부서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확보</li> </ul>
<p>③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의 감독·검사 시 법적 장애가 없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 임대, 위탁 등 제한적 확보 여부 점검</li> </ul> </li> </ul>

## (3)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p>①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설비의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 보안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비상발전기 등 구비</li> <li>- 전산실 내 CCTV 사각지대 제거</li> <li>- 장애에 대비한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의 이중화</li> </ul> </li> <li>■ 사무실 및 전산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미인가자 접근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장소 CCTV 설치 및 녹화기록 유지</li> </ul> </li> </ul>
<p>② 파업 등 불시사태 대비 비상계획 마련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P(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li> </ul>
<p>③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복구시스템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li> <li>-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센터 마련</li> <li>- 재해복구센터 내 단말기 등 백업체계 구축</li> </ul> </li> </ul>
<p>④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 마련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P를 포함한 재해복구 훈련 실시</li> <li>- 재해복구 훈련시 복구테스트 결과</li> </ul> </li> </ul>

## 5. 이해상충 방지체계 현황

\* 등록심사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1)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관련 내용
①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	■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②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 이해상충 고지방법, 거래 제한 및 주의 목록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및 절차
③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 준법감시인 등의 상시점검 및 정기점검 등 점검주기와 대상 및 필요한 시스템 구축여부
④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2)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용
①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 (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 되어 있을 것	■ 정보교류차단 대상 영업 및 계열회사 등과 정보제공, 임직원의 겸직 또는 파견,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금지 등의 정보차단장치와 관련한 차단대상과 허용사항 등
②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내부통제기준에 명시된 정보차단벽 통과 절차 및 준수사항, 준법감시인 확인 사항 등
③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6. 업무영위 방법

### ① 조직체계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체계의 직위·성명 등을 기재하며 담당업무를 간단하게 기재한 조직도를 첨부

### ② 업무영위 방법

- 회사개황, 등록신청 배경, 사업목표, 사업전략, 주된 타겟시장 등을 기재

## < 붙임4 >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증 및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확인서

###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증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3****-1*****
자격구분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일자	2012/12/12
등록번호	211xxxx123	소속회사	홍길동 자산운용
업무범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위 사람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임을 확인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한국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전문인력/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확인서

본 확인서의 사람은 별첨과 같이 등록이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금융투자전문인력 / 투자권유대행인 상세확인표

2017년 00월 00일

인 국 금 용 투 지 협 회



금융투자전문인력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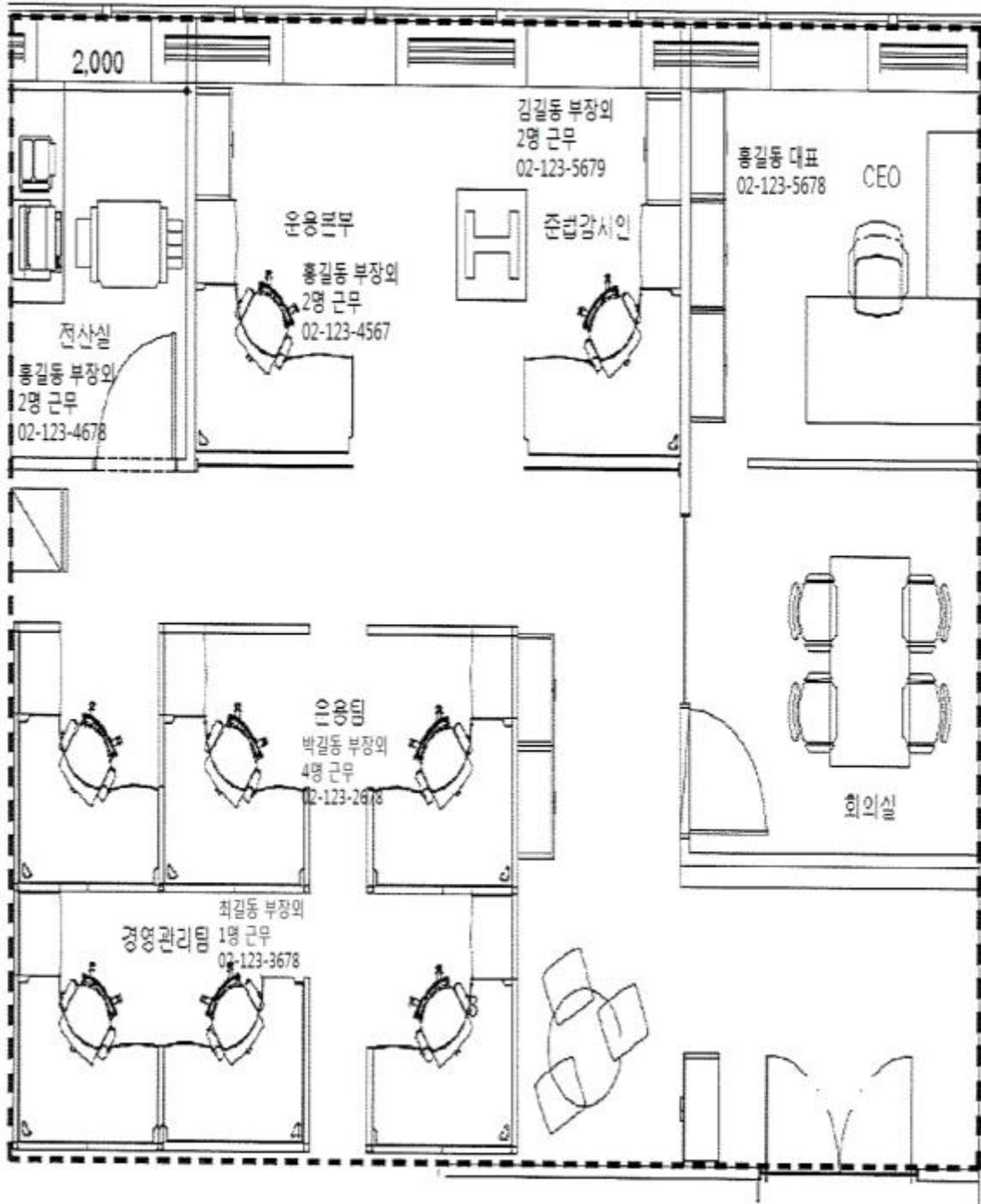
성명	주연등록번호	소속회사	등록번호	자격구분	업무영위	등록일	말소일
홍길동	000000-000000	00자산운용 주식회사	211200000	투자자신용용사	금융투자상품	20120001	20151130

# < 붙임5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번호 : JJJ123456789011234			Page : 1/1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발급일 현재까지 가입 신고된 가입자 중 발급대상으로 요청한 가입자의 명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발급 관리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개인정보이므로 외부로 유출되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은 공단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장명		홍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업장관리번호 -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NONE		12345678901 - 000	
일련 번호	가 입 자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증번호	주민번호	성명		
1	12345678900	83**** - 1*****	홍길동	2014-06-02	
2	12345678901	83**** - 2*****	김길동	2011-08-01	
3	12345678902	83**** - 1*****	박길동	2011-02-07	
발급일 기준 사업장 가입자(상실자) 발급건수 총    3    명					
※ 주민등록번호중 일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특수문자로 대체하였습니다.					
2015.1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 붙임6 > 사무공간 배치현황



※ 전산실(설비) 및 CCTV 위치 표시

## < 붙임7 > 대주주 확인서 양식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서명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 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2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회사명)

(인)

[대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서명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71조의2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2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회사명)

(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서명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소득재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71조의2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2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성 명 : (인)

**< 붙임8 > 이해상충방지체계 관련 대표이사 확인서**

이해상충방지체계 관련 대표이사 확인서

당사 \_\_\_\_\_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2항 제7호에 따른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 ○    (인)

## < 붙임9 > 신청인(본인) 확인서 양식

### 신청인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271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회사명)

(인)

<첨부>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VI. 물적설비 위탁 관련 안내사항

- (관련법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및 정상적 업무 영위를 위해 충분한 전산설비 등을 구축할 필요 (법§249의3②)
  -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위하는 업무 중 일부는 제삼자에게 위탁이 가능 (법§42①)하므로, 물적설비와 관련한 외부 위탁을 폭넓게 인정
- (위탁가능범위) 전산설비·통신수단\* 및 펀드회계시스템·펀드기준 가격산정시스템\*\*은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인정
  - \* 단, 서비스의 안정성, 방화벽 등 보안정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
  - \*\*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설비 및 전문인력 구비 필요
  - 또한,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전산 전담인력은 채용이 불필요하며 전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도 외부 위탁 허용
  - 다만, 부서간 정보차단벽(녹취설비, 메신저기록설비 등)은 외부 위탁이 불가하므로 이를 직접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

### <위탁 가능한 물적설비 세부 현황>

구분	세부 항목	위탁 여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가능
	② 침입탐지 및 침입방지 시스템, 방화벽 구축 여부	가능
	③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가능
	④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등	가능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① 이해상충 부서간 정보차단벽 설치	불가
	②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확보 여부	불가
	③ 감독기관 등의 감독·검사에 필요한 업무공간	불가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① 보안 설비의 확보 여부	가능
	② 파업 등 불시사태 대비 비상계획 마련 여부	불가
	③ 정전 등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복구시스템 구축	가능
	④ 비상사태 발생시 시현가능한 비상계획 마련 여부	불가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2. 물적설비

## VII.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후 주요 안내사항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이후 수행해야할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 각종 법규상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숙지하시어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1. EDES, Fines 및 CPC 가입

□ 금감원 담당자가 안내한 금융회사코드를 확인한 후 다음 2개의 홈페이지에 가입

※ 다음의 홈페이지에 기 가입한 회사(투자자문, 일임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 ①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es.fss.or.kr) 가입

-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간 문서를 전자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 금융회사 보고·공시사항 제출 등 기존에 서면으로 처리하던 문서 작업을 모두 EDES상에서 처리함이 원칙
- 홈페이지 초기화면상 '신청서다운로드'를 클릭하여 EDES에 가입하고, '시스템이용절차'를 숙지하여 공문 송수신 작업 처리

#### ② 금융정보교환망(fines.fss.or.kr) 가입 및 CPC지원 시스템에 대한 권한 신청

- 홈페이지 초기화면상 '사용자등록신청'을 클릭하여 FINES에 가입하고, '사용자매뉴얼'을 숙지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 및 CPC지원 시스템에 대한 권한 신청

## 2. 상호 및 결산월 변경

- ① 등록 직후 상호 변경을 진행한 후, 자본시장법 제418조에 따라 상호변경사항을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통해 보고
  - 동 사항에 대한 보고는 자산운용총괄팀으로 지정
- ②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의 회계기간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자본시장법 시행규칙 §6①항),
  - 회계처리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함

## 3. 감독당국 보고의무(요약)

- ※ 지배구조법 제정 이후 임원, 주요업무집행책임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준법감시인, 대주주 변경 등의 보고 관련 근거 법규가 자본시장법에서 **지배구조법**으로 바뀌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배구조법 §7, §8, §19, §30, §31 등 참조)

### 1.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보고사항(법 § 418 등)

- ①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보고사항(법 § 418, 영 § 371, 규정 § 2-16)**
  - 작성양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13호의 붙임 참고
  - 전자문서교환시스템으로 전 문서를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든 후 전송 (공문에 반드시 '직인'이 있어야 원본으로 인정)

## 자본시장법상 보고사항 등 제출기한 및 첨부서류

※ (공통 첨부서류)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보고사항	제출기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호의 변경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경 후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호의 등기부등본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관 중요사항의 변경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구조문대비표 및 정관 각 1부</li> <li>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li> </ul> <p><b>(주의) '상호변경의 경우</b> 정관 변경사항이기는 하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정관의 중요사항에 불포함 ☞ <b>'상호의 변경보고'로서 보고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대주주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p><b>(주의)</b> 자본금 증가에 따른 지분변동시, 별도로 <b>'자본금 증가 보고' 제출 필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투자업 일부폐지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지를 위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이사회 의사록 및 주주총회의사록 등 사본1부</li> <li>종전 업무에 대한 인가.등록등 확인서류 사본 1부</li> <li>폐지를 위한 신문공고문 사본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부등본 등 위치 변경예정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투자업 일부양수도 보고</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사유 발생일 부터 7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수·도하고자 하는 영업의 범위 및 양수·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분의 자산액, 매출액 또는 영업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에 관한 서류 각 1부</li> <li>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li> <li>양수도 당사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li> <li>양수도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사본 1부</li> <li>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계획에 관한 서류 1부</li> <li>영업양수·도 가액, 그 산출근거 및 이에 관한 평가기관의 요약평가의견 1부</li> </ul>

보고사항	제출기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금 증가보고</li> </ul>	사유 발생일 부터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금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 등본 등 1부</li> <li>(주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지분변동시,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주주 변경 및 대주주 등 지분변동 보고' 제출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벌 등 사실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분 또는 처벌에 관한 조치결정서, 판결서 등 사본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송 당사자 해당사실 보고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산신청, 해산사유 해당사실 보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생절차 개시 관련 보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사무소의 신설, 폐지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부등본 등 신설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음, 수표 부도발생 등 보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점포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 및 영업 중지 및 위치변경 등</li> </ul>	사유 발생일 부터 7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정지, 등록 취소 및 부도 등</li> </ul>	지체없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본점에 관한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정지, 등록 취소 및 부도 등</li> </ul>	지체없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 변경, 위치변경 등</li> </ul>	사유 발생일 부터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점 등의 신설, 폐지보고</li> </ul>	사유 발생한 날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점 등의 영업중지, 재개 보고</li> </ul>	해당하 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채권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절차 이행 계획 1부</li> </ul>

2 대주주 신용공여 거래보고(법 §34④, 영 §37, 규정 §3-71~74)

※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규정

(☞ 위반시 금융투자업자·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 과징금 및 형사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원칙적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지배구조법 §2.vi)와 그의 특수관계인(지배구조법 시행령 §3①)에 대하여 신용공여\* 금지 (법 §34②)

\* 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

□ (예외적 허용) 예외적으로 신용공여가 허용되는 경우 (법 §34② 및 영 §38④)

① 임원에 대하여 연간 급여액(근속기간 중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지급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하는 신용공여

②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등

보고사항	제출기한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열회사 발행 주식·채권·약속어음 소유보고</li> </ul>	지체없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열회사 발행 주식등의 취득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사본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주주 신용공여 거래 분기별 보고</li> </ul>	-	(※ 필수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회사 발행 주식 등 소유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기 말 현재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소유 규모</li> <li>분기 중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증감 내역</li> <li>취득가격이나 처분가격</li> <li>취득목적, 분기말 현재 보유지분율, 분기말 현재 시가, 당해 분기 중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거래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기 말 현재 신용공여의 규모</li> <li>분기 중 신용공여 증감금액</li> <li>신용공여의 거래조건</li> <li>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주요 특별약정 내용</li> </ul>

### 3 그 밖에 기타 보고 사항

보고사항	제출기한	첨부서류
· 집합투자기구 회계감사인 선임, 교체 보고	선임일/ 교체일로 부터 1주일 이내	·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증명서류 1부 ※ 보고인이 투자회사인 경우, 감독이사의 동의서
· 운용사의 위험관리지침 제정 (변경) 보고	제정 / 변경한 때	· 위험관리지침 1부 · 변경보고의 경우 신규조문대비표 1부

## 2. 공시사항(법 § 33②③, 영 § 36②④⑤, 규정 § 3-70)

- 법 제33조 제2항 등에 따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영업보고서)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함
- 법 제33조 제3항 등에서 정하는 경영공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감독원)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함
- 공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한 「금융투자회사의영업및업무에관한규정」 등에 따름
- 공시사항 발생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내용을 EDES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 보고

### 3. 업무보고서(법 § 33①④⑤, 영 § 36①③⑦, 규정 § 3-66①③⑥)

#### ○ 업무보고서 작성양식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17호

- 법제처(law.go.kr) 홈페이지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검색 후 '첨부파일' 메뉴에 '업무보고서.zip'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으며 이중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가 작성양식임

※ 실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금융정보교환망에 작성대상 업무보고서 양식이 시스템화되어 있으나 간혹 제·개정된 보고서 항목이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가 있으므로 기한내 원활한 업무보고서 제출을 위해서는 업무보고서 제출 기일 이전에 법제처에서 제·개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

#### ○ 업무보고서 제출주기 및 작성방법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파일 가장 처음 sheet '목록'에 업무 보고서 항목별 작성대상과 제출주기가 명시되어 있음

- 작성대상 중 '공통', '집합투자업자'로 표시되어 있는 업무보고서 항목에 대하여 금융정보교환망에서 직접 기입한 후 전송(반드시 '전송' 버튼을 눌러 제출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필요)

- 제출주기는 '연', '반기', '분기', '월'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출 주기가 '연', '반기', '분기'인 업무보고서 항목은 각 기준일(연말, 반기말,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제출주기가 '월'인 업무보고서 항목은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다만, 업무보고서 GA158 '감사인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 중 반기별 감사 또는 검토의견에 관한 사항은 90일 이내에 제출

## ○ 업무보고서의 수정

-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과정, 금융감독원의 검사과정 또는 자산운용사의 자체 인지 등을 통하여 기재출된 업무보고서의 수정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기재출된 업무보고서를 수정

※ Fines 금융정보교환망(fines.fss.or.kr) 접속 - [보고서 작성 및 전송] - [업무보고서 마감해지 요청]

## 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보고의무

### 1] 설정·설립(변경) 및 해지·해산 보고(법§249조의6②④, §192①②, §202①)

- 설정·설립보고서 및 변경보고서 작성양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5의5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보고서[별첨1]를 참고

\* 변경보고서 설정·설립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변경사유 및 내용과 변경대비표를 함께 제출

- 해지·해산보고서 작성양식은 투자신탁 해지 보고는 별도 양식이 없으며, 투자회사등의 해산 보고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8호 투자회사등 해산 보고서를 참고

- 설정·설립(변경) 및 해지·해산 보고는 금융정보교환망(FINES) 통해 금융감독원 펀드심사팀으로 보고

### 2] 특정사유 발생 보고(법§249조의7④)

- 작성양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5의7호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 [별첨3]를 참고

- 레버리지 비율 초과, 부실자산 발생 등 특정사유\* 발생시 3영업일 이내 보고(영§271조의10⑭)

\* ① 법 제249조의7제1항의 한도 초과, ② 부실자산 발생, ③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④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만기 변경이나 만기상환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 보고사유 발생시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통해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으로 보고

### ③ 정기보고서(법§249조의7③, 영§271조의10⑬, 규정§7-41조의7⑧)

- 작성양식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5의6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정기보고서를 참고
- 금융정보교환망(FINES) “보고서 작성 및 전송” 메뉴의 “보고서 작성기”를 통해 제출
- 정기보고서 보고기준일 및 제출기한

① 보고기준일(법§249조의7③) : 매분기말

② 제출기한(영§271조의10⑬)

-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별첨1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보고

<제45의5호>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6 제2항(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변경)내역을 보고합니다.

1.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
2. 보고일[설정·설립(변경)일] :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4. 변경사유 :
5. 변경내용 :

붙 임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보고

○ ○ ○ 대표이사 (인)

작성 자 :	(직 위)
--------	-------

전화번호 :
--------

#### ※ 작성방법

1. 변경보고의 경우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추가 기재하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변경전·후 대비표를 함께 제출한다.

(붙임)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보고

###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명칭 <sup>1)</sup>	집합투자기구 코드 <sup>2)</sup>	형태별 종류 <sup>3)</sup>	특수형태 표시 <sup>4)</sup>	추가형·단위형	개방형·폐쇄형
설정·설립일	만기일 <sup>5)</sup>	전문투자자 대상 여부 <sup>6)</sup>	고난도 투자상품 여부 <sup>7)</sup>	경영참여 목적 여부 <sup>8)</sup>	손익 차등형 여부 <sup>9)</sup>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규약상의 정식 명칭을 기재한다.
2.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를 기재한다.
3. “형태별 종류”는 법 제9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여부를 기재한다.
4. “특수형태 표시”에는 법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전환형, 모자형 여부를 기재한다.
5. 만기일은 계약(존속)기간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일자를 기재한다.
6.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7.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영 제2조 제7호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8. 법 제249조의7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하여 투자전략이 “경영참여목적”인지 여부를 기재한다.
9. 법 제249조의8 제8항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차등 설정 여부를 기재한다.

### 2. 관련 집합투자기구 현황

집합투자기구 명칭 <sup>1)</sup>	집합투자기구 코드	구분 <sup>1)</sup>	구분 <sup>2)</sup>	비고 <sup>2)</sup>

#### 기재상의 주의

1. 종류형, 손익차등형, 모자형, 전환형 등 보고대상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과 형태 구분(관련성)을 기재한다.
2. 비교에는 모자형의 경우 관련 모/자집합투자기구 여부를, 종류형은 클래스별 차이 등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 집합투자기구별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집합투자기구 현황을 보고한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가 상이한 경우 별도 보고(예 : 모자형 → 모펀드와 자펀드 각각 보고)

###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에 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 명칭 <sup>1)</sup>	집합투자업자 코드 <sup>1)</sup>	신탁업자 명칭 <sup>1)</sup>	신탁업자 코드 <sup>1)</sup>	발기인 명칭 <sup>2)</sup>	감독이사 명칭 <sup>2)</sup>	종합 금융투자 사업자 명칭 <sup>1)</sup>	종합 금융투자 사업자 코드 <sup>1)</sup>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해당 회사명(금감원 제공 코드)을 입력한다.
2. 투자회사인 경우 기재한다.

### 4.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구 분	규약·정관 해당조문 <sup>1)</sup>	비 고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 규약·정관의 해당 조문을 기재(예: 제5조)하고, 규약·정관에 내용이 없는 경우 비고에 기재한다.

###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주요 투자대상자산 <sup>1)</sup>	주요 투자대상지역 <sup>2)</sup>	투자대상자산 관련 규약·정관 해당조문 <sup>3)</sup>	레버리지 한도 <sup>4)</sup>	투자목적회사 활용 여부	비시장성자산 50% 초과 투자 가능 여부 <sup>5)</sup>

금전대여 (대출) 운용 가능 여부	금전대여 (대출) 운용시 투자자 범위 준수 여부 <sup>6)</sup>	금전대여 (대출) 운용시 비중 <sup>6)</sup>	금전대여 (대출) 가능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시 90% 초과 제한 여부 <sup>7)</sup>	금전대여 (대출) 가능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시 전문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인지 여부 <sup>7)</sup>

#### 기재상의 주의

1. 주로 투자하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류를 기재한다.(주식/채권/파생/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재간접/기타 등)
2. 주된 투자대상 지역을 국내/해외로 기재한다.
3. 집합투자기구 규약·정관의 투자대상자산 관련 해당 조문을 기재(예: 제5조)한다.

4. 법 제249조의7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 대비 레버리지(차입,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채무보증·담보제공 등으로 투자목적회사 레버리지 합산금액 기준) 비율 한도를 기재한다.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비시장성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를 기재한다.
6. 집합투자재산을 금전의 대여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49조의7 제2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 제한 여부 및 집합투자재산 총액 대비 금전 대여 비중을 기재한다.(영 제271조의10 제10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7. 규정 제7-41조의7 제7항에 따른 대출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 관련 투자자 제한 및 투자한도 준수 여부를 기재한다.

## 6.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투자위험 내용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특성에 따른 핵심위험 요인을 기재한다.

## 7.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사항<sup>1)</sup>

(단위 : 억원, %)

투자목적회사의 상호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사항						사원 또는 주주가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	비고
	상호	업종 <sup>2)</sup>	업종 코드 <sup>3)</sup>	대주주에 관한 사항				
				성명(상호)	업종	출자비율 <sup>4)</sup>		

### 기재상의 주의

1. 영 제271조의19 제2항 제2호의 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업종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업태 또는 종목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기재한다.
3. 업종코드에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를 주된 업종별로 기재한다.
4. 출자비율은 '의결권 있는 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다만, 출자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변경보고한다.

## 8.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출자 비율<sup>1)</sup>

(단위 : 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명	출자가액 <sup>2)</sup>	출자비율 <sup>2)</sup> (%)	금융회사 여부 <sup>3)</sup>

### 기재상의 주의

1. 경영참여목적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이고, 영 제271조의9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작성한다.
  2.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동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로 그 출자가액 및 출자비율을 기재한다. 다만, 유한책임사원인 경우 상호(성명)등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3. 금융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 법 제249조의6 제2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설정·설립 보고 이후 동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보고한다.

### ■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
  3.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의 사본(집합투자기구 보고를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와 다른 경우만 제출)
    -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
    - 나. 신탁업자
    -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만 해당)
  4. 투자회사로서 감독이사를 두는 경우 그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5.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제외)
- ※ 변경 보고시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첨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변경전·후 대비표를 함께 제출)

## < 별첨1 > 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변경) 및 해지 보고 방법

1. 금융정보교환망(FINES) 접속(fines.fss.or.kr)하여 인증서로그인 후 '전체메뉴-집합투자기구' 클릭



2. 화면 좌측 메뉴 중 '일반사모펀드 보고(신)' 클릭



3. 하위 메뉴 중 '설정(립)보고', '변경보고' 또는 '해지보고'를 선택 하여 해당 내용 입력 및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

(1) 보고서 내용 등 작성방법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에 따른 해당 보고서 서식상 '기재사항 주의' 등 참조

### < 별첨3 >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지 1] 별책서식1 <제45의7호>

####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 제4항 또는 제249조의12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정사유 발생내역을 보고합니다.

1. 사모집합투자기구 명칭 :
2. 보고일(사유 발생일) :
3. 집합투자업자/업무집행사원 명칭 :

붙 임 :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

○ ○ ○ 대표이사 (인)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1)

##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

집합투자기구명칭	집합투자기구코드	재간접펀드 여부	TRS 거래 여부	설정일	만기일	보고항목	보고내용발생일	보고내용	환매연기 규모	보고사유 (원인)	처리방안	개방형 / 폐쇄형	추가형 / 단위형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전담중개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코드에는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한 표준코드를 기재한다.
2. 보고항목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3. 보고내용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6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한다.
  - 제1호의 경우 : 한도를 초과한 비율
  - 제2호의 경우 : 부실이 발생한 투자자산, 보유수량, 평가금액(상각이전의 평가금액), 상각금액(해당 상각금액), 상각률(상각금액/평가금액 \* 100), 부실사유(발행인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파산절차진행), 부실단계(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 제3호의 경우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내용(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4. 환매연기 규모에는 실제 환매연기된 부분의 설정원본 금액을 기재한다.
5. 보고사유(원인)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6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6. 처리방안의 경우 영 제271조의10 제16항 제1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 **■** 첨부서류

특정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특정사유 발생 보고

집합투자기구명칭	집합투자기구코드	재간접펀드 여부	TRS 거래 여부	설립일	보고항목	보고내용발생일	보고내용	환매연기 규모	보고사유 (원인)	처리방안	개방형 / 폐쇄형	추가형 / 단위형	업무집행사원	전담중개업자	기타업무수탁기관

### 기재상의 주의

1. 집합투자기구코드에는 금융감독원이 부여한 회사코드를 기재한다.
2. 보고항목의 경우 영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3. 보고내용의 경우 영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한다.
  - 제1호의 경우 : 한도를 초과한 비율
  - 제2호의 경우 : 부실이 발생한 투자자산, 보유수량, 평가금액(상각이전의 평가금액), 상각금액(해당 상각금액), 상각률(상각금액/평가금액 \* 100), 부실사유(발행인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파산절차진행), 부실단계(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 제3호의 경우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내용(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포함)
4. 환매연기 규모에는 실제 환매연기된 부분의 설정원본 금액을 기재한다.
5. 보고사유(원인)의 경우 영 제271조의10제16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6. 처리방안의 경우 영 제271조의10제16항제1호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7. 개방형/폐쇄형, 추가형/단위형의 경우 해당사항 있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 ■ 첨부서류

특정사유 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해외투자 및 외국환거래 관련 안내사항

### 1. 외국환취급기관 등록 제도

- 자산운용사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8)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외국환거래취급기관”으로 등록\*이 필요 (외국환거래법§8, 영§13·14, 규정§2-14)

\* '16.6월 국회에서 외국환취급기관 미등록 운용사의 외국환업무 취급에 대한 문제제기

- 외국환업무란 펀드의 운용 목적으로 역외펀드에 투자, 해외증권 및 해외부동산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외환거래를 의미

- 자산운용사가 등록을 하기 위한 조건은 자기자본 10억원 초과, 2명 이상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13 및 금융투자업규정§2-11 참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취급하였다면 형사벌칙\*이 부과 될 수 있음

\* 외국환거래법(§2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2. 해외직접투자 등 신고제도

□ 집합투자기구 운용을 위한 외화증권매매(해외송금) 등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성격에 따라 금융위, 금감원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18, 외국환거래법 시행령§8·9, 외국환거래규정§9-15조의2, 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3·4·8)

○ 자산운용사가 직접 또는 펀드(신탁형)를 통하여 외국 법인에 지분증권을 10% 이상 취득 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신고·보고하여야 함

- 역외금융회사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위에 신고 또는 보고\*

\* 금융위 신고·보고 사항은 감독원장을 경유하여 금융위에 제출(해외진출규정 §3④)

- 역외금융회사의 非금융·보험업 및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지사(지점/사무소) 설치 신고·보고는 금감원 자산운용제도팀에 신고·보고\*

\* 금융회사등의 해외 진출에 관한 규정 §3, §4, §8 참조

○ 이외의 외국환업무는 한국은행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함

## 6.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련 안내사항

### 1. 임직원의 자기매매 관련 규제체계

□ 자본시장법(§63)\*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 매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 구. 증권거래법은 월급여 50%이내의 증권저축 계좌만 허용

○ 다음의 의무 등을 부과

- 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한 매매

- 계좌개설 사실 신고- 분기(월)별 매매명세 통지

- 소속회사가 정한 내부통제기준 준수 등

□ 다만, 일부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 또는 이와 연관된 불건전거래 행위로 고객과의 이해상충 및 금융사고를 유발될 가능성

○ 이에 금융투자업계와 T/F를 구성하여 자기매매 규제 관련 협의를 거쳐, 자율규제 강화를 추진

-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각 회사별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 ('15년 하반기~'16년 상반기)

### 주요 표준내부통제기준

-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위탁수수료 부과기준 마련시 고객과 임직원간 차별 금지(\$74②)
-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명의 계좌까지 신고범위 확대(\$75⑤)
- 상장지분증권 매매시 준법감시인 등 책임자의 사전승인 필요 (다만, 매매 필터링 시스템 구축시 사전승인 불요)(\$76조의2①②)
- 연간투자금액 및 누적투자금액을 각각 연봉 이내 및 5억원으로 제한(다만, 상속·증여 등의 경우 예외)(\$76조의2⑤)
- 장내파생상품 및 ELW 등 투기성 높은 상품 거래제한((\$76조의2⑦))

## 2. 자기매매 규제의 목표

### □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불신요인의 하나로 작용했던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을 개선하여 국민신뢰 제고

### □ 주식시장 활성화 기반 강화

- 과도한 자기매매관행 근절을 계기로 투자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투자 문화 확립 및 주식시장 활성화

### □ 금융사고 예방

- 자기매매과정에서 거액손실 발생시 고객 또는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

### □ 금융산업의 선진화 기여

- 후진적 자기매매 관행 대신 선진화된 금융산업의 확립 및 경쟁력 제고

## 7. 지배구조법 도입 관련 주요 안내사항

※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16.8.1.부터 시행

-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산운용사도 지배구조법규에 따라 강화된 지배구조 관련 다양한 의무사항을 이행할 필요

### 1. 특수관계인의 범위 확대(지배구조법시행령 § 3)

- 자본시장법령에서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부계혈족은 6촌 이내, 모계혈족은 3촌 이내로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
  - 지배구조법령에서는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혈족을 6촌 이내로 모두 동일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
    - \* (예시) 할아버지 형제의 자녀(종백부, 5촌)는 과거 부계인 경우만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되었으나, 향후 모계인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됨
  -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3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35),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418) 등과 관련하여 범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2. 주요업무집행책임자(지배구조법 § 8)

- 자산운용사가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두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여야 함
  -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법상 3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연임이 가능하고, 정관에서 달리 정할 경우 임기의 단축·연장이 가능

### 3. 내부통제기준(지배구조법 § 24)

- 자산운용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내부통제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배구조법시행령(§19) 및 지배구조감독규정(§11)에서 규정
- ※ 금융투자협회는 지배구조법규에 따라 구체화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내부고발제도 운영, 명령휴가 제도 등)

### 4. 위험관리기준(지배구조법 § 27)

- 자산운용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함
  - 위험관리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배구조법시행령(§22) 및 지배구조감독규정(§13)에서 규정

### 5. 위험관리책임자(지배구조법 § 28, § 30)

- 자산운용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선임해야 함(선임의무는 자산운용사 등록 즉시 발생)
  - 임면, 임기 등 관련 사항은 준법감시인 규정(지배구조법§25②~⑥)을 준용하고 있고, 자격요건은 지배구조법(§28③)에서 규정

- 자산운용사가 위험관리책임자를 선임할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에 지체 없이(7영업일 이내)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간 겸직은 금지되어 있으나,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이고 수탁고 20조원 미만일 경우,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임 가능

## **6. 준법감시인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마련 (지배구조법 § 25)**

- 준법감시인에 대해 회사의 재무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 의무화

## 8.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관련 안내사항

### 1. 겸영업무

- (보고의무)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겸영업무\* 이외의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영위를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 (법 제40조제1항)

\*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영위가능하며, 별도 겸영업무 보고 불요

- 보고된 겸영업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겸영업무 내용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그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업무자료 - 금융투자 - 겸영업무

- (업무 범위) 금융관련 법령에서 집합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예시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업무)

-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예시 : 대출의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를 영위 가능

- 한편, 집합투자업자의 제3자 신용보강 행위 일체는 계약의 방식이나 그 명칭에 상관없이 지급보증업무(영 제45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므로 겸영업무로서 영위 불가

- 대출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 영위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개인 간 대출의 중개는 허용되지 않으며, 대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중개·주선 및 대리업무는 영위 불가

- 대출 중개·주선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지 못한 차주 필요자금의 부족분을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에서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등 행위는 금지 (실질이 대출인 사모사채의 인수 포함)
- 발행·유통시장을 불문하고 사모사채(채무증권)의 취득(매매, 인수 등 포함)을 중개·주선하는 행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

## 2. 부수업무

- (보고의무)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영위를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 (법 제40조제1항)
  - 보고된 부수업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부수업무 내용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그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 업무자료 - 금융투자 - 겸영업무
    - 영위 불가능한 업무를 보고하거나, 부수업무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부실보고는 시정 또는 제한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업무 범위) 법령상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가 포괄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나, ①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②금융투자업과 관련되어 있거나, 금융투자업의 인력·자산·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9. 기타 안내사항

### ① 투자광고

- 일반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해당 펀드의 투자광고를 할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 요건\*의 일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

\* 시행령 제271조의6 각호 참조

- 이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알려야 함

### ② 운용방법

- 일반사모펀드에 대해 순자산의 400%\* 이내에서 증권·파생상품·부동산 투자 및 채무보증 등을 허용

\* 집합투자기구 규약상 3억원 미만을 투자하는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로 제한

- 일반 사모펀드를 국내부동산에 대하여 운용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됨

### ③ 펀드 직접판매 관련 안내사항

-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직접판매 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 투자자 예탁금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 프로세스\* 구축

\* 펀드 직접판매용 계좌에서는 지정된 계좌(증권금융, 수탁은행, 수익자 등)로만 출금 가능하도록 은행에 지정요청. 또는 운용사 자체시스템에 고객계좌를 등록 하고 그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입·출금되도록 시스템 구축

- 펀드 판매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

- ✓ 운용사는 핵심상품설명서 기재사항 및 운용행위 적정성 등 점검
- ✓ 투자자예탁금 관리에 필요한 입출금 모니터링 등 내부통제 절차 구축
- ✓ 내부통제 부서는 운용부서와 판매부서 간 이행상충 소지 등 점검

## VIII. 법규오해 사례 및 질의응답 사례

### 1.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 관련 관계법규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및 [별표2](대주주의 요건)
    -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기준), [별표 2](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별표 3](대주주의 요건) 등

- 한편, 임원·준법감시인 및 대주주 등과 관련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참조

※ 정확한 관계법규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 참조

- 한편,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계법규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본시장법 §249의3),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 (자본시장법 §249)

- **집합투자업의 하나로 공모집합투자업과는 구별되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여 정의하고,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의 별도의 조문체제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도입**
  - 따라서, 집합투자업(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관련된 법령상 규정 (법§12~§16 등)이 아닌 별도 규정(법§249의3 등)이 적용됨에 유의

## 2.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전 “자산운용”이라는 표현을 상호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자본시장법 §38)

\* asset management,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등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 포함)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영위를 위해 회사를 신설하는 등 기존 금융 회사가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 이 경우 회사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전에는 “자산운용”이라는 표현을 상호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

## 3.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신청이 가능한 주체는?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자본시장법 §249의3②1.)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영위를 위해 회사를 신설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 법인격요건상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형태의 회사 등의 경우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

#### 4.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요건의 주요 내용은?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함(자본시장법 §249의3②)
  - 자기자본(10억원), 인력(투자운용 전문인력 등)과 물적설비(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등), 임원, 대주주,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 방지체계(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차단장치 등) 등에 관한 요건

#### □ 집합투자업(공모) 인가시의 요건과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시의 요건은 차이가 있음에 유의(등록시 완화된 요건이 적용)

- 특히 집합투자업(공모) 인가시 요건인 사업계획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5.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심사기한은?

- 금융위원회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249의3④)
  - 다만,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함
    -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데 걸리는 기간
    - 등록신청인 또는 그 대주주 등을 상대로 등록검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 관계법령상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시 심사기한은 2개월로  
집합투자업(공모) 인가시 심사기한 3개월보다 단축되어 있음
- 다만, 인가시와 동일하게 심사·검토기한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실조회 또는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등록절차가 지체될 수도 있으며,
  - 이러한 사유에 따라, 자료보완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단순히 2개월 이내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

## 6.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경영 등록시 필 요한 최소 자기자본은 얼마인지?

- 기존 영위 중인 투자자문·일임업 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  
(유지자기자본) + 1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
- \* (예시) 기존에 투자자문업(5-1-1) 및 투자일임업(6-1-1)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문사의  
경우 업무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은 17.5억원(= 2.5억원 + 15억원)이므로, 일반사모  
집합투자업 경영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2.25억원(= 17.5억원 × 70% + 1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

- 투자자문사가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신규로 등록신청하는 경우,  
신규로 추가하고자 하는 등록업무단위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 기존에 영위하던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업무단위 관련 최저자기자본에  
대한 유지요건(70%)도 함께 포함(가산)하여 충족해야 함에 유의

## 7.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지?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함(지배구조법 §25①)
  - 또한,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함
    -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하다고 할지라도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서 지배구조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자격요건 및 선임방법 등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에 유의

## 8.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은?

- 준법감시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지배구조법 §26)
  - **(징계)**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경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갖춘 자

-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금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기관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의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준법감시인 선임시 동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적격한 준법감시인을 뒤야 함에 유의**

## 9.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시 심사대상 임원 등의 범위는?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된 이사(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및 감사, 그리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준법감시인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비록 등기된 이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지배구조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심사가 이뤄짐에 유의

## 10. 임원은 몇 명을 두어야 하는지?

-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은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어야 함(상법 §383 및 §409)
  - 한편,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사외이사 2/3 이상)된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상법 §415의2)

- 이사회 구성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이고 운용자산 20조원 미만의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 동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

## 11.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함(지배구조법 §19⑧ 및 동법 시행령 §16③)

-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지 않을 수도 있음

## 12.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최소 몇 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지?

- 기본적으로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추어야 함(자본시장법 §249의3②3. 및 동법 시행령 §271의2④1., 금융투자업규정 §7-41의2 및 [별표 2])
  - 한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마.에 따른 3명 이상의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 이 중 1인 이상은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어야 함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상 3인 이상의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중 최소 1인 이상은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어야 하므로
  - 3인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만을 갖췄을 경우에는 등록요건을 미충족할 수 있음에 유의

## 13. 사무공간을 마련할 때 특별히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

- 이해상충부서(고유재산 운용부서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부서 등) 간 별도 업무공간을 갖추는 등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되어야 함
  - 또한,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어야 함(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2.)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 중 물적설비에 대해서는 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 등 정보차단벽을 갖추고 내부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없어야 함에 유의

#### 14. 물적설비에 대한 위탁(아웃소싱)이 가능한지?

- 전산설비·통신수단 및 펀드회계시스템·펀드기준가가격산정시스템\*은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인정
  - \*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설비 및 전문인력 구비 필요
  - 또한,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전산 전담인력은 채용이 불필요하며 전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도 외부 위탁 허용
  - 다만, 부서간 정보차단벽(녹취설비, 메신저기록 설비 등)은 외부 위탁이 불가하므로 이를 직접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

#### <위탁 가능한 물적설비 세부 현황>

구분	세부 항목	위탁 여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가능
	② 침입탐지 및 침입방지 시스템, 방화벽 구축 여부	가능
	③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가능
	④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등	가능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① 이해상충 부서간 정보차단벽 설치	불가
	②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확보 여부	불가
	③ 감독기관 등의 감독·검사에 필요한 업무공간	불가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① 보안 설비의 확보 여부	가능
	② 파업 등 불시사태 대비 비상계획 마련 여부	불가
	③ 정전 등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복구시스템 구축	가능
	④ 비상사태 발생시 시현가능한 비상계획 마련 여부	불가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2. 물적설비

## 15.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관련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자본시장법 §12⑥, §249의3⑤, 및 동법 시행령 §16⑦, 지배구조법 §2 및 동법 시행령 §3, §4 등)

### ○ 최대주주등

- 최대주주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주주 상호간 특수관계인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의 최대주주(공동 최대주주) 사례 발생 가능

(예시) 형이 50%, 동생이 10% 보유 → 형과 동생 모두 최대주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지배구조법 시행령 §3)인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동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 포함) 및 대표자

### ○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포함

- 임원(상법 §401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 포함)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자

□ 등록시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관계법령 정의(지배구조법 §2)상 대주주(최대주주, 주요주주)보다 확대된다는 점에 유의

○ 아울러 최대주주는 본인 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며, 복수의 최대주주(공동 최대주주)가 있을 수도 있음에 유의

## 16.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위한 대주주의 주요 요건은?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자본시장법 §249의3②5.)
  - 구체적으로는 대주주 유형\*별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 및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함
  - \* 금융기관, 내국법인, 내국인(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 **심사대상 대주주의 유형 등에 따라 적용되는 심사요건이 관계 법규에 차별화되어 이미 정해져있고 동 법규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신청 준비단계에서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보는 것이 바람직**
  - 한편,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시 심사대상 대주주의 요건은 집합투자업(공모)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

## 17. 외국인(개인)이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에 출자하여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될 수 있는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금융회사, 내국법인, 내국인(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만을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외국인(개인)의 경우 제약이 있음에 유의**

## 18. 대주주가 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일반사모 집합투자업자인 금융회사를 설립해도 되는지?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의 출자금은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니어야 하며, 등록신청 시 등록신청인 및 심사대상 대주주가 자금출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249의3②5., 동법 시행령 §271의2⑤?[별표 2], 금투업규정 §7-41의2②?[별표 3])
  -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득재원
  -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
    - 유상증자
    -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 내부유보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 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출자자금의 출처(차입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소명되어야 함에 유의

**19.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등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함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 (자산운용)」 등을 참조하는 것도 권장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관련 자료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음

**20. 일반사모모집합투자업자로 등록된 경우 사모펀드에 고유 재산을 투자하거나 펀드매니저의 투자가 가능한지?**

-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폐지('14.12월)됨에 따라 제한 없이 가능

종전의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어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음

## IX. 유권해석

### 1. 최대주주 개념 명확화

-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 본인이 최대주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인과 복수의 특수관계인들 중 최다보유자 1인만을 최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총 주식수가 동일한 자가 여럿인 경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함**
  - 관계법령상 최대주주를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수를 합산한 결과 총 주식수가 동일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2. 최대주주의 판단 관련

- 최대주주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규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 '최대주주'란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의미하며,
  - 최대주주 판단시 그 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상법 제369조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의 수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 3. 일반법인의 사모펀드 결성 가능 여부 등 관련

- 자산운용사가 아닌 일반법인도 사모펀드를 결성하여 자금 모집이 가능한지 여부
  - 불가능 하다면, 한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기 결선된 사모펀드를 한국에서 판매(자금모집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
  - 미국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를 국내 자산운용사에 위탁 계약하여 간접 판매를 할 수 있는지

- 펀드를 설정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자본시장법 제6조제4항)되며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함(자본시장법 제12조)
  -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외국 펀드를 국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자본시장법 제280조제1항)
  - 이 경우, 해당 외국 펀드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등록 요건(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요건, 외국 집합투자 증권 판매적격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

#### 4. 일반사모집합 투자업 본부의 투자일임·자문업 수행 가능여부

- 회사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할 독립 본부를 만들면서, 해당 본부(부서)에서 투자자들의 운용선호도가 높은 투자일임·자문업도 함께 수행할 예정
- 현재 회사의 투자일임업 수행은 랩운용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랩운용부서는 신탁업 수행부서와 같은 본부(고객자산운용본부)에 소속되어 있음
- 이처럼 현재 타 본부에서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이와 별도로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속한 본부에서도 투자일임·자문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는 본부에서 투자자문·일임업을 수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영위하는 금융투자업 간에 갖추어야 할 정보교류차단장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자본시장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 이에 따르면 질의한 집합투자업/투자자문·일임업 사이 및 신탁업/집합투자업 사이에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의무가 배제되어 있음

## 5.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해당 여부 관련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에서 불특정조합원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그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이 전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시장법 제6조제5항의 집합투자 개념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의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에서 집합투자업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함
- 영위하려는 업무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함

## 6. 외국펀드 운용 관련 자본시장법상 인가대상 여부

□ 역외펀드 운용관련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 필요 여부

□ 내국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설정, 설립된 외국집합투자 기구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인가가 요구되지 않음

## 7. 정보교류차단 관련

□ 당사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로서 부동산투자신탁(이하 '펀드')을 설정하여, 펀드재산으로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이하 '피투자SPC') 발행지분 100%에 투자하고, 피투자SPC의 관리를 위해 피투자SPC에 당사 임·직원의 대표이사 겸직을 고려 중임

○ 투자구조가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투자신탁을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의 임직원이 피투자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규제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

## ◆ 등록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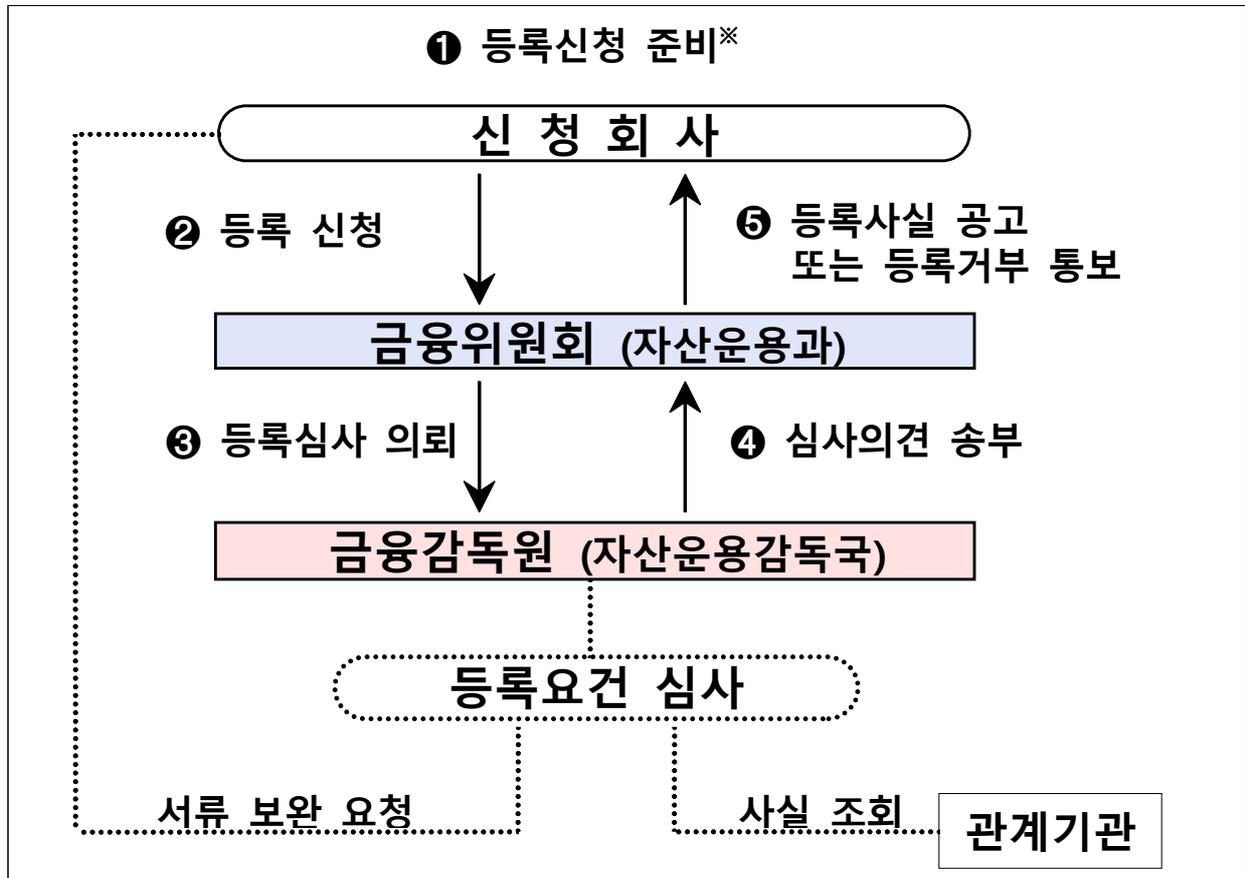
### 3-(3)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신 청 회 사	0000	신 청 일	20◇◇. 9. △△.
처 리 부 서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인하기팀	완 료 일	20◇◇. 10. ▽▽.
신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회사는 ‘◇◇.7월 설립된 신설법인(자본금 31억원)으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동법 제2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li> </ul>		
심 사 내 용	<input type="checkbox"/> 신청회사가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사 및 외부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의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회사형태)</b>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인지 여부를 확인</li> <li>○ <b>(자기자본)</b> 재무제표 등을 통해 신청인의 자기자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3의 최저자기자본(신청회사의 경우 10억원)을 충족하는지 심사</li> <li>○ <b>(전문인력)</b>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확인서 및 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증 등을 통해 등록신청 업무 영위에 필요한 전문인력 상근여부 심사(신청인의 경우 투자운용인력 3인 이상의 전문인력 상근 필요)</li> <li>○ <b>(임원·준법감시인)</b>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제재 사실 등을 확인해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제재 사실 등을 확인해 지배구조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심사</li> <li>○ <b>(물적설비)</b> 업무관련 전산설비, 충분한 업무공간·사무장비,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 사고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마련 여부 등을 심사</li> <li>○ <b>(대주주)</b> 심사대상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통해 출자금 내역 확인),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형사처벌 및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여부 등을 확인)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li> <li>○ <b>(건전성·사회적신용)</b> 신청회사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췄는지와 금융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췄는지 심사</li> <li>○ <b>(이해상충방지체계)</b>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여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li> </ul>		

### 3. 금융투자

#### (4)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겸업 등록

##### 1.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절차 흐름도



※ 금융투자업 등록 신청 준비시 금감원의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 이용 가능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 운영 개요>

- (상담내용) 인허가 신청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심사요건·절차, 인허가 매뉴얼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항 상담
- (상담방식) 유선,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
- (신청전화) 02-3145-8312 (감독총괄국 감독혁신조정팀)

※ 사전상담은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며, 신청인은 사전 상담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가능

## II. 세부 등록절차

### ① 등록신청 준비

- 신청회사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준비

### ②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 [신청회사 → 금융위]

- 등록요건을 갖추고 서류작업이 완료되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공문과 함께 접수하며,
- 원본 1부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사본 1부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자산운용인허가팀)에 제출

### ③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 [금융위 → 금감원]

- 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신청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과 관련한 요건충족 등에 대한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의뢰

### ④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 [금감원 → 금융위]

-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회사에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 심사가 종결되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 ⑤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금융위 → 신청회사]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며 등록 시 해당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등록거부를 신청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 III.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요약)

요건	개요	근거법규		
		법1)	시행령2)	규정3)
법인격 요건	-상법상 주식회사 등	§249의3② 1호	§271의2 ①, ②	
자기자본 요건	-최저 자기자본	§249의3② 2호	§271의2③ <별표3>	
인력 요건	-임원결격사유	§249의3② 4호		§7-41의2① <별표2> 1.
	-전문인력	§249의3② 3호	§271의2④ 1호	§7-41의2① <별표2> 1.
물적 요건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사무장비, 보안설비·보완설비 등	§249의3② 3호	§271의2④ 2호	§7-41의2① <별표2>2.
대주주 요건	-대주주 적격성	§249의3② 5호	§271의2⑤ <별표2>	§7-41의2② <별표3>
건전경영 ·사회적 신용요건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249의3② 6호	§271의2 ⑦, ⑧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장치 등	§249의3② 7호, §44, §45	§271의2⑨, §50	§7-41의2① <별표2>4., §4-6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 3)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 IV. 단계별 세부내역

1. 등록신청	○ 금융위,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신청서 접수	
↓		
2. 검토 의뢰	○ 금융위, 금감원에 심사 검토 의뢰	
↓		
3. 금감원 심사	<b>심사요건</b>	<b>확인서류</b>
법인격 요건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등
자기자본 요건	○ 최저자기자본	-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주금납입증명서 등
인력 요건 (전문인력·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 영 제271조의2 제4항제1호, 규정 &lt;별표2&gt;에서 정하는 인력요건에 해당할 것</li> <li>○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규정 &lt;별표2&gt;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재직증명서, 자격증, 시험합격증, 교육수료증, 확인서 등</li> <li>- 신원조회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등</li> <li>- <b>(필요시)실지조사</b></li> </ul>
물적 요건	○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 영 제271조의2 제4항제2호, 규정 <별표2>에서 정하는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사무장비, 보안설비, 보완설비 등을 구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계약서 및 증빙자료 등</li> <li>- <b>(필요시)실지조사</b></li> </ul>
대주주 요건	○ 영 <별표2> 및 규정 <별표3>의 요건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등</li> <li>- 기타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등</li> </ul>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 신청인이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 영 제271조의2제7항, 제8항에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건전성 기준,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기타 사실확인서 등</li> </ul>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249조의3제2항제7호, 영 제271조의2 제9항, 규정 &lt;별표2&gt;에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할 것</li> <li>-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li> <li>- 적절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갖출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상 내부통제기준 등</li> <li>- <b>(필요시)실지조사</b></li> </ul>
↓		
4 심사결과 통보	○ 금감원, 금융위에 심사·확인 결과 통보	
↓		
5 등록여부 결정	○ 금융위, 등록 여부 결정 및 통보	

## V.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요령

### 1. 상호

상 호	
국문	영문
① △△△△△△(주)	①

- ① 등록신청일 현재 신청회사의 국문 및 영문 상호를 기재

#### 첨부서류

- ① 정관 :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증 받은 정관
- ②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원본)
- ③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등 : 설립 또는 등록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증받은 서류
-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불가)

※ 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본점 소재지 (전화 및 팩스번호 포함)
①

- ① 예시) (012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00 (여의도동, XX빌딩)  
전화번호 : 02-111-1111    팩스번호 : 02-111-1112

#### 첨부서류

- ①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 3. 대표자 및 임원 (준법감시인 포함)

임원수 :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선임 일자	임원자격 적합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 ① 대표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 등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직위를 기재하며 **등기임원에 대해서만 기재**(준법감시인 포함)
- ② 외국인의 경우 국적,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기재
- ③ 임원이면서 출자자인 경우 그 **소유주식수 및 출자비율**을 기재
- ④ 대표경력만을 간략히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시의 양식을 참고하여 별도로 작성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을** 자세히 기재(경력단절기간도 기재)

(예시)

성명	기 간	회사명	부서명	직위
홍길동	2016.12.21. ~ 현재	AA주식회사	주식운용부	차장
	2015.11. 1. ~ 2016.12.20.	(경력단절기간)	(미취업 상태)	
	2009. 1. 1. ~ 2015.10.31.	BB주식회사	채권운용팀	과장
진달래	2011. 2. 1. ~ 현재	BB주식회사	임원실	부사장

- ⑤ 상근임원인 경우 “**상근**”, 비상근임원인 경우 “**비상근**”으로 기재
- ⑥ 임원이면서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경우 “**Y**”, 전문인력이 아닌 경우 “**N**”으로 기재
- ⑦ 해당임원의 선임일자 기재
- ⑧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자격에 적합한 경우 “**Y**”로 기재  
- 단, 신청회사가 신청일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투자자문·일임업자)이면서, 해당 임원이 '16.7.31 이전 선임됐을 경우, 자본시장법 제24조('16.7.31 삭제 이전 조문)의 임원자격 적용

## 첨부서류

- ① 이력서  
: 인감도장(개인)으로 날인한 이력서
- ②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 前직장의 경력증명서(원본) 및 現직장의 재직증명서(원본)  
\* 5년 기간내 경력단절기간(1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증명서(소속기관 확인서 포함) 미제출 사유(징계·처벌사실 등 포함)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확인한 서류 제출  
\*\* 준법감시인의 경우 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각호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③ 신원조회 의뢰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등을 기재한 신원조회 의뢰서 (붙임1 참조)
- ④ 소속기관 확인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 소속기관의 처벌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제재사실 등을 표기할 경우 제외)
- ⑤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 임원 요건 확인서에 인감도장(개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회사 형태, 임원 선임일자에 따라 양식을 구분하여 제출 (단, 붙임 2-4 양식은 법인인감 날인)

구분	임원선임일자	제출양식	확인자	확인내용
신청일 현재 금융회사	'16.7.31 이전	붙임 2-1	임원 본인	자본시장법 제24조('16.7.31 이전 조문)
	'16.8.1 이후	붙임 2-2	임원 본인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
		붙임 2-3	대표이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신설법인	-	붙임 2-2	임원 본인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각호
		붙임 2-3	대표이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 준법감시인이 지배구조법에 따른 요건(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제1호)을 충족함을 확인한 서류, 인감도장(개인)으로 날인(붙임 2-4 참조)

- ⑥ 신용정보조회서(원본)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방문·우편)받은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최근 5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사본 및 신용정보 열람(발급)신청서(본인 자필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

- ⑦ 개인 인감증명서(원본)
- ⑧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운용 담당임원 현황 및 겸직금지 관련 확인서 (붙임 3-5 및 3-6 참조)
- ⑨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운용 담당임원의 수행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금감원 보고자료, 인사발령 또는 직무분장 관련 문서 등)

#### 4.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① 등록업무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붙임4 참조)

#### 5.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구 분	FY201X	FY201◇	FY201△	구 분	FY201X	FY201◇	FY201△
자산총계				영업수익			
부채총계				영업이익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 첨부서류

-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감사보고서)
- ②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③ 설립 후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은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로 같음

※ 감사보고서가 아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독립성을 갖춘 회계법인(ex.회사의 가장 대리 업체 등은 불가)에서 재무상태를 확인 받은 후 증빙서류(ex.재무제표확인원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신청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중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첨부된 경우 포함)를 통해 이미 공시된 자료의 경우 동 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자료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 6-1. 전문인력의 명단

(기준일: 년 월 일 현재)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자격내용	증빙서류명칭 (등록번호/발급기관)	전문인력 관련 주요 경력
1			①		②
2					
⋮					

① 증권운용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등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구체적 적용법조를 기재

- 예) ■ 증권(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마. 1. 가. 8))  
 ■ 부동산(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마. 2. 다. 2))  
 ■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마. 2의2. 1.) / 1. 가, 1))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1.인력에 관한 요건 중 “마” 및 별표13 참고

② 경력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는 주요 경력을 간략히 기재

#### 첨부서류

#### ① 전문인력의 자격확인서류

: 금융투자전문인력등록증(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확인서(과거 등록된 이력이 있는 경우), 시험합격증, 교육수료증 등 자격확인서(붙임 5 참조)

※ 등록증, 시험합격증이 없는 경우 협회 등록 시 필요한 운용경력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로 같음

#### ②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현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전문자격 인정을 위하여 운용경력 또는 재직경력이 필요한 전문인력의 경우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 후 등록 교육을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재직·경력을 증명하는 경우도 포함)

③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의료보험증 사본 등  
(기관장 직인이 표시되는 형태로 출력, 붙임 6 참조)

④ 그 밖의 운용전문인력에 해당함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⑤ 운용전문인력의 향후 3년간 운용계획서

- 신탁업과 집합투자업 부서간은 별도의 조직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전문인력 중복도 불인정
- 한편, 집합투자업 관련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유지·충원 계획 및 이해상충 발생가능 부서간 전문인력 교류방지를 위한 대책 (ex. 일정기간, 직전·후 전환배치 제한 등)에 대한 확인(대표이사 날인) 내용 포함

## 6-2.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① 사무공간 배치현황(부서명, 주출입문 등 표시, 붙임7 참조)

② 사무실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③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현황(전산설비 흐름도 포함)

④ 전산설비, 보안설비·보완설비 등 구입 증빙

- 전산설비 흐름도 포함
- 운용부서 전화녹취 현황
- 문서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현황
- 임직원 매매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 이해상충방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선행매매, 쌍방대리, 고유재산거래, 과당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산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관련)

⑤ 비상계획(BCP, Business Contingency Plan) 등

⑥ 일반사무관리회사 계약서

## 7. 대주주나 외국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구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1	홍길동	000,000	00.0	최대주주
2	(주)대한민국	00,000	00.0	주요주주
⋮				

- ①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 또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성명(명칭),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

### 첨부서류

- ① 등록신청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②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 대주주 결격요건을 나열하고 각 항목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을 본인 스스로 확인한 서류(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붙임8 참조**)
- ③ 신용정보조회서(원본)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방문 · 우편)받은 ‘신용정보조회서’ (최근 5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법인인 경우 ‘기업신용정보조회서’ 제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사본 및 신용정보 열람(발급)신청서(본인 자필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
- ④ 그 밖의 대주주 요건(출자자금 소명 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추가제출

- ①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 : 최대주주인 법인의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주주명부(기준일 명시)  
- 최대주주인 법인의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② 최대주주 개황자료 : 주소, 대표자, 연혁,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자료 등
- ③ 결격사유 없음 확인서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사실상 지배자가 스스로 확인한 서류 (붙임8 참조)

### 〈대주주 범위〉

구분	세부사항
최대주주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주주 상호간 특수관계인에 해당 시 복수의 최대주주 사례 발생 가능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자 포함)
최대주주의 대표자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참고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임원 등

##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집합투자업 겸업 관련 내용 포함)
- ② 이해상충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용 작성
- ③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 대표이사가 확인한 서류 (붙임9 참조)
- ④ 집합투자업 관련 별도의 준법감시부서(인력) 구축 사항 (조직관련 내부규정, 조직도, 좌석배치도, 인력구성 내역 등)

※ 전담 준법감시인력을 구축한 경우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 제출  
(이력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향후 3년간 인력 운용계획 등)

⑤ 프라임브로커 계약서 사본(계약을 한 경우에만 제출)

⑥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9.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① 합작계약서 등 : 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한 신청시에 한함
- ② 위임장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 ③ 신청인이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1부 (신청인 본인의 확인서, 붙임10 참조)
- ④ 신청일 현재 최근 사업년도말(또는 최근 분기말) 기준 영업용 순자본 비율 현황(회계법인 확인)
- ⑤ (가칭)운용성과보고서 샘플
- ⑥ 신용정보조회서(원본)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방문·우편) 받은 '기업신용정보조회서'(최근 3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 ⑦ 그 밖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 붙임1 > 등록신청서 양식

일반사모 집합투자업 등록신청서(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2의2호>)

### 1. 상 호

상 호	
국문	영문
(가칭)	(가칭)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본점 소재지(전화 및 팩스번호 포함)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3. 대표자 및 임원(준법감시인 포함)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성명	기 간	회사명	부서명	직위

#### 기재상의 주의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준법감시인 포함)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4.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4-1.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5. 재무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구분	FY201△	FY201×	FY201◇	구분	FY201△	FY201×	FY201◇
자산총계				영업수익			
부채총계				영업이익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 첨부서류

5-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기준일:    년    월    일 현재)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자격내용	증빙서류명칭 (등록번호/발급기관)	주요 경력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첨부서류

6-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7.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구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 첨부서류

7-1.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7-2.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8-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8-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8-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9.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9-1.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9-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9-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 붙임2 > 신원조회 의뢰서 양식

### 신원조회 의뢰서

#### 조회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sup>1</sup>	등록기준지 <sup>2</sup>	조회기관 <sup>3</sup>

[기재시 유의사항]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등록번호 기재
2. 등록기준지(舊본적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현 등록기준지를 기재
3. 등록기준지 소재 조회기관 및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기재

#### 조회내용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 붙임3-1 > 임원 확인서 양식

### 임원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재임(재직) 중이었던라면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직)한 임(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직)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자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한국은행법,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주택법, 예금자보호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금융지주회사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공사채등록법, 공인회계사법,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산업발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에관한법률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성 명 : (인)

## < 붙임3-2 > 임원 확인서 양식

### 임원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지배구조법 또는 동법에 따른 금융 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 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임원으로 재직할 금융투자업자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이 있는 자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 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본인은 상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7-41조의2제1항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성 명 : (인)

〈 붙임3-3 〉 임원요건 충족 확인서(대표이사 법인인감 확인)

## 임원요건 충족 확인서

당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 중 당사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 ○ ○ (인)

## 〈 붙임3-4 〉 준법감시인 확인서

# 준법감시인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본인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본인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또는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준법감시인 ○ ○ ○ (인)

## < 붙임3-5 > 평가담당 임원 겸직 금지 확인서

### 겸직 금지 확인서

아래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조 내지 제51조에서 정하는 고유재산운용업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일임업, 기업금융등의 정보교류 차단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집합투자재산 평가 담당임원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7XXXXXX-XXXXXXX

직 위: XXX(집합투자재산 평가 담당임원)

상 근 여 부: 상근

선 임 일: 202X.X.X.

202X.X.X.

X X X 증권(주)

X X 이사 ◇ ◇ ◇

X X X 증권(주)

대표이사 ◇ ◇ ◇

## < 붙임3-6 > 운용담당 임원 겸직 금지 확인서

### 겸직 금지 확인서

아래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0조 내지 제 51조에서 정하는 고유재산운용업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일임업, 기업금융등의 정보교류 차단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로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집합투자재산 운용 담당임원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7XXXXXX-XXXXXXX

직 위: XXX(집합투자재산 운용 담당임원)

상 근 여 부: 상근

선 임 일: 202X.X.X.

202X.X.X.

X X X증권(주)

X X 이사 ◇ ◇ ◇

X X X증권(주)

대표이사 ◇ ◇ ◇

## 〈 붙임4 〉 업무영위방법 작성요령

### 1. 신청 개요

회사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 :</li> <li>◆ 영문 :</li> </ul>		
소재지			
	인가(등록)업무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현재 영위중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추가하고자 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등록신청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ul>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p>*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p>		
임원구성	직위	성명	주요이력
최대주주			
주주구성 <sup>1)</sup>	주주명	지분율	구분 <sup>2)</sup>

- 주1) 대주주요건 심사대상 및 5% 이상은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고 나머지는 통합하여 기타로 표시  
 2)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구분  
 3) 칸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삽입 또는 삭제하여 적절하게 조정

## 2. 심사대상 대주주 현황

대주주현황	주주명	구분 <sup>1)</sup>	의결권 있는 주식수	비율(%)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대주주와의 관계 예) 배우자, 자녀 등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주요주주				

주 1)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등으로 구분

※ 외국금융투자업자의 지점인 경우 : 외국금융투자업자명칭 기재

※ 필요시 대주주 등 신청인의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도표 첨부

### 3. 자기자본 현황

① 자기자본 (기준일 : 20 .00.00 현재) : \_\_\_\_\_ 억원

※ 최근 사업연도가 없거나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증자 등의 사유로 자기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재

② 최저자기자본 : ① + ② = \_\_\_\_\_ 억원

※ 최저자기자본은 신청인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

(1) 기존 인가·등록단위에 대한 유지 자기자본 : \_\_\_\_\_ 억원

(단위: 억원)

인가(등록)단위	금융투자업 종류	투자자 유형	최저 자기자본	유지 자기자본*
①	②	③		
합 계				

\* 유지자기자본 : 인가(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

- ① 인가(등록) 단위 : 5-1-1 등 해당하는 업무단위를 기재
- ② 금융투자업의 종류 : 투자자문·일임업 등 해당사항 기재
- ③ 투자자의 유형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등 기재

(2)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 10억원

<자기자본 현황 작성 예시>

① 자기자본(기준일 : 20XX년 X월 XX일 현재) : 1조 5,000억원

※ 최근 사업연도가 없거나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증자 등의 사유로 자기자본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재

② 최저자기자본 : (1) + (2) = 1,352.25억원

※ 최저자기자본은 신청인이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

(1) 기존 인가·등록단위에 대한 유지 자기자본 : 1,342.25억원

(단위: 억원)

인가(등록)단위	금융투자업 종류	투자자 유형	최저 자기자본	유지 자기자본*
1-1-1	투자매매업 (증권)	일반, 전문	500	350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일반, 전문	100	70
1-3-1	투자매매업 (장외파생상품)	일반, 전문	900	630
2-1-1	투자중개업 (증권)	일반, 전문	30	21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일반, 전문	20	14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일반, 전문	100	70
4-1-1	신탁업	일반, 전문	250	175
5-1-1	투자자문업	일반, 전문	2.5	1.75
6-1-1	투자일임업	일반, 전문	15	10.5
<b>합 계</b>			<b>1,917.5</b>	<b>1,342.25</b>

(2) 일반사모집합투자업(3-14-1) 등록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 10억원

## 4. 물적 설비 현황

\* 등록심사 요건 해당 내용을 표 안에 상세하게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 전산설비 등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

심사항목	관련 내용
<b>(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b>	
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 구축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업무 영위에 적합한 전산시스템 보유 및 가용성·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산기</li> <li>- DB서버, 매매관련(주문관리, 결제관리, 원장관리 등) 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li> <li>-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li> <li>-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li> </ul> </li> <li>■ 내부 네트워크, 전용회선 구축 등 통신시스템 구성</li> </ul>
② 침입탐지·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성이 검증된 보안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 등</li> </ul> </li> <li>■ 운용부서 전화 녹취 시스템 구축</li> <li>■ 자료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LP(Data Loss Protection) 등</li> </ul> </li> </ul>
③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이용자 확인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산기 및 각종 서버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및 사용 통제방안 구비</li> <li>-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log-in) 기록 유지 등 정보유출대책 마련</li> </ul> </li> <li>■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 출입 통제(카드키, 비밀번호 이용 등) 및 미승인된 출입자의 방문일지 기록</li> <li>- 전산실 출입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CCTV 배치</li> </ul> </li> </ul>
④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및 백업자료 별도 보관·관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정보 등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업자료의 소산보관장소 마련</li> <li>- 기간별 소산보관대책 마련</li> <li>- 백업과 관련한 외부업체와의 계약 등</li> </ul> </li> </ul>

## (2)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p>① 이해상충부서간 별도 업무공간 확보 등 정보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설치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부서간 정보차단벽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부서간 별도층, 별도건물 배치 등 업무공간 구분 내역</li> <li>- 이해상충부서간 출입통제(카드키 등)</li> </ul> </li> </ul>
<p>②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사무공간(총 전용면적 및 1인당 전용면적 기재) 등 충분한 업무공간 및 부서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확보</li> </ul>
<p>③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의 감독·검사 시 법적 장애가 없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 임대, 위탁 등 제한적 확보 여부 점검</li> </ul> </li> </ul>

## (3)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p>①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설비의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 보안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비상발전기 등 구비</li> <li>- 전산실 내 CCTV 사각지대 제거</li> <li>- 장애에 대비한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의 이중화</li> </ul> </li> <li>■ 사무실 및 전산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미인가자 접근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장소 CCTV 설치 및 녹화기록 유지</li> </ul> </li> </ul>
<p>② 파업 등 불시사태 대비 비상계획 마련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P(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li> </ul>
<p>③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확보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복구시스템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li> <li>-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센터 마련</li> <li>- 재해복구센터 내 단말기 등 백업체계 구축</li> </ul> </li> </ul>
<p>④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 마련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P를 포함한 재해복구 훈련 실시</li> <li>- 재해복구 훈련시 복구테스트 결과</li> </ul> </li> </ul>

## 5. 이해상충 방지체계 현황

\* 등록심사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1)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관련 내용
①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감시인이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를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li> </ul>
②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 고지방법, 거래 제한 및 주의 목록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및 절차</li> </ul>
③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감시인 등의 상시점검 및 정기점검 등 점검주기와 대상 및 필요한 시스템 구축여부</li> </ul>
④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증권사 집합투자업 겸업에 따른 선행매매, 과당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 상충방지 내용</li> </ul>
(2)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용
① 정보교류 차단 부서간 정보차단벽 (Chinese Wall)이 적정하게 설치 되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교류차단 대상 영업 및 계열회사 등과 정보제공, 임직원의 겸직 또는 파견,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금지 등의 정보차단장치와 관련한 차단대상과 허용사항 등</li> </ul>
② 법령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정보차단벽간 정보제공(Wall Cross)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련 기록이 유지·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기준에 명시된 정보차단벽 통과 절차 및 준수사항, 준법감시인 확인 사항 등</li> </ul>
③ 그 밖에 인가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정보차단벽 간 정보교류를 합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업 부서의 전화녹취 장치 구비 현황 및 자료 반출기록 관리 현황</li> <li>■ 선행매매, 과당매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등</li> </ul>

## 6. 업무영위 방법

### ① 조직체계

- 일반사모집합투자업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체계의 직위·성명 등을 기재하며 담당업무를 간단하게 기재한 조직도를 첨부

### ② 업무영위 방법

- 회사개황, 등록신청 배경, 사업목표, 사업전략, 주된 타겟시장 등을 기재

## < 붙임5 >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증 및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확인서

###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증

이름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3* * * * * - 1* * * * * *
자격구분	투자자산운용사	등록일자	2012/12/12
등록번호	211xxxx123	소속회사	홍길동 자산운용
업무범위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위 사람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임을 확인합니다

2015 년 10 월 20 일

한국금융투자협회



우 150-9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 전문인력관리부

## 금융투자전문인력/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확인서

본 확인서의 사람은 별첨과 같이 등록이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금융투자전문인력 / 투자권유대행인 상세확인표

2017년 00월 00일

**인 국 금 용 투 지 협 회**



금융투자전문인력 /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사항

성명	주연등록번호	소속회사	등록번호	자격구분	업무영위	등록일	말소일
홍길동	000000-000000	00자산운용 주식회사	211200000	투자자신용용사	금융투자상품	2012001	2012130

# < 붙임6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발급번호 : JJJ123456789011234			Page : 1/1		
<p>※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발급일 현재까지 가입 신고된 가입자 중 발급대상으로 요청한 가입자의 명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발급 관리되고 있습니다.</p> <p>※ 본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장 가입자명부」는 개인정보이므로 외부로 유출되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은 공단에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p>					
사업장명		홍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업장관리번호 - 단위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명		NONE		12345678901 - 000	
일련번호	가입자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증번호	주민번호	성명		
1	12345678900	83**** - 1*****	홍길동	2014-06-02	
2	12345678901	83**** - 2*****	김길동	2011-08-01	
3	12345678902	83**** - 1*****	박길동	2011-02-07	
발급일 기준 사업장 가입자(상실자) 발급건수 총 3 명					
※ 주민등록번호중 일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특수문자로 대체하였습니다.					
2015.1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발급번호	NPS201501234567890	발급일자	2015. 10. 20.	검증번호	c2MT
------	--------------------	------	---------------	------	------

성 명 : 홍길동                          출력조건 :  
 생 년 월 일 : 1983 - 00 -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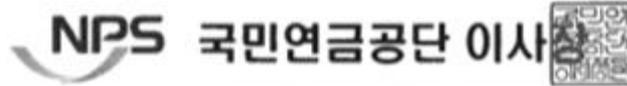
가 입 이 력		
자격유지기간	가입자종별	사업장명칭
2008-05-19 - 현 재	사업장	홍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사업장명칭(지역)	가입자종별	변동사유	변동일	처리일
홍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업장	취득	2008-05-19	2008-06-02

사업장 명칭 변경 내역				
변동일	변동항목	변경전 명칭	변경후 명칭	처리일
2008-08-29	사업장명칭	김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박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2008-09-09
2010-01-11	사업장명칭	박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홍길동 자산운용 주식회사	2010-01-12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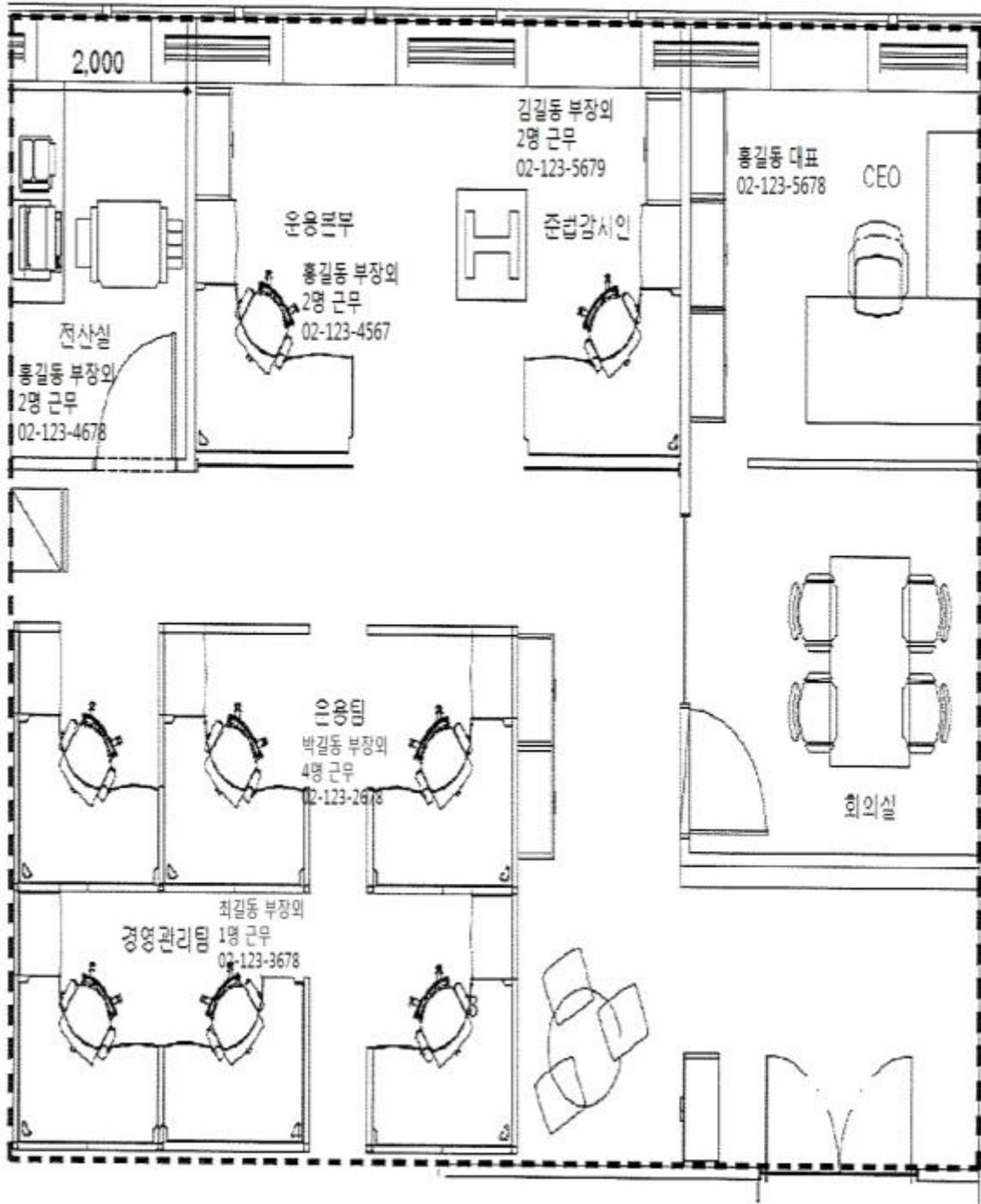
2015. 10. 20.



※ 본 증명서는 국민연금 EDI서비스(<https://edi.nps.or.kr>)에서 발급받은 문서입니다.  
 ※ 향후, 신고인의 신고(신청)에 따라 증명서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증명서를 신청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증명서 원본은 스캐너(국민연금 EDI서비스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통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붙임7 > 사무공간 배치현황



※ 전산실(설비) 및 CCTV 위치 표시

## < 붙임8 > 대주주 확인서 양식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서명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2 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2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회사명)

(인)

[대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서명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71조의2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2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회사명)

(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서명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소득재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71조의2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제2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 붙임9 > 이해상충방지체계 관련 대표이사 확인서**

이해상충방지체계 관련 대표이사 확인서

당사 \_\_\_\_\_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2항 제7호에 따른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 ○ (인)

## < 붙임10 > 신청인(본인) 확인서 양식

### 신청인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9조의3제2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271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0. 00. 00

(회사명)

(인)

<첨부>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 등록 사례

### 3-(4) 증권사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겸업 등록

신청회사	OOOO	신청일	20◇◇. 4. △△.
처리부서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인허기팀	완료일	20◇◇. 5. ▽▽.
신청내용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회사는 'XX년 설립된 증권회사(자본금 4천억원)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동법 제2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li> </ul>		
심사내용	<input type="checkbox"/> 신청회사가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사 및 외부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의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회사형태)</b>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인지 여부를 확인</li> <li>○ <b>(자기자본)</b> 공시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신청인의 자기자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3의 최저자기자본(신청회사의 경우 약 X,XXX억원)을 충족하는지 심사</li> <li>○ <b>(전문인력)</b>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확인서 및 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증 등을 통해 등록신청 업무 영위에 필요한 전문인력 상근여부 심사(신청인의 경우 투자운용인력 3인 이상의 전문인력 상근 필요)</li> <li>○ <b>(임원·준법감시인)</b>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제재 사실 등을 확인해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하고, 준법감시인에 대한 제재 사실 등을 확인해 지배구조법 제2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심사</li> <li>○ <b>(물적설비)</b> 업무관련 전산설비, 충분한 업무공간·사무장비,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 사고시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 마련 여부 등을 심사</li> <li>○ <b>(대주주)</b> 심사대상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li> <li>○ <b>(건전성·사회적신용)</b> 신청회사가 경영건전성 등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췄는지와 금융관련법령 위반 또는 제재 사실이 없는 등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췄는지 심사</li> <li>○ <b>(이해상충방지체계)</b>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여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다음의 사항들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매매, 쌍방대리, 수수료지급, 과당매매 등의 겸업에 따라 발생가능한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여부 심사</li> <li>-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운용 담당 임원 별도 임명 여부, 전문인력이 이해상충 대상 부서간 겸직 않고 있음 등을 확인</li> <li>- 투자매매업 등 이해상충 부서와 사무실·사무장비의 물리적 분리 여부 등 확인</li> <li>- 기존 자산운용사 준법감시 경력이 충분히 있는 전담준법감시인력 배치 등을 확인</li> </ul> </li> </ul>		

# 3. 금융투자

## (5)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등록

### I. 투자자문 · 투자일임업 정의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6조 제6항 및 제7항

#### 1. 투자자문업

-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 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2. 투자일임업

-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 <참고>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업(일대일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 영위 불가)

## II.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및 제5조  
시행령 제3조~제5조 및 제6조의 2

###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함

### 2.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예시)

#### ① 증 권

-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함

구 분	예 시
① 채 무 증 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기업어음증권 등
② 지 분 증 권	주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③ 수 익 증 권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등이 발행한 수익증권
④ 투 자 계 약 증 권	투자한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가 표시된 것
⑤ 파 생 결 합 증 권	DLS, ELS 등
⑥ 증 권 예 탁 증 권	ADR, EDR 등

## ② 장내 · 외 파생상품

□ 파생상품이란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함

구 분	예 시
①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선도 (Forward) 선물 (Futures)
②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해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옵션 (Option)
③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스왑 (Sw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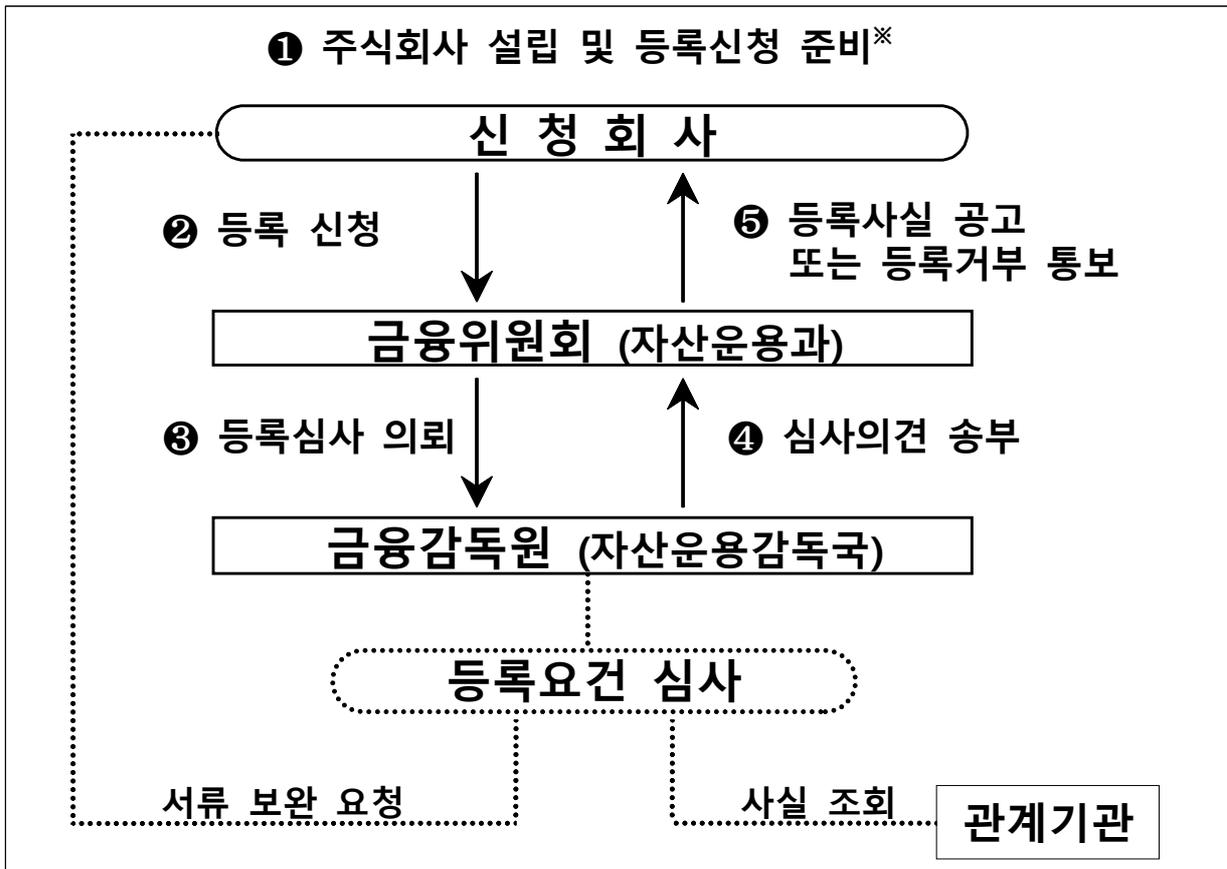
### ※ 금융투자상품 제외대상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CD),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신탁의 수익권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서 제외

### III. 등록절차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19조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

#### 1. 등록절차 흐름도



※ 금감원은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하여 「인허가 사전협의(S.T.A.R.T)」 포털을 통해 온라인 사전협의를 진행함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ss.or.kr>) → 민원.신고 → 인허가/등록.신고 → 인허가 사전협의(S.T.A.R.T) 포털 → “사전협의 신청하기”

※ 금감원 담당자와의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감원 담당자가 신청내용을 확인 후 신청회사에 연락(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

## 2. 세부 등록절차 (신설법인 기준)

### ① 주식회사 설립 및 등록신청 준비

□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회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 인허가 사전협의(S.T.A.R.T) 포털 하단 배너("투자 자문업 · 투자 일임업 등록 절차안내")에서 확인 가능

○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준비 (상호에 "투자자문"·"투자일임" 사용 금지, 법 제38조 참고)

구 분	등 록 요 건
회사형태	○ 상법상 주식회사 등
자기자본	○ 법정 최소 자기자본을 충족할 것 - 투자자문업 : 1억원(5-21-1), 2.5억원(5-1-1) - 투자일임업 : 5억원(6-1-2), 15억원(6-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3 참고)
대주주	○ 법 제18조에서 정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것
임 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할 것
전문인력	○ 투자자문업 :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 <b>1인</b> 이상 ○ 투자일임업 :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 <b>2인</b> 이상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위의 인력을 <b>모두(3인)</b> 갖추어 것
이해상충 방지체계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체계를 갖추어 것 - 이해상충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

#### ※ 전문인력 해당여부 확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자격시험에관한규정」을 참고하시어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등록신청

i) 신청회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fss.or.kr>) 접속\*하여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에서 사전협의 신청을 완료함

\* 민원·신고 → 인허가 사전협의(S.T.A.R.T) 포털 → “사전협의 신청하기” 클릭  
→ 권역별 “자본시장” 체크 → 업무종류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선택

ii) 사전협의 신청을 완료 후 등록신청 상세페이지\*에서 등록 관련 유의사항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신청내용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 사전협의 신청 완료 후 하단에 “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신청하기” 아이콘을 클릭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청내용 입력 및 증빙서류 첨부

※ 추후 실지점검 과정에서 문서 원본을 확인할 예정이므로 보관 필요

iii) 금감원 담당자가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신청회사에 연락하여 사전협의 완료

## ②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 [신청회사 → 금융위]

□ 금감원 담당자와 사전협의 완료 후 금융위원회 「인허가등록신고 시스템」 홈페이지([www.fcsc.kr](http://www.fcsc.kr))를 통해 등록신청서 접수

○ 금감원 사전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등록신청서 및 첨부파일은 금융위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에서 “금감원 사전협의 불러오기” 가능\*

\*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www.fcsc.kr](http://www.fcsc.kr)) 접속 → 등록신고 → 등록신고 신청 → 사전협의를 진행한 투자자문일임업 신청 → 금감원 접수번호 등을 입력하고 “불러오기” 클릭

### ③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 [금융위 → 금감원]

- 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신청회사의 투자자문·일임업 등록과 관련한 요건충족 등에 대한 심사를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금감원에 의뢰

### ④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 [금감원 → 금융위]

-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제출서류 및 관계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며 필요시 신청회사에 등록신청 내용의 보완을 요청\*, 심사가 종결되면 금융투자업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 심사과정에서 금감원 담당자가 자료보완을 요청한 경우, 사전협의 진행상황 조회화면에서 “보완요청 내용 상세보기”에서 보완 요구사항을 확인 가능

### ⑤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금융위 → 신청회사]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며 등록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사유발생 시에는 등록거부를 신청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 IV.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요령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련법률시행령 제22조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3호

### 1.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상 호		소재지
국문	영문	
①	①	②

① 신청회사의 국문 및 영문 상호를 기재하며 상호에는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의 글자가 포함되어서는 안 됨

② 예시)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전화번호 : 02-111-1111    팩스번호 : 02-111-1112

#### 첨부서류

- ① 정관 :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증받은 정관
- ②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
- ③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등 : 설립 또는 등록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증받은 서류
-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불가)

※ 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 2.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 ①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직위를 기재하며 등기된 임원에 대해서만 기재
- ② 임원이면서 출자자인 경우 그 소유주식수 및 출자비율을 기재
- ③ 대표경력만을 간략히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예시의 양식을 참고하여 별도로 작성하되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을 자세히 기재

### (예시)

성명	기 간	회사명	부서명	직위
홍길동	2007.3 ~ 현재	00주식회사	주식운용부	차장
	2004.3 ~ 2007.2	AA주식회사	채권운용팀	과장
진달래	2002.4 ~ 현재	BB주식회사	임원실	부사장

- ④ 상근임원인 경우 “상근”, 비상근임원인 경우 “비상근”으로 기재
- ⑤ 임원이면서 전문인력에 해당되는 경우 “Y”, 전문인력이 아닌 경우 “N”으로 기재
- 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표시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N”으로 기재

## 첨부서류

- ① 이력서 :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이력서
- ② 경력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증명서\*
  - \* 5년 기간내 경력단절기간(1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1) 해당 기간의 증명서 미제출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법인인감 날인)한 서류 및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제출
- ③ 신원조회의회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舊 본적지) 등을 기재한 신원조회의회서 (붙임2 참조)\*
  - \* 동 신원조회의회서를 신청인이 직접 등록기준지 조회기관에 의뢰한 후 회신받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함께 제출
- ④ 소속기관 확인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소속기관 으로부터의 처벌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경력증명서에 표기할 경우 제외)
- ⑤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 대표이사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본인 스스로 확인한 서류, 인감도장(개인)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붙임3-1 참조)
  - 대표이사가 당사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3호,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한 서류, 인감도장(법인)으로 날인(붙임3-2 참조)

### 3.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등록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투자자의 유형
①	②	③

- ① 등록업무 단위 : 5-1-1, 5-21-1, 6-1-1, 6-1-2 중 해당하는 업무 단위를 기재
- ② 금융투자업의 종류 :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중 해당사항 기재
- ③ 투자자의 유형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중 해당사항 기재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3

등록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최저 자기자본
5-1-1	투자자문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2.5억원
5-21-1	투자자문업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환매조건부 매매, 제6조의 2 제3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한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억원
6-1-1	투자일임업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시행령 제6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15억원
6-1-2	투자일임업	상동	전문투자자	5억원

#### 첨부서류

- ①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 조직체계, 투자자문(일임)업무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절차, 수수료 산정기준 등), 향후 2개년 간 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붙임4 참조)
- ② 계약권유문서 : 법 제97조, 영 제98조 및 규정 제4-73조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권유문서 표준서식 (붙임5 참조)

- ③ 투자자문계약서, 투자일임계약서 : 자문·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서류로 법 제97조, 영 제98조 및 규정 제4-73조의 의무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서식 (붙임6 참조)

※ 계약권유문서,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 포함 필요

- ① 임원, 대주주에 관한 사항
- ② 투자자문·일임업을 실제 수행하는 임직원 성명 및 주요경력
- ③ 임원 및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운용인력이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 거래 행위 등 위법사항으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조치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없음을 기재)
- ④ 수수료 산정 기준

- ④ 투자일임보고서 : 일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법 제99조, 영 제100조 및 규정 제4-78조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붙임7 참조)

## 4. 재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또는 감사보고서)
- ②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 연도까지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 ③ 설립 후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은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로 같음

※ 감사보고서가 아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회계법인명 기재필요), 재무제표확인원 작성법인은 기장대리 법인과 상이하야 합니다.

⇒ 등록 신청시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중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에 첨부된 경우 포함)를 통해 이미 공시된 자료의 경우 동 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 자료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전문자격내용)	전문인력 해당사항
		①	②

① 주요경력 및 전문자격내용 등을 기재

②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운용인력 중 해당사항 기재

### 첨부서류

① 경력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증명서

② 전문인력의 자격확인서류 : 시험 합격증 등 자격 확인서\*

\* (1) 합격증 및 교육내역 또는 (2)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증을 제출

③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 <업무단위 5-21-1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요건(금융투자업 관련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권유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운용업무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6. 대주주에 관한 사항

- ①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명칭),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

### 첨부서류

- ① 주주명부 : 신청회사의 인감도장이 찍힌 주주명부(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도 함께 제출해야 함(지분율 및 특수관계인 여부 등도 함께 기재)
- ②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 규정 제2-9조제1항의 결격요건을 나열하고 각 항목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서류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붙임8 참조)

### 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만 추가 제출

- ①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 : 최대주주인 법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주주명부(주민등록번호 기재)
- ② 회사 개황자료 및 납세증명서 : 주소, 대표자, 연혁,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자료 및 납세증명서
- ③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의 확인서

※ 대주주의 범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참고)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최대주주)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주요주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에 관한 서류(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law.kofia.or.kr](http://law.kofia.or.kr)) - 모범규준 -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의 사항 포함 필요(금소법 32조 등)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방법
- 민원·분쟁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및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제도개선
- 민원·분쟁 대응관련 교육·훈련(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 대응, 일반금융소비자 청약철회 대응, 계약해지요구 대응)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 ②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 이해상충방지체계 내용 작성

- ③ 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내용 포함(체크리스트)

## 8.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① 합작계약서 등 : 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한 신청 시에 한함
- ② 위임장 등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 ③ 물적설비 구비 확인
  - 사무실 관련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전산설비 및 비품 구입증빙 :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서류 등으로 설비 구비를 입증
  - 전산설비 및 사무실 구성도 : 동 서류를 통해 물적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 (사무실 구성도에 성함, 직함, 업무를 표기하여 제출)
- ④ 그 밖의 타당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신용정보 조회서 등)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방문·우편)받은 법인 및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최근 5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사본 및 신용정보 열람(발급)신청서(본인 자필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

## V. 주요 질의응답

1. 현재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6-1-2)을 영위 중인데, 일반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6-1-1)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추가 등록절차가 필요한지?

자본시장법상 일반·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 (6-1-1) 및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 (6-1-2)은 별도의 등록단위로 구분

⇒ 6-1-2 일임업자가 6-1-1 일임업을 추가하는 것은 업무단위 추가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인 등록 (변경등록) 절차가 요구됨

2.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업 변경등록\* 신청시, 투자자문업 등록신청도 동시 진행이 가능한지?

\* 예: 6-1-2 → 6-1-1

서류를 완비하였다면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3. 투자자문업 및 일임업 등록시, 신청인의 전문인력이 2명이나, 이 중 1명이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시, 2인 이상의 투자운용인력, 1인 이상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각각 갖추어야 함

○ 따라서, 2인 (1인 : 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운용인력, 1인 : 투자운용인력)으로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음

---

#### 4. 투자자문업 등록시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데, 투자권유자문인력의 구체적 요건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 투자자문업 등록시, 전문인력 요건으로 1인 이상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을 갖추어야 함 (법§18② iii.)
  - 이는 자본시장법 (§286① iii.)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이하 '협회')에서 등록·관리하는 바, 세부 요건은 협회 규정\*에 명시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10조 (세부사항 별첨 참고)
  - 한편, 투자일임업 등록시 요구되는 투자운용인력의 요건도 위에서 언급한 협회 규정에 명시
    - ※ 협회 규정은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https://law.kofia.or.kr>)에서 확인 가능

---

#### 5. 투자권유자문인력의 구체적 요건은?

---

- 자문업 등록 단위에 따라 구분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금투협회 규정\*(「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10)에서 명시
- ① (5-1-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펀드·증권·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자\*\*
    - \* 협회 전문인력 규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
    - \*\* 다만,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에 대한 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금투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자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자
  - ②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
    - \* 협회 전문인력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
    - \*\* 다만, 부동산등에 대한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추가로 갖춘 자

② (5-21-1) ① 요건 및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추가로 갖춘 자

① 국내외 금투업자 임직원으로서 금투업 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권유·투자자문·개발·투자전략·조사분석·위험관리·평가·운용 등

②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투자권유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③ 금융투자상품등 투자운용업무\* 1년 이상 종사자

\* 협회 전문인력 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운용업무

**6.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투자권유자문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 업무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협회규정 §2-10①2.나),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의 등록요건은 협회규정 제2-6조에 명시

※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 등록 요건 (협회규정 제2-6조제1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 제1호 마목 비고 제1호의 증권운용전문인력(이하 “증권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고, 제5-1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운용업무에 대한 등록교육(이하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집합투자재산(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투자일임재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고유재산(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의 고유재산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운용인력별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에 한한다)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
- 2)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법 제370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 관계 단체)
-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 4)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5)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 6) 「국가재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

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자

-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 9) 1)부터 6)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의 기관 또는 회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투자자산운용사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

## 7. 자문업 또는 일임업 등록시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하는지?

- 금융투자업 중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만 영위하면서 일임재산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인 경우,
  - 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미적용

※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8. 투자자문사의 일반직원이 투자자문 업무를 할 경우에도 해당 직원이 전문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가 투자자문업을 수행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 (법 §98①iii.)

⇒ 투자자문업은 투자권유자문인력만이 수행 가능

9. 투자자문사의 사무공간으로 공유오피스나 오피스텔을 사용해도 되는지?

- 공유오피스나 오피스텔 사용에 특별히 제한을 두진 않음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
- 공유오피스의 경우, 투자자문사만의 지정된 사무공간, 독립된 출력기기, 회의공간 구비 등이 필요

## VI. 참고사항

-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

### 1. 외국투자자문 · 일임업자

- 대주주요건 대신 신청회사에 대한 요건을 확인하며, 역외 투자자문·일임업자의 경우에는 임원 자격요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

### 2. 업무 추가 및 변경등록

- 투자자문회사가 등록업무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대주주 및 외국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요건을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완화된 요건으로 적용

### 3. 겸영금융투자업자

- 다른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대주주등에 대한 요건을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완화된 요건으로 적용하고, 시행령 제16조 제8항에 따라 신청회사에 대한 요건을 추가 심사

※ 업무를 추가/변경하는 투자자문회사, 외국투자자문일임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관련규정을 확인하고 (붙임8)대주주확인서 양식을 변경하여 확인서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VII. 첨부서류

### (붙임1) 등록신청서 서식

<별지 제3호>

####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 1. 상호 및 본점의 명칭·소재지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

###### 기재상의 주의

- 1. 결격사유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 ■ 첨부서류

- 2-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2-2.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3.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3-1.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등록업무 단위와 추가하는 등록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한다.)
- 3-2.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 등록업무에 관한 등록확인서 1부
- 3-3. 투자자문·일임계약 권유문서, 투자자문·일임계약서, 투자일임보고서 양식 각 1부

##### 4. 재무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4-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 전문인력의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첨부서류**

- 5-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6.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6-1.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경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 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6-2.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6-3.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7.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7-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7-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7-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8.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8-1.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8-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8-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의2>

역외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 명칭 등

- 상호, 설립일, 자기자본 · 운용자산규모, 본점의 위치 및 명칭, 그룹 조직도 등 개황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에 준하는 해당국가에서의 설립증빙서류 1부
- 1-3. 설립 또는 등록 신청인에 대한 출자구조를 설명한 그룹 조직도 1부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직원수 :   명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임원 현황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 첨부서류

- 2-1.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2-2. 법 제100조제4항에 따른 임직원직무수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서류 각 1부

3.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3-1.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에 영위하던 등록업무 단위와 추가하는 등록업무를 구별하여 각각 기재한다.)
- 3-2.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종전 등록업무에 관한 등록확인서 1부
- 3-3. (일반투자자)투자자문계약 권유문서, 투자자문 · 일임계약서, 투자일임보고서 양식 각 1부

4. 재무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4-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등 전문인력의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첨부서류**

- 5-1. 해당 국가에서 인정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에 준하는 자격요건 및 관련증빙서류 각 1부

**6.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6-1. 등록신청일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 6-2. 외국 투자자문업자 또는 외국 투자일임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제5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연락책임자에 관한 사항 등**

-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영위업무, 해당 신청업무의 담당자 및 연락처

**■ 첨부서류**

- 7-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7-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2) 신원조회 의뢰서 양식

신원조회 의뢰서

조회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sup>1</sup>	등록기준지 <sup>2</sup>	조회기관 <sup>3</sup>

[기재시 유의사항]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등록번호 기재
2. 등록기준지(舊 본적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현 등록기준지를 기재
3. 등록기준지 소재 조회기관 및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기재

조회내용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붙임3-2) 임원요건 충족 확인서(대표이사 확인)

## 임원요건 충족 확인서

당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 중 당사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는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확인) (인)

(붙임4) 업무영위방법 작성요령(예시)

1.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체계

- 자문·일임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전체 조직체계를 직위·성명 등을 기재하여 담당업무를 자세히 표현한 조직도를 첨부

2.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절차)

3. 사업계획

1) 개요

- 회사개황, 설립배경, 사업목표 및 전략, 주된 타겟시장, 업계 현황 등

2) 향후 2개년 사업계획

① 투자자문 및 일임업 수행 전략

- 투자원칙, 주된 운용방법(주식, 파생 등), 기타 전략 등 기술

② 마케팅 전략 : 주된 대상고객 및 마케팅 전략 등을 기재

## (붙임5) 계약권유문서 필수 기재사항(법 제97조)

###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 가. 투자조언의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나. 투자자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주식, 채권, 유가증권지수, 유가증권옵션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 투자조언의 방법을 구술,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조언방법 및 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 라. 당해 투자자문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마. 고객의 투자자문 요구 방법이나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투자일임의 범위 및 제공방법

- 가. 일임받는 투자판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나. 투자일임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주식, 채권, 유가증권지수, 유가증권옵션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 당해 투자자문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 및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라. 주로 거래하는 증권회사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당해 투자자문회사와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가. 업무절차 또는 지침은 고객의 학력, 경력, 유가증권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당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4.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를 실제로 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가.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 등 증권거래법상의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의 요구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당해 임직원이 과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 대상 재산의 투자실적을 경력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주요경력에는 전·현직장의 근무부서 및 기간, 재직시 담당업무, 주요 자격증 취득현황 및 업무관련 주요학위 취득현황 중 주요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5. 고객과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

가.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기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두고 있는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6.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할 책임의 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자문회사의 금지행위를 간략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나. 포괄적 면책조항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7. 수수료 산정에 관한 사항

- 가. 당해 회사의 일반적인 수수료 체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 나. 당해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되는 수수료 산정방법, 수수료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다. 계약의 중도해지 시 해지수수료 산출방식 및 환급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 8.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의 고객에의 통보 방법

- 가. 투자실적을 평가하는 지표(투자수익률 등)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나. 투자결과의 고객통보방법은 통보시기, 통보수단, 통보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8. 기타 : 시행령 제9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4-73조 각 호의 사항 (관련법규를 참고)

## 9. 금소법 관련 사항

- 가. (금소법 17조 등) 일반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처분 목적, 재산상황, 취득/처분 경험의 확인
- 나. (금소법 19조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할 투자성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자문일임사가 정하는 위험등급, 수수료, 계약 해지/해제 관련, 계약기간, 예상손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 다. (금소법 27조 등) 자문업무에 따른 보수 및 그 결정기준, 보수 외에 추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취득/처분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자문업 영위시에만 해당)

## (붙임6) 투자자문계약서, 투자일임계약서 작성요령\*

\* 관련법규에 의한 계약서 의무 포함사항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2. 투자자문업무 또는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고객이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 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10. 당해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1.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12.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을 두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13. 투자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14.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응한다는 사항
15. 회사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당해 임직원에 과거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의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17. 법 제98조 및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8.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19.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20.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1.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22. 금소법 관련 사항(계약권유문서와 동일)

## (붙임7)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방법\*

\*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 22호에 의한 투자일임보고서 작성 방법

<제22호>

###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방법

#### 1. 투자일임계약의 개요

(단위 : 원, %)

계약상대방		계약기간	'00.00.00 ~ '00.00.00
계약금액		평가금액	
누적수익률 (기간 : '00.00.00 ~ '00.00.00)		해당기간 수익률 (기간 : '00.00.00 ~ '00.00.00)	

- 1)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일과 계약 만료예정일을 기재한다.
- 2) “평가금액”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말일의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증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투자일임계좌 잔액을 기재한다.
- 3) “누적수익률”은 계약일로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의 수익률을 기재하되, 투자일임수수료 등 제반비용 차감후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 4) “해당기간수익률”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수익률을 기재한다.
- 5) 구체적인 수익률 산정기준 및 계약금액 산정기준은 표 하단에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2. 투자자의 투자성향

- 가. 투자자의 연령, 재무상태, 금융자산비중, 투자위험 감수능력 및 투자경험 등을 토대로 투자일임업자가 파악한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재한다.
- 나. 투자자가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매도 및 편입제한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하여 부여한 각종 제한사항을 기재한다. 제한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실이 없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 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시장상황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적용된 투자전략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나.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종목, 매매가격, 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을 일자별로 기재한다.

(단위 : 원, 주, 좌)

구분	종목명	매매일자	수량	매매단가	매매금액	위탁매매수수료	각종세금

- 1)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매수와 매도내역을 기재한다. 투자일임재산 중 일부를 콜론 등으로 운용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표 하단에 별도 기재한다. 매수와 매도내역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매매가 아닌 사유(예: 공모주 청약, 유상증자, 감자 등)로 인해 발생한 거래도 원칙적으로 기재하고, 다만 동 거래내역을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 하단에 기재하고 이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
- 2) “구분”은 매수와 매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3) 동일일자에 동일종목 매수가 여러 번 발생하거나 동일종목 매도가 여러 번 발생한 경우에는 평균매매가격 등을 적용하여 단일의 매수 또는 매도로 기재할 수 있다.
- 4) “매매금액”은 수량과 매매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및 총 계약기간 동안 투자일임계좌에서 발생한 주식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단위 : 원, %)

구분	매수금액	매도금액	매매회전율	
			해당기간 (‘00.00.00 ~ ‘00.00.00)	기간누적 (‘00.00.00 ~ ‘00.00.00)

- 1) “매매회전율”은 대상기간 중 산정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매수금액과 매도금액을 평균한 가액을 대상기간 중 투자일임계약의 전체 일평균평가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예시 : [(매수금액 + 매도금액) ÷ 2 / (투자일임계약의 전체 일평균 평가금액)] × 100]
- 2) “해당기간”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동안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 3) “기간누적”은 당해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다만, 동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1년간의 매매회전율을 기재한다.

라.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일정규모 이상으로 투자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소, 투자전략, 시장상황분석 등을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예시] 투자일임재산이 특정주식에 일정규모(예: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이상) 이상으로 투자되는 경우의 그 주식 또는 평가액 기준으로 투자대상범위 상위 3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위험(원금손실가능여부, 과거 주가추이 및 관련 산업동향 등), 조사분석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인한 동 주식 발행회사의 실적 및 향후 주가전망, 동 주식에 대한 투자를 선택한 이유 및 보유기간 등에 대한 전략 등을 기재한다.

마.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 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을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바.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포트폴리오, 추천종목, 매매시기, 매매가격 등에 관하여 투자자문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사항(예: 회사명, 회사개요, 전문인력현황 등)을 기재한다.

#### 4. 투자일임재산 운용실적 및 자산구성현황

가. 투자일임재산 운용실적은 최근 3, 6, 9, 12개월간 수익률 및 누적수익률을 기재하되, 투자일임수수료 등 제반비용 차감후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단위 : %)

구 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투자일임 계약 수익률				
비교지수 수익률				

- 1) “비교지수 수익률”은 투자일임계약서, 투자권유문서 등에서 특정 비교지수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지수의 수익률을 기재한다. 비교지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로서 투자일임재산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코스피 수익률을 기재하고 주식투자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비교지수 수익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2) “최근 3, 6, 9, 12개월”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 6, 9, 12개월을 의미한다.

나. 투자일임계좌에서의 자산 종류별(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등) 보유현황 및 비중을 표 또는 그래프를 이용하여 기재한다.

다. 투자일임계좌에서의 종목별 보유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보유비중 등을 기재한다.

(단위 : 원, 주, 좌)

종목명	보유 수량	취득 단가	시가	보유 잔액	보유 비중

- 1) “취득단가”는 평균취득가액을 기재한다.
- 2) “보유잔액”은 보유수량 × 시가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3) 보유비중은 각 종목별 보유잔액이 전체 투자일임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한다.
- 4) 현금 등과 같이 보유수량, 취득단가 등을 기재하기 부적절한 경우에는 보유잔액 및 보유비중만 기재할 수 있다

### 5. 투자일임수수료 등 비용발생내역

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및 계약기간 중 발생한 투자일임수수료, 위탁매매 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 제세금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단위 : 원)

구 분	투자일임 수수료	성과 보수	위탁매매 수수료	각종 세금	기타 비용	총비용
해당기간 (‘00.00.00 ~ ‘00.00.00)						
기간누적 (‘00.00.00 ~ ‘00.00.00)						

- 1) “해당기간”은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 중 발생한 비용을 기재한다.
- 2) “기간누적”은 당해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부터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기간까지 발생한 비용을 기재한다. 다만, 동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발생한 비용을 기재한다.
- 3) 규정에 따라 위탁매매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수수료”란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투자일임수수료 부과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기재한다.

다.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방법, 성과보수를 부과한 경우 부과기준 충족여부 및 부과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 6.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직위	성명	운용 개시일	운용중인 다른 투자일임계약 현황		주요 경력	연락처
			투자일임 계약(건)	운용규모 (백만원)		

- 1)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실제로 담당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기재한다.
- 2) “주요 경력”에는 최근 5년간 전·현 직장의 근무부서 및 기간, 재직시 담당업무, 운용관련 자격증 취득현황 등을 기재한다.

## 7. 그 밖의 작성방법

- 가. 투자일임재산 운용과정에서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여지가 있는 거래가 있는 경우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기재하여야 한다.
- 나. 투자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당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다.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표 등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다만 그 변경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붙임8) 대주주 확인서 양식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서명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대주주가 아닐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제1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 ○○

성 명 : (인)

[대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서명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대주주가 아닐 것	
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제1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 ○○

성 명 : (인)

[대주주가 개인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서명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닐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제1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 ○○

성 명 : (인)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서명
등록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등록 받으려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의 대주주가 아닐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21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2-9조제1항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 ○. ○○

성 명 : (인)

## VIII. 유권해석

### 1.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투자자에 대한 대출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증권, 재산의 대여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일임(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재산의 대여를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됨
  - 그러나 동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겸영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제1항제2호의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해당 겸영 관련 법령에서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행위를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업자는 동법 시행령 제72조에서 한정한 신용공여의 범위 내에서 제98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금전 및 증권의 대여가 가능함

## 2. 스마트리밸런싱 주문예약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마트리밸런싱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와 관련된 조건을 지정하고, 증권사는 고객이 지정한 조건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주문 실행을 대행하는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로서, 고객에게 거래수수료만을 징구할 뿐 여타 수수료는 제공받지 않음
  - 동 서비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를 지정하고 그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주문만 실행해 주는 주문시스템 제공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제기한 방식으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다른 영업 행위가 부수되지 않는다면, 동 서비스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하기 어려움
  - 다만, 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일임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사항 외에도 시스템의 운용방식 및 약관 등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점검·확인할 필요가 있음

### 3. 부동산 투자일임업의 범위 관련

- 부동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등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일임업의 업무 범위에 부동산의 취득, 처분 이외에 '부동산의 개발, 관리, 개보수, 임대 업무 등'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영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한 업무가 자본시장법 제229조와 동법 시행령 제240조 등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업무 범위(부동산의 개발, 관리, 개량 및 임대 등)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투자일임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등(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포함)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 등록 사례

### 3-(5)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등록

신 청 회 사	OOOO	신 청 일	2022. 10. OO.
처 리 부 서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인허가팀	완 료 일	2022. 12. OO.
신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8조에 따라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회사는 '2◇.12월 설립된 법인(자본금 37.1억원)으로 일반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일임업 등록을 신청</li> </ul>		
심 사 내 용	<input type="checkbox"/> 신청회사가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사 및 외부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자본시장법령의 등록요건 충족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형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주식회사 여부를 심사</li> <li>○ (자기자본) 재무제표 등을 통해 회사 자기자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3의 최저자기자본(신청회사의 경우 24.5억원)을 충족하는지 심사</li> <li>○ (임원)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제재 사실 등을 확인하여 지배구조법 제5조에서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가 있는지 심사</li> <li>○ (대주주) 대주주가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거나, 부실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 등의 요건 충족여부 심사</li> <li>○ (신청회사) 신청회사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li> <li>○ (전문인력) 전문인력 자격시험 합격증 등을 확인하여 등록신청 업무 영위에 필요한 전문인력 상근여부 심사(신청회사의 경우 투자권유 자문인력 1인, 투자운용인력 2인 등 총 3인 이상의 전문인력 상근 필요)</li> <li>○ (이해상충방지체계)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여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체계를 갖추었는지 확인</li> </ul>		

# 3. 금융투자

##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 I. 개요

####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개요(「자본시장법」§9②)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클라우드펀딩\* 유형(기부/후원형, 보상형, 대출형, 증권형) 중 '증권형(투자형) 클라우드펀딩'에 해당

\* 창업 초기 기업, 영세 중소기업, 예술가, 사회운동가 등이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불특정의 대중(crowd)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십시일반으로 웹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모집하는 행위를 통칭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하 "발행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 ①투자자에게 그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 권유, ②직·간접으로 발행인과 그 증권의 모집·사모를 분담, ③투자자로부터 그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아 발행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 이 때 '발행'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 등에 관하여 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

\*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

□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중소기업창업법」§2에 따른 창업자 증권상장법인, 금융업 및 보험업자, 부동산업자, 유흥주점업자, 무도장 운영업자 등은 제외

- 또한,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법」상 사회적기업

##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 개요(「자본시장법」§117의4①)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법상 투자중개업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등록으로 갈음함으로써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있음

- 신설법인 외에 기존 금융투자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은행, 보험회사 등), 비금융업자\*도 경우에 따라 등록 가능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는 해당 법령상 제한이 없어야 하고, 비금융업자는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참고 인가제 vs. 등록제

- ☑ (인가제) 고객과 직접 채권·채무관계를 가지거나(투자매매업),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는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에 대해 적용
- ☑ (등록제) 고객의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및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에 대해 적용

### ※ 인허가 심사 정보의 입력·관리(금감원 심사 담당자 해당사항)

□ 인허가 심사 진행상황 및 심사결과 등 주요 정보를 금감원 내부 '인허가 심사지원시스템'에 입력·관리할 것\*

\* 31개 인허가승인·등록 사항(금융투자업 인가 등 인허가 12개, '금산법상 출자승인' 등 승인 15개, '채권평가회사 등록' 등 등록 4개)이 기록관리 대상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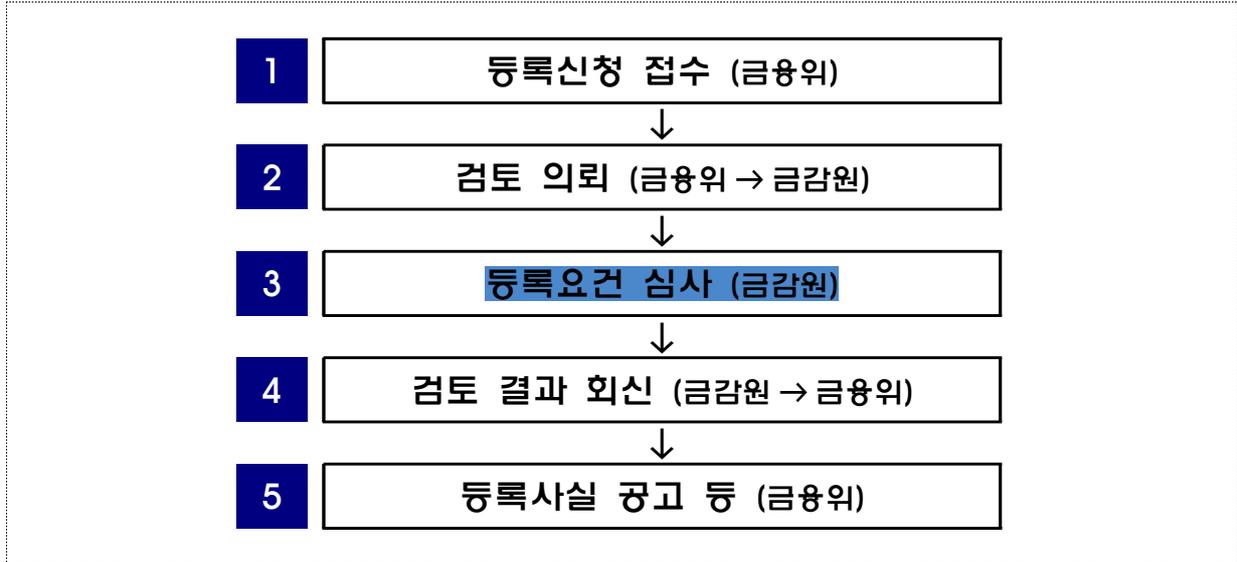
- (필수 입력사항) 인허가 신청접수, 심사의견 금융위 통보, 금융위의결·인허가 처리완료\*·자진철회 중 택1, 외부평가위원회 개최, 실지조사 개시·종료

\* 금융위 보고 건, 금융위원장 전결 건, 금감원장 전결 건 등 인허가승인·등록 처리 시 금융위 의결을 요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입력사항) 금감원 심사개시, 금융위 안전상정, 사실조회 개시·종료, 자료보완요청 개시·종료, 금융회사 담당자 인적사항(성명, 소속 부서, 직위, 연락처) 등

## II. 등록절차

###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절차 ]



#### 1. 등록신청 접수 (금융위)(「자본시장법」§117의4③, ④, ⑤)

- 신청인은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고, 금융위는 이를 접수한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 신청인은 금감원이 등록요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사본 1부 제출 要

- 다만, 등록신청서 **흡결의 보완기간** 및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등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2. 검토 의뢰 (금융위 → 금감원)(「자본시장법」§438④)

- 금융위는 금감원에 공문으로 등록 검토를 의뢰\*하고, 금감원은 이를 접수한 후 등록요건 심사에 착수

\* 금융위는 등록 검토 업무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음(「자본시장법시행령」 <별표20>§25의2)

### 3. 등록요건 심사 (금감원) (「자본시장법」§117의4②)

- 금감원은 법인격, 자기자본, 대주주, 인력(임원 포함), 전산·물적,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등 총 8개 등록요건 심사

등록요건	심사기준	심사방법
① 법인격	■ 「상법」 상 주식회사 등	■ 제출서류 검토
② 자기자본	■ 자기자본 5억원 이상	■ 제출서류 검토
③ 대주주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제출서류 검토 ■ 유관기관 사실조회
④ 인력	■ (임원) 「지배구조법」제5조 충족 ■ (전문인력) 내부통제 1명, 전산 2명 확보	■ 제출서류 검토 ■ 유관기관 사실조회 ■ (필요시) 실지점검
⑤ 전산·물적	■ 전산설비·통신수단, 업무공간·사무장비, 보안설비, 보완설비 등 구비	■ 제출서류 검토 ■ (필요시) 실지점검
⑥ 사업계획 타당성	■ 내부통제장치, 투자자 보호,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 제출서류 검토
⑦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 「자본시장법」제31조 경영건전성기준 충족 ■ 금융관련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 제출서류 검토 ■ 유관기관 사실조회
⑧ 이해상충 방지체계	■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차단 체계 구비	■ 제출서류 검토 ■ (필요시) 실지점검

※ 등록요건 심사 세부내용은 「Ⅲ.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참고

### 4. 검토 결과 회신 (금감원 → 금융위) (「자본시장법」§438④)

- 금감원은 등록 검토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에 공문으로 회신

### 5. 등록사실 공고 등 (금융위) (「자본시장법」§117의4⑥, ⑦)

- 금융위는 금감원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등록을 결정한 경우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함

### III.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 등록요건 심사 세부내용 활용 시 주의사항

- 본 내용은 포괄적으로 예시된 것이므로 신청인은 이를 필요충분한 등록 심사기준으로 인식하여서는 아니되며,
  - 등록 신청 이전에 금감원 등록 심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1 법인격 요건 (「자본시장법」§117의4②1.)

- (심사요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및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 (심사방법) 등록 신청 시의 법인 등기부등본(금융기관의 경우 인가서류 등 포함) 등을 통해 확인

#### 2 자기자본 요건 (「자본시장법」§117의4②2.)

- (심사요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함
  - \* 등록일까지 발생할 비용(인건비 등)에 대한 완충자본(buffer) 필요
  -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분기말일\* 자기자본에서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포함하여 계산
  - \* 기존 금융투자업자 및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로 하되, 기존 업무의 최소자기자본을 감안
- (심사방법) 등록 신청 시의 등기부등본 또는 주금 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되
  - 기존 회사인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최근분기말) 등을 통해 확인

### 3 대주주 요건 (「자본시장법」§117의4②6., 「지배구조법」§2⑥)

- (심사대상) 신청인의 법적실체에 따라 심사대상을 달리 규정
  - ①「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대주주', ②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본점'을 대상으로 함

#### 참고 대주주의 범위( ① + ② + ③ )

- ①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지배구조법시행령」§3)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② (주요주주) 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②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예: 임원인 주주로서 5% 이상 소유)
- ③ (기타) 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②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최대주주의 최대주주·대표자 등)

- (심사요건) 대주주 또는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본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법적실체(금융기관, 내국법인, 내국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 따라 각각의 심사요건을 규정(「자본시장법시행령」<별표2>, 「금융투자업규정」<별표3>)
  - 기존 금융투자업자 및 경영금융투자업자는 완화된 대주주 요건\*을 적용(합병·분할 및 분할합병 시에도 적용)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등 요건은 적용 배제하고 사회적 신용 요건은 일부 배제 혹은 완화

- (심사방법) 등록 신청 시의 제출서류(예금, 종합소득세 증빙서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등) 및 확인서, 국내외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기관과 해외 본국 감독기관

## [ 대주주 요건 정리 ]

구 분	근거 법규조항		요건
	「자본시장법시행령」 <별표2>	「금융투자업규정」 <별표3>	<붙임3> 다. 대주주 확인서
<b>A. 신규 등록</b>			
(1) 최대주주 / 주요주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가. 금융기관	1호	1호 가목	A-(1)-가
나. 내국법인	2호	1호 나목	A-(1)-나
다. 내국인	3호	1호 다목	A-(1)-다
라. 외국법인(외국 금융투자업자)	4호	1호 라목	A-(1)-라
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GP 등			
① 금융기관	5호 가목	1호 마목 (1)	A-(1)-마-①
② 내국법인	5호 나목	1호 마목 (2)	A-(1)-마-②
③ 내국인	5호 다목	1호 마목 (3)	A-(1)-마-③
④ 외국법인	5호 라목	1호 마목 (4)	A-(1)-마-④
(2) 사실상 지배자(최대주주의 최대주주·대표자)			
가. 금융기관		1호 바목 (1)	A-(2)-가
나. 내국법인		1호 바목 (2)	A-(2)-나
다. 개인		1호 바목 (3)	A-(2)-다
라. 외국인		1호 바목 (4)	A-(2)-라
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GP 등		1호 바목 (5)	A-(2)-마
<b>B. 기존 금융투자업자 등록</b>			
(1) 최대주주			
가. 금융기관 / 내국법인 / 내국인	1호 마목 1)*, 3)		B-(1)-가
나. 외국법인(외국 금융투자업자)	1호 마목 1)*, 3), 4호 라목*		B-(1)-나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GP 등			
① 금융기관 / 내국법인 / 내국인	1호 마목 1)*, 3)		B-(1)-다-①
② 외국법인	1호 마목 1)*, 3), 4호 라목*		B-(1)-다-②
(2) 최대주주 이외의 대주주	1호 마목 3)		B-(2)
* 최대주주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으로 완화된 요건 적용			

### 참고 대주주 요건 관련 기타 점검사항

-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관련 법령상 타법인 출자 규정(「금산법」상 출자 승인 등) 및 관련 감독부서와 협의 여부
- (최대주주간 합작투자인 경우) 합작계약서상 경영권 우위 귀속주체, 교착상태 (Deadlock) 해소 규정(동등한 지위로 경영 참여 시) 및 이면계약 없음 확인서

#### 4 인력 요건 (「자본시장법」§117의4④, 5.)

- (임원요건) 임원이 「지배구조법」§5① 및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2>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심사항목

-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⑤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 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⑥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3.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4. 각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 심사항목

- ⑦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자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 ⑧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
- ⑨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 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⑩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 **(전문인력요건)**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갖추어야 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규정」<별표2의2>1.  
인력에 관한 요건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요건\*을 충족(미달한  
경우 결격)해야 함

\* 기존 금융투자업자 및 겸영금융투자업자는 기존 업무 인력 활용 가능

### 심사항목

(1) 내부통제인력: 1명

①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전산인력: 2명(단, 전산설비를 종합위탁\*한 경우에는 1명)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  
(비금융회사의 전산개발·관리·기획 등 업무 포함)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탁회사가 하드웨어(서버 자체 소유는 가능), 소프트웨어, 관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 **(심사방법)** 등록 신청 시의 제출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경력  
증명서, 전문인력 자격증, 상근 증빙서류(건강보험증 등) 등) 및 확인서,  
국내외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후

\*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기관과 해외  
본국 감독기관

- 실지점검 등을 통해 제출 내용과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

## 5 전산·물적 요건 (「자본시장법」§117의4②4.)

- **(심사요건)**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를 갖출 것**
- **(점검내용)**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등을 점검\***

\* 물적 설비는 계량적 예시를 제시하기 어려우므로 서류검토, 실지점검 등에서 점검하는 항목을 제시하는 것이며, 등록 신청인(경영금융투자업자 등) 및 등록 신청 내용에 따라 점검항목은 수정 가능

- **코스콤 또는 이와 동등한 능력을 지닌 전산처리전문회사에 전산설비 및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

\* 위탁계약서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수탁회사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함(「자본시장법」§42②)

심사항목	점검내용
(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 구축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업무 영위에 적합한 전산시스템 보유 및 가용성·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산기</li> <li>- DB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li> <li>-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li> <li>-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등</li> </ul> </li> <li>■ 내부 네트워킹, 전용회선 구축 등 통신시스템 구성</li> </ul>
② 침입탐지·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성이 검증된 보안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등</li> </ul> </li> </ul>

심사항목	점검내용
③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이용자 확인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산기 및 각종 서버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및 사용 통제방안 구비</li> <li>-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log-in) 기록 유지 등 정보유출대책 마련</li> </ul> </li> <li>■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 출입 통제(카드키, 비밀번호 이용 등) 및 미승인된 출입자의 방문일지 기록</li> <li>- 전산실 출입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CCTV 배치</li> </ul> </li> </ul>
④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및 백업자료 별도 보관·관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거래정보 등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업자료의 소산보관장소 마련</li> <li>- 기간별 소산보관대책 마련</li> <li>- 백업과 관련한 외부업체와의 계약 등</li> </ul> </li> </ul>
(2)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①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사무공간 등 충분한 업무공간 및 부서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확보</li> </ul>
②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의 감독·검사 시 법적 장애가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스, 임대, 위탁 등 제한적 확보 여부 점검</li> </ul> </li> </ul>
(3) 보안설비	
①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의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 보안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비상발전기 등 구비</li> <li>- 전산실 내 CCTV 사각지대 제거</li> <li>- 장애에 대비한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의 이중화</li> </ul> </li> <li>■ 사무실 및 전산실에 대한 365일 ×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미인가자 접근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장소 CCTV 설치 및 녹화기록 유지</li> </ul> </li> </ul>

심사항목	점검내용
② 파업 등 불시사태 대비 비상계획 마련 여부	■ BCP(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4) 보완설비	
①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발생에 대비한 비상복구시스템 구비</li> <li>-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li> <li>-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센터 마련</li> <li>- 재해복구센터 내 단말기 등 백업체계 구축</li> </ul>
②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 마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li> <li>- BCP를 포함한 재해복구 훈련 실시</li> <li>- 재해복구 훈련 시 복구테스트 결과</li> </ul>

**(심사방법)** 등록 심사 시 사업계획서, 전산설비 흐름도, 외부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통해 심사한 후

○ 실지점검 등을 통해 제출 내용과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

## 6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자본시장법」§117의4②3.)

□ **(심사요건)**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유지 등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할 것

심사항목	점검내용
<b>(1)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b>	
① 이사회, 경영진의 구성 및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경영진, 감사의 구성 및 역할을 명확히 규정</li> <li>■ 영업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견제와 균형관계 확보</li> </ul>
② 영위하는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제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감사위원회(감사), 영업본부별, 부서별, 직원별 역할과 위임관계가 명확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li> <li>■ 리스크관리·내부통제기준 및 절차의 문서화 여부</li> <li>■ 금융사고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인과 부서의 직무를 적절히 분리하고 있는지 여부</li> </ul>
③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업 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 여부</li> <li>■ 사회적 평판과 윤리면에서 직을 수행할 만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li> </ul>
<b>(2)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b>	
①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방법서에 기술하는 영업내용 및 방법이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하는 업무상 준수할 사항과 부합할 것</li> </ul>
②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li> <li>-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의무 여부 등</li> </ul>
③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소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신청인 및 임원에 대한 제재 여부 검토</li> </ul>

□ **(심사방법)** 등록 심사 시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심사\*

\* 청약 배정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업무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여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법의 적정성 검토 등 포함

## 7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자본시장법」§117의4②7.)

- **(심사요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자(신청인)는 「자본시장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신설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부 심사항목을 적용하지 않음

### 심사항목

#### (1) 건전한 재무상태

- ① 「자본시장법」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을 말한다)을 충족

#### (2) 사회적 신용

- ①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③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④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 **(심사방법)** 등록 신청 시의 **제출서류 및 확인서**, 국내외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기관과 해외 본국 감독기관

## 8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자본시장법」§117의4②8.)

- (심사요건)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공개중요정보 등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추는 것

심사항목	점검내용
①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 가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의 파악,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li> <li>■ 내부통제조직의 설치 여부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상시 파악 및 평가시스템 구축 여부</li> <li>■ 신규 업무 또는 신상품 취급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li> </ul>
②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 고지방법, 거래 제한 및 주의 목록 등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법 및 절차</li> <li>■ 정보 유출 유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계약 등에 비밀유지의무 조항 삽입 등</li> </ul> </li> </ul>
③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체계 등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조직을 통한 이해상충 발생 요소의 정기 및 수시평가 의무화 여부</li> </ul>

- (심사방법) 등록 심사 시 사업계획서, 내부통제기준 등을 통해 심사\*한 후 실지점검 등을 통해 이행 여부 등을 확인

\* 내부통제기준이 법령 및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금투협회)에 비추어 적절한지 확인하고, 임직원의 계열회사 겸직 여부 등 파악

## IV. 참고사항

### 1 실지점검 (「자본시장법시행령」§118의5④)

- **(개요)** 금융위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필요 시 실지점검(출장) 실시

#### **참고**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시 실지조사·점검

- ☑ **(인가)**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시행령」§17⑥)
- ☑ **(등록)**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내용이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자본시장법시행령」§22④) ⇒ 필요 시 실지점검(출장) 실시

- **(주요 점검사항)** 인력, 전산·물적,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등
  - **(인력 요건)** 신청 업무 영위를 위한 전문인력(내부통제 1명, 전산 2명) 확보 여부 등 확인
  - **(전산·물적 요건)**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물적 설비 보호), 보완설비(사고 발생 시 업무의 연속성 유지) 구비 여부 등 확인
    - \* 중앙기록관리기관(발행·투자한도 확인) 및 청약증거금관리기관(청약증거금 수탁관리) 간 연계시스템 구축 필요
  -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및 적절한 정보 교류차단체계의 구비 여부 등 확인
- **(요건 미충족시)** 등록요건 미충족 사항이 시정 가능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 불가 통보

## 2 등록유지요건 점검 (「자본시장법」§117조의4⑧, §420①)

□ (개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 시 금융위는 등록 취소 가능

- 이 때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은 제외하고, 자기자본 및 대주주 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적용(「자본시장법시행령」§118의6)
-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 영업 시작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자본시장법시행령」§373④)

□ (자기자본 요건 완화)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5억원×70% = 3.5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동 요건은 매 월말 기준으로 적용

-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특정 월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도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봄

□ (대주주 요건 완화)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등 요건은 출자 이후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 배제

-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일부 배제 혹은 완화

### 참고 대주주 등록유지요건 세부내용

대주주 요건 중 사회적 신용 요건	등록 시	등록유지요건
① 법령 위반 여부	적용	완화 (대주주, 벌금형 이상 → 최대주주, 5억원의 벌금형 이상)
②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적용	좌동
③ 채무불이행 여부	적용	적용 배제
④ 기타 건전 금융거래질서	적용	적용 배제

# 〈붙임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 양식

## □ 금융투자업규정 <별지 제3호의4>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

#### 1. 상 호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본점의 소재지

##### ■ 첨부서류

- 2-1.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3.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2의 2 제1호다목의 자격을 말한다.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4-1. 등록업무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5. 재무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5-1.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외감대상인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써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5-2.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법 제8조제9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5-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6-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방법(투자광고, 법 제117조의10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자료제공과 관련한 업무절차,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
- 6-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관련기관(중앙기록관리기관 등)과의 계약체결현황 및 계약서 각 1부
- 6-3.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한다)와 투자자 보호에 대해 기재한 서류 각 1부
- 6-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및 발행인·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

##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첨부서류

- 7-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7-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 8.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8-1. 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8-2.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9-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9-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9-3. 그 밖에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10. 그 밖의 기재사항

### ■ 첨부서류

- 10-1.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10-2. 외국인투자인가서(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사본 1부
- 10-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10-4.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2〉 사업계획 요약 양식

### 1. 신청 개요

회사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 :</li> <li>◆ 영문 :</li> </ul>		
소재지	◆		
등록신청 업무	◆		
등록신청 목적	◆		
현재 영위 업무	구분	업무내용	관련 법규상 최소자기자본
	금융업	◆	◆
	기타	◆	◆
자기자본	◆		
임원구성	직위	성명	주요이력
최대주주			
주주구성 <sup>1)</sup>	주주명	지분율	구분 <sup>2)</sup>

주1) 대주주요건 심사대상 및 5% 이상은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고 나머지는 통합하여 기타로 표시

2)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구분

3) 칸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삽입 또는 삭제하여 적절하게 조정

## 2. 심사대상 대주주 현황

대주주현황	주주명	구분 <sup>1)</sup>	의결권 있는 주식수	비율(%)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예) 배우자, 자녀 등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주요주주				

주1)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외국인' 등으로 구분

※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지점인 경우 :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명칭 기재

※ 필요시 대주주 등 신청인의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도표 첨부

### 3. 자기자본 현황

#### 1. 자기자본(202x.xx.xx. 신청일 현재) : (1) + (2) - (3) = 억원

(1) 신청일 전 가장 최근 분기말(202x.xx.xx.) 자기자본 : 억원\*

(2) 자본금·자본잉여금의 증감액 : 억원\*\*

(3)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본업에 대한 요구 자기자본 : 억원\*\*\*

\*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 가장 최근 분기말일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등록 신청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본업 영위와 관련된 금융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

#### 2. 최저자기자본 : (1) + (2) = 억원

※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인 경우에만 (1)을 합산하여 산출하며, 전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경우는 (2)만 적용

(1) 기존 인가단위에 대한 유지 자기자본 : 억원

(단위: 억원)

인가단위	금융투자업 종류	금융투자상품 범위	투자자 유형	최저 자기자본	유지 자기자본*
합 계					

\* 인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70%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 억원

## 4. 전문인력 현황

### 1. 전체 인력현황(신청일 기준)

구 분	인원	해당 업무 경력별 <sup>1)</sup> 인원수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년 이상	비고 <sup>2)</sup>
내부통제업무						
전산업무						
기타						
전문인력 소계						
재무관리						
인사/총무						
기타						
영업지원 소계						
등기임원						
총 계 <sup>3)</sup>						

주1) 경력은 당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근무 기간도 포함

2) 주식팀, 채권팀 등 해당 경력자가 배치되는 부서 명칭

3) 등기임원, 미등기임원, 직원을 합한 전체 임직원 수

### <자격증 소지자 현황>

구 분	공인 회계사	변호사	금융투자 분석사	재무위험 관리자	투자자산운용사 (일임운용인력 제외)
자격증 수					

(작성요령)

- ① 복수 자격자의 경우 중복기재 가능
- ② 국내 자격증으로 한정

##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위한 인력현황(신청일 기준)

소속 \ 인력	내부 인력 <sup>1)</sup>	기 확보 인력 <sup>2)</sup>	채용예정 인력 <sup>3)</sup>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무	000(입사일)	000(입사일)	000(입사예정일)
내부통제업무			
전산업무			
기타			
합계			

(작성요령)

※ 1년 이상 해당업무 경력을 가진 인력을 대상으로 작성

- 주1) 기존 인력 중 신청 등록업무를 담당할 예정 인력을 기재  
 2) 신청 등록업무 영위를 위해 채용을 완료한 인력을 기재  
 3) 향후 확보할 인력을 기재

##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위한 인력의 경력현황(신청일 기준)

성명	채용 여부	소속	직급	해당 업무 경력 <sup>1)</sup>	자격증 <sup>2)</sup>	비고 <sup>3)</sup>
000	채용	영업부	부장	총 7년 1. 00증권 3년(영업팀) 2. 00선물 4년(영업팀)	투자자산운용사	

(작성요령)

※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위한 인력 현황”에 기재한 인력에 대한 경력 현황을 기재

- 주1) 공인회계사, 변호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투자자산운용사(일임운용인력 제외)  
 자격증 및 투자권유 관련 자격증 포함(모든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으로 한정)  
 2) 해당업무 경력 2년 이상 인력 중 금융·재무 또는 전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 보유시 기재

※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영위 중인 인가업무와 관련한 전문인력  
 현황을 추가 제출

## 5. 물적설비 현황

- \*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등의 해당 페이지를 상단에 명기한 후 등록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 가능)

(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관련 내용
<p>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②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③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④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2)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관련 내용
<p>①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②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3) 보안설비	관련 내용
<p>①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②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4) 보완설비	관련 내용
<p>①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②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5) 기타	관련 내용
<p>① 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 6.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등의 해당 페이지를 상단에 명기한 후 등록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 가능)

(1)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보호	관련 내용
<p>① 경영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②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③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2) 법령 및 건전금융거래질서 준수	관련 내용
<p>①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②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닐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③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실이 없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 7. 이해상충방지체계 현황

\*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등의 해당 페이지를 상단에 명기한 후 등록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 가능)

이해상충 방지체계	관련 내용
①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
②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
③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
④ 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

## 〈붙임3〉 임원 · 신청인 · 대주주 확인서 양식

### 가. 임원 확인서

#### 임원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 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p>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 또는 감사위원</li> <li>2.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li> <li>3.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li> <li>4. 각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li> </ol>	

결격사유내용	확 인
<p>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자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li> <li>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li> <li>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li> </ol> </li> <li>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li> <li>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li> <li>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li> </ol> </li> <li>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li> <li>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li> </ol>	
<p>해당 금융투자업자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자</p>	
<p>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p>	
<p>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p>	

본인은 상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호 및 「금융투자업규정」<별표2의2> 제1호 다목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 나. 신청인(본인) 확인서

### 신청인(본인)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 인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2항 제7호,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5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다. 대주주 확인서

### 대주주 확인서 [A-(1)-가]

결격사유내용	확 인
<p>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p>	
<p>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p>	
<p>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p>	
<p>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p> <p>(가) 유상증자 (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다) 내부유보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p>	
<p>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결격사유내용	확 인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대주주 확인서 [A-(1)-나]

결격사유내용	확 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당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유상증자 (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다) 내부유보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대주주 확인서 [A-(1)-다]

결격사유내용	확 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 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나)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 소득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대주주 확인서 [A-(1)-라]

결격사유내용	확 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인가신청일 현재 인가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을 것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행정처분은 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가)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기관경고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나)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또는 업무정지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대주주 확인서 [A-(1)-마-①]

결격사유내용	확 인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대주주 확인서 [A-(1)-마-②]

결격사유내용	확 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당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대주주 확인서 [A-(1)-마-③]

결격사유내용	확 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대주주 확인서 [A-(1)-마-④]

결격사유내용	확 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행정처분은 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가)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기관경고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나)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또는 업무정지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대주주 확인서 [A-(2)-가]

결격사유내용	확 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대주주 확인서 [A-(2)-나]

결격사유내용	확 인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별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대주주 확인서 [A-(2)-다]

결격사유내용	확 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료 등록된 사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대주주 확인서 [A-(2)-라]

결격사유내용	확 인
<p>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행정처분은 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p> <p>(가)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기관경고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p> <p>(나)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또는 업무정지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p>	
<p>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p>	
<p>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 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을 것</p>	
<p>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p>	
<p>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대주주 확인서 [A-(2)-마]

1. 대주주 확인서[A-(2)-마-①] : GP 등이 금융기관  
⇒ 대주주 확인서[A-(1)-마-①]와 동일 [p.529 참고]
2. 대주주 확인서[A-(2)-마-②] : GP 등이 내국법인  
⇒ 대주주 확인서[A-(1)-마-②]와 동일 [p.530 참고]
3. 대주주 확인서[A-(2)-마-③] : GP 등이 내국인  
⇒ 대주주 확인서[A-(1)-마-③]와 동일 [p.531 참고]
4. 대주주 확인서[A-(2)-마-④] : GP 등이 외국법인  
⇒ 대주주 확인서[A-(1)-마-④]와 동일 [p.532 참고]

## 대주주 확인서 [B-(1)-가]

결격사유내용	확 인
<p>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2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대주주 확인서 [B-(1)-나]

결격사유내용	확 인
<p>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2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대주주 확인서 (B-(1)-다)

1. 대주주 확인서(B-(1)-다-①) : GP 등이 금융기관 / 내국법인 / 내국인

⇒ 대주주 확인서(B-(1)-가)와 동일 [p.538 참고]

1. 대주주 확인서(B-(1)-다-②) : GP 등이 외국법인

⇒ 대주주 확인서(B-(1)-나)와 동일 [p.539 참고]

## 대주주 확인서 (B-(2))

결격사유내용	확 인
<p>「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p>	

본인은 상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제2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4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제4-10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x. xx. xx.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붙임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요건 관련 법규

### 1. 법인격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b>제117조의4(등록) ②</b>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p> <p style="margin-left: 20px;">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p> <p style="margin-left: 20px;">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p>		

## 2. 자기자본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17조의4(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2.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p>	<p>제118조의4(등록요건) ①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p> <p>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금융위원회</u>가 정하여 고시한다.</p>	<p>제4-105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영 제118조의5제5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분기말일(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자기자본에서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p>

### 3. 대주주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b>제117조의4(등록)</b>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p> <p><b>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b>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는 것</p> <p>가. 제1호가목의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것</p>	<p><b>제16조(인가요건 등)</b> ⑦ <u>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li> <li>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li> </ol> <p><b>제118조의4(등록요건)</b> ④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제118조의16제1항제2호라목 및 제118조의18제3항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에서 같다]는 <u>별표 2의 요</u></p>	<p><b>제2-1조(인가요건)</b> ② <u>영 제1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으로서 설립근거법에 따른 소유한도 유무, 주식소유의 분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그 금융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b>제4-104조(등록요건)</b> ② 영 제118조의4제4항 본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u>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1호 중 “금융투자업”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u></p>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금융위원회</u>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li> <li>2.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li> <li>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li> </ol> <p><b>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b> 2. <u>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u>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p> <p>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별금형”은 “5억원의 별금형”으로 본다.</p> <p>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별금형”은 “5억원의 별금형”으로 보고,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p>	<p>업”으로,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업무단위”는 “등록업무”로 본다.</p> <p>③ 영 제118조의4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대주주의 세부요건은 영 제118조의6제2호 각 목과 같다.</p>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p> <p>다.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본다.</p>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2]**

**대주주의 요건**(제16조제6항 관련)

구분	요건
<p>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li> <li>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임원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li> <li>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li> </ol>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서 개인인 경우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 다)인 경우	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인가 받으려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을 것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기관전용사 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제16조제7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마목 및 제4호라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3]

### 대주주의 요건

(제2-6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2-12조제1항, 제7-41조의2제2항, 제8-79조제3항 및 제8-85조제3항 관련)

#### 1. 금융투자업 인가시 대주주의 요건

가.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2 제1호 관련)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그 법인의 수정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이 표, 별표 4 및 별표 5에서 같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2)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나목(4)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4) 대주주의 출자자금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차입에 따라 조성한 자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유상증자

(나)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다) 내부유보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5)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16조제8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3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라)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6) 건전한 신용질서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최근 5년간 신청한 금융투자업 등록업무 단위와 동일한 등록업무 단위의 직권말소를 받은 자이거나, 그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였던 사실

나.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영 별표2 제2호 관련)

- (1) 가목(1), (4) 및 (5)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나)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 (3) 당해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채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2 제3호 관련)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2)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일 것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적법한 납세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 (나)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다) 그 밖에 (가) 및 (나)에 준하는 소득재원
- (3) 가목(5)의 요건을 충족할 것
- (4)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나)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 (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라) 가목(6)(나)에서 정하는 사실

라.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2)부터 (5)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2 제4호 관련)

- (1) 가목(1)의 요건을 충족할 것
- (2) 인가신청일 현재 인가받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을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을 것
- (3)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 (4)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행정처분은 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징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가)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간 기관경고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나)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정명령, 중지명령 또는 업무정지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가목(5) 및 (6)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2 제5호 관련)

(1) 가목의 금융기관인 경우 : 가목(2), (3), (5) 및 (6)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나목의 내국법인인 경우 : 가목(5) 및 나목(2)·(3)·(4)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다목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가목(6) 및 다목(1)·(4)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라목의 외국법인인 경우 : 가목(5)·(6), 나목(4)(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및 라목 (3)·(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1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그 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가목(5) 및 (6)의 요건

(2) 그 자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가목(5) 및 나목(2)의 요건

(3) 그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가목(5), 다목(1) 및 (4)의 요건

(4) 그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라목(4) 및 (5)의 요건

(5) 그 자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마목의 요건

사. 가목(5)·(6) 및 나목(2)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가목 (5)·(6) 및 나목(2)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 2. 경영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의 요건

가. 주주구성, 경영지배구조 및 금융산업의 업무영역의 합리적 개편방향등을 감안하여 경영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만을 적용할 수 있다.

(1) 대주주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중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2) 대주주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4)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중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나. 가목에 불구하고 금융투자업 경영인가가 정부의 권고·요구·명령에 따르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 3. 금융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시의 대주주(당해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당사회사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인 경우에 한한다)의 요건[시행령 제16조제6항 2호 등 관련]

가. 대주주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마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중 제1호가목(5)(가) 및 (나)와 관련한 요건. 이 경우 제1호가목(5)(가)의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로 본다.

나. 대주주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1호마목(4)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중 라목(4) 및 가목(5)(나)와 관련한 요건. 이 경우 라목(4)는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본다.

## 4.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인력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17조의4(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p> <p>5. 임원이 「<u>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u>」 제5조에 적합할 것</p>	<p>제118조의4(등록요건) ③ 법 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p>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는 것</p>	<p>제4-104조(등록요건) ① 영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p>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b>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li> <li>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li>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ol>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p> <p>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p> <p>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p>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p>	<p><b>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li> <li>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li> <li>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li> <li>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li> <li>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li> </ol> <p><b>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b></p>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u>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p>	<p>다.</p>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p>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p> <p>3. 제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p>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제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p>③ <u>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u>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 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p>	<p><b>제2조(임원의 자격요건)</b> 영 제7조 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인 경우를 말한다.</p>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2]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금융투자업규정 제4-104조 제1항 관련)

####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분야별 인원수 이상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1) 내부통제 1명
- (2) 전산 2명(단, 전산설비를 종합 위탁한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

나. 가목의 전문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 (1) 가목(1)의 내부통제인력의 경우: 별표 2의 제1호가목(1) 및 제1호가목(3)부터 제1호가목(5)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 가목(2)의 전산인력의 경우: 별표 2의 제1호가목(3)부터 제1호가목(5)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1호가목(4) 중 "대학원 등"은 "대학 등"으로 한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다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 **인력·물적 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제2-6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7-41조의2제1항, 제8-79조제1항·제2항 및 제8-85조제1항·제2항 관련)

####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인가(등록)신청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4)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 5. 전산·물적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17조의4(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p>	<p>제118조의4(등록요건) ③ 법 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p> <p>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p> <p>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p> <p>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p> <p>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p>	<p>제4-104조(등록요건) ① 영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p>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2]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 건**

(금융투자업규정 제4-104조 제1항 관련)

#### 2. 물적 설비

#####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 (4)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1)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 (2)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 다. 보안설비

-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 6.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17조의4(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 것</p>	<p>제118조의4(등록요건) ② 법 제117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li> <li>2.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 방법을 갖출 것</li> <li>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li> </ol>	<p>제4-104조(등록요건) ① 영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p>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2]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 건**

(금융투자업규정 제4-104조 제1항 관련)

#### 3. 사업계획

##### 가. 내부통제장치 및 투자자 보호

- (1) 경영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투자자 또는 주주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 (2)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나.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 (2)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실이 없을 것

## 7.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제117조의4(등록)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7.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p>	<p>제118조의4(등록요건) ⑤ 법 제11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제16조(인가요건 등)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1. 건전한 재무상태: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p> <p>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다.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p>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p> <p>라.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p> <p>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p> <p>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p> <p>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p>	

## 8.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p><b>제117조의4(등록)</b>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8.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요건을</u> 갖추는 것</p>	<p><b>제118조의4(등록요건)</b> ⑥ 법 제117조의4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장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는 것</li> <li>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추는 것</li> </ol>	<p><b>제4-104조(등록요건)</b> ① 영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u>별표 2의2</u>와 같다.</p>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2]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

(금융투자업규정 제4-104조 제1항 관련)

#### 4. 이해상충방지체계

- (1) 내부통제기준에 반영된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 체계가 합리적이고 검증가능할 것
- (2)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적정할 것
- (3)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관리 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이 이루어 질 것
- (4) 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 3. 금융투자

### (7)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변경 승인

#### I. 대주주 변경 승인의 개요

##### 1. 대주주변경 승인제도의 개념

-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함)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기존주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 기존 주주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 주식 취득등을 한 날부터 1개월
    - 다른 주주의 감자 또는 주식처분 등의 원인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 대주주가 된 날부터 1개월
- 금융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동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2. 대주주의 범위

### □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 주요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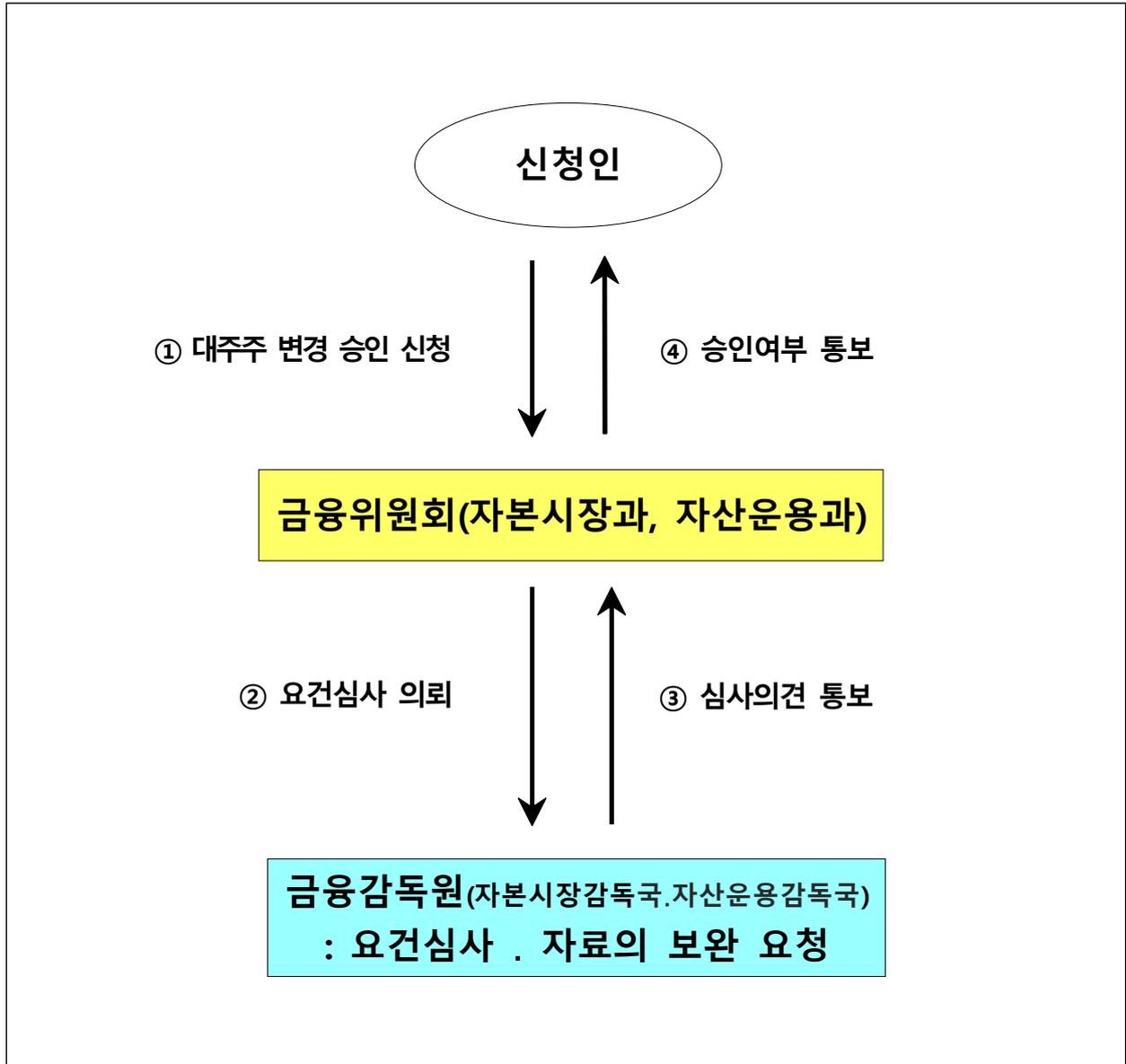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자
-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5%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포함)
  -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II. 대주주변경 승인 절차



※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외에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유의

### Ⅲ.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요건

#### 대주주 변경승인 세부 요건(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4)

#### 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 1 제1호 관련)

가.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 (1)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 (2)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 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4)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5)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것

## ② 대주주가 기금인 경우(영 별표1 제2호 관련)

가.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③ 대주주가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 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영 별표1 제3호 관련)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 (1) 유상증자
-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 (3) 내부유보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라. 제1호다목(1), (2),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2)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

#### ④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 제4호 관련)

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다. 제1호다목(1), (2) 및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 (4)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

㉔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

\* 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영 별표1 제5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구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⑥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영 별표1 제6호 관련)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제4호 나목, 다목,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⑦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영 별표1 제7호 관련)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인 경우 :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3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4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 제6호나목, 라목의 요건(단, 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충족할 것

## 8] 특례

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불구하고 영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주주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해당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다목의 요건

(2) 해당인이 기금인 경우 : 제2호의 요건

(3) 해당인이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3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

(4) 해당인이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4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5) 해당인이 외국인인 경우 : 제5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

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대주주가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2)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 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직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그 사실이 종료될 때까지 경영에 관여하는 직위에 임명할 수 없다.)
- (3) 그 밖에 (1) 및 (2)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 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배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다목 및 제3호마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금융투자업자 또는 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대주주 변경승인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이내에 당해 금융투자업자간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100분의 200”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 라. 대주주가 정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연금공단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5호까지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V.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작성 요령

### 1.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

<시행세칙 별지 제8호>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내용 1부. 끝.

신청인 (인)

주 소

연락처

대리인 (인)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내용

### 1. 신청인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내국인인 개인의 경우>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생년월일	
주 소			

### 2.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구 분	법인명 (성 명 <sup>2)</sup> )	관 계 <sup>3)</sup>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 <sup>4)</sup> (직 업)	비 고
본 인					
특수관계인 <sup>1)</sup>					

주 1)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기재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 3.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종 <sup>1)</sup>	금융기관 <sup>2)</sup> 해당여부	자산 <sup>3)</sup>	부채 <sup>3)</sup>	자본 <sup>3)</sup>	당기순이익 <sup>3)</sup>
○○○						
△△△						
×××						
⋮						
계						

- 주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3) 신청일 이전 최근 대차대조표(분기별 임시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 4. 주식취득예정 금융회사 주식발행 현황

금융회사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 5.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계획

구 분	법인명 (성명)	관계 <sup>1)</sup>	승인신청일 현재 소유주식 현황(A)			추가로 취득 하고자 하는 주 식 수(B)	추가취득후 소유주식수 (C=A+B)	추가취득 예정시기	추가취득 방 법 <sup>2)</sup>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백만원)				
본 인						( ) <sup>3)</sup>	( ) <sup>3)</sup>		
특수관계인	:					( )	( )		
	소계					( )	( )		
계						( )	( )		

- 주 1)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3) ( )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재

6. 주식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액

구 분	추가 취득 예정주식수	예상소요액(백만원)		기 타
		최근 1개월 평균주가기준 ( ) <sup>1)</sup>	신청일 현재 주가기준 ( ) <sup>1)</sup>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주 1) ( )에는 주당가격 기재(단위 : 원)

【첨부서류】 최근 1개월 평균주가 산출근거자료

7.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부 동 산	기 타	계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8.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9. 향후 소유계획 및 추가 취득계획

## 10.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점검표

### 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 제1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sup>1)</sup>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100분의 200 이하) <sup>2)</sup>	(부채/자기자본) %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3)</sup>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4)</sup>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주 1) ①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규정 별표4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 ②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  
(가)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 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  
(나)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 일 것  
(다)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 대주주가 (가) 내지 (다)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 2)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②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영 별표1 제2호 관련)

항 목	내 용
<p>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p>	
<p>(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p>	
<p>(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sup>1)</sup></p>	
<p>(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p> <p>(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p> <p>(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sup>2)</sup></p>	
<p>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p>	

주 1)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③ 대주주가 금융기관 및 기금등 외의 내국법인<sup>1)</sup>인 경우(영 별표1 제3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부채/자기자본)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라. 대주주가 다음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2)</sup>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마.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3)</sup>	

주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

2)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

④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 제4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지 제1호서식 붙임2 참조)	
나.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 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 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 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 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 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 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 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1)</sup>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 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 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 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 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 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 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 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 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함	
(4)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2)</sup>	

주 1)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⑤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sup>1)</sup>(영 별표1 제5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sup>2)</sup>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구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3)</sup>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4)</sup>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주 1)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①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

②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③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을 적법하게 영위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⑥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sup>1)</sup>(영 별표1 제6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지 제1호서식 붙임 <sup>2</sup> 참조)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마.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 <sup>2)</sup>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바.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함	
4)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3)</sup>	

주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

2)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⑦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영 별표1 제7호 관련)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3호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4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마. 제5호의 외국인인 경우 :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 제6호나목, 라목의 요건(단, 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충족할 것

---

**【첨부서류】**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가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정관
  -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 다. 위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서류
  - 가. 외국 기업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등)

## V. 관련 법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3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26, 별표1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5~ §16, 별표4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보 험

### (1) 보험업 영위 허가

#### I. 보험회사 허가 개요

##### 1. 보험회사 허가의 의미

- 법에서 규정한 보험사업의 허가는 회사설립의 허가가 아닌 보험사업의 영위, 즉 보험영업의 허가임
  - 행정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에는 관할행정기관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보험회사가 사업등기를 하려면 금융위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또한, 보험회사 신설뿐만 아니라 보험사업의 일부종목만을 영위하던 회사가 새로운 종목의 보험사업을 추가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함(단, 동일 보험업 내 보험종목 신설된 경우 허가 간주)

##### 2. 보험회사 영위 주체

- 주식회사, 상호회사, 외국보험회사(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포함)만 보험업 영위의 허가를 받을 수 있음
  - 개인, 협동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음

### 3. 보험회사 허가 및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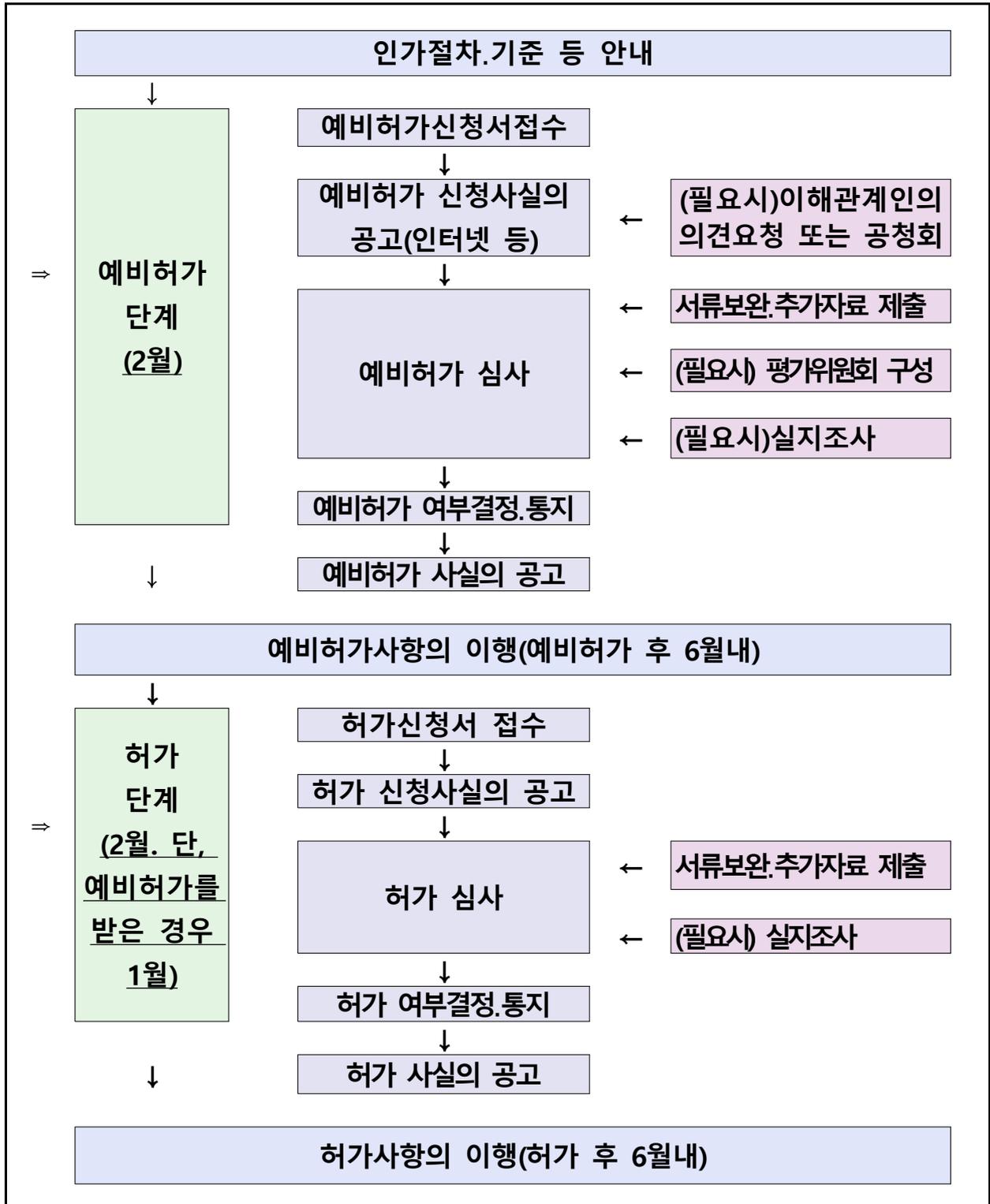
-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보험종목에 대한 보험업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재보험, 보증보험 제외)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 보험종목의 종류 〉

- ①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생명보험
  - 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②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화재보험
  - 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 다. 자동차보험
  - 라. 보증보험
  - 마. 재보험
  - 바. 책임보험
  - 사. 기술보험
  - 아. 권리보험
  - 자.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보험
  - 차. 비용보험
  - 카. 날씨보험
- ③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 가. 상해보험
  - 나. 질병보험
  - 다. 간병보험

## II. 보험업 허가 절차

### 1. 보험업 허가절차 흐름도



## 2. 보험업 허가절차별 주요 내용

- 허가의 절차는 예비허가와 본허가로 구분됨
  - ※ 소요기간 :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2개월(단, 예비허가시 1개월)
  
- 허가절차의 안내
  - 감독원장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허가 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문의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면담·협의하여야 함
  
- 예비허가신청서의 접수
  - 예비허가 신청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 업무별로 예비허가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함
  
- 예비허가 신청사실의 공고 등
  - 금융위는 예비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보험종목의 범위,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 금융위는 예비허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허가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한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소명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보

## □ 예비허가의 심사

- 감독원장은 예비허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
- 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 예비허가의 결정

- 예비허가 여부는 관계법령 및 심사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예비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

## □ 허가신청서의 접수

- 신청인은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신청한 업무별 허가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금융위에 제출

## □ 허가

- 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허가 거부시에는 서면으로 통보
-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신청인은 허가일부터 6월 이내에 허가 대상행위를 이행할 의무. 다만, 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보완서류 요청

- 금융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 심사시 보완서류 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예비허가 또는 본허가시 부과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이행기일 경과 후 상당기간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 III. 보험업 허가 심사기준

#### 1. 자본금 요건

-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보유할 것
- 보험종목의 종류중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함
  - 생명보험, 연금보험 : 200억원
  - 보증보험, 재보험 : 300억원
  - 자동차보험 : 200억원
  - 해상보험 : 150억원
  - 화재보험, 책임보험 : 100억원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 100억원
  - 기타 : 50억원
- ※ 2 이상의 보험종목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보험종목 구분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300억원으로 함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는 보험종목별 요구되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2 상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함
  - \*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
-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또는 기금은 20억원으로 함

####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 ▶ (취급종목) 생명, 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질병, 상해
- ▶ (보험기간) 1년 /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 5천만원
- ▶ (회사 수입보험료) 연간 500억원

## 2. 인적 · 물적시설 구비요건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 임원의 결격사유 :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에 관한 보험전문인력과 전산요원을 갖추고, 해당 보험업 영위를 위한 전산설비 구축 및 사무실 등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 인력·물적시설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보험업감독규정 별표 2)

1. 인 력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영위함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확보할 것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  
나.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임계리사

다.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무 수탁자.

다만,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이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라. 전산설비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전문인력

마. 그 밖에 영업·계약·보전·보험금지급 등 보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 물적시설

가. 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등 영업 시설을 구비 할 것

나. 제3호의 전산설비를 갖출 것. 다만 전산설비의 적정여부는 보험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판단함

다. 전산설비 등 주요 물적시설의 관리·운영 등과 관련하여 영 제10조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전산설비

가. 전산기기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구비사항
(1) 하드웨어(H/W)는 당해 보험사업 영위에 적합한 처리용량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을 것	(가) 허가신청한 보험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부합하는 시스템별 메모리, 중앙처리장치, 디스크 용량 구비 (나) 각종 서버 구비 : 메인서버, 통신서버, 방화벽서버, 웹서버(인터넷서비스 계획시) 등 (다) 근거리통신망(LAN) 설치 및 사업장간 네트워크 구비
(2) 하드웨어(H/W)에 대한 백업(backup)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가)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등 주요 본체장비에 대한 예비 확보 (나) 통신제어장치의 예비 확보 (다) 통신회선의 이중화·우회화
(3) 장애발생시 보험가입자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성능의 전산기기를 구축할 것	(가) 시스템장애 복구시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장치(시스템) 구비 (나) 시스템 및 각종 서버의 다중화, 네트워크의 이중화 장치 구비 (다) 백업시스템(Backup System) 구비

#### 나. 전산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구비사항
(1) 보험사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을 것	(가) 계약 및 영업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나) 관리지원 및 자산관리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다) 경영 및 모집조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2) 전산자료 관리방안이 적정할 것	(가) 액세스 권한 및 오퍼레이션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비밀번호, 식별코드 등의 등록·변경관리자 지정 2) 액세스 실패기록 소프트웨어 구비 3) 임의조작 등 부정사용 방지대책 마련
(3) 각종 전산자원의 장애 및 처리능력 저하로 인한 보험가입자 보호대책을 갖출 것	(가) 시스템장애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복구대책 및 복구절차 등 비상계획 수립
(4)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 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	(가) 전산시스템의 운용, 시스템개발·변경, 중요정보 사항에 대하여 해킹 등의 방지를 위한 이중 방화벽 (fire-wall) 등 보안시스템 설비 (나) 데이터 인증 및 암호화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다중화구조의 구비

#### 다. 전산기기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	구비사항
(1)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재해발생 등의 가능성이 적은 곳에 위치할 것	(가) 환경 1) 전산시스템 관련업무 전용구역 마련 2) 화재, 공기오염, 진동에 대한 피해 예방설비 구비 3) 피뢰기 설치 (나) 구조 1) 건물의 중량, 적재하중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2)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	(가)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설치 (나) 항온항습장치 설치 (다) 화재경보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3) 전산실에 대한 보안대책방안이 적정할 것	(가) 침입감지·경보장치 구비 (나) 다중출입통제장치 설비 1) 인터폰, 자기카드·아이시(IC)카드, 비밀번호 입력장치 등 출입관리 설비 구비

#### 4. 인력·물적 시설의 외부위탁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 3. 사업계획 요건

-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채무 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절할 것
- 사업방법서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할 것
-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 지급여력비율 유지 및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후순위채무 포함)으로 조달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달 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4. 대주주 요건

- 대주주의 범위

- ① **최대주주**
- ② **주요주주** (10% 이상 주주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③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대주주 요건

-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보험업법시행령」 [별표 1] 및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대주주의 요건(보험업법 시행령 [별표1])

구 분	요 건
	시 행 령 별 표 1
<p>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li> <li>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li> <li>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li> </ol>

	<p>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p>	<p>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p>	<p>가. 허가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해당</p>

	<p>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p>	<p>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2호나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보험업감독규정 별표4)

구 분	요 건
	감 독 규 정 별 표 4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인 경우 (영 별표1의 제1호 관련)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 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이상일 것</p> <p>나.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p> <p>(1)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이상일 것</p> <p>(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이상일 것</p> <p>(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일 것.</p> <p>(4) (1) 내지 (3) 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할 것</p> <p>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허가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이 200%이하일 것</p> <p>라. 대주주는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위하여 조달한 자금이 차입(후순위채무 및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어서는 아니되며,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p> <p>마.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영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p>

	<p>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바.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기관 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 또는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거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p> <p>사. 대주주가 부실금융기관 또는 허가·인가·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경우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자 일 것</p>
<p>2. 대주주가 제1호외의 내국 법인(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 제외)인 경우 (영 별표 1의 제2호 관련)</p>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p> <p>나. 제1호 가목, 다목 내지 마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 1의 제3호 관련)</p>	<p>가. 제1호 라목, 마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3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기업(이하 “외국법인”)인 경우 (영 별표 1의 제4호 관련)</p>	<p>가. 보험업(허가받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을 것</p> <p>나. 제1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5.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영 별표 1의 제5호 관련)</p>	<p>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p>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 다목, 마목 및 사목,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 마목 및 사목, 제3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 마목 내지 사목, 제2호 가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충족할 것



예비허가신청서(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본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본국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영업 개시일	
	신청 구분	지점 설립	자본금(기금)	
신청내용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			
	주된 점포 소재지			
	보험업의 종류			
「보험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귀중				
첨부서류(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본점이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에서 적법하게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서 4. 대한민국에서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5. 본점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6. 본점의 최근 3년간 준비금의 적립 명세와 주주(사원) 배당실적 7.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재무상태 건전성 증명서 8.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신용평가 결과가 “투자적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9. 최근 3년간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감독 당국 등으로부터 행정 및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0. 국내지점 대표자 등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1.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 시설, 상품개발계획 등) 1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계획 1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0mm×297mm(인쇄용지(2급) 60g/m<sup>2</sup>)

## 2. 본허가 신청서 양식

보험업 감독규정 <별지 제3호>

보험업의 허가 신청서(주식회사·상호회사)		
신청 내 용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본금(기금)	
	상 호	
	주된사무소 소재지	
	보험업의 종류	
	영위하고자하는 보험종목	
<p>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리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p>금융위원회 귀중</p>		
<p><input type="checkbox"/> 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li> <li>2. 창립총회 의사록</li> <li>3.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li> <li>4. 임원 및 주주자격 증명서류</li> <li>5. 주주(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명부와 소유주식수(상호회사인 경우는 출자지분)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li> <li>6.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li> <li>7.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li> <li>8.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 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시설, 상품개발계획 등)</li> <li>9. 보험감독규정 별표2의 제3호에서 정하는 전산설비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li> <li>10. 신청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li> <li>11. 법 제9조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li> <li>12. 사업방법서</li> <li>13. 내부통제기준</li> <li>14. 예비허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li> <li>15.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p>※예비허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허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p>		

보험업 감독규정 <별지 제4호>

보험업의 허가 신청서(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신청인	본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 호		본 국 명	
	주된사무소 소재지		영업개시일	
신청내용	신청 구분	지점 설립	자본금(기금)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 호			
	주된점포 소재지			
	보험업의 종류			
	영위하고자하는 보험종목			
<p>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p> <p>금융위원회 귀중</p>				
<p><input type="checkbox"/> 첨부서류(외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번역문을 첨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li> <li>2.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li> <li>3. 설치되는 국내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li> <li>4.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 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시설, 상품개발 계획 등)</li> <li>5. 보험감독규정 별표2의 제3호에서 정하는 전산설비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li> <li>6. 신청당시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li> <li>7.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li> <li>8. 주주(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 명부와 소유주식수(상호회사인 경우는 출자지분)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li> <li>9. 사업방법서</li> <li>10. 내부통제기준</li> <li>11. 예비허가가 있었던 경우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li> <li>12.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p>※예비허가절차가 생략되는 경우, 예비허가시 구비해야할 서류 첨부</p>				

### 3. 허가신청 제출서류

□ 주식·상호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허가	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1))</li> <li>○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li> <li>2. 발기인회의 의사록</li> <li>3. 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li> <li>4. 사업방법서</li> <li>5. 보험업의 영위를 위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계획서</li> <li>6. 주요출자자가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li> <li>7. 합작계약서(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해 보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li> <li>8.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시설 및 전산설비계획 상품개발계획 등)</li> <li>9. 업무개시 후 3년간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계획</li> <li>10.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신청서(감독규정 별지 제3호)</li> <li>○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li> <li>2. 창립총회 의사록</li> <li>3.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li> <li>4. 임원 및 주주자격 증명서류</li> <li>5. 주주(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명부와 소유주식수(상호회사인 경우는 출자지분)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li> <li>6.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li> <li>7.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li> <li>8.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시설, 상품개발계획 등)</li> <li>9. 보험감독규정 별표2의 제3호에서 정하는 전산설비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li> <li>10. 신청당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li> <li>11. 법 제9조 제1항 또는 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li> <li>12. 사업방법서</li> <li>13. 내부통제기준</li> <li>14.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li> <li>15.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li> </ul>

□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허가	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허가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2))</li> <li>○ 첨부서류 (외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번역문을 첨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li> <li>2. 사업방법서</li> <li>3. 본점이 본국에서 적법하게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서</li> <li>4. 대한민국에서 대표자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li> <li>5. 본점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li> <li>6. 본점의 최근 3년간 준비금의 적립내역과 주주(사원)배당실적</li> <li>7.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재무상태 건전성 증명서</li> <li>8.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신용평가 결과가 "투자적격"임을 증명하는 서류</li> <li>9. 최근 3년간 본국의 감독당국 등으로부터 행정 및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li> <li>10. 국내지점 대표자 등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li> <li>11.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시설, 상품개발계획 등)</li> <li>12.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연도별 지급여력비율 달성계획</li> <li>1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신청서(규정 별지 제4호)</li> <li>○ 첨부서류 (외국어로 되어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 그 번역문을 첨부)</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li> <li>2. 준법감시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li> <li>3. 설치되는 국내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li> <li>4. 업무개시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작성기준, 추정재무제표, 보험종목별 계약 성적예정표, 자금조달계획, 영업조직 및 영업방법, 직종별 인원계획, 물적시설, 상품개발 계획 등)</li> <li>5. 보험업감독규정 별표2의 제3호에서 정하는 전산설비를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li> <li>6. 신청당시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li> <li>7.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기금의 납입 및 조달출처를 증명하는 서류</li> <li>8. 주주(상호회사인 경우는 사원) 명부와 소유주식수(상호회사인 경우는 출자지분)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li> <li>9. 기초서류(사업방법서,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li> <li>10. 내부통제기준</li> <li>11. 예비허가사항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li> <li>12. 기타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li> </ol>

# ◆ 인허가 사례

## 4-(1) 보험사업 영위 허가

### 1. 국내법인 보험업 허가

신 청 회 사	OOOOO손해보험주식회사	신 청 일	2021.12.01.
처 리 부 서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완 료 일	2022.04.13.
신 청 내 용	<p><input type="checkbox"/> OOOOO손해보험은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 재보험 제외)를 영위하고자 금융위의 예비허가를 받은 후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 허가를 신청</p> <p>○ 동 회사는 통신판매를 통해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영위하고자 허가를 신청</p>		
심 사 내 용	<p><input type="checkbox"/> OOOOO손해보험의 보험업 허가 신청에 대해 예비허가 후 본 허가 신청 전까지 이행하기로 한 조건 및 요건을 심사*하여 금융위에 심사의견을 송부</p> <p>* 자본금보유 요건, 전문인력·물적시설 구비요건 실지조사 등</p> <p>○ 보험업의 (예비)허가 신청 전 비공식적 협의단계에서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필요서류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쟁점사항이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실시</p> <p>○ 예비허가 신청 단계에서 사업방법서, 사업계획서(자금조달 계획, 직종별 인원 계획, 물적시설, 상품개발계획 등) 등의 보완이 필요하여 자료 보완을 요청</p> <p>○ 보험업 허가의 요건 심사 및 첨부서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요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등 확인</li> <li>- (인력 및 물적시설 요건)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li> <li>-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적절한지,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자본 등 자금 조달 방법이 적절한지 등을 심사</li> <li>- (대주주요건) 부채비율,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등을 대내부서 및 대외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li> </ul>		

## 2.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보험업 허가

신 청 회 사	OOOOOO재보험 한국지점	신 청 일	2016.08.04.
처 리 부 서	보험감독국 보험인허가팀	완 료 일	2016.09.21.
신 청 내 용	<p><input type="checkbox"/> OOOOOO재보험은 국내에 지점을 설립하여 재보험업을 영위하고자 금융위의 예비허가를 받음(16.2.17.)</p> <p>○ 예비허가를 받은 6개월 이내에 전문인력과 물적시설을 갖추어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업 허가를 신청</p>		
심 사 내 용	<p><input type="checkbox"/> OOOOOO재보험 한국지점의 보험업 허가 신청에 대해 예비허가 후 본 허가 신청 전까지 이행하기로 한 조건 및 요건을 심사*하여 금융위에 심사의견을 송부</p> <p>* 영업기금 보유 요건, 전문인력·물적시설 구비요건 실지조사, 외국보험 회사(본점)의 적격성 요건 등</p> <p>○ 보험업의 (예비)허가 신청 전 비공식적 협의단계에서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필요서류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쟁점사항이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실시</p> <p>○ 예비허가 신청 단계에서 사업방법서, 사업계획서(자금조달 계획, 직종별 인원 계획, 물적시설, 상품개발계획 등) 등의 보완이 필요하여 자료 보완을 요청</p> <p>○ 보험업 허가의 요건 심사 및 첨부서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기금요건) 자금이체확인서 등 확인</li> <li>- (인력 및 물적시설 요건)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li> <li>- (본점 적격성 요건) 본점 감독당국 및 사법당국을 통해 확인</li> <li>-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위해 적정한지,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자본 등 자금 조달 방법이 적절한지 등을 심사</li> </ul>		

### 3. 국내법인 보험종목 일부 허가

<b>신 청 회 사</b>	OO손해보험주식회사	<b>신 청 일</b>	2015.04.10.
<b>처 리 부 서</b>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b>완 료 일</b>	2015.05.27.
<b>신 청 내 용</b>	<p><input type="checkbox"/> OO손해보험은 권리보험종목을 추가로 영위하기 위해 보험업법 제5조에 따라 보험업 허가를 신청</p> <p>○ 이는 금융계열사의 담보 대출시 저당권 확보를 위한 권리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소유권용 권리보험 시장에 참여하기 위함임</p>		
<b>심 사 내 용</b>	<p><input type="checkbox"/> OO손해보험의 보험업 허가시 총 5가지 항목의 요건을 심사하여 보험업 허가 여부에 반영하였음</p> <p>○ (자본금 보유요건) 권리보험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종목 추가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조회를 통해 현재 OO손해보험의 자본금 수준을 확인</p> <p>○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실지조사를 거쳐 준법감시인, 선임계리사 등 보험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인력을 갖추었으며, 소프트웨어 및 사무공간 등 전산설비 요건도 확인함</p> <p>○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은행, 캐피탈 등 담보(전세) 대출시 저당권 확보를 위한 권리보험을 판매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하며 기존 인력 및 인프라 활용을 통해 추가 사업비 소요가 적어 초년도부터 이익실현이 가능</p> <p>○ (대주주) 검찰청, 예금보험공사 등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p> <p>○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지급여력비율이 215%로 기준인 150% 이상이며, 검찰청 및 전국은행연합회 등 사실조회를 통해 사회적 신용을 확인</p>		

## V. 관련 법규

### 보험업법

§4, §5, §6, §7

### 보험업법 시행령

§9, §10, §12

### 보험업법 시행규칙

§7, §9, §10

### 보험업감독규정

§2-2, §2-3, §2-3의2, §2-4~2-7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보 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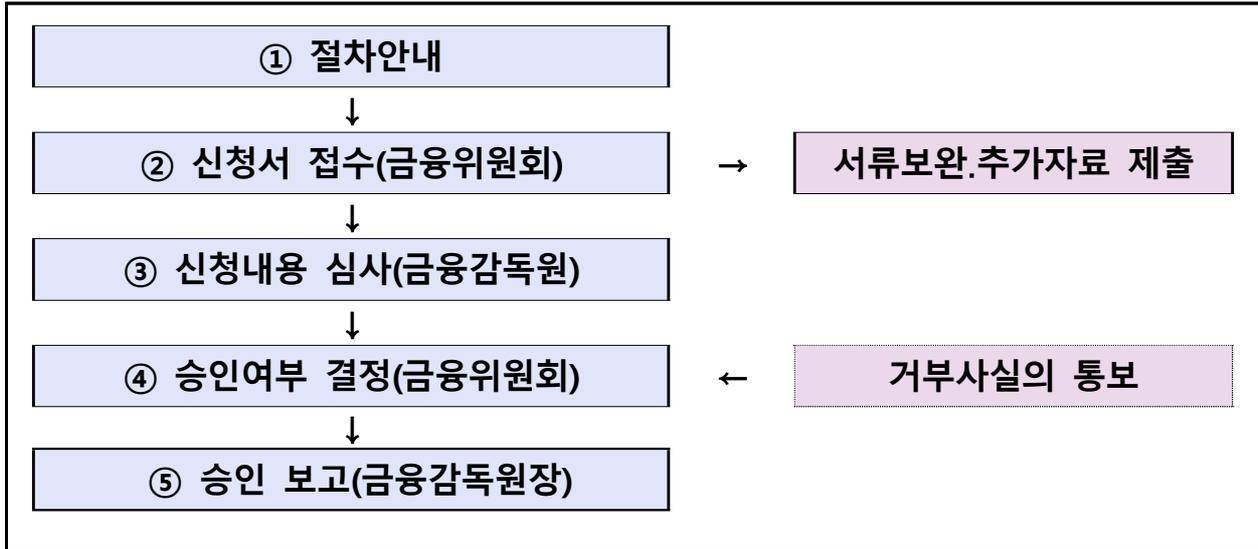
### (2)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 1.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개요

- 대주주 변경 승인이란 보험업 영위에 부적합한 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그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 기존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16.8.1.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으로 통합
- 보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 임원 결격사유 미해당,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 구비,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등
  - 기존 주주의 사망, 담보권의 실행,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등을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 사전에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사후 승인 필요
- 금융위의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 금융위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취득해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 승인의 효력 소멸
  - 또한,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에 보고하고, 해당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함

## II.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 및 심사기준

### 1. 대주주 승인절차 흐름도



※ 소요기간 : 60일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 2. 대주주 승인 심사기준

#### □ 대주주의 범위

- ① 최대주주
- ② 주요주주 (10% 이상 주주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③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④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최대주주와 대표자

#### □ 대주주 변경시 승인 요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 1 및 동법 감독규정(이하 '지배구조감독규정') 별표 4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

구분	요건
	시행령 별표1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p>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li> <li>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li> <li>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li> <li>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li> </ol>
2. 대주주가 기금 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p>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제외한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p>	<p>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p>	<p>가.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지주회사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6.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p>	<p>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7.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인 경우</p>	<p>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p> <p>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p> <p>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요건</p> <p>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호가목의 요건</p> <p>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5호나목·다목의 요건</p> <p>바. 제6호의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6호나목의 요건</p>
------------------------------------	--

※ 대주주 변경승인의 요건(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 4])

구분	요건
	감독규정 별표4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 제1호 관련)	<p>가.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p> <p>(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가) ~ (나) 생략</p> <p>(2)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 (가) ~ (나) 생략 (다)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p> <p>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p> <p>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p> <p>(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p>

	<p>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p> <p>(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p> <p>(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 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p> <p>(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p> <p>(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p>
<p>2. 대주주가 기금인 경우(영 별표1 제2호 관련)</p>	<p>가.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대주주가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기관</p>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p>

<p>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한다)인 경우 (영 별표1 제3호 관련)</p>	<p>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이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p> <p>(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p> <p>라. 제1호다목(1), (2), (4)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마.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p>
<p>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으로서 개인인 경우 (영 별표1 제4호 관련)</p>	<p>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나.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p> <p>(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 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p> <p>다. 제1호다목(1), (2) 및 (4)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p>

	<p>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p> <p>(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p> <p>(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한다.</p> <p>(4) 제1호다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p>
<p>5.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영 별표1 제5호 관련)</p>	<p>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p> <p>(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 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p> <p>(2)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p> <p>(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을 적법하게 영위</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p>

	<p>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구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6.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 (영 별표1 제6호 관련)</p>	<p>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제4호나목, 다목,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7. 대주주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영 별표1 제7호 관련)</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기금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3호 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4호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마. 제5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5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6호 나목, 라목의 요건(단, 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충족할 것</p>

### III.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작성 요령

#### 1. 승인 신청서 양식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내용 1부. 끝.

신청인 (인)

주 소

연락처

대리인 (인)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내용

#### 1. 신청인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내국인인 개인의 경우>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생년월일	
주 소			

#### 2.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구 분	법인명 (성 명 <sup>2)</sup> )	관 계 <sup>3)</sup>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 <sup>4)</sup> (직 업)	비 고
본 인					
특수관계인 <sup>1)</sup>					

주 1)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기재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종 <sup>1)</sup>	금융기관 <sup>2)</sup> 해당여부	자산 <sup>3)</sup>	부채 <sup>3)</sup>	자본 <sup>3)</sup>	당기순이익 <sup>3)</sup>
○○○						
△△△						
×××						
⋮						
계						

주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3) 신청일 이전 최근 대차대조표(분기별 임시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4. 주식취득예정 금융회사 주식발행 현황

금융회사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5.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계획

구 분	법인명 (성명)	관계 <sup>1)</sup>	승인신청일 현재 소유주식 현황(A)			추가로 취득 하고자 하는 주식 수(B)	추가취득후 소유주식수 (C=A+B)	추가취득 예정시기	추가취득 방법 <sup>2)</sup>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백만원)				
본 인						( ) <sup>3)</sup>	( ) <sup>3)</sup>		
특수 관계인	⋮					( )	( )		
	소계					( )	( )		
계						( )	( )		

주 1)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3) ( )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재

6. 주식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액

구 분	추가 취득 예정주식수	예상소요액(백만원)		기 타
		최근 1개월 평균주가기준 ( ) <sup>1)</sup>	신청일 현재 주가기준 ( ) <sup>1)</sup>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주 1) ( )에는 주당가격 기재(단위 : 원)

【첨부서류】 최근 1개월 평균주가 산출근거자료

7.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부 동 산	기 타	계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8.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9. 향후 소유계획 및 추가 취득계획

10.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점검표

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 제1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sup>1)</sup>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100분의 200 이하) <sup>2)</sup>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3)</sup>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4)</sup>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주 1) ①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규정 별표4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  
 (가)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  
 (나)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 일 것  
 (다)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 대주주가 (가) 내지 (다)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2)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②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영 별표1 제2호 관련)

항 목	내 용
<p>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p>	
<p>(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p>	
<p>(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sup>1)</sup></p>	
<p>(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p> <p>(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p> <p>(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sup>2)</sup></p>	
<p>(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p>	

주 1)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③ 대주주가 금융기관 및 기금등 외의 내국법인<sup>1)</sup>인 경우(영 별표1 제3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라. 대주주가 다음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2)</sup>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마.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3)</sup>	

주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

2)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

④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 제4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지 제1호서식 붙임2 참조)	
나.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 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1)</sup>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함	
(4)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2)</sup>	

주 1)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⑤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sup>1)</sup>(영 별표1 제5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sup>2)</sup>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구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3)</sup>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4)</sup>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주 1)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①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  
 ②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③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을 적법하게 영위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⑥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sup>1)</sup>(영 별표1 제6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지 제1호서식 붙임2 참조)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마.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 <sup>2)</sup>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바.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료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함	
4)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3)</sup>	

주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

2)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⑦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영 별표1 제7호 관련)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3호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4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마. 제5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 제6호나목, 라목의 요건(단, 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충족할 것

## 2. 승인 신청 제출서류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서(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

첨부서류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가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위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가. 외국 기업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 ◆ 인허가 사례

### 4-(2)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승인

#### 1. 외국계 보험지주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 청 회 사	OOOO	신 청 일	2014.05.26.
처 리 부 서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완 료 일	2014.07.15.
신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OOOO(외국계 보험지주사)는 OO손해보험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보험업법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		
심 사 내 용	<input type="checkbox"/> OOOO의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보험업법상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금융위에 심사의견을 송부 * 동일 보험종목 영위 요건, 신용평가등급 요건, 본국 및 국내에서의 행정처분·형사처벌 요건, 신용질서 준수 요건,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요건 심사 등 <input type="checkbox"/>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전 비공식적 협의단계에서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필요서류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쟁점사항이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실시 <input type="checkbox"/>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심사* 및 첨부서류 확인 *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전부 또는 일부 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지주회사가 지정하는 회사에 대해 심사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2 비교1) - (동일 보험종목 영위/신용평가등급 요건) 본국 감독기관 확인 - (행정처분·형사처벌·신용질서 준수 요건) 본국 감독기관 확인, 신청인의 대표이사 확인, 검찰청 등 대외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 등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요건 등) 대내부서 등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		

## 2. 내국인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 청 인	000, 000	신 청 일	2016.06.16.
처 리 부 서	보험감독국 보험인허가팀	완 료 일	2016.07.20.
신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000, 000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0000(주)의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		
심 사 내 용	<input type="checkbox"/> 000, 000의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보험업법상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금융위에 심사의견을 송부 * 임원 결격요건, 공익성 준수 요건, 형사처벌 요건, 신용질서 준수 요건,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요건, 직무정지 제재 요건, 출자금 요건 등 ○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 전 비공식적 협의단계에서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필요서류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쟁점사항이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실시 ○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심사 및 첨부서류 확인 - (임원 결격 요건)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 검찰청, 금감원 관련 부서 등 확인 - (공익성 준수 요건)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행정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음 - (형사처벌 요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통해 확인 - (신용질서 준수 요건)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요건) 예금보험공사 및 금감원 관련부서 확인 - (직무정지 제재 요건)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금감원 관련부서를 통해 확인 - (출자금 요건) 차입금이 출자금의 2/3 이하여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므로 충족		

## IV. 관련 법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1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7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보 험

### (3)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승인

#### 1.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승인 개요

-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초과 소유하는 경우 이를 보험회사의 자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 자회사의 부실화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소유가능한 자회사의 범위를 정하고 그 소유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
  - ※ 자회사 소유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 한편, 자회사 주식의 소유에 대하여 금융위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그 주식의 소유에 관한 사항을 요건으로 설립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
  - 보험회사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보험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신고로서 승인에 같음
  - 또한, 보험회사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사후보고를 통해 자회사 소유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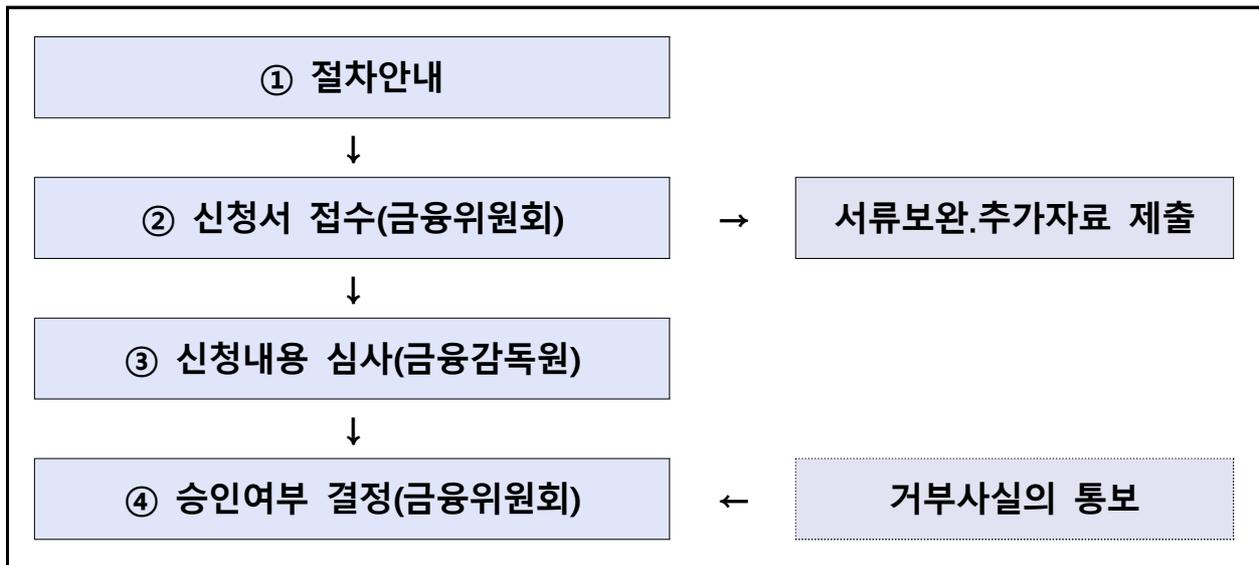
### <보험회사의 자회사 영위가능 업종>

구 분	업 종
승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업(금산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증권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 등</li> </ul> </li> <li>•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li> <li>•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li> <li>•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에서 하는 사업</li> <li>-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li> <li>- 본인신용정보관리업</li> <li>- 그 밖에 신고·보고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li> </ul> </li> </ul>
신고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험회사의 사육관리업무</li> <li>2. 보험수리업무</li> <li>3. 손해사정업무</li> <li>4. 보험대리업무</li> <li>5.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li> <li>6. 보험에 관한 교육·연수·도서출판·금융리서치·경영컨설팅 업무</li> <li>7.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li> <li>8. 보험계약 및 대출 등과 관련된 상담업무</li> <li>9. 보험에 관한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li> <li>10. 자동차와 관련된 긴급출동·차량관리·운행정보 등 부가서비스 업무</li> <li>11.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li> <li>12. 건강·장묘·장기간병·신체장애 등의 사회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li> <li>1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li> <li>14.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li> <li>15. 외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규정에 따른 업무</li> </ul> </li> </ol>

	<p>나. 보험업, 보험중개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및 부동산업</p> <p>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에 투자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p>
<p>보고 대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업무</li> <li>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li> <li>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li> <li>4.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업무</li> <li>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li> <li>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하는 업무</li> <li>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업무 및 유동화 자산의 관리업무</li> <li>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li> </ol>

## II. 자회사 소유승인 절차 및 심사기준

### 1. 승인절차 흐름도



※ 소요기간 : 2개월

### 2. 승인 심사기준

- 보험업법령상 자산운용의 일반원칙(보험업법 §104) 부합여부 및 자산운용비율한도(보험업법 §106) 준수여부 등을 심사
- 자회사의 소유에 관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려는 보험회사는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2에서 정하는 보험회사 요건 및 자회사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요건(보험업 감독규정 별표11-2)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7-14조제6항단서에 따라 경영실태평가에서 제외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이상일 것  
나.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전액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유동성비율이 100%이상일 것  
다. 보험회사의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일 것. 다만, 동 경영실태평가가 자회사 소유 신청일(신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기를 기준으로 실시된 경우 제7-14조제5항에 따라 분기별로 실시하는 계량평가항목에 대한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으로 종합평가등급을 대체한다.
- 라.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 후에도 법 제106조에서 정한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을 준수할 수 있을 것

2. 자회사에 대한 요건

보험회사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각 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자회사가 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자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현재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할 것
- 나. 자회사가 가목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 다음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할 것
  - (1)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말 현재 자본금의 일부라도 잠식 상태가 아닐 것
  - (2) 자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인 경우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사업년도말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일 것
- 다. 자회사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이 표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서 금융업종인 경우 : 본국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라. 자회사가 다목 이외의 외국법인인 경우 :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III. 자회사 소유승인 신청서 작성 요령

#### 1. 승인 신청서 양식

보험업 감독규정 <별지 12-2>

#### 자회사 소유 승인신청서(신고서)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제 목 자회사 소유 승인신청

「보험업법」 제115조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의2에 따라 ○○○(주)을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붙임과 같이 승인신청(신고)합니다.

붙 임 1. 자회사 소유 승인신청(신고) 내용 1부. 끝.

신 청 인 (인)

(신 고 인)

대 리 인 (인)

(붙임)

## 자회사 소유 승인신청(신고) 내용

### 1. 보험회사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 2.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하는 회사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업 종1)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신청회사 및 그 대 주주와의 관계2)			

주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  
한 업종 기재

주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여부, 보험업법상 대  
주주와의 관계 등

주3)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신규설립 예정인 경우 신청일 현재 확인가능한 항목만 기재

### 3. 자회사 소유 목적

#### 4.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 현황 및 취득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해당 자회사 주식 보유현황(A)			신규 취득 주식 수(B)	신규 취득후 소유주식수 (C=A+B)	신규취득 예정시기	신규취득 방법 2)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1)				
			( )	( )		

주1) 취득원가는 백만원 단위로 기재

주2) 장내거래, 장외거래, 신주인수 등으로 구분기재

\* ( )내는 지분율,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재

#### 5. 자회사 주식 취득 예정가액

취득예정 주식수 (A)	주당 취득예정 가액 <sup>1)</sup> (B)	총 취득예정가액 <sup>1)</sup> (C=A×B)	비 고

주1) 주당 취득예정가액은 원단위로, 총 취득예정가액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 6. 자회사 소유 요건 점검표

##### (1) 보험회사에 대한 요건

##### 가.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전액 부실화 가정시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a)	자회사 부실화 가정시 (b)	차이(B-A)
지급여력금액(A)		주)	
지급여력기준금액(B)			
지급여력비율(A/B)			

주)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금액에서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 해당 자회사 출자금액이 전액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 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A)	자회사 출자시(B)	차이(B-A)
유동성 자산1)		3)	
평균 지급보험금2)			
유동성비율			

- 주1) 고정이하 자산을 제외한 잔존만기 3개월 미만 가용 유동성자산으로 다음의 자산을 합계한 금액
-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단기매매증권 중 국내 및 해외 주식
  - 잔존만기 3개월 미만인 예금, 금전신탁, 기타예치금, 국내 및 해외채권, 수익증권, 기타유가증권, 대출채권 등
  - 3개월 이내에 회수가 확정된 국내 및 외국재보험미수금
- 주2) 최근 1년간 월평균 지급보험금의 3개월분 금액(단, 손보는 장기저축성보험 환급금 포함)
- 주3)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유동성 자산에서 해당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자산운용한도 준수여부**

(단위 : 억원)

구 분1)	자산운용 한도		신청일 현재 운용금액(B)	한도여력 (A-B)
	기 준2)	금 액(A)3)		

- 1) 보험업법 제106조 각 호 중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항목(대주주 및 자회사 발행 주식소유 합계 등)  
 2) 보험업법 제106조 각 호에 따른 항목별 자산운용 한도비율(총자산의 △% 등으로 기재)  
 3)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 항목별 자산운용 한도금액

**(2) 자회사에 대한 요건**

**가. 자회사가 내국법인으로서 금융기관인 경우**

업 종 구 분1)	회사명	재무건전성 비율2)	비 고3)

- 주1) 은행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보험업 등으로 구분  
 주2)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 재무건전성 비율,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비율 기재  
 주3)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 설명

**나. 자회사가 금융기관 아닌 내국법인인 경우**

부 채(A)	자기자본(B)	총자산(C=A+B)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A/B)

주) 부채 및 자기자본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

**다. 자회사가 외국법인으로서 금융업종인 경우**

업 종 구 분1)	회사명	재무건전성 비율2)	비 고3)

주1) 은행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보험업 등으로 구분

주2) 신청일이 속한 날의 직전 분기말 기준 재무건전성 비율

주3) 본국 감독기관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설명

**라. 자회사가 금융기관 아닌 외국법인인 경우**

부 채(A)	자기자본(B)	총자산(C=A+B)	자본잠식 여부	부채비율(A/B)

주) 부채 및 자기자본은 해당 국가 화폐 단위로 기재

## 2. 승인 신청 제출서류

자회사 소유 승인신청서(보험업 감독규정 별지 12의2)

첨부서류

1.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이사회 의사록 사본
2. 보험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감사보고서 및 최근 분기말 검토보고서
3. 주식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
4.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의 정관
5.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외국법인은 이와 유사한 서류)
6.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의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
7. 자회사 소유 관련 이사회 의사록 사본
8. 소유하고자 하는 자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인 경우 해당 국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감독당국의 확인서류 등 입증서류
9. 기타 자회사 소유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 ◆ 인허가 사례

### 4-(3)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승인

#### 1. 금융회사 자회사 소유 승인

신 청 회 사	OO생명보험회사	신 청 일	2014.06.13.
처 리 부 서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완 료 일	2014.07.15.
신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OO생명보험회사는 OO자산운용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자회사로 소유하고자 보험업법에 따라 자회사 소유승인을 신청		
심 사 내 용	<input type="checkbox"/> OO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신청에 대해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금융위에 심사의견을 송부 * 보험회사 요건(재무건전성, 유동성, 종합평가등급, 자산운용규제), 자회사 요건(금융업 영위, 재무건전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요건(시장경쟁 제한 여부) ○ 자회사 소유승인 신청 전 비공식적 협의단계에서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필요서류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쟁점사항이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였고, - 자산운용감독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청자의 심사청구를 신속히 처리되도록 심사절차를 진행 * OO자산운용회사의 입장에서는 대주주 변경이 발생하므로, 이를 담당 하는 자산운용감독국과 협의절차를 진행 ○ 자회사 소유승인 요건 및 첨부서류 확인 - (보험회사 요건) 대내부서 협조, 업무보고서 확인을 통해 심사 - (자회사 요건) 자회사의 정관, 업무보고서 확인 등을 통해 심사 - (금산법상 실질적 경쟁제한성 요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회신을 통해 동 요건을 확인		

## 2. 보험대리점 자회사 신고

신 청 회 사	OOO생명보험회사	신 청 일	2017.09.07.
처 리 부 서	보험감독국 보험인허가팀	완 료 일	2017.10.24.
신 청 내 용	<p><input type="checkbox"/> OOO생명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인 OOO금융서비스유한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계획</p> <p>○ 자회사 소유 승인은 원칙적으로 금융위 승인사항이나, '보험대리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인 경우 금감원 신고로 승인에 같음 (보험업법§115단서, 영§59①4호)</p>		
심 사 내 용	<p><input type="checkbox"/> OOO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신청에 대하여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를 접수</p> <p>* 보험회사 요건(재무건전성, 유동성, 종합평가등급, 자산운용규제), 자회사 요건(금융업 영위, 재무건전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요건(시장경쟁 제한 여부)</p> <p>○ 자회사 소유 승인 신청전 사전협의를 거쳐 신청회사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필요서류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쟁점사항이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자회사 소유 승인 요건 및 첨부서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 요건) 대내부서 협조, 업무보고서 확인을 통해 심사</li> <li>- (자회사 요건) 자회사의 정관, 업무보고서 확인 등을 통해 심사</li> <li>- (금산법상 실질적 경쟁제한성 요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회신을 통해 동 요건을 확인</li> </ul>		

###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회사 소유 신고

신 청 회 사	OO손해보험회사	신 청 일	2018.03.28.
처 리 부 서	보험감독국 보험총괄팀	완 료 일	2018.04.10.
신 청 내 용	<p><input type="checkbox"/> OO손해보험회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형태로 설립 예정인 “OOOO신기술금융투자펀드”를 자회사로 소유할 계획</p> <p>○ 자회사 소유 승인은 원칙적으로 금융위 승인사항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금감원 신고로 승인에 같음 (보험업법§115단서, 영§59①22호)</p>		
심 사 내 용	<p><input type="checkbox"/> OO손해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신청에 대하여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를 접수</p> <p>* 보험회사 요건(재무건전성, 유동성, 종합평가등급, 자산운용규제), 자회사 요건(금융업 영위, 재무건전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요건(시장경쟁 제한 여부)</p> <p>○ 자회사 소유 승인 신청전 사전협의를 거쳐 신청회사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필요서류 및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쟁점사항이나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를 실시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자회사 소유 승인 요건 및 첨부서류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회사 요건) 대내부서 협조, 업무보고서 확인을 통해 심사</li> <li>- (자회사 요건) 자회사의 정관, 업무보고서 확인 등을 통해 심사</li> <li>- (금산법상 실질적 경쟁제한성 요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회신을 통해 동 요건을 확인</li> </ul>		

## IV. 관련 법규

### 보험업법

§2, §104, §106, §107, §109, §115

### 보험업법 시행령

§59

### 보험업 감독규정

§5-13, §5-13의2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 (1)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 I. 신용협동조합 인가 개요

#### 1. 신협 인가의 의미

- 신협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조합원간 자금유통 등을 통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상호 금융기관의 일종임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예금자보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규설립, 합병 등 주요사항에 대해 각 주무부처의 인가를 거치도록 규정

#### <상호금융기관별 감독 주무부처 현황>

	신 협	농 협	수 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주무부처*	금융위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시·도지사**	행정안전부 지자체장**

\* 설립, 합병인가 등 해당 금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감독업무를 담당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21.1월)으로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인허가권(설립, 합병 등) 및 감독권 일부(새마을금고의 경우, 인가 관련 검사권에 한정)가 지자체장으로 이양

#### 2. 신협의 공동유대별 구분

- 원칙적으로 신협의 조합원은 해당 신협의 공동유대에 소속 되어야 하며, 동 공동유대를 기준으로 신협을 다음과 같이 구분가능
  - (지역신협) 행정구역 등 지리적 범위를 공동유대로 설정
  - (직장신협) 직장(계열사 등 포함 가능)을 공동유대로 설정
  - (단체신협) 교회 등의 종교단체, 직종단체 등

## II. 신용협동조합 인가 절차

### 1. 개요

- 신용협법에 의거 신용협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신용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신용협설립 인가신청 접수는 신용중앙회에서 담당

### 2. 설립인가신청 접수

- 신용중앙회장은 설립인가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
  - 정관, 사업계획서, 물적시설 등 설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

### 3. 설립인가 심사

- 금융위는 중앙회장이 제출한 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통지
  -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인가요건 심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인가요건을 심사(신협법 시행령 제24조 1항)

### 4. 인가간주제도

- 금융위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인가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알리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간주(신협법 제8조 3항)

### Ⅲ. 신용협동조합 인가 심사기준

□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에는 인가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명시

- ①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 ② 출자금에 관한 사항
- ③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④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⑤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① 조합 구성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정관 작성, 창립총회의 결의가 신협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7조 (설립)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 대표에게 조합 설립동의서를 개의일전일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③ ~ ④ (생략)

- 조합의 조합원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11조 (조합원의 자격) ① ~ ② (생략)

③1조합의 조합원의 수는 100인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출자금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출자금 합계액이 신흥법 제14조에서 정하는 최저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신흥법동조합법>

제14조 (출자금등) ① ~ ③ (생략)

④출자금합계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별시·광역시 : 3억원  
나.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억원  
다. 군(광역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5천만원
2.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4천만원
3. 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라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별시·광역시 : 1억원  
나. 특별자치시·시: 8천만원  
다. 군 : 5천만원

⑤ ~ ⑥ (생략)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금액)는 총출자좌수(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 <신흥법동조합법>

제14조 (출자금등) ① ~ ② (생략)

③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 ⑥ (생략)

### ③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은 신협법 제28조에서 정한 자격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임원등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해임[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개선(改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거나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취소 사유의 발생에 직접적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해임요구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직·업무집행정지 이상의 제재 조치를 요구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 ③ (생략)

- 조합의 임원은 신협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1조 (인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요건중 인력·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력

가. (생략)

나. 임원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생략)

2. ~ 3. (생략)

② (생략)

④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신협중앙회가 정한 표준정관 및 표준업무방법서에 의거 조직되어 조합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 조합의 사무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중앙회 전산조직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1조 (인가의 세부요건)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인가요건중 인력·물적시설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물적시설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나. 중앙회 전산조직과 호환이 가능한 전산조직을 갖출 것

3. (생략)

② (생략)

⑤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영업개시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 자금 조달·운용계획 및 인력운용계획이 주된 고객, 주된 서비스 내용 등 영업전략에 비추어 적정하여야 한다.

## IV.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양식

### 1. 설립인가 신청서

#### 신용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

1. 조합명	신 용 협 동 조 합
2. 사무소 소재지	(전화: )
3. 설립동의자 수	명
4. 공동유대(조합원의 자격)	
5. 발기 및 창립총회	발 기 일 : 년 월 일 창립총회 개최일 : 년 월 일
신용협동조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붙 임 : 첨부 서류 년 월 일 발기인 대표 주 소 : 성 명 : (인) 금융위원회 귀하	

### 2. 첨부서류

-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발기인 대표 및 임원의 이력서, 설립동의자 명부, 사무소 소재지 약도, 발기인회 의사록 사본, 출자금의 납입 및 출자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부속서류

## V. 기존 판단사례

### 1. 직장신탁 설립인가 사례

□ 현직 군인 및 군무원, 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규 직장신탁 설립인가 사례

□ 인가신청 당시 공동유대내 소속 인원이 수만명에 이르고 있어 직장조합 설립시 조합원간 상호부조를 통한 금융편의 제고 등의 긍정적인 설립효과가 예상되었으며,

○ 심사결과, 설립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장신탁의 설립을 인가한 사례

\* 정관의 작성 및 창립총회 결의, 최저조합원수(100인 이상) 및 최저출자금, 공동유대의 적정성, 임원결격사유 미해당, 사업계획이 적합하고 3년간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타당할 것 등

## 2. 이종신협간 합병인가 사례(지역신협 + 직장신협)

- 지역신협이 직장신협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합병인가신청을 함에 따라 이종신협간 합병(지역신협+직장신협)을 허용한 사례

□ 이종신협간 합병(지역신협+직장신협)의 가능 여부에 대해 신협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정하는 바가 없으나,

- 「신협합병인가심사기준」에서는 이종신협간 합병을 허용하면서 이종신협간 합병 요건\*을 정하고 있고,

\* 단체·직장신협의 주사무소가 합병대상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내에 위치하거나 합병대상 지역신협의 공동유대와 인접한 시·군·구에 위치

- 심사결과, 합병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종신협간 합병을 인가한 사례

\* 총회 합병결의, 최저조합원수(100인 이상) 및 최저출자금, 공동유대 및 권리 의무 승계, 임원결격사유 미해당, 공동유대의 적정성 및 합병 목적의 타당성, 사업계획이 적합하고 3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타당할 것 등

## ◆ 인허가 사례

### 5-(1) 신용협동조합 설립 인가

<b>신 청 회 사</b>	OO신용협동조합	<b>신 청 일</b>	2014. 8. 4.
<b>처 리 부 서</b>	상호여전감독국 상호금융감독팀	<b>완 료 일</b>	2014.10. 1.
<b>신 청 내 용</b>	<p><input type="checkbox"/> OO신용협동조합은 신협중앙회를 거쳐* 금융위에 설립인가 신청</p> <p>* 신협법 §7에 따라, 신협중앙회장은 동 건에 대해 신협법령에서 정하는 설립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의견을 붙여 금융위에 인가신청서를 접수</p> <p>○ 조 합 명 : OO신용협동조합</p> <p>○ 출자금 및 출자자 : 000백만원(출자자 000명)</p> <p>○ 사업범위 :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에서 정하는 사업</p> <p>○ 공동유대 범위* : 생 략(직장신협)</p> <p>*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경제권·생활권 또는 직장·단체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며(신협법§9), 직장신협의 공동유대는 같은직장 및 당해 직장의 지점·자회사·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영§12)</p>		
<b>심 사 내 용</b>	<p>&lt;설립 인가요건 충족여부&gt;</p> <p><input type="checkbox"/> 설립에 대한 창립총회 결의의 적법성 ⇒ 충족</p> <p>○ 설립 동의자 000명중 000명 출석, 출석자 전원 동의</p> <p>* 설립 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이상 찬성으로 결의 (신협법 제7조)</p> <p><input type="checkbox"/> 최저 조합원 수(100인 이상) 및 최저 출자금(직장신협은 4천만원 이상) ⇒ 충족</p> <p>○ 설립 동의자 000명, 00,000만원 출자</p> <p><input type="checkbox"/> 임원 등의 결격사유 미해당 및 교육과정 이수 ⇒ 충족</p> <p>○ 임원 및 발기인에 대한 신원조회 및 금융관계법규 위반 여부 조회 결과 결격사유 해당자 미발견</p> <p>○ 임원 00인은 중앙회장이 실시하는 교육 이수 완료</p> <p><input type="checkbox"/> 조직구조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 충족</p> <p>○ 중앙회가 정한 표준정관에 의거 조합 정관 작성, 업무용 사무소 (30㎡이상) 및 중앙회와 호환가능 전산시설 구입계약 완료</p>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충족

- 영업계획이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영업개시 후 3년간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타당

<종합의견>

현행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인가요건 심사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 신협설립 취지에 따라 상호부조를 통한 조합원 금융이용편의 제공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 우량 직장신협 유치를 통해 신협 산업의 대외이미지 제고, 중앙회에 대한 재정기여(출자금 및 회비)등 긍정적 효과 기대

⇒ 신청대로 설립 인가

## VI. 관련 법규

### 신용협동조합법

§7~14, §10, §14, §28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10~13

### 신용협동조합 인가지침

11.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 (2)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 I.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개요

#### 1.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의 의미

- 상호저축은행업 인가는 ‘회사 설립의 인가’가 아닌 ‘영업의 인가’
  - 영업의 인가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등으로 달리 표현하고, 법률상 의미도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하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

#### 2. 상호저축은행업 영위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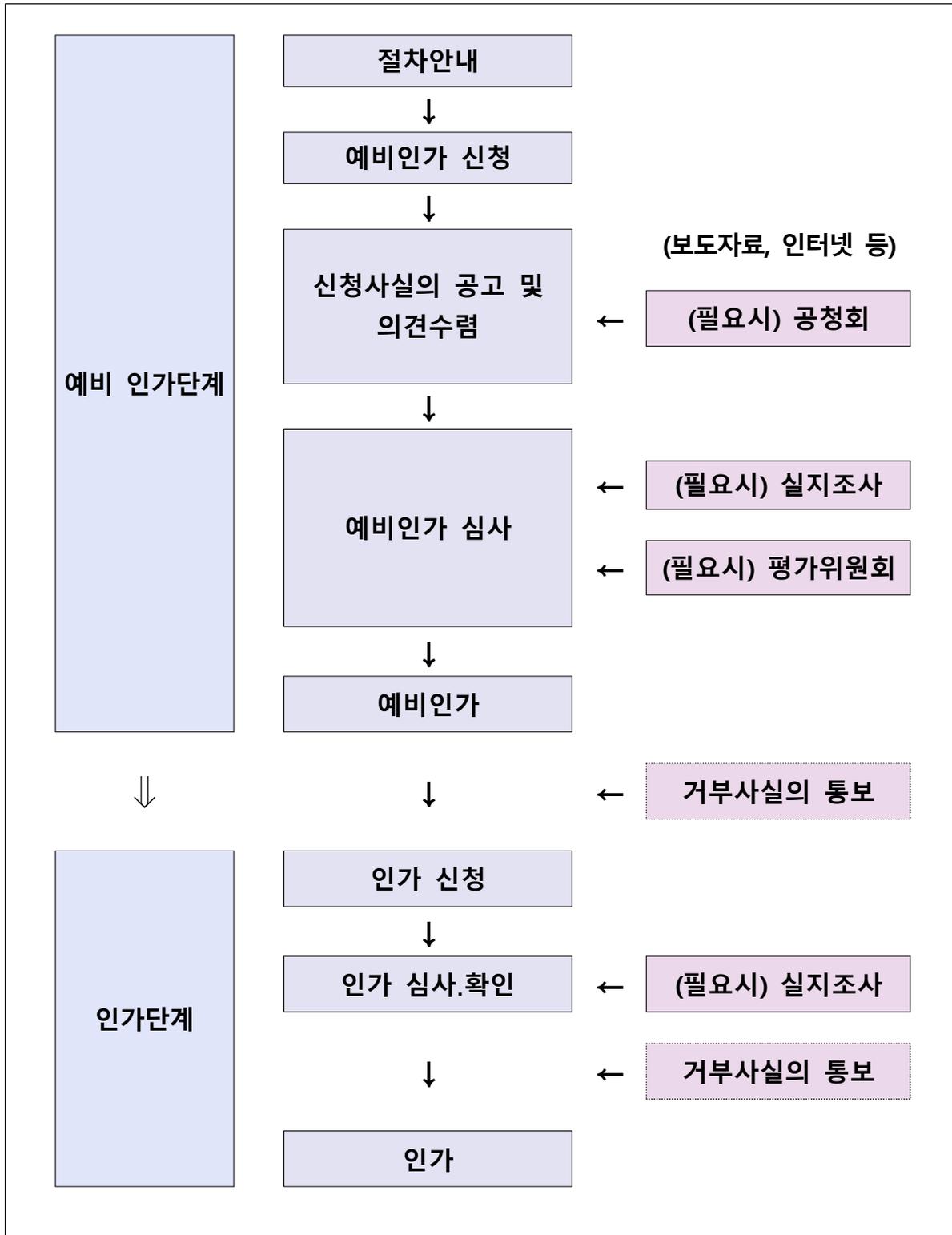
- 상호저축은행법 제3조는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고 규정하여, 상호저축은행업 인가를 받는 자는 주식회사에 한함
  - \* 종전에는 상호저축은행의 형태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로 할 수 있었으나 '95년 동법 개정을 통해 주식회사로 단일화

#### 3.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및 종류

- 상호저축은행업은 증권업 또는 보험업과는 달리 단일의 영업 인가제도를 취하고 있음.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자본금의 차이만 존재

## II.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절차

### <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절차 흐름도 >



## 1. 개요

-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구분
  - 상호저축은행업을 실질적인 의미에서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치게 되지만
  - 부실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저축은행이 영업인가를 받는 경우 예비인가 없이 직접 본인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가 이전되므로 전산설비를 비롯한 물적 요건 등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 예비인가의 필요성이 낮음

## 2. 예비인가

- 상호저축은행업 예비인가는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

## 3. 본인가

- 상호저축은행업 본인가는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중심으로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인 인가여부를 결정함
-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인가 신청시 본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예비인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인가 절차를 진행

### Ⅲ.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심사기준

#### 1. 법정 최저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

- 영업구역(본점소재지)별로 특별시는 120억원, 광역시는 80억원, 특별자치시·도(道) 또는 특별자치도는 40억원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2. 거래자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발기인과 임원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 ①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전문교육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상당한 전문지식을 구비한 자  
③ 기타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 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사무실 등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비율) 7% 이상 유지 가능
  - 시행령에서는 BIS비율 5% 이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을 받은 감독규정에서는 7%로 규정

**4.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 \* ①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  
 ②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대주주의 요건은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름

**대주주의 요건**(제6조의2제5항 관련)

구 분	요 건
1. 대주주가 금융기관(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라.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대상인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마.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바.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는 것을 포함한다)

	<p>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는 개인인 경우</p>	<p>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나.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p>	<p>가. 인가 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마. 제1호바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p>	<p>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바목 및 사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바목·사목 및 제2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바목·사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바목·사목, 제2호나목(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4호다목·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비고

1. 제6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바목(대부업자만 해당한다)·사목 또는 제4호라목의 요건(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라목을 준용한 요건을 말한다)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할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인가 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이 표 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이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 2. 인가 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 □ 신청인에 관한 사항

- 기본적으로 신청인은 대주주 등이 아닌 법인, 즉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를 받을 잠재적 상호저축은행업
- 상업등기소는 금융위원회의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 이전에 상호저축은행의 명칭으로 등기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법인의 명칭으로 상호저축은행 인가 전 단계의 회사를 설립하고 동 회사가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신청인이 됨
- ‘성명(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신청인의 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상호/명칭’ 란에는 법률상 신청인인 법인의 명칭을 기재
-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란에는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이후 설치 예정인 모든 영업소\*를 표시함

\* 영업소 소재지는 지점,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의 구분에 따라 자본금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영업소의 종류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 ‘자본금’ 란에는 법인의 납입(예정)자본금을 기재하되, 특별시는 120억원, 광역시는 80억원, 특별자치시·도(道) 또는 특별자치도는 40억원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지역에 부합하는 증자를 하여야 하므로 자본금의 증액이 필요함

예) 대구에 본점을 경북에 지점 1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80억원과 40억원의 합계액인 120억원이 최저자본금이 됨

## □ 업무에 관한 사항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로 명시함
- 증권업 또는 보험업 등과는 달리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는 영업의 종류에 따른 인가가 아니므로 모든 영업을 함을 전제

## □ 기타사항

- 대주주의 명칭, 주요출자 구조 등 상호저축은행업의 인가와 관련된 특이사항을 기재

### 3. 인가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 작성요령

#### □ 인가신청서류

예 비 인 가	인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li> <li>○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li> <li>- 업무방법(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li> <li>- 업무에 관한 약관(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li> <li>- 요율계산서(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li> <li>-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내용 포함)</li> <li>- 임원의 이력서</li> <li>-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li> <li>- 발기인대회 회의록</li> <li>- 주식인수계획서</li> <li>- 발기인 이력서</li> <li>- 기준자본금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납부 필증(은행발부)</li> <li>- 납입자본금의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 확인서류</li> <li>- 전환후 추정 BIS자기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li> <li>-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li> <li>- 기타 부속서류</li> </ul> </li> </ul> <p>(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li> <li>○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li> <li>- 회사의 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li> <li>- 상호저축은행 실질대주주·주주의 특수관계·지분을 등 현황</li> <li>- 임원의 이력서, 신원증명서 및 경력증명서</li> <li>-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li>- 최근 3년간 재무제표와 부속서류(계열회사 포함)</li> <li>- 기타 부속서류(심사기준 확인에 필요한 계획서 및 관련서류)</li> </ul> </li> </ul>

## □ 첨부서류 구비· 작성 요령

- 정관, 업무방법, 업무에 관한 약관, 요율계산서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정한 표준정관 등을 원용하여 작성함이 원칙
-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는 추정재무제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하며, 그 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 \* 이 경우 산출근거 등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긍정적 전망을 기초로 작성하는 것은 지양
- 임원 및 발기인 이력서는 동인들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임원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 특히,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 및 직위 등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경력증명서 포함)
- 자본금 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준자본금의 50%이상 해당액의 주식청약증거금 납부필증, 납입자본금 조달계획 및 조달자금 출처서류)는 중요
  - 특히, 출자자금이 차입자금이 아니어야 하므로 출자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주요출자자의 재무상태 입증서류는 출자자를 금융기관, 일반법인, 개인, 사모투자전문회사(투자목적회사인 경우 포함)로 구분하여 재무건전성비율, 부채비율 등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
  -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법인은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도 심사대상이므로 관련자료 제출

## V. 유권해석

### 상호저축은행 인허가 세부심사기준

- 상호저축은행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포괄적·추상적 규정을 구체화

#### □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등 인가기준」마련(17.4월)

##### ①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의 의미 명확화

-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
- 지나친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 불허
- 기관전용사모펀드 또는 SPC가 대주주인 경우 책임경영 확보,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 실질 대주주 등을 종합적 심사
  - \*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장기적인 책임경영을 확인하기 위해, 장기적인 경영 계획(예시 :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존속기간 10년 이상) 심사

##### ②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의 의미 명확화

- 최근 5년간 파산·회생절차 진행, 부도 발생,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으로 타 금융관련 법령 등을 감안하여 구체화
  - \*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불이행하였거나, 아직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것으로 간주

※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인허가 사례**  
**5-(2)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b>신 청 회 사</b>	OO상호저축은행	<b>신 청 일</b>	2012. 8. 21.
<b>처 리 부 서</b>	중소금융감독국 총괄팀	<b>완 료 일</b>	2012. 10. 5.
<b>신 청 내 용</b>	<input type="checkbox"/> OO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계약이전받기 위해 가칭 △△ 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신청		
<b>심 사 내 용</b>	<input type="checkbox"/> 사전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실저축은행 처리를 위해 예금보험공사 주도로 매각을 추진하였고,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계약이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어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하기로 하고, 본인가 절차 진행</li> </ul> <input type="checkbox"/> 주요 쟁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칭 △△ 저축은행의 설립취지가 부실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계약이전받아 경영정상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인 바, 사업 계획 및 인가 후 증자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li> </ul> <input type="checkbox"/> 우리원의 보완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대상자 중 외국 금융회사 및 외국인인 개인에 대하여 본국 감독당국에 해당 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위 심사대상자들의 행정 처분·형사처벌 사실 여부 확인 요청</li> </ul> <input type="checkbox"/> 주요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 요건, 물적시설 구비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및 저축은행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li> </ul>		

## VI. 관련 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3~§7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6, §6의2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5~14, §17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 (3) 상호저축은행 자본금 감소 인가

#### I. 저축은행 자본금 감소 인가 개요

-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자본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
  - 자본금의 감소로 인해 재무건전성 요건을 미달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

#### II. 저축은행 자본금 감소 인가 절차 등

##### ① 자본금 감소 인가신청

- 금융위원회에 자본금 감소 인가 신청서를 제출
  - \* 신청서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자본금 감소의 필요성, 자본금 감소 후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 감소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

##### ② 자본금 감소의 타당성 심사

- 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감소의 인가 요건은 없음
- 1)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 2) 거래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3)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4) 자본금 감소 후 자본금 기준 등을 충족할 것 등을 심사(시행령 §6-4① iii)

##### ③ 인가여부 통보

- 금융위원회는 자본금 감소 인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

**[참고] 자본금 감소의 절차**

절 차	근 거 법 률	내 용
이사회 결의	상법 §362	· 감자결의 위한 주주총회소집결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공고	상법 §354	· <b>폐쇄 2주 전</b> 공고 要(상법 §354④) · 폐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함(상법 §354②) - 정관상 폐쇄기간 지정한 경우 공고 不要
	금산법 §5⑥	· <b>폐쇄 1주 전</b> 공고 要(2개이상의 일간신문)
주주총회 소집통지	상법 §363	· 주주총회일 <b>2주 전</b> 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 (각 주주 동의 要)로 발송
	금산법 §5④	· 주주총회일 <b>7일 전</b> 에 서면발송 · 서면통지 발송일 이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 에 총회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공고 要



주주총회 결의	원칙	상 법 §438①	· <b>특별결의</b> (상법 §434) : 출석주주 2/3이상 and 발행주식총수 1/3이상
	결손보전 위한	상 법 §438②	· <b>보통결의</b> (상법 §368①) : 출석주주 1/2이상 and 발행주식총수 1/4이상
	부실금융기관	금산법 §12	· <b>정부 등이 출자한 부실금융기관</b> 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자본감소 명령 가능(③항) · 감자명령시 <b>이사회의 결의</b> 만으로 감자 가능(④항) · 결의반대주주에게 <b>주식매수청구권</b> 인정(⑦2호~⑨)



채권자 이의절차	원칙	상 법 §439①	· <b>§232 준용O</b> : from.결의일-2주내에 <b>1월이상</b> 기 간정하여 이의제출 공고(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b>최고 要</b> )
		금산법 §5의2, §5③	· from.결의일-2주내에 <b>10일이상</b> 기간정하여 <b>2개 이상의 일간신문</b> 에 이의제출 공고(개별채권자에 대한 최고는 <b>생략 可</b> ) * 부실금융기관의 경우에도 同(동법§12⑤)
	결손보전 위한	§439②	· <b>§232 준용X</b>

절 차	근 거 법 률	내 용
금융위인가	저축은행법 §10①3호	· 자본금 감소에 대한 금융위 인가
↓		
구주권 제출 공고	상법 §440	· 1월이상 기간 정하여 주식병합 및 주권제출공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및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 통지)
	금산법 §12⑥	· 5일 이상 기간 정하여 주식병합 및 주권제출공고
↓		
매매거래 정지	유가증권상장규정 §95①3호, ③2호	· 거래소는 매매거래정지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된 때까지 증권의 매매거래 정지 可
↓		
자본감소 효력발생	상법§441	· 구주권 제출 공고기간 만료시 효력 발생 (단, 채권자 이의절차 미종료시 동 절차의 종료와 함께 효력 발생)
↓		
신주권 교부	상법§442	· 신주권의 수령권자 파악 및 구주권 유통 방지 목적 · 구주권 제출 不可시 이해관계인의 이의절차 거친 후 교부
↓		
자본감소 등기	상법§317②2호,3호 동조④→§183	· 자본금의 액, 발행주식의 총수 변경등기

### III. 관련 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10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6의4

#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 (4) 신용카드업 허가·등록

### I. 신용카드업 허가 및 등록 개요

#### 1. 신용카드업 정의

##### 1. 신용카드업

- 신용카드업은 다음의 업무중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여전법 제2조 제2호)
  -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신용카드업 허가시에만 부대업무 영위 가능(여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6조의5)
  -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 2. 신용카드업자

- 여전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함.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한하여 신용카드업자로 봄(여전법 제2조 제2의2호, 제13조)

## 2. 신용카드업의 허가

-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여전법 제3조 제1항 본문)
-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되려는 자(여전법 제3조 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또는,
-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어야 함(여전법 제3조 제3항 제1호)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시행령 제3조 제1항)

## 3. 신용카드업의 등록

-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신용카드업 영위 가능(여전법 제3조 제3항 제2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또는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시행령 제3조 제2항)

- 신용카드업의 등록신청 수리업무는 여전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II. 신용카드업 허가 절차

<b>1. 예비허가 신청</b>	신청사실의 공고, 의견수렴 및 심사
-------------------	---------------------

↓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

<b>2. 허가 신청</b>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확인
-----------------	--------------------

↓ (서류 흠결시 10일 이내 보완 요청)

3. 허가요건 심사	심사내용
신청인에 관한 사항	여전법 제6조 제1항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신청인은 여전업인허가지침 제3장 12-나. 요건을 갖출 것
자본금에 관한 사항	신용카드업 또는 1개 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함께 영위 : 자본금 200억원 이상 신용카드업과 2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함께 영위 : 자본금 400억원 이상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인력 및 물적시설은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3 제1항 및 여전업인허가지침 제3장 12-다. 요건을 갖출 것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은 여전법 시행령 제6조의3 제2항 및 여전업인허가지침 제3장 12-라. 요건에 적합할 것
대주주에 관한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별표1과 여전업인허가지침 별표5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

<b>4. 허가 및 통보</b>	제출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

### III. 신용카드업 허가 심사기준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 여전법 제6조 제1항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시행령 제4조·제5조·제6조·제6조의2 참고)
- 여전업인허가지침 별표3에서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 2. 자본금에 관한 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 § 5①)

- 신용카드업과 1이하의 여신전문금융업 영위  
: 자본금 200억원 이상
- 신용카드업과 2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 영위  
: 자본금 400억원 이상

#### 3.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 6②, 여전업인허가지침 제3장 12-다.)

-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추는 것
  - 허가신청 시점에 금융업무 및 전산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임직원을 300명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허가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 신용카드업 영위에 적합한 3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하고 있거나 인가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 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의 보유 및 전산장애 발생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장치를 구비할 것
- 신용카드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보유,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전산시스템 관리방안의 확보 및 보안시스템 등 감시운영체계를 구축할 것
-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 § 6②)**

- 여전법시행령 제6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할 것
- 여전업인허가지침 제3장 12-라.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할 것

#### **5. 대주주에 관한 사항**

- 대주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3 제4항에 따른 별표 1과 여전업인허가지침 별표5의 요건을 갖출 것
- 합병 및 전환 인가의 경우 여전업인허가지침 별표6의 조건을 충족할 것





## 2. 허가신청서 항목별 작성 요령

- 상호 : 신청회사의 국문 및 영문상호를 기재
- 소재지 : 본점을 기재하고 영업소 내역(국내지점·출자회사, 국외출자회사) 별도 첨부

【예시】

### 영 업 점 현 황

(0000년 0월말 현재)

구 분	소 재 지
본 사	
○○지점	
○○지점	

- 자본금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기재
- 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지분율  
: 최대출자자의 성명(명칭), 지분율을 기재(대주주 현황 별도 첨부)

【예시】

### 출 자 자 현 황

(0000년 0월말 현재)

대주주 <sup>주)</sup> 인 출자자의 성명·명칭	지 분 율 (%)
합 계	100.0%

주) 대주주

1. 최대주주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2.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임원의 성명 : 대표이사 성명 기재(임원현황 별도 첨부)

【예시】

### 임원현황

(0000년 0월말 현재)

직책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 상근·비상근 임원 구분 기재

신용카드회사가 되고자 하는 취지  
: 설립취지 개요를 기재하고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

## 3.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예비허가

1. 신청회사의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설립후 3년간 사업계획서와 예상수지 계산서
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 실적, 거래자수 등의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6. 주주구성 및 경영지배구조 계획

7. 대주주의 주식소유가 관련기관의 인가나 사전승인 대상인 경우 그 증명서류
8. 임원 또는 발기인의 이력서
9.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재무제표(외부감사의 반기결산을 받은 경우 반기포함)

□ 허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자본금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4.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 실적, 거래자수 등의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6. 신청자가 겸영여신업자인 경우 회사의 정관

## V. 신용카드업 등록 절차

1. 사전협의	면담 및 전화상담
---------	-----------



2. 등록 신청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확인
----------	--------------------

↓ (서류 흠결시 10일 이내 보완 요청)

3. 등록요건 확인	확인내용
신청인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계약에 따라 같은 업종의 여러 도·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여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본금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



4. 등록 및 통보	여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	---

## VI. 신용카드업 등록 심사기준

### 1. 신청인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이거나 계약에 의하여 같은 업종의 다수의 도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여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여전법 시행령 제4조·제5조·제6조 참고)

### 2. 자본금에 관한 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 § 5②)

- 주식회사로서 자본금과 자기자본(자본금과 적립금 및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



## 2. 등록 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 상호 : 신청회사의 국문 및 영문상호를 기재
- 소재지 : 본점을 기재하고 영업소 내역(국내지점·출자회사, 국외출자회사) 별도 첨부

【예시】

### 영 업 점 현 황

(0000년 0월말현재)

구 분	소 재 지
본 사	
○○지점	
○○지점	

- 자본금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기재
- 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지분율  
: 최대출자자의 성명(명칭), 지분율을 기재(대주주 현황 별도 첨부)

【예시】

### 출 자 자 현 황

(0000년 0월말현재)

대주주 <sup>주)</sup> 인 출자자의 성명·명칭	지 분 율 (%)
합 계	100.0%

주) 대주주

1. 최대주주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2.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3.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임원의 성명 : 대표이사 성명 기재(임원현황 별도 첨부)

【예시】

### 임원 현황

(0000년 0월말 현재)

직책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비고

\* 상근·비상근 임원 구분 기재

신용카드회사가 되고자 하는 취지  
: 설립취지 개요를 기재하고 상세내용은 별도 첨부

### **3. 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첨부서류 목록

1. 신청회사의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8. 기타(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예시】

확 인 서

금융감독원장 귀하

당사의 신용카드업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월 0일

제출인\* (인)

\* 대주주 포함

## ◆ 인허가 사례

### 5-(3) 신용카드업 허가

신 청 회 사	○○카드	신 청 일	2014. 7. 23.
처 리 부 서	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총괄팀	완 료 일	2014. 8. 27.
신 청 내 용	<p><input type="checkbox"/> ○○카드는 신용카드사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은행의 신용카드부문을 분사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여전업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호명 : (가칭)주식회사 ○○카드</li> <li>○ 영위업무 : 여전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및 부대업무</li> </ul>		
심 사 내 용	<p><b>&lt;허가요건 충족 여부&gt;</b></p> <p><input type="checkbox"/> 자본금에 관한 사항 ⇒ <b>충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카드사는 자본금 0,000억원의 주식회사로 설립될 예정 * 여전업법상 최소 자본금은 200억원(2이하의 여전업 영위시)</li> </ul> <p><input type="checkbox"/> 신청인 및 대주주에 관한 결격요건 등 여부 ⇒ <b>충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전업 등록·허가의 말소·취소사실 여부, 회생절차 중인지 여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금융관련 법령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벌 여부,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받은 사실 여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등은 사실조회 등 결과 해당사항 없음</li> <li>○ 재무건전성 기준,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4배 이상일 요건 등은 모두 충족</li> </ul> <p><input type="checkbox"/> 인력 및 물적시설에 관한 사항 ⇒ <b>충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 및 전산업무 경험 임직원을 000명 확보하였고, 신용카드업 영위 점포도 000개 확보</li> <li>○ 신용카드업의 원활한 영위에 필요한 전산기기 및 백업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정보가 포함된 정보계시스템을 은행시스템에서 물리적분리 완료</li> <li>○ 전산실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무정전전원장치, 자가발전설비, 향온향습기, 출입통제시스템 등을 구비</li> </ul>		

**심 사 내 용**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충족**

- 영업개시후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은 경제성장률 및 카드 산업 경기전망 등에 근거하여 추정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및 여신심사체계는 현 ○○은행 카드사업 본부의 기본체계를 유지하고 전문인력은 향후 추가충원 계획
- '14.3말 ○○은행의 신용카드 회원수는 000만명, 우량회원수는 00만명으로 신용카드회원 확보계획이 적정
- '14.3말 신용카드 가맹점 약 000만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분사 후에도 그대로 사용할 계획
- 분할전 ○○은행의 신용카드 사업부문을 그대로 영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보호 및 건전금융질서 저해 우려가 없음

**<종합의견>**

- 신청내용이 여전업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신용카드업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예비허가시 부과된 부대조건을 이행하였으므로 신청대로 허가

## VIII. 관련 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2~§8, §11, §13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3~§6, §6의2, §6의3, §6의5, 별표1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2

###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제2장(3.~11.), 제3장(12.), 별표1~별표5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 (5) 비카드 여신금융전문업 등록

### I.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개요

#### 1. 여신전문금융업 정의

##### 1. 여신전문금융업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여전법 제2조 제1호)

##### 2. 시설대여

-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여전법 제2조 제10호)

##### 3. 할부금융

-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용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여전법 제2조 제13호)

## 4. 신기술사업금융업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여전법 제2조 제14호 및 제41조 제1항)

### 2.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업의 등록

-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로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여전법 제3조 제2항)
- 여신전문금융업의 등록신청 수리, 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 말소는 여전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 II.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절차

<b>1. 사전협의</b>	· 면담 및 전화상담
----------------	-------------



<b>2. 등록 신청</b>	·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확인
-----------------	----------------------



<b>3. 등록요건 확인</b>	<b>확인내용</b>
<b>신청인에 관한 사항</b>	· 주식회사일 것
<b>자본금에 관한 사항</b>	· 신용카드업 외 1개 이상의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 : 자본금 200억원 이상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 자본금 100억원 이상
<b>신청인 및 출자자에 관한 사항</b>	· 여전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b>4. 등록 및 통보</b>	· 여전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	---

### III.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심사기준

####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 § 5①)

- 주식회사일 것

#### 2. 자본금에 관한 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 § 5①)

-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 3. 신청인 및 출자자의 결격사유(여신전문금융업법 § 6)

-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제3항에 따라 등록·허가가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말소 또는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이었던 자로서 말소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출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제44조의2에 따른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려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해당)

## IV. 비카드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 1. 등록 신청서 양식

## 등 록 신 청 서

① 상 호		
② 소재지		
③ 자본금		
④ 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지분율		
⑤ 임원의 성명		
⑥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⑦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취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width: 100%;"> <span>신청인</span> <span>(인)</span> </div> 금융감독원장 귀하		

담당직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위의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인)

## 2. 등록 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 상 호 : 신청회사의 국문 및 영문상호를 기재
- 소재지 : 본점의 주소 및 영업소를 기재
- 자본금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금액
- 출자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지분율 : 출자자별로 각각 기재
- 임원의 성명 : 임원의 상근·비상근 여부, 등기·미등기 여부를 기재
- 영위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아 등록하려고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을 모두 기재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취지 : 회사 설립취지에 대한 개요

## 3.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 첨부서류 목록(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3조의2)

1. 정관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 계산서를 포함)
4. 재무제표와 부속서류
5.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6. 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 여신실적 및 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7.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V. 관련 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2~§6, §69의2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3, §3의2, §4~§6, §6의2, §23의3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2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심사 관련 FAQ

### [등록 준비 관련]

1. 등록 신청 전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법인을 미리 설립 하여야 하는지?

- 등록 신청 전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될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야 하고, 여전법 제6조 제1항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차이는 무엇인지?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일반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대비 자본금 요건이 완화(200억→100억)된 반면, 업무 범위는 제한\*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PEF GP),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만 영위 가능

3. 등록 이후 등록신청서류 허위 제출사실이 발견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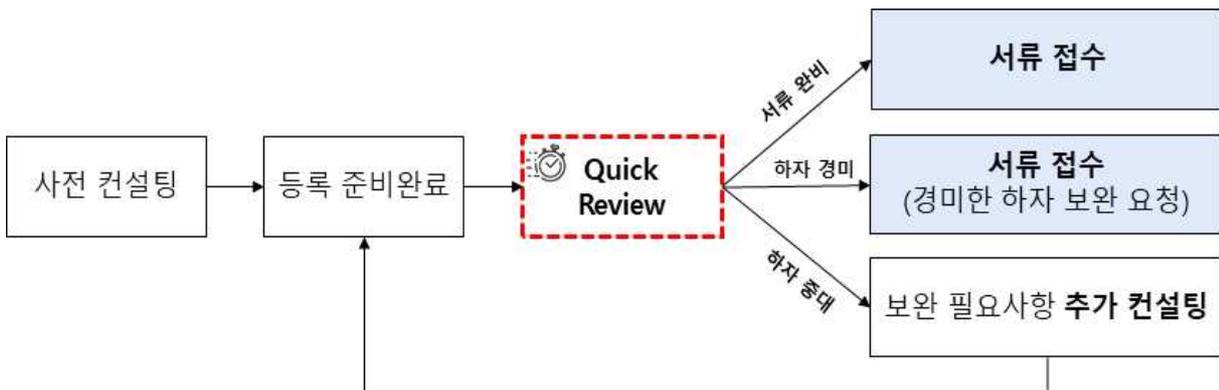
-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금융위는 등록 취소 가능

## [등록 심사 관련]

### 4. 등록 심사 단계에서 Quick-Review 제도란 무엇인지?

- 'Quick-Review'란 심사 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심사 담당자가 등록 서류를 접수 현장에서 리뷰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제도
  - 등록 준비가 완료된 경우, 접수 및 등록 추진\*하고,
    - \* 등록 서류에 일부 경미한 보완사항이 있더라도 접수(현장에서 보완 요청) 및 등록 추진
  - 등록 서류에 중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컨설팅 실시

#### Quick-Review 도입 후 신기사 등록 심사 Process



### 5. 등록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 접수 후 심사 진행 상황\*을 유선 또는 문자메세지로 안내
  - \* 서류 접수, 사실조회, 등록 심사, 등록 완료

##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 (6)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

#### I.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 개요

##### 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정의

###### 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여전법 제2조 제8의2호)

###### 2. 부가통신업자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여전법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을 한 자(여전법 제2조 제8의3호)

##### 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영위 가능(여전법 제27조의2 제1항)
- 부가통신업의 등록신청 수리업무는 여전법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되어 있음

## II.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 절차

<b>1. 사전협의</b>	· 면담 및 전화상담
----------------	-------------



<b>2. 등록 신청</b>	·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확인
-----------------	----------------------



3. 등록요건 확인	확인내용
신청인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법인일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 능력을 갖춘 정보기술부문의 전문가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어 ·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자본금에 관한 사항	· 여전법 제27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자본금이 20억원 이상(단, 가맹점이 3만개 이하인 경우 10억원)일 것



<b>4. 등록 및 통보</b>	· 여전법 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	---

### Ⅲ.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 심사기준

#### 1. 신청인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①,③)

- 법인일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는 것
  -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갖춘 정보기술부문의 전문가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는 것
  -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 것
- 여전법 제27조의2 제3항에서 정한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여전법시행령 제9조의4·제9조의5조·제9조의6조 참고)

#### 2. 자본금에 관한 사항(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②)

- 자본금이 20억원 이상(단, 가맹점이 3만개 이하인 경우 10억원)일 것

## IV.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 1. 등록신청서 양식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영위 등록 신청서

① 회사의 명칭	국문	
	영문	
② 본점 소재지		
③ 대표번호	전화	
	팩스	
④ 법인등록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자본금		
⑦ 결산월		
⑧ 설립일	년 월 일	
<p>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p> <p>금융감독원장 귀하</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li> <li>2.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본금 입증 서류</li> <li>3. 법 제27조의2 제3항 관련 서류</li> <li>4. 임원명부(성명, 담당업무,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포함)</li> <li>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2] 관련 서류</li> </ol>		

## 2. 등록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 회사의 명칭 : 신청회사의 국문 및 영문상호를 기재
- 본점 소재지 : 본점의 주소를 기재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등록번호 기재
- 자본금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금액을 기재
- 설립일 :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일을 기재

## 3.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 첨부서류 목록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본금 입증 서류
3. 법 제27조의2 제3항 관련 서류
4. 임원명부(성명, 담당업무,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 포함)
5.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2] 관련 서류

## V. 관련 법규

### 여신전문금융업법

§2, §27의2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2의2, §9의2~§9의6, §23의2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5의2, 별표 1의2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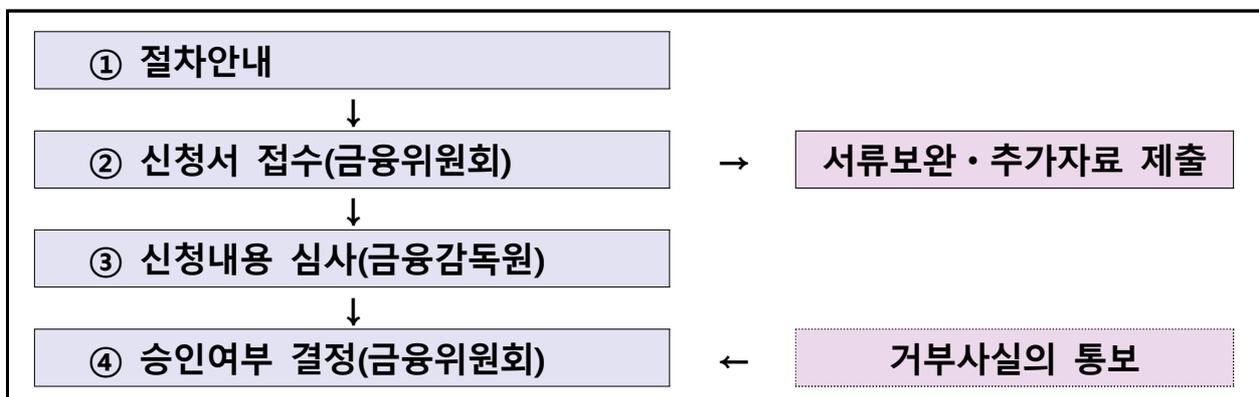
### (7) 신용카드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 I.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개요

- 신용카드업 영위에 부적합한 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한함)를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승인제도 도입('07.7월)
  - 여신전문금융회사(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에 한함)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을 갖추는 등 여전법 제6조 제2항 제4호 및 제6항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 금융위의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 금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II.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절차 및 심사기준

##### 1. 대주주 승인절차 흐름도



※ 소요기간 : 60일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 2. 대주주 승인 심사기준

### □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범위

- ① **최대주주** (여전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②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여전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여전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 대주주 변경시 승인 요건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별표1,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 별표4 요건을 충족할 것

시행령 [별표 1]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제26조제3항 관련)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p>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그 사실이 건전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p>
2.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제1호 및 제2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이다.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출자금의 3분의 2 이하일 것이다.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는 개인인 경우	<p>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나.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대주주가 외국 법인인 경우	<p>가.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을 것(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의 지주회사인 경우를 포함한다)</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p>

	<p>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라.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6.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p>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p> <p>나.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있을 것</p> <p>라. 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7.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인 경우	<p>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p> <p>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다목의 요건</p> <p>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3호가목·나목의 요건</p> <p>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4호가목의 요건</p> <p>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5호나목·다목의 요건</p> <p>바. 제6호의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다목 및 제6호나목의 요건</p>

## 비고

1. 위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표 제1호다목 또는 제5호다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이 표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 가.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 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다.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3. 이 표 제5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면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III.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 작성 요령

#### 1. 승인신청서 양식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문서번호 20 .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5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내용 1부. 끝.

신청인 (인)

주 소  
연락처

대리인 (인)

작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붙임)

###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내용

#### 1. 신청인 현황

상 호		대표이사	
업 종		설립연월일	
본점소재지			
최대주주명 (지분율)			
주요주주명 (지분율)			
자 본 금 (백만원)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내국인인 개인의 경우>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직 업		생년월일	
주 소			

#### 2.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 현황

구 분	법인명 (성명 <sup>2)</sup> )	관 계 <sup>3)</sup>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 <sup>4)</sup> (직 업)	비 고
본 인					
특수관계인 <sup>1)</sup>					

주 1)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기재

2) 자연인인 경우 한자명 또는 영문명을 부기

3)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  
을 표시

4)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3.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중 회사인 자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업 종 <sup>1)</sup>	금융기관 <sup>2)</sup> 해당여부	자산 <sup>3)</sup>	부채 <sup>3)</sup>	자본 <sup>3)</sup>	당기순이익 <sup>3)</sup>
○○○						
△△△						
×××						
⋮						
계						

- 주 1)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기재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3) 신청일 이전 최근 대차대조표(분기별 임시결산시의 대차대조표 포함) 기준

4. 주식취득예정 금융회사 주식발행 현황

금융회사명	대표이사
본점소재지	
자 본 금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5. 주식보유현황 및 취득계획

구 분	법인명 (성명)	관계 <sup>1)</sup>	승인신청일 현재 소유주식 현황(A)			추가로 취득 하고자 하는 주 식 수(B)	추가취득후 소유주식수 (C=A+B)	추가취득 예정시기	추가취득 방 법 <sup>2)</sup>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백만원)				
본 인						( ) <sup>3)</sup>	( ) <sup>3)</sup>		
특수관계인	:					( )	( )		
	소계					( )	( )		
계						( )	( )		

- 주 1) 특수관계인별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영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해당되는  
 목을 표시  
 2)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으로 구분기재  
 3) ( )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소수점 두자리까지 기재

6. 주식 추가취득에 따른 소요액

구 분	추가 취득 예정주식수	예상소요액(백만원)		기 타
		최근 1개월 평균주가기준 ( ) <sup>1)</sup>	신청일 현재 주가기준 ( ) <sup>1)</sup>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주 1) ( )에는 주당가격 기재(단위 : 원)

【첨부서류】 최근 1개월 평균주가 산출근거자료

7.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부 동 산	기 타	계
본 인					
특수관계인 · ·					
계					

8. 주식취득 목적 및 경영참여 여부

9. 향후 소유계획 및 추가 취득계획

## 10.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점검표

### ② 대주주가 기금등인 경우(영 별표1 제2호 관련)

항 목	내 용
<p>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p>	
<p>(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p>	
<p>(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sup>1)</sup></p>	
<p>(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p> <p>(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p> <p>(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sup>2)</sup></p>	
<p>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p>	

주 1)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주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①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영 별표1 제1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sup>1)</sup>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 (100분의 200 이하) <sup>2)</sup>	(부채/자기자본) %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3)</sup>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4)</sup>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 주 1) ①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종합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그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규정 별표4 제3호가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 ②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  
 (가) 대주주가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10,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및 보통주 자본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일 것  
 (나) 대주주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순자본비율이 150% 이상 일 것  
 (다) 대주주가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 대주주가 (가) 내지 (다)이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할 것
- 2) 해당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③ 대주주가 금융기관 및 기금등 외의 내국법인<sup>1)</sup>인 경우(영 별표1 제3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
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부채/자기자본) %
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외의 방법에 따라 조성한 자금으로서 그 합계액이 출자금(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한 주식의 취득액)의 3분의 2 이하일 것 (1) 유상증자 (2) 1년내의 고정자산 매각 (3) 내부유보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라. 대주주가 다음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2)</sup>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마.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3)</sup>	

주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투자목적회사를 제외

2)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

④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영 별표1 제4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지 제1호서식 불입2 참조)	
나.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 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 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 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다.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 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 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 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 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 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 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1)</sup>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 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 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 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 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라.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 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 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 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 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 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함	
(4)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2)</sup>	

주 1)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⑤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sup>1)</sup>(영 별표1 제5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승인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sup>2)</sup>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감독기관이 제재방법으로 행하는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 등록의 취소나 정지등이 포함되며 행정처분에 따라 민사제재금 등을 징구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및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 제외 <sup>3)</sup>	
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거나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 (가)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 (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4)</sup>	
4)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주 1)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 다만, 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한한다)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2) ①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및 이에 준하는 금융업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

②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

③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보험업(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종목과 동일한 보험종목을 말한다)을 적법하게 영위

3)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⑥ 대주주가 외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sup>1)</sup>(영 별표1 제6호 관련)

항 목	내 용
가. 승인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지 제1호서식 붙임2 참조)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출자자금 중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에 따라 확인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외의 재원으로 마련된 자금이 3분의 2 이하일 것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상속재산 또는 수증재산 처분자금 (2) 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3) 그 밖에 (1) 및 (2)에 준하는 소득재원	
마.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금융회사를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 <sup>2)</sup>	
3)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와 동일한 인가업무 단위를 최근 1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거나 신청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를 포함한 금융투자업 인가업무 단위 전부를 최근 5년 이내에 자진 폐지한 금융투자업자의 자진 폐지 당시 최대주주였던 사실	
바.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	
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3)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 다만,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보험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최근 4년간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또는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로 함	
4) 최근 5년간 파산절차·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sup>3)</sup>	

주 1)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만 해당

2)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 또는 면제받은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거래처로 등록된 내용을 기재

⑦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영 별표1 제7호 관련)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 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 제3호가목,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4호가목, 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마. 제5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 제6호나목, 라목의 요건(단, 제4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충족할 것

---

**【첨부서류】**

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가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정관
  -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 다. 위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2.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서류
  - 가. 외국 기업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 2. 승인 신청 제출서류

□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서(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지 8)

□ 첨부서류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 가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정관

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반기재무제표)

다. 위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가. 외국 기업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따라 산출한 재무상태와 이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법인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국적, 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투자현황 등)을 기재한 서류 및 신청인의 국적증명 서류와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대주주 요건 확인서류(확인서 및 입증서류 등)]

## ◆ 인허가 사례

### 5-(7) 신용카드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

신 청 회 사	△△카드	신 청 일	2014. 9. 25.
처 리 부 서	여신금융감독국 여신금융총괄팀	완 료 일	2014. 10. 17.
신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은행은 △△금융지주가 보유중인 △△카드 주식을 이전받게 됨에 따라 여전업법 제6조제3항에 의거 △△카드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 <input type="checkbox"/> 취득예정 주식수 : 000,000,000주(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input type="checkbox"/> 취득목적 및 방법 : △△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금융지주가 △△은행에 합병·소멸됨에 따라 △△은행이 동 주식을 승계 취득		
심 사 내 용	<b>&lt;승인요건 충족 여부&gt;</b> <b>①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b> <input type="checkbox"/> 재무건전성 지표 요건 ⇒ <b>충족</b> <input type="checkbox"/> '14.6말 BIS자기자본비율 00.0%로 경영개선권고(8%) 기준을 상회 <input type="checkbox"/> 금융관계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벌 사실 없을 것, 채무불이행 등 건전한 신용질서 저해 사실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가 아닐 것 ⇒ <b>충족</b> <input type="checkbox"/> 사실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최근 3년간 금융위 기관경고 이상 조치사실 없을 것 ⇒ <b>충족</b> <b>②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관련 사항</b> <input type="checkbox"/> 금융관계법률 등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벌 사실 없을 것, 채무불이행 등 건전한 신용질서 저해 사실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가 아닐 것, 최근 3년간 금융위 기관경고 이상 조치사실 없을 것 ⇒ <b>충족</b> <input type="checkbox"/> 사실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		
심 사 내 용	<b>③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관련 사항</b> <input type="checkbox"/>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관계법률 등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처벌 사실 없을 것, 채무불이행 등 건전한 신용질서 저해 사실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 등의 대주주가 아닐 것, 최근 3년간 금융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 조치사실 없을 것 ⇒ <b>충족</b> <input type="checkbox"/> 사실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음 <b>&lt;종합의견&gt;</b> <input type="checkbox"/> △△은행은 △△카드 대주주로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신청내용대로 승인		

## IV. 관련 법규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31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별표1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5, 별표4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7, 별지 제8호 서식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 (8) 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 I. 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 개요

##### 1. 주식취득 승인의 의미

-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취득 등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대주주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기관을 경영하기에 부적합한 자의 저축은행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주목적

##### 2. 주식취득 승인 대상자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
- 대주주 :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 최대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 누구 명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 임면 등의 방법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 및 그 법인의 대표자까지 심사대상에 포함

\*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

## II. 주식취득 승인 절차

### 1. 주식취득 승인 신청

- 주식취득 승인 대상자는 주식양수도 (가)계약 체결후 당해 상호저축은행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주식취득 승인을 신청
  - 주식취득 승인과 관련한 사전협의 등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 또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총괄팀에 문의
  - 주식취득 승인신청서식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
    - ※ 특히, '인수자금이 차입자금이 아닐 것'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인수자금 소명자료는 반드시 첨부

### 2. 승인절차의 이행

-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승인신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심사기준에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함
  - 재무비율의 적정성, 법규위반 등 결격여부는 제출된 자료, 관계기관에의 조회, 금융감독원 내부 확인 자료 등을 통해 확인
- 최종적으로 승인신청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금융위원회에 부의하여 승인/불승인 여부를 결정
  - 동 회의 결과는 금융위원회가 승인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함

### Ⅲ. 주식취득 승인 심사기준

□ 대주주의 요건은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름

####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요건 (제7조의4제2항 관련)

구 분	요 건
<p>1. 대주주(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취득등으로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금융기관인 경우</p>	<p>가.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금융기관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마.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그 금융기관이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및 거래자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포함한다)</p> <p>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li> <li>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li> <li>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li> </ol>

	<p>따라 부실 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p> <p>라. 제1호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개인인 경우	<p>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나. 제1호마목·바목 및 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4. 대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	<p>가. 인가 신청일 현재 금융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경영하고 있을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 등급을 받거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라. 제1호마목 및 바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p>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p>

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  
 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  
 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목 및 제  
 2호가목·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  
 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바목 및 제  
 4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1. 제7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호마목(대부업자만 해당한다)  
 ·바목 또는 제4호다목의 요건(외국인인 개인에게는 제4호다목을 준용한 요  
 건을 말한다)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2. 대차대조표상자기자본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  
 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3. 이 표 제4호를 적용할 경우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이 표 제4  
 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  
 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  
 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  
 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할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이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을 말한다.

## IV. 주식취득 승인 신청서

### 신청서 양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지 제2호 서식>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금융감독원장		
제	목	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등 승인신청		
<p>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하고자 당해 상호저축은행을 경유하여 승인신청합니다.</p>				
붙임 : 주식취득등 승인신청 내용 1부. 끝.				
승인신청인				
(인)				
주소				
연락처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인)				

## 주식취득등 승인신청 내용

### 1. 승인신청인 현황

성 명 (법인명)	대주주와의 관 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직 업 (업 종)	재직·출자 및 계열회사명

주) 승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 첨부

### 2. 주식 취득등 대상 현황

주식취득방법	시장에서의 취득, 공개매수, 대주주 협의매수, 기타( )				
총취득대상주식	( )상호저축은행 발행주식 ××주, 액면 ××원, 지분율 ××%				
주식취득내용	승인신청인	주식수	주당금액	취득가액	지분율
주식취득일정	계약체결일		년 월 일		
	대금지급	계약금	년 월 일,		원
		중도금	년 월 일,		원
		잔 금	년 월 일,		원
	주식인수일 <sup>주)</sup>		년 월 일		
임원선임 주주총회 개최일		년 월 일			

주) 실질적으로 당해 주식을 지배하는 날짜

### 3. 주식 취득등 가액 산출근거

구분	1주당 가치	산출근거	주식취득가액 합계
자산가치	××원		@××원×△△주 = ××원
수익가치	××원		
경영권 프리미엄	××원		
기타	××원		
계	-	-	

주) 객관적 가치산정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을 각각 첨부

#### 4. 주식 취득등에 따른 소요자금 조달내역

(단위 : 백만원)

승인신청인	취득가액	조달 자금				계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처분대금	부동산 처분대금	기타	
계						

주) 예금은 잔고증명서 및 통장사본, 유가증권은 사본 또는 예탁증서,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기타는 관련재산 보유사실 및 객관적 가치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을 각각 첨부

#### 5. 지분변동 현황표

(단위 : 백만원, 주, %)

변 동 전				변 동 후				대주주와 관계 <sup>주)</sup>
주주명	소 유 주식수	금액	지분율	주주명	소 유 주식수	금액	지분율	
계								

주)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본인과의 구체적 특수관계의 명칭을 기재

#### 6. 주식 취득등 이후 경영권행사계획

- 임원선임 주주총회일 : 00년 00월 00일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주요경력 <sup>2)</sup>
임 원 피선임 예정자 <sup>1)</sup>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주 : 1) 예정자가 있는 경우 기재

2) 주요경력의 경우 금융회사 경력은 전부 기재하되 해당금융회사명 및 재직 기간을 명시

## 7. 첨부서류

승인신청인	첨부서류
공 통	<p>가. 주식양수도 (가)계약서(상속의 경우 기존 주주의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유언장 등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p> <p>나. 임원피선임예정자별 이력서(특히 금융회사 재직사항은 전부 기재)</p> <p>다. 대리인이 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보완업무를 할 경우 대리권의 수여 사실 및 범위를 명시한 위임장</p> <p>라. 시행령 &lt;별표2&gt;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인감증명서) 및 입증서류</p> <p>마.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여권이 없는 경우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개 인	<p>가. 이력서(금융회사 재직사항은 전부 기재)</p> <p>나. 출자회사가 있는 경우 지배구조도</p> <p>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행정기관 발급서류(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외국인의 경우 본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 조회서)</p> <p>라. 소속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밖에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감봉요구)의 제재를 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사기록카드, 감독기관·소속기관의 확인서 등)</p>
법 인	<p>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 회사설명자료&lt;회사형태 및 설립근거, 설립일, 대표자, 경영진 구성, 임직원수, 자산규모, 자본금, 주주구성, 계열사 현황, 국내투자현황 등 포함&gt;)</p> <p>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제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반기재무제표)</p> <p>다. 위 나목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가 없는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 확인서 또는 국세청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입증서류)</p> <p>라. 금융기관의 경우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 확인자료(기준비율, 최근 사업연도말 및 최직근 분기말 기준 해당금융기관의 비율(분자/분모 포함). 단,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본국 감독기관의 재무건전성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법규도 첨부)</p> <p>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또는 「은행법」에 따른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 부채비율 산출명세서 및 회계법인의 확인서</p> <p>바. 최근 사업연도말 주주명부</p> <p>사. 주식취득 관련 이사회 의사록 사본</p> <p>아. 지배구조도(계열사 및 출자회사 전체 표시)</p>

\* 기관전용사모펀드의 경우 해당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출자지분이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이 개인,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제출

## V. 기존 판단사례

### 부대조건의 부과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취득 승인시,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담보하고 대부업체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조건 부과

- **주식취득 승인시 부대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주식취득 승인 철회 및 주식처분 명령을 할 것을 정함**
  - **주식취득 승인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이나 기한, 부관을 붙일 수 있음**

## VI. 유권해석

### 1.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이전 결격사유

-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10.9.23.) 이전의 행위로 인해 제도 도입 이후 형사처벌 등을 받는 경우, 결격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이전의 행위로 인해 도입 이후 형사처벌 등을 받는 경우, 결격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상호저축은행법(이하 '法') 시행(10.9.23) 이전에 완성된 사실로 인하여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法 시행 이후 法 제10조의6제3항에 따른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대주주는 法 부칙 제3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주주 적격성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기존 대주주'에 포함되지 않음**

## 2. 상호저축은행 인허가 세부심사 기준

- 상호저축은행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포괄적·추상적 규정을 구체화

### □ 「상호저축은행 대주주 변경 등 인가기준」마련(17.4월)

#### ① '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의 의미 명확화

-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만 허용

- 지나친 영업구역 확대를 초래하는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 불허

- 기관전용사모펀드 또는 SPC가 대주주인 경우 책임경영 확보,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 실질 대주주 등을 종합적 심사

\*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장기적인 책임경영을 확인하기 위해, 장기적인 경영 계획(예시 : 기관전용사모펀드의 존속기간 10년 이상) 심사

#### ②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의 의미 명확화

- 최근 5년간 파산·회생절차 진행, 부도 발생,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등으로 타 금융관련 법령 등을 감안하여 구체화

\* 최근 5년간 금융위가 부과한 인가·승인 조건을 불이행하였거나, 아직 조건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것으로 간주

※ 상호저축은행업 인가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 인허가 사례

### 5-(8) 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

신 청 회 사	OO상호저축은행	신 청 일	2014. 3. 19.
처 리 부 서	중소금융감독국 중소기업총괄팀	완 료 일	2014. 4. 30.
신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OO은 ◎◎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주식취득 승인을 신청		
심 사 내 용	<input type="checkbox"/> 사전협의내용 <input type="checkbox"/> 심사대상자 확정,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계획* 관련 협의 * 대부잔액 감축, 신용대출 금리 운영, 대부잔액 레버리지 한도 준수, 저축은행 적정여신 포트폴리오 유지,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 등 <input type="checkbox"/> 주요 쟁점사항 <input type="checkbox"/> 이해상충방지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담보장치 마련 <input type="checkbox"/> 우리원의 보완 요청사항 <input type="checkbox"/>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이해상충방지계획 수정 요청 <input type="checkbox"/> 법률적 검토사항 <input type="checkbox"/> 이해상충방지계획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주식취득 승인시 동 계획의 이행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주요 심사내용 <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인수자금이 자기자금인지 여부 및 OO이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건전성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이해상충방지계획의 적정성) 등		

## VII. 관련 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10의6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7의4, 별표2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14, §21

## 5. 서민금융·여신전문금융

### (9)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인가

#### I.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인가 개요

- 저축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점·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의 인가 제도를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고,
  -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서 지점·출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사전 신고 제도를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
  - 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금감원장 위탁)에 신고하여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사후 보고하여 영업구역내 지점·출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영업구역 밖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금감원장 위탁)를 받아야 함

#### II.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인가 절차

##### ① 영업구역 밖 점포설치 인가신청

- 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의거 점포 설치계획서, 자기자본 현황, 직전 4개 분기말 자산건전성분류 현황, 기타 첨부서류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인가신청

##### ② 인가요건 충족여부 심사

- 별지 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 및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정한 심사기준 충족여부 검토

- 신청서 접수일 기준 14영업일이내 인가여부를 통보\*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시행문에는 지점인가내용 외 지점설치 완료보고사항 등을 함께 통보

### 3 점포설치 완료보고

- 인가일로부터 3월이내에 지점설치 등을 완료하고 금융감독원장 및 중앙회 회장 앞 보고

## III. 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인가 심사기준

### □ 심사기준

구 분	인가 기준
일반요건	○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 자본금의 2배(출장소의 경우 1배) 이상일 것
	○ 최근 1년간 저축은행이 기관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증자요건	○ 지점별로 법정 최저자본금의 1배(지점의 경우 0.5배, 출장소 및 여신전문출장소의 경우 0배) 증자 또는 이에 상응한 자기자본 보유
재무건전성요건	○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BIS비율이 8%이상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이하일 것

### □ 일반요건 및 재무건전성요건 적용배제

- 금산법 제14조제2항 등에 따른 계약이전에 의하여 다른 저축은행의 본·지점 승계 등\*의 경우 '증자요건'\*\*만 심사

\* 시행령 §6의3 제2항 각 호 사유

\*\* 시행령 §6의3 제7항 (지점의 소재지에 따른 증자요건을 50%로 완화)

## IV.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신고 및 보고 절차

### ① 영업구역 내 점포설치 신고

- 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1의1호 서식에 의거 지점 설치계획서, 자기자본 현황, 직전 4개 분기말 자산건전성분류 현황, 기타 첨부서류를 갖추어 금융감독원장 앞으로 신고
- 별지 서식에 따른 제출서류 확인 및 시행령 제6조의 3에서 정한 심사기준 충족여부 검토하여 충족시 신고 수리
- 감독원장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14영업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여부를 통보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② 영업구역 내 출장소 설치 보고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 별지 1-3호 서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장과 중앙회회장 앞으로 보고

## V. 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인가 등 신청서

###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서 양식

<별지 제1-1호서식> <신 설 2024.1.17.>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서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를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내용 1부. 끝.

신고인

○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1. 지점 설치계획서

가. 영업구역 내 지점 개요

- 영 업 구 역 :
- 지점 명칭 : ○○상호저축은행 ○○지점
- 전 용 면 적 :
- 인 원 :

나. 설치예정지

다. 설치예정일 및 향후 일정

- 설치예정일
- 등기예정일

라. 신고사유

마. 설치지점 약도<sup>주)</sup>



주) 인근 타 상호저축은행 본·지점 등 영업소를 함께 표시

2. 자기자본 현황(「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4항의 증자요건)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			20 . . .
신고일까지 주요변동사항	유상증자		
	유상감자(△)		
	전기손익오류사항분		
수정후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A)			20 . . .
설치(예정)지점	◇◇지점	주)	설치(예정) 지점당 법정 최저자본금
	.	주)	
	소 계(B)		
현재 지점등	본 점		현재설치 지점당 법정 최저자본금
	○○지점	주)	
	△△출장소	주)	
	.	주)	
	소 계(C)		
합 계(D=B+C)			
<b>(B)와 [(D)-(A)]중 적은금액</b>			

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항에 해당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본점은 「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자본금액을 기재하고 지점은 법정자본금의 1/4을 기재

### 3. 직전 4개 분기말 자산건전성분류 현황

#### 가.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 . . . .	20 . . . .	20 . . . .	20 . . . .
	여 신(A)				
	정 상				
	요주의				
고 정 이 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소 계(B)				
	비 율(B/A)				

#### 나. 자산건전성분류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분기말 - 전전 분기말]		[최근분기말 - 전분기말]	
	증감	변동요인	증감	변동요인
정 상				
요주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계				

#### 4.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4개 분기말 BIS비율 산출표 각 1부.(매분기 보고서 제출서식)</li> <li>- 지점설치후 2개년간 본지점, 지점 추정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및 시장조사서</li> <li>- 지점 설치에 관한 이사회(사원총회)의사록</li> <li>- 최직근 분기말·월말 현재 대차대조표</li> <li>- 외부감사인의 재무건전성비율 점검표</li> </ul>
영§6의3② 적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기일 및 계약이전 결정일 현재 대차대조표</li> <li>- 계약이전 결정 또는 인가서 사본</li> <li>- 합병인가서 사본</li> </ul>

##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서 양식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지 제1-2호서식><신 설 2024.1.17.>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신청서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 인가를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밖 지점 등 설치인가 신청내용 1부. 끝.

인가신청인

○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 1. 지점 등 설치계획서

### 가. 영업구역 밖 지점 등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지점 (        ), 출장소 (        )
- 영 업 구 역 :
- 지점 등 명칭 : ○○상호저축은행    ○○지점(출장소)
- 전 용 면 적 :
- 인 원 :

### 나. 설치예정지

### 다. 설치예정일 및 향후 일정

- 설치예정일
- 등기예정일

### 라. 신청사유

### 마. 설치지점등 약도<sup>주)</sup>

주) 인근 타 상호저축은행 본·지점 등 영업소를 함께 표시

2. 자기자본 현황(「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제4항의 증자요건)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			20 . . .
신청일까지 주요변동사항	유상증자		
	유상감자(△)		
	전기손익오류사항분		
수정후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A)			20 . . .
설치(예정)지점 등	◇◇지점(출장소)	주)	설치(예정) 지점당 법정 최저자본금
	.	주)	
	소 계(B)		
현재지점 등	본 점		현재설치 지점당 법정 최저자본금
	○○지점	주)	
	△△출장소	주)	
	.	주)	
	소 계(C)		
합 계(D=B+C)			
<b>(B)와 [(D)-(A)]중 적은금액</b>			

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항에 해당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본점은 「상호저축은행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자본금액을 기재하고 지점은 법정자본금의 1/4을 기재

### 3. 직전 4개 분기말 자산건전성분류 현황

#### 가.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 . . . .	20 . . . .	20 . . . .	20 . . . .
여 신(A)					
정 상					
요주의					
고 정 이 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소 계(B)				
	비 율(B/A)				

#### 나. 자산건전성분류 변동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분기말 - 전전 분기말]		[최근분기말 - 전분기말]	
	증감	변동요인	증감	변동요인
정 상				
요주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계				

#### 4.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4개 분기말 BIS비율 산출표 각 1부.(매분기 보고서 제출서식)</li> <li>- 지점등 설치후 2개년간 본지점, 지점 추정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및 시장조사서</li> <li>- 지점등 설치에 관한 이사회(사원총회)의사록</li> <li>- 최직근 분기말·월말 현재 대차대조표</li> <li>- 외부감사인의 재무건전성비율 점검표</li> </ul>
영§6의3② 적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기일 및 계약이전 결정일 현재 대차대조표</li> <li>- 계약이전 결정 또는 인가서 사본</li> <li>- 합병인가서 사본</li> </ul>
영§6의3⑤ 적용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취득등 승인서 사본</li> <li>- BIS비율 8% 달성을 위한 증자자금 산출표 및 증자계획서</li> <li>- 신청일 현재 증자금액 및 경제적 부담금액 산출표</li> </ul>

## 영업구역 내 출장소 설치 보고 양식

<별지 제1-3호서식> <신 설 2024.1.17.>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참 조

제 목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보고

「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2조,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점 등 설치 결과를 보고합니다.

- 붙 임 1. 금융감독원의 지점등 설치 인가(영업구역 밖 지점등 설치시) 또는 신고 수리(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시) 문서 1부.  
2.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결과 보고내용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끝.

보고인

○ ○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가. 지점등의 종류 및 명칭

- 구 분 : 영업구역 내 (     ), 영업구역 밖 (     )
- 종 류 : 지점 (     ), 출장소 (     )
- 영 업 구 역 :
- 지점 등 명칭 : ○○상호저축은행 ○○지점(출장소)
- 전 용 면 적 :
- 인 원 :

나. 설치지역

- 주소
- 전화번호

다. 설치일 등

- 설치일
- 등기일
- 업무개시일자

라.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영업구역 내 출장소 설치 사후 보고에 한하여 기재)

구 분	설치기준	확인 여부	비고 (필요시)
일반	○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 자본금의 1배 이상일 것		
	○ 최근 1년간 저축은행이 기관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증자	○ 다음 ①, ② 중 작은 금액 이상을 증자 ① 설치대상 지점 등 소재지 기준 최저자본금* * 지점 : 법정 최저자본금의 50%(지역금융 활성화 저축은행은 25%) 출장소 : 법정 최저자본금의 0% - 지역금융 활성화 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8조의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축은행 ② 본점 소재지 기준 법정 최저자본금 + 전 지점 등 소재지 기준 최저자본금* - 자기자본 * 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재무 건전성	○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BIS비율이 8%이상 및 고정 이하여신비율이 8%이하일 것		

## ◆ 인허가 사례

### 5-(9)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인가 승인 ①

신 청 회 사	OO상호저축은행	신 청 일	2019. 9. 6.
처 리 부 서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총괄팀	완 료 일	2019. 9. 11.
신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OO상호저축은행은 지점 설치 인가를 신청		
심 사 내 용	<input type="checkbox"/> 주요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구역내 신규 지점 설치의 경우 일반요건(자기자본 및 법규준수), 재무건전성요건, 증자요건 충족 필요</li> </ul> <input type="checkbox"/> 주요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 최직근 분기말 자기자본이 법정 최저자본금의 2배 이상인지 확인</li> <li>○ (법규준수) 최근 1년간 저축은행이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확인</li> <li>○ (재무건전성) BIS자기자본비율이 최근 1년간 8% 이상이고 고정 이하여신비율이 최근 1년간 8% 이하인지 확인</li> <li>○ (증자요건) <sup>1)</sup>설치대상 지점의 법정자본금과 <sup>2)</sup>본·지점 등의 법정 자본금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납입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치대상 지점의 법정자본금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점,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의 법정자본금* 합계액 (감독규정§18의3에 해당하는 경우 위 금액의 50% 해당액)</li> <li>* 지점: 소재지 기준 법정 자본금의 50%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 소재지 기준 법정 자본금의 0%</li> </ul> </li> <li>2) 본·지점 등의 법정자본금에서 자기자본 차감액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점 소재지 기준 법정자본금과 1)과 같이 산출한 법정자본금의 합계액에서 최근 분기말 기준 자기자본 차감</li> </ul> </li> </ul> </li> </ul>		

## ◆ 인허가 사례

### 5-(9) 상호저축은행 지점 등 인가 승인 ②

신 청 회 사	OO상호저축은행	신 청 일	2020. 9. 18.
처 리 부 서	저축은행감독국 저축은행총괄팀	완 료 일	2020. 9. 22.
신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OO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인가를 신청		
심 사 내 용	<input type="checkbox"/> 주요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구역내 여신전문출장소를 3개 이내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요건, 재무건전성 요건 등 적용 제외</li> </ul> <input type="checkbox"/> 주요 심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 적용 제외</li> <li>○ (법규준수) 적용 제외</li> <li>○ (재무건전성) 적용 제외</li> <li>○ (증자요건) <sup>1)</sup>설치대상 지점 등 소재지 기준 최저자본금과 <sup>2)</sup>본 지점 등의 법정자본금에서 자기자본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납입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 <sup>1)</sup>설치대상 지점 등 소재지 기준 최저자본금*을 0으로 간주하므로 자본금 증액 불요</li> </ul> </li> </ul> <p>* 지점: 소재지 기준 법정 자본금의 50%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 소재지 기준 법정 자본금의 0%</p>		

## V. 관련 법규

### 상호저축은행법

§5, §7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6의3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18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3~5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서민금융· 여신전문금융

##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 I 개 요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정의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이하 '연계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법\* §2 i, ii)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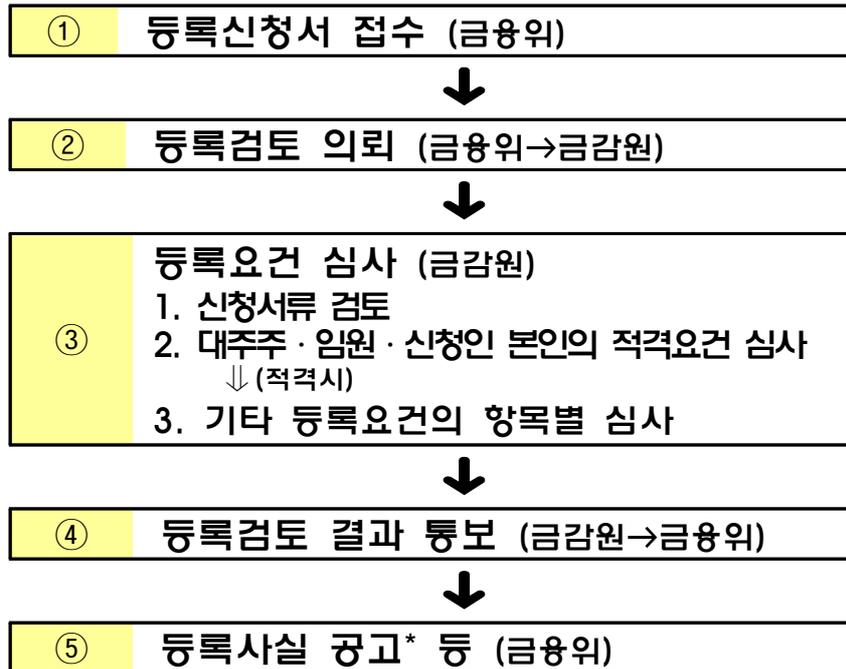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 규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세칙

####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무 개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금융위에 등록해야 함**(법 §5)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법 시행 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법인 또는 신설법인**
-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시 자기자본, 인적·물적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내부통제체계 구비, 임원 및 대주주 요건, 사회적 신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II 등록업무 절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업무절차 흐름도>



\* 금융위 등록신청서 접수 후부터 2개월 내 등록 공고 필요(법 §5③), 단,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등은 등록 검토기간 산정시 제외(법 §5④)

### 1 등록신청서 접수 (금융위)

- 신청인의 등록신청서 제출\*(법 §5②)
  - \* 등록요건의 검토를 위해 금감원에도 사본 제출 필요
  - 등록신청서의 필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준수(영 §4)
- 금융위의 등록신청서 접수(법 §5③)

### 2 등록검토 의뢰 (금융위→금감원)

- 등록 검토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영 §35① i)되어 있으므로, 금융위는 접수된 신청서의 등록요건 검토를 의뢰하기 위해 금감원에 공문 발송
  - 금감원은 검토의뢰 공문 접수 후 등록요건 심사 업무 착수

### 3

## 등록요건 심사 (금감원)

#### □ (1단계) 신청서류 검토

- 법규상 필수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보완 요청

#### □ (2단계) 대주주·임원·신청인의 법령위반 등 요건 검토

- 신청인·대주주·임원요건 중 법령위반, 부실책임, 조치경력 등은 대내외 사실조회 결과 및 신청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사실조회시 미포함된 법령위반 사항 등이 제보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사후조치

대상	등록 요건	세부요건	확인 방법
대주주	사회적신용 요건 등	대주주 법적실체(금융기관 개인 등에 따른 법규위반 등 결격요건 (영 <별표 1> 및 규정 <별표 2>)	유관기관 등의 사실조회 결과
임원	임원 요건	미성년자, 파산 금고이상 실형 등, 인가취소법인 임직원 등(법§6①)	
신청법인 * 실질적 동일인 포함 (영 부칙§3②)	사회적신용 요건	금융법령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 채무불이행, 부실금융기관 책임, 업무정지 등	결격요건 없음 확인서

#### □ (3단계) 기타 등록요건 검토

-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건전한 재무상태, 신청인\*의 법인격·자기자본요건·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요건,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요건 등은 제출서류 검토 방식으로 확인

\* 실질적 동일인에 대하여도 대주주요건,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요건 심사(영 부칙§3②)

- 필요시 예외적으로 실지점검을 통해 보완 확인

- 전산설비·통신수단 등의 경우 제출된 서류내용의 검토를 통해 구비상태를 점검하고, 실지점검을 통해 서류내용과의 차이를 보완 확인

- 실지점검시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투자금·상환금 관리기관\*에 연동되는 전산시스템까지 구축한 경우에만 전산설비 요건 충족으로 인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위를 위해서 중앙기록관리기관(투자한도 확인 등) 및 투자금·상환금관리 기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재산과 투자금·상환금의 분리관리 등)과의 전산망 연결이 필수적이므로 등록 직전에 이루어지는 실지점검까지는 시스템 연결 필요

대상	등록 요건	세부요건	확인 방법
신청법인 (본인)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보안설비 등	전산설비·통신수단, 보안체계, 출입통제 등 적정성	· 제출서류검토 · 실지점검*

\*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투자금·상환금 관리기관과의 전산연결 여부 확인을 포함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요건별 검토 방법

대상	등록 요건	세부요건	확인 방법	
대주주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법 §5①7)	출자능력(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이상 등),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요건 등	· 제출서류 검토	
	사회적 신용 (법 §5①7)	대주주 법적실체(금융기관, 개인 등에 따른 법규위반 등 결격요건 (영 <별표1> 및 규정 <별표2>))	· 유관기관 등의 사실조회* 결과	
임원	임원 요건 (법 §6①)	미성년자, 파산 금고이상 실형 등 안취소 법인 임직원 등(채무구조법 §9)	· 결격요건 없음 확인서	
신청법인	사회적 신용 (법 §5①8)	금융법령 등 벌금형 이상 처벌, 채무불이행, 부실금융기관 책임, 업무정지 등	· 신원조회 회보서 등 제출서류 확인	
	재무건전성 (법 §5①8)	부채비율 200% 이내(규정 §4③)	· 제출서류 검토 (필요시 실지점검)	
	* 실질적 동일인도 사회적신용 및 재무건전성 요건 등 심사 (영 부칙 §3②)	법인격 (법 §5①1)		상법상 주식회사
	자기자본 (법 §5①2)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사업계획 타당성 (법 §5①4)	내부통제장치, 이용자 보호 업무방법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유지 등		
	인력 (법 §5①3)	전산전문인력 2명 이상 (전산설비 종합 위탁시 1명)		

물적설비		
전산설비 및 통신 수단, 보안설비 등 (법§5①3)	전산설비·통신수단, 출입통제 등 보안설비, 보완설비 등 적정성	· 제출서류 검토 · 실지점검**
기타 물적설비 (법§5①3)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등 적정성	· 제출서류 검토 (필요시 실지점검)
내부통제장치 (법§5①6)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포함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구비	· 제출서류 검토 (필요시 실지점검)

\* 검찰청, 경찰청, 한국신용정보원 등 대외기관과 원내 소관부서에의 사실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결격여부 확인 (신원조회회보서는 신청인이 제출 필요)

\*\*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투자금 등 관리기관과의 전산연결 여부 확인을 포함

※ 심사항목별 세부 내역은 <III. 등록요건 심사 세부내역> 참조

## 4

### 등록검토 결과 통보 (금감원→금융위)

등록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금융위 통보

## 5

### 등록 사실 공고 등 (금융위)

금융위 담당부서는 등록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

○ 등록시 해당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Ⅲ 등록요건 심사 세부내역

#### [참고] 심사 세부내역 활용시 주의사항

- 본 내용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인의 서류작성 등 준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포괄적인 기준으로서
  -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등록신청 이전에 금융감독원 등록심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1단계 신청서류 검토

#### ※ 필수첨부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작성·제출시 유의사항

- ① 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됩니다.
- ②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 ③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 구비서류 제출여부 확인

- 신청서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첨부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

<표 1 :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필수구비서류 목록(감독규정)	추가준비서류
신청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 및 이사회 현황</li> <li>- 사업의 내용</li> <li>- 재무등에 관한 사항</li> <li>-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현황</li> <li>- 대주주 현황</li> <li>-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사항 등</li> </ul> </li> </ul>	

구분	필수구비서류 목록(감독규정)	추가준비서류
신청인 현황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관</li> <li>○ 법인등기부등본</li> <li>○ 설립·등록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li> <li>○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li> </ul>	
임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li> <li>○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li> </ul>	
사업의 계획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li> <li>○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방법(광고, 차입자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투자자 정보 제공,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등 권리에 대한 업무절차 포함)을 기재한 서류</li> <li>○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의 영위와 관련한 관련기관(여치기관, 중앙기록관리기관 등 포함) 계약체결현황 및 계약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관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li> <li>○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체계(신용평가체계)를 기재한 서류</li> <li>○ 영업중단 등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기재한 서류(법무법인 등과의 계약서 등)</li> <li>○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기재한 서류(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등에 대한 서류 포함)</li> <li>○ 금융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금융관계법률의 준수계획을 기재한 서류</li> <li>○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적용시 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현황(상품명, 상품구조, 해당 상품의 대출잔액 등) 및 해당상품의 구체적 정리계획(정리방법, 정리완료시기)이 기재된 서류 및 정리계획의 실효성을 증빙할 서류</li> <li>○ 신용정보법 등 금융관계법률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동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해소계획을 기재한 서류</li> </ul>
재무 등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li> <li>○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li> <li>○ 최근 월말 기준 자기자본규모를 기재한 서류</li> <li>○ 최근월말 기준 연계대출규모(연계대출잔액) 및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규모를 기재한 서류</li> </ul> <p>*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제출 불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실질적 동일인</b> 부채비율 확인</li> <li>1.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li> <li>2. 위 1의 감사보고서상 부채비율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목적(부채비율 확인용) 감사보고서</li> <li>○ <b>신청인</b>의 자기자본 요건의 기준이 되는 연계대출잔액 확인</li> <li>1.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연계대부업자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li> </ul>

구분	필수구비서류 목록(감독규정)	추가준비서류
		2. 신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연계대부업자의 연계대출채권잔액이 주석사항으로 기재된 P2P플랫폼사업자의 감사보고서
인력·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감시인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 서류</li> <li>○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 서류</li> <li>○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서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감시인 선임 자료(이사회 의사록)</li> <li>○ 전산 관련 전문교육과정 이수 증명서(학사 이상 학위 등)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등) 사본</li> <li>○ 전산전문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li> <li>○ 준법감시인, 전산전문인력에 대하여 직장 명의로 가입된 4대보험가입자 확인원</li> <li>○ 전산관련 추가준비서류는 별도 안내 참고</li> </ul>
대주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신청일 현재 주주 명부</li> <li>○ 결격사유없음 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자자금 원천 증빙자료</li> <li>○ 대주주 등의 형태가 불분명한 경우 실체 확인에 필요한 서류</li> <li>○ 대주주가 외국법인, 해외펀드 등인 경우 해외 감독기관 및 근거법률 자료 확인</li> </ul>
내부통제기준 (이해상충방지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li> <li>○ 이해상충방지체계 확인 서류 등</li> <li>○ 그 밖에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계대부업 등록증 사본</li> <li>○ 보험 또는 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증명서류</li> <li>○ 협회가입(예정) 증명서류</li> <li>○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li> <li>○ 그 밖에 필요 서류</li> </ul>	

## 1. 정보처리를 위탁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 서류

- 위탁계약서 사본
-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업무위수탁 운영기준
- 업무위탁 계약이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기재한 서류
-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탁계약 상대방에 관한 사항
-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를 기재한 서류

## 2. 정보처리 위탁계약 체결시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 회사간의 책임관계
-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검사 수용 의무
- 수탁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

## □ 서류접수시 주요 점검사항

- 법상 요구되는 자기자본 및 인력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대주주의 범위 등을 확인하여 필요시 보완 요청

구분	요건	주요 확인사항
대주주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하여 지분율이 최대인 주주)</li> <li>○ 특수관계인인 주주</li> <li>○ 주요주주(지분율이 10% 이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 과반수 선임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주요주주 등 심사대상 대주주가 모두 특정되었고, 관련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li> <li>○ 심사대상자 중 금융기관 대주주로 허용되지 않은 형태(외국인 등)의 주주가 있는지 여부</li> <li>○ 대주주의 실체확인을 위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첨부되었는지 여부</li> </ul>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자본 총계 5억원 상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부</li> <li>○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자본의 변동내역 기재 및 이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li> <li>○ 등록일까지 발생할 비용(인건비, 임대료 등)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지</li> <li>○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주식사항으로 연계대출잔액 규모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li> </ul>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li> <li>-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li> <li>- 이용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li> <li>-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개황, 등록신청 배경, 사업목표, 사업전략, 주된 타겟시장 등 기재</li> <li>○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절한 조직구조의 구축·확립과, 조직 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지 (조직체계의 직위·성명과 담당업무를 간단하게 기재한 조직도 첨부)</li> <li>○ 광고, 공시, 차입자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투자자 정보 제공,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상환능력평가 등 개별 업무 관련 구체적 업무절차 기재된 업무방법서</li> <li>○ 구조화상품 금지, 투자자 모집 등 위탁금지, 연계투자·연계대출계약의 제한, 만기불일치 상품 금지 등</li> </ul>

구분	요건	주요 확인사항
		<p>금지상품의 현황 및 정리계획이 기재된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지상품의 정리계획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만기불일치 상품을 해소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와의 계약서 사본 등)</li> <li>○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를 위한 예치기관과의 계약, 청산업무처리 절차 등이 기재된 서류 및 증빙자료</li> </ul>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감시인 1명, 전산분야인력 2명 (전산종합위탁시 전산인력 1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의 자격 및 경력 증빙자료와 상근여부 확인 자료</li> <li>○ 전산종합위탁 시 이용자 정보보호 등 관련 수탁업체에 대한 감독·통제권한 확보 등이 반영된 계약서</li> <li>○ 준법감시인 선임 이사회 의사록</li> <li>○ 준법감시인의 별도보수체계 및 평가 기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li> </ul>
내부통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해상충방지체계를 포함한 내부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여부</li> <li>○ 내부통제기준 제정 관련 이사회 의사록</li> <li>○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li> <li>○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평가 주기 및 절차,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를 기재한 서류</li> </ul>
신청인 사회적 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체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연체 채권의 건전성 확보 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체채권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li> <li>○ 연체채권에 대한 건전성 평가기준을 기재한 서류</li> <li>○ 연체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현황</li> <li>○ 연체채권 건전성 분류에 따른 건전성 확보방안을 기재한 서류</li> <li>○ 향후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 (방안)을 기재한 서류</li> </ul>

## 〈1〉 대주주 요건

-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참고] 대주주의 범위(=①+②+③)

#### ① 최대주주(법 §2제10호가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영 §2①, 지배구조법 시행령§3①)가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② 주요주주(법 §2제10호나목)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영 §2②1)
  -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영 §2②2)

#### ③ 대주주에 포함되는 자(법 §5①7에 의해 포함)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영 §2①, 지배구조법 시행령§3①)인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포함)
  -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 또한, 대주주의 법적 실체(금융기관, 내국법인, 내국인, 외국법인, 기관전용사모펀드 또는 SPC인 경우 심사대상)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심사요건을 규정(영 <별표1>, 규정 <별표2>)

\* 대주주가 투자조합인 경우, 기관전용사모펀드를 준용

- 대주주의 법적 실체(금융기관, 내국법인, 내국인, 외국법인, 기관전용사모펀드 또는 SPC인 경우 심사대상)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현황자료 등 객관적 증빙 제출 필요

<표 2 : 대주주 적격요건 정리>

구 분	근거 법규조항		확인서
	시행령 <별표 1>	규정 <별표 2>	<붙임3> 확인서번호
1. 최대주주/주요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가. 금융기관	1호	1호	(1)-A
나. 내국법인	2호	2호	(1)-B
다. 개인	3호	3호	(1)-C
라. 외국법인(외국금융투자업자)	4호	4호	(1)-D
마. 기관전용사모펀드/SPC인 경우 GP 등			
① 금융기관	5호 가목	5호 가목	(1)-E-①
② 내국법인	5호 나목	5호 나목	(1)-E-②
③ 개인	5호 다목	5호 다목	(1)-E-③
④ 외국법인	5호 라목	5호 라목	(1)-E-④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최대주주의 대표자			
가. 금융기관	비고 제1호	비고 제1호 가목	(2)-A
나. 내국법인	비고 제1호	비고 제1호 나목	(2)-B
다. 개인	비고 제1호	비고 제1호 다목	(2)-C
라. 외국법인	비고 제1호	비고 제1호 라목	(2)-D
마. 기관전용사모펀드/SPC인 경우	비고 제1호	비고 제1호 마목	(2)-E

**[참고]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펀드 또는 SPC인 경우의 심사대상**

-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과 그 출자지분이 30%이상인 유한책임사원(30%이상의 LP)(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제외)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LP가 심사 대상
- SPC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GP와 그 출자지분이 30%이상인 주주나 사원(SPC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심사 대상

## 〈2〉 임원 요건〉

- 임원이 법 §6①(지배구조법 §5)에서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심사항목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지배구조법 §5)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⑤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배구조법 시행령 §7①)
  1.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된 금융회사의
    - 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 나. 조치의 원인이 된 사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 다. 조치의 원인이 된 사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라. 2,3호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 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 나. 조치의 원인이 된 사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 다. 조치의 원인이 된 사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라. 2,3호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 심사항목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

나. 조치의 원인이 된 사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다. 조치의 원인이 된 사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라. 2,3호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⑦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배구조법 시행령 §7②)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 직무정지 요구일)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로부터 4년

다. 문책경고

: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면직요구 : 면직요구일부부터 5년

나. 정직요구 : 정직요구일부부터 4년

다. 감봉요구 : 감봉요구일부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및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⑧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의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지배구조법 시행령 §7②)

## 심사항목

- ⑨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온투업 감독규정[별표 1] 1.나.(1))
- ⑩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 (온투업 감독규정[별표1] 1.나.(2))

### 〈3〉 신청인 본인 요건 :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신청인 본인(금융회사)이 시행령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법 §5제8호, 령 §3⑦)

- \* 신청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자도 시행령 제3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 가능(령 부칙 §3②)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보유 대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권에 대한 부분은 부채비율 산정 시 부채총액에 불포함

## 심사항목

### (1) 건전한 재무상태

- ①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 (2) 사회적 신용

- ①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본문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
- ②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 ③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 ④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계 법률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 ⑤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평가기준, 평가결과)하고, 연체율의 적정한 관리방안(연체채권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 **(심사방법)** 등록 신청시의 제출서류 및 확인서, 국내외 해당 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확인

\*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기관과 해외 본국 감독기관

- 대주주·임원·신청인 요건 중 **법령위반, 부실책임, 조치경력** 등은 대내외 **사실조회 결과** 및 신청인 제출 확인서를 통해 확인
  - 사실조회시 **미포함된 법령위반 사항** 등이 제보 등의 방법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사후조치**
- 대주주·임원·신청인 요건 중 **비차입요건, 재무건전성** 등 요건의 경우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
  - 대주주 비차입요건 및 재무건전성 요건의 경우 **출자금의 원천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예금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 상속·증여세 신고 등)** 및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등을 통해 확인

**(1) 법인격 요건**

- (심사요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 (심사방법) 등록신청 접수시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2) 자기자본 요건**

- (심사요건)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함(법 §5제2호)

\* 납입자본금이 아닌 개별 재무제표의 자본 총계를 의미

-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일 자기자본에서 등록일까지의 자본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

- (심사방법)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 나목에 따른 '감사반'은 제외

- 사업연도말 이후 증자 또는 감자 등으로 자기자본의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이익잉여금 발생금액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감사보고서, 재무제표확인원, 예금잔액증명서, 증권계좌잔액증명서 등의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고유재산운용을 통한 이익 발생 등

- 신설법인(기존 영업이 없는 경우)은 등록신청일의 직전월말 기준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확인원으로 감사보고서를 갈음
-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등록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면서도 요건을 상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

\* 원칙적으로 신청인은 등록일 현재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등록일까지 발생할 비용(인건비, 임차료 등)에 대한 완충자본(buffer)이 필요

-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추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 중 재무제표(보완요청일 현재 기준) 추가 제출을 요청

### [3]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 (심사요건) 내부통제장치, 이용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유지 등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할 것

심사항목	점검 내용
<b>(1)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 보호</b>	
① 경영진·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향,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감사의 권한 책임 등이 투명하고, 이용자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경영진, 감사의 역할·책임이 규정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li> <li>■ 이사회, 감사, 영업본부별, 부서별, 직원별 역할과 위임관계가 명확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li> </ul>
② 영위하는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제를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관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하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활용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하는지 여부</li> <li>■ 위험관리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임직원의 법규준수 의무가 내부통제기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li> </ul>
③ 경영진·이사회 또는 주요 임원 등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보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진·이사회 구성원이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li> <li>■ 임원 등이 사회적 평판과 윤리면에서 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여부</li> </ul>
<b>(2) 이용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b>	
① 이용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에 부합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업무방법(업무방법서)을 마련하였을 것</li> <li>■ 예치기관과의 계약, 청산업무 처리절차 및 관련 계약, 전산위탁계약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이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 보호에 적정한지</li> <li>■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li> </ul>

심사항목	점검 내용
(3)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준수	
①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한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방법서에 기술된 영업(계획)내용 및 방법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규 등에서 정하는 업무범위 내에 있고, 업무상 준수할 사항과 부합할 것</li> <li>- 기존 수행하던 업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정리 계획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지 여부</li> <li>■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금융관계법률의 준수계획이 마련되었을 것</li> </ul>
② 이사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하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의 수, 사외이사의 자격, 감사(위원회) 구성 등 지배구조가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li> </ul>

□ (심사방법) 등록심사시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경영진, 이사회 감사 등 내부통제조직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절차 및 세부 기준이 포함된 업무방법서 등의 마련여부 심사

#### [4] 인력 요건

□ (심사요건)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을 갖추어야 함(법 §5①제3호, 영 §3③제1호, 규정§4② <별표1>)

○ 전산 분야에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함

- 단, 전산설비를 종합위탁\*할 경우 전산관련 전문인력 1명을 감축 가능

\* 1) 전산처리전문회사(수탁회사)가 하드웨어(서버 자체소유는 가능), 소프트웨어, 관리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2) 전산설비 대부분(서버·저장·백업장치)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전산설비 종합위탁으로 간주

#### [참고] 인력에 관한 요건 [규정 <별표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할 것

○ 전산전문인력 : ①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전산관련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말한다)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해당 업무에 4년 이상 종사 경력 필요

□ (심사방법) 경력증명서, 상근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자격 확인 서류 등으로 심사

#### [5] 물적 요건

□ (심사요건)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법 §5①제3호, 영 §3③제2호, 규정§4② <별표1>)

○ ①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②업무공간과 사무장비, ③보안설비 ④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등을 점검

- 코스콤 또는 전산처리에 전문성이 있는 회사에 전산설비 및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이를 감안하여 평가

\* 위탁계약서에 수탁회사의 정보보호의무, 전자금융사고 책임의무, 업무연속성 확보, 감독당국 협조의무 등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법§15②, 규정§16②)을 명시해야 함

심사항목	점검 내용
<b>(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b>	
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 구축의 적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업무 영위에 적합하고 급격한 업무증가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보유 및 가용성·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산기, 어플리케이션서버, DB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을 갖출 것(전산기기 목록)</li> <li>-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li> <li>- 주요 업무별·기능별 각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시 통제방안 마련</li> </ul> </li> <li>■ 예치기관, 중앙기록관리기관 등과의 자료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제어장치 통신서버, 통신회선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내·외부 통신망 구축(내·외부 네트워크, 전용회선 구축 등 통신시스템 구성도)</li> </ul>
② 침입탐지·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성이 검증된 보안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 방화벽 등</li> </ul> </li> </ul>
③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당업무에 따른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 등 접근 권한 통제</li> <li>■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입 통제</li> <li>■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li> <li>■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시 이용자 정보 사용을 금지</li> </ul>
④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이용자 확인 및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전산기 및 각종 서버에 대하여 비인가자의 접속 및 사용 통제방안 구비</li> <li>-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log-in) 기록 유지 등 정보 유출대책 마련</li> <li>-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등록·변경·폐기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외부사용자에게 사용자계정을 부여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li> <li>-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정보 조회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 또는 조회내용, 접속방법 등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도록 하고 그 기록을 1년간 보존</li> </ul> </li> </ul>

심사항목	점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 출입 통제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며 상시출입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그 밖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하며 출입자 관리기록부 기록·보관</li> <li>- 전산실 출입자의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CCTV 배치</li> <li>- 전산실 출입문은 2중 안전장치로 보호하며 외벽이 유리인 경우 유리 창문을 통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li> </ul> </li> </ul>
⑤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 구축 및 백업자료 별도 보관·관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업장치를 구비하고 중요도에 따라 프로그램, 데이터, 로그 등 전산자료를 정기백업 및 안전지역에 소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업자료의 소산보관장소 마련</li> <li>- 기간별 소산보관대책 마련</li> <li>- 백업과 관련한 외부업체와의 계약 등</li> </ul> </li> </ul>
<b>(2) 업무공간과 사무장비</b>	
①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사무공간 등 충분한 업무공간 및 부서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확보</li> </ul>
②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의 감독·검사 시 법적 장애가 없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적 설비에 대한 소유권의 완전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매, 리스, 임대, 위탁 등 계약내용 점검</li> </ul> </li> </ul>
<b>(3)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b>	
①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의 확보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실 보안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PS, 항온항습기, 소화설비, 비상발전기 등 구비</li> <li>- 전산실 내 CCTV 사각지대 제거</li> <li>- 장애에 대비한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의 이중화</li> </ul> </li> <li>■ 사무실 및 전산실에 대한 365일 × 24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미인가자 접근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장소 CCTV 설치 및 녹화기록 유지</li> </ul> </li> </ul>
② 파업 등 불시사태 대비 비상계획 마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 재해, 인적 재해, 기술적 침해, 전자적 침해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마비 방지, 자료 손실 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li> <li>-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 센터 마련</li> <li>- 재해복구센터 내 단말기 등 백업체계 구축</li> </ul> </li> </ul>
③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확보 여부	
④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 마련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usiness Contingency Plan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P를 포함한 재해복구 훈련 실시</li> <li>- 재해복구 훈련시 복구테스트 결과</li> </ul> </li> </ul>

□ **(심사방법)** 사업계획서, 전산기기·프로그램 목록, 전산설비 및

통신회선 흐름도, 외부업체와의 위탁 계약서 등 서류검토를 통해 심사하고

○ 서류 내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실지점검을 통해 확인

※ 실지점검 사항은 등록매뉴얼 IV. 실지점검 참조

## (6) 내부통제장치 요건

□ (심사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간, 특정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법 §5①제6호·§18)

심사항목	점검 내용
① 내부통제장치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활용한 내부통제기준이 제정되어 있는지 여부</li> <li>■ 내부통제기준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한 법정사항의 내부통제기준 반영 여부</li> <li>■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에 대한 이사회결의가 있었는지 여부</li> <li>■ 내부통제기준에 이해상충의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li> <li>■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 및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li> <li>■ 주요내규(조직관리규정, 이사회 규정)가 마련되어 있고,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 지침 또는 세부기준에 대한 하위규정의 마련계획</li> </ul>
② 준법감시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법감시인이 법령상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li> <li>■ 준법감시인이 상근직으로 채용되어 있는지 여부</li> <li>■ 준법감시인의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는지 여부</li> <li>■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기준 및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li> <li>■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지 않은지 여부</li> </ul>

□ (심사방법) 등록 심사시 사업계획서 및 내부통제기준 등을 통해 심사한 후 실지점검 등을 통해 이행 여부 등을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내부통제기준'이 법상 요구하는 내용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표준안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 확인

-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임직원 겸직 현황 여부를 파악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의 적법성 등은 등록 신청서의 제출서류 및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

**[참고]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26①, 지배구조법 시행령 §21, 지배구조 감독규정 §12]**

- ①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 해당 임직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로서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금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서 7년 이상 근무하고, 퇴임·퇴직한 후 5년이 경과한 사람
  -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IV 실시 점검

### 1 실시점검 개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서류심사 완료 후 신청서류상 기재 내용에 대해 실제 구비여부의 확인을 위해 실시점검 실시
  - **(점검기간)** 등록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사전 협의 후 2일내로 점검을 완료하도록 하며, 등록요건 검토기간(2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전체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 **(점검방법)** 임원, 준법감시인, 업무담당자와의 면담 및 물적 설비 확인 등을 통해 인력 요건, 물적 설비, 내부통제기준 등 등록요건에 대한 신청서류상 기재내용의 실제 구비여부 확인
  - **(요건 미충족시 조치)**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확인을 요구(필요시 재점검)하고, 등록통보 시한까지 시정할 수 없는 등록요건 미충족 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불가 통보

### 2 주요 점검 사항

- **인력요건의 적정성**
  - 준법감시인 및 전문 인력의 상근 여부 및 전문성
    - 준법감시인의 업무계획(준법감시 매뉴얼, 컴플라이언스 체크 리스트 등)
    - 전산전문인력의 물적설비 관리 및 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

## □ 전산시설의 적정성

- 주전산기, 각종서버, 전용회선 등 전산시스템과 통신수단 구축
  - 실지점검시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투자금·상환금 예치기관\*에 연동되는 전산시스템까지 구축한 경우에만 전산설비 요건 충족으로 인정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영위를 위해서 중앙기록관리기관(투자한도 확인 등) 및 예치기관(투자금·상환금 관리 등)과의 전산망 연결이 필수적이므로 등록 직전에 이루어지는 실지점검까지는 시스템 연결 필요
- 출입통제,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의 구비 등

## □ 물적설비의 적정성

- 부서별 충분한 업무 공간 확보
- 물적 설비를 안정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확보
- 정전·화재 등의 사고시의 업무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 확보 등

## □ 기타

- 내부통제기준, 업무방법서 등 마련 여부
- 심사기간 중단(자료보완, 수사·검사 등의 진행) 등으로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추가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점검 시 재무제표(실지점검일 현재 기준) 추가 심사(은행 잔고증명서 등)

## V 등록 유지 요건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등록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함(법 §5⑦, 령 §5)

\* 등록유지요건 위반시 등록 취소 가능(법 §49②제3호)

- 다만, 자기자본·대주주 요건에 대하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

\* 대주주에 대한 완화된 기준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관련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한 대주주에 한함

### [참고] 등록유지조건의 완화

#### 가. 자기자본 요건 (법정 자기자본 100% → 70%)

-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 법정 자기자본의 70%이상 유지하되, 동 조건은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적용
  -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경우에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자본보완이 이루어지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나. 대주주 요건 (일부 요건 배제 및 결격요건 완화)

- 대주주의 출자능력(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이상), 재무건전성, 부채비율(200%), 비차입 요건 등은 출자 이후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 배제
-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도 일부 기준을 배제하거나 완화

구 분	등록시	유지요건
5년간 금융법령 등 위반	대주주, 벌금형 이상	최대주주 5억원의 벌금형 이상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대주주	좌 동
5년간 채무불이행 등	대주주	적용 배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관련	대주주	적용 배제

## VI 기존 판단사례

### 전산전문인력의 자격 관련 판단사례

□ A사가 '21.1월 온투업 등록신청을 하면서 ①정보처리기사 자격 및 ②멀티미디어학 학위를 소지한 B를 전산전문인력으로 하고자 하였던 사례에서

\* 온투법은 ①정보처리기술사·정보통신기술사 자격 소지 및 해당 업무 2년 이상 종사 경력 ②전산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 및 해당 업무 2년 이상 종사 경력을 전산전문인력의 요건으로 두고 있음(감독규정 제4조 제2항, 별표1)

○ 정보처리기사 자격만으로는 전산전문인력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고\*, 다만 멀티미디어학 학위는 전산 관련 분야의 학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 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능력 4년 충족 후 기술사 자격 응시 가능

# 붙임 1

# 등록 신청서 양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 별지 제1호 서식 >(규정 제6조제1항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서							
① 신 청 인	명칭(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본점)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신 청 사 항	② 임원 및 이사회 현황						
	가. 임원 현황(대표자 및 이사회 구성원 포함) <span style="float: right;">임원 수:   명(상근:   명, 비상근:   명)</span>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근여부	담당업무	임원자격* 적합여부
	(*)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격을 말한다.						
	나. 이사회 구성원 현황 :                   명(사외:   명, 사내(상근):   명, 사내(비상근):   명)						
	③ 사업의 계획						
④ 재무등에 관한 사항							
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현황							
구 분	20 . . .	20 . . .	20 . . .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나. 최근 월말 기준 자기자본규모 및 연계대출규모							

자기자본규모 (백만원)		연계대출규모 (백만원)	
-----------------	--	-----------------	--

⑤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현황

가. 전문인력 현황(준법감시인, 전산 전문인력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담당업무	전문자격 내용 등

나.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⑥ 대주주 현황

명칭·성명	주 소	지분율(%)	최대주주와의 관계	대주주요건 적합여부

⑦ 내부통제장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  
부  
서  
류

1. 신청인 현황 관련

- 가.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나.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다.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라.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2. 임원 및 이사회 현황 관련**

- 가.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나.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3. 사업의 계획 관련**

- 가. 사업계획서 1부
-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방법[광고(법 제19조), 차입자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법 제20조 및 제21조), 투자자 정보 제공(법 제22조),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체결(법 제23조 및 제24조),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법 제27조)에 대한 업무절차 등을 포함한다] 등에 대해 기재한 서류 1부
-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의 영위와 관련한 관련기관(예치기관, 중앙기록관리기관 등을 포함한다) 계약 체결현황 및 계약서 각 1부

**4. 재무등에 관한 사항**

- 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나.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다.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월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등록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를 기재한 서류 1부
  - 라.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월말 기준 연계대출규모(연계대출 잔액을 의미한다). 연체 상태(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를 의미한다)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규모(잔액을 의미한다)를 기재한 서류 1부
-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가. 준법감시인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나.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 다.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6. 대주주에 관한 사항**

- 가.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 나. 대주주가 법 제5조제1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사항**

- 가. 내부통제장치(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한다)와 이용자 보호에 대해 기재한 서류 각 1부
- 나.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다. 그 밖에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8. 그 밖의 사항**

- 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 등록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 전 연계대부업 등록을 통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본 1부
- 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또는 가입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마.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1. 신청 개요**

회사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 :</li> <li>◆ 영문 :</li> </ul>		
회사설립일			
소재지	◆		
등록신청 목적	◆		
현재 영위 업무	구분	업무내용	관련 법규상 최소자본자금
	금융업	◆	◆
	기타	◆	◆
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li> <li>◆ 최근 월말 기준 :</li> </ul>		
임원구성 (등기임원)  *준법감시인 포함	직위	성명	주요이력
최대주주			
주주구성 <sup>1)</sup> (최대주주 포함)	주주명	지분율	구분 <sup>2)</sup>
연계회사 명칭 <sup>3)</sup>			

주1) 대주주요건 심사대상 및 5% 이상은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고 나머지는 통합하여 기타로 표시

2)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구분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경우만 기재

※ 칸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삽입 또는 삭제하여 적절하게 조정

## 2. 심사대상 대주주 현황

대주주 현황	주주명	구분 <sup>1)</sup>	의결권 있는 주식수	비율(%)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예) 임원, 계열회사 등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주요주주				

주 1)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외국인' 등으로 구분

※ 칸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삽입 또는 삭제하여 적절하게 조정

※ 필요시(공동최대주주인 경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다수인 경우 등) 대주주 등 신청인의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도표 첨부

### 3. 자기자본 현황

---

① 연계대출 규모(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        억원

② 자기자본(20××.××.××. 신청일 현재) : (1) + (2) =        억원

(1) 최근 사업연도말(20××.××.××.) 현재 자기자본 :        억원

(2) 자기자본의 증감분 :        억원\*

\*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등록신청일까지의 자기자본의 증감분

③ 최저 자기자본 : (1) =        억원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대한 최저 자기자본 :        억원\*

※ 연계대출 규모    300억원 미만                                : 5억원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0억원  
                          1,000억원 이상                                    : 30억원

## 4. 전문인력 현황

### 1. 전체 인력현황(신청일 기준)

- 가. 총원 :       명  
 나. 등기임원 :   명(상근:00명, 비상근:00명)  
 다. 직원(미등기임원 포함) : 총       명 (미등기임원:   명)

### 2. 전체 인력의 배치현황

구 분	인원	해당 업무 경력별 <sup>1)</sup> 인원수				비고 <sup>2)</sup>
		1년 미만	1년~2년 미만	2년~5년 미만	5년 이상	
내부통제업무 (준법감시인 포함)						
전산업무						
기타 (자격증 <sup>3)</sup> 소지자)						
전문인력 소계						
재무관리						
인사/총무						
기타						
영업지원 소계						
등기임원						
총 계 <sup>4)</sup>						

주 1) 경력은 당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근무 기간도 포함

2) 감사팀, 전산팀 등 해당경력자가 배치되는 부서명칭

3)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4) 등기임원, 미등기임원, 직원을 합한 전체 임직원 수

###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무를 위한 인력 현황(신청일 기준)

구분 \ 인력	내부 인력 <sup>1)</sup>	기확보 인력 <sup>2)</sup>	채용예정 인력 <sup>3)</sup>
준법감시인		홍준법(입사일)	
준법지원인력	홍지원(입사일)		
전산업무1	홍길동(입사일)		
전산업무2		홍이동(입사일)	
전산업무3			홍삼동(입사예정일)
합계			

(작성요령 )

※ 준법감시인 1명, 전산전문인력 2명은 내부 인력 또는 기확보 인력이어야 함

- 주1) 기존 인력 중 신청 등록업무를 담당할 예정 인력을 기재
- 2) 업무 영위를 위해 채용을 완료한 인력을 기재
- 3) 향후 확보할 인력을 기재

###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무를 위한 인력의 경력 현황(신청일 기준)

성명	채용 여부	소속	직급	해당 업무 경력 <sup>1)</sup>	자격증 <sup>2)</sup>	비고 <sup>3)</sup>
홍준법	채용	준법감시부	부장	* 총 7년 1.○○증권 3년(영업팀) 2.○○선물 4년(영업팀)		
홍길동	채용	전산팀	부장			
홍이동	채용	전산팀	차장			
홍삼동	미채용	전산팀	과장			

(작성요령 )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무를 위한 인력 현황”에 기재한 인력에 대한 경력 현황을 기재

- 주1) 전문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업무 경력 기재
- 2)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준법감시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격증 또는 전산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격증 기재(모든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으로 한정)
- 3) 심사받고자 하는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또는 전산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기재  
예시) 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준법감시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전산전문인력

## 5. 물적 설비 현황

\*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등의 해당 페이지를 상단에 명기한 후 등록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1)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관련 내용
<p>①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②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③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 시스템 관리방안이 확보되어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④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⑤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2)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관련 내용
<p>①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②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b>(3)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b></p>	<p><b>관련 내용</b></p>
<p>①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②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          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          되어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③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④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          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p><b>(4) 기타</b></p>	<p><b>관련 내용</b></p>
<p>①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있을 것</p>	<p>☞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p>

## 6.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등의 해당 페이지를 상단에 명기한 후 등록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1)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보호	관련 내용
① 경영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이용자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
②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
③ 경영진·이사회 또는 주요 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
(2) 이용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	관련 내용
① 이용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3)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준수	관련 내용
①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할 것	☞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
② 이사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

## 7. 내부통제장치 현황

\* 사업계획서, 기타 첨부서류 등의 해당 페이지를 상단에 명기한 후 등록 요건 해당 내용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필요시 테이블 등 작성가능)

내부통제장치 (이해상충 방지체계 포함)	관련 내용
① 내부통제장치의 마련	☞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
② 준법감시인 선임	☞ 사업계획서 등의 해당페이지 p.

## 붙임 3 확인서 양식

### 가. 임원 확인서

#### 임원 확인서(개인)

결격사유내용	해당사항없음 확인서명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포함)	
<p>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 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li> </ul> </li> <li>·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li> </ul> </li> </ul>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산운용과 관련	

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다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등 동법 제2조제1호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	

\* 공사채 등록법, 공인회계사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험업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산업발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선박투자회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택법, 중소기업은행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투자공사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별표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 나. 신청인 확인서

### (1) 신청인 본인

#### 신청인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본문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2) 실질적 동일인(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 관련)

신청인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일 것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보유 대부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의 수취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대부채권에 대한 부분은 부채비율 산정 시 부채총액에 불포함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만, 본문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다. 대주주 확인서

(1) 최대주주/주요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A. 금융기관[(1)-A]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등록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대주주의 출자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그 경제적 실질이 부채성 조달자금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채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기준이 없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당해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동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채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	

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B.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1)-B]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등록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대주주의 출자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그 경제적 실질이 부채성 조달자금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당해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 3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C. 내국인으로서 개인[(1)-C]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p>지배구조법 제5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포함)                      (7)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li> </ul> </li> <li>·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li> </ul> </li> </ul>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대주주의 출자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그 경제적 실질이 부채성 조달자금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p>	
<p>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p>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동 법 제2조 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D. 외국법인[(1)-D]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등록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자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최근 3년간 금융업 및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법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E.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

① 업무집행사원 등이 금융기관[(1)-E-①]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재무상태가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기준이 없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동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채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	--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②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법인[(1)-E-②]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동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경우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채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③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인으로서 개인[(1)-E-③]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p>지배구조법 제5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포함)                      (7)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법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p>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동 법 제2조 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④ 업무집행사원 등이 외국법인[(1)-E-④]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최근 3년간 금융업 및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 3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2)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A. 금융기관[(2)-A]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 3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B.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2)-B]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 3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C. 개인[(2)-C]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p>지배구조법 제5조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포함)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다만, 해당 조치의 원인에 대해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한정)로서 해당 조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포함)                      (7)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는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 포함)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은 자로서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 포함), 직무정지(직무정지 요구 포함)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 문책경고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면직, 정직, 감봉 요구일로부터 각각 5년, 4년, 3년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법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p>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동 법 제2조 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D. 외국법인[(2)-D]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충족 여부 확인
최근 3년간 금융업 및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인가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4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E.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

① 업무집행사원 등이 금융기관[(2)-E-①]  
⇒ [(1)-E-①]과 같음

②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법인[(2)-E-②]  
⇒ [(1)-E-②]과 같음

③ 업무집행사원 등이 내국인으로서 개인[(2)-E-③]  
⇒ [(1)-E-③]과 같음

④ 업무집행사원 등이 외국법인[(2)-E-④]  
⇒ [(1)-E-④]과 같음

## 붙임 4 기타 양식

### 가. 신원조회 의뢰서

#### 신원조회 의뢰서

#### 조회대상자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sup>①</sup>	조회기관 <sup>②</sup>

[기재시 유의사항]

- ① 등록기준지(舊본적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현 등록기준지를 기재
- ② 등록기준지 소재 조회기관 및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기재

#### 조회내용

- 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등록신청 법인이 등록기준지(舊 본적) 소재 읍면동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신원조회회보서(사본)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이해상충방지체계 관련 대표이사 확인서

이해상충방지체계 관련 대표이사 확인서

당사 \_\_\_\_\_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년    월    일

주식회사 OOOO(회사명) 대표이사 ○ ○ ○    (인)

## 다. 준법감시인 확인서

### 준법감시인 확인서

본인은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및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본인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 또는 금융관계법령에서 조치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준법감시인 ○ ○ ○ (인)

## 붙임 5

## 등록요건 관련 법규

### 1. 법인격 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p>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p> <p>1. 신청인이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p>		

### 2. 자기자본 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p>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p> <p>2.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p>	<p>제3조(등록요건) ① 법 제5조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p> <p>2.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경우 : 10억원</p> <p>3. 연계대출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30억원</p> <p>② 제1항 각 호의 연계대출 규모는 직전 연도말 기준으로 누적 연계대출 금액 중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p>	<p>제4조(등록요건)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계대출 규모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말 기준 누적 연계대출 금액에서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차입자로부터 회수가 불가능하여 손실이 확정된 금액(그 손실이 확정됨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이 상쇄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을 제외한 연계대출 잔액으로 산정한다.</p>

### 3. 대주주 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p>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p> <p>7.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p>	<p>제3조(등록요건) ⑤ 법 제5조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li> <li>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li> </ol> <p>⑥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은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p>	<p>제4조(등록요건) ③ 영 제3조 제6항 및 영 별표1에 따른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2와 같다.</p>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 [별표 1] 대주주의 요건 (제3조제6항 관련)

#### 대주주의 요건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그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p>

<p>"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p>	<p>아닐 것</p> <p>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56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다. 그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p>	<p>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p>	<p>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라.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p>	<p>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p>

경우	<p>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나목 및 제3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라.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 제1호나목, 제2호나목(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제4호나목·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	--

비고

- 제3조제5항 각 호의 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하고,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제4호나목의 대주주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 자기자본을 산정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등록하려는 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제4호를 적용할 때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등록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제4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2]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 (제4조제3항 관련)

대주주의 요건

구 분	요 건
<p>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1 제1호 관련)</p>	<p>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등록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4배 이상일 것</p> <p>나. 대주주의 출자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그 경제적 실질이 부채성 조달자금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p> <p>다.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동 기준을 상회할 것</li> <li>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li> </ol>

	<p>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해당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업종의 적기시정조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p> <p>라.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등록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p> <p>마. 대주주가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금융위원회가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법, 영, 금융관계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다만, 본문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li> <li>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및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li> <li>3) 다음과 같이 건전한 신용질서,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li> <li>나)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었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li> </ol> </li> </ol>
<p>2. 대주주가 제1호 이외의 내국법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의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영 별표1 제2호 관련)</p>	<p>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하일 것</p> <p>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업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p> <p>라. 제1호마목1)·2)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li> <li>(2) 제1호마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li> </ol>
<p>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는 개인인 경우 (영 별표1 제3호 관련)</p>	<p>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p> <p>나. 제1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1호마목1)·2) 및 그 밖에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p> <p>2)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동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p> <p>3) 최대주주인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기관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p> <p>4) 제1호마목3)나)에서 정하는 사실</p>
4. 대주주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인 경우(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1 제4호 관련)	<p>가. 제1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p> <p>다. 최근3년간 금융업 및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본국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p> <p>라. 제1호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p>
5. 대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영 별표1 제5호 관련)	<p>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정관, 투자계약서, 협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또는 당해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으로서 그 투자목적회사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p> <p>가.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 다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나. 제2호에 따른 내국법인인 경우 :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다.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제3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p>라. 외국법인인 경우 : 제2호 나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p>

## 비 고

- 위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영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 표의 요건을 다음의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 마목의 요건
  - 금융기관 이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2호 라목의 요건
  - 개인인 경우: 제3호 가목 및 다목의 요건
  - 외국법인인 경우: 제4호 다목 및 라목의 요건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제5호의 요건
- 위 표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위 표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합병회사로서 합병전 피합병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피합병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주

- 주주가 합병회사의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대주주가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로서 경영권변경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할 경우(그 사실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경영권변경 전의 임원,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사유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분변동등으로 실질적으로 대주주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주주가 지분변동 등의 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1호마목 및 제2호라목에서 정하는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시의 대주주(당해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당사회사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대주주인 경우에 한한다)의 요건
- 가. 대주주가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제1호마목1)과 관련한 요건. 이 경우 제1호마목1)의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은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로 본다.
- 나. 대주주가 위 표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 표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중 제4호다목과 관련한 요건. 이 경우 제4호다목은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본다.

#### 4. 임원 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p>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p> <p>5. 임원이 제6조제1항에 적합할 것</p> <p>제6조(임원의 자격)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p> <p>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다만, 같은 법 제5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p>	<p>제3조(등록요건)</p> <p>③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관한 전문성·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p>	<p>제4조(등록요건)</p> <p>② 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과 같다.</p>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b>제5조(임원의 자격요건)</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li> <li>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li>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li> </ol>	<p><b>제7조(임원의 자격요건)</b>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li> <li>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li> <li>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li> <li>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li> </ol>	<p><b>제2조(임원의 자격요건)</b> 영 제7조 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인 경우를 말한다.</p>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p> <p>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p> <p>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p> <p>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p> <p>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p>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p> <p>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p> <p>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p> <p>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p> <p>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p> <p>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p> <p>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p> <p>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p> <p>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p>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p>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p> <p>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li> <li>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li> <li>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li> </ol>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시행령	지배구조 감독규정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기준 (규정 제4조제2항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1) 최근 5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이었거나 불건전한 금융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의 대주주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 다만, 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2)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동 법 제2조제1호의4 각 목의 정보의 주체로 등록된 사실

5. 인력 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	제3조(등록요건) ② 법 제5조제1항제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추는 것	제4조(등록요건) ② 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기준 (규정 제4조제2항 관련)

1. 인력에 관한 요건

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해, 다음의 요건을 갖춘 2명 이상의 전산전문인력(IT기획·개발·운영·정보보호 등 전산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을 확보할 것. 다만, 전산설비를 종합 위탁한 경우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 (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전산 관련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를 말한다.)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정보처리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6. 물적 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p>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p> <p>3.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p>	<p>제3조(등록요건) ③ 법 제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p> <p>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p> <p>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p> <p>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p> <p>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p>	<p>제4조(등록요건) ② 영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설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기준 (규정 제4조제2항 관련)

2. 물적 설비

가.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 (1)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 및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었으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을 것
- (2) 침입탐지, 침입방지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 시스템 관리방안이 확보되어 있을 것
- (4) 정보이용자 확인 및 전산실 출입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것
- (5)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백업장치가 구축되어 있고, 백업자료가 별도 장소에 보관·관리되고 있을 것

나.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 (1) 부서인원 대비 충분한 업무공간 및 사무장비를 갖출 것
- (2) 물적 설비에 대하여 충분한 소유권을 보유하여, 내부기관 및 감독기관 등이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장애가 없을 것

다. 보안설비

- (1) 전산설비, 통신수단, 그 밖에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검증된 보안설비를 갖출 것
- (2) 파업 등 불시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설비

- (1)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설비가 확보되어 있을 것
- (2)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구현이 가능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이 마련되어 있을 것

## 7.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p>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p> <p>4. 운영하고자 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p>	<p>제3조(등록요건) ③ 법 제5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수립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을 것</p> <p>2. 이용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 방법을 갖출 것</p> <p>3.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p>	<p>제4조(등록요건) ② 영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및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별표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기준 (규정 제4조제2항 관련)

#### 3. 사업계획

##### 가.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 보호

- (1) 경영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이사회와 경영진의 관계, 감사의 권한과 책임 등이 투명하고, 이용자 보호와 재무 및 영업의 건전성 유지에 적합할 것
- (2) 영업내용·규모에 맞게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험관리 및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감독 및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
- (3) 경영진·이사회 또는 주요 임원 등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

##### 나.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준수

- (1)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 영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부합할 것
- (2) 이사회 구성 등의 지배구조가 법, 영 및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 8.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p>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p> <p>6.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제18조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말한다)를 포함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p> <p>제18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p> <p>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p>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p>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p> <p>8.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p>	<p>제3조(등록요건)</p> <p>⑦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자기자본 및 출자총액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인 것을 말한다.</p> <p>⑧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최근 3년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p>	<p>제4조(등록요건)</p> <p>④ 영 제3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0을 말한다.</p>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p>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본문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p> <p>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p> <p>4. 금융관계법률이나 외국 금융관계법률(금융관계법률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률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p> <p>가.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p> <p>나.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 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p>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p>다.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 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p> <p>5. 그 밖에 사회적 신용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출 것</p> <p>[부칙]</p> <p>제3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p> <p>① 이 영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률 제 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따른 직전 연도 말 기준 연계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제3조제1항의 요건을 적용한다.</p> <p>② 이 영 시행 당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그와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실질적 동일인”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p>	<p>⑤ 영 제3조제8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연체 상태(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연계대출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연체율(원금 또는 이자가 30일 이상 연체된 연계대출잔액을 총 연계대출 잔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p> <p>[부칙]</p> <p>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p> <p>대통령령 제30967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p>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감독규정
	<p>동일인도 제3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만 법률 제16656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등록할 수 있다.</p>	<p>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신청인”이라 한다)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자인 경우: 대부를 받으려는 자와 자금제공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신청인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인정되는 자</li> <li>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등록신청인이 대부를 받으려는 자와 자금제공자의 정보를 온라인에서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자인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인으로부터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를 받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인에게 사실상 지배를 받는다고 인정되는 자(다만, 영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은 제외한다)</li> </ol>

## 6. 전자금융, 신용정보, 신용평가

### (1)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 1. 전자금융업 등록대상 업무

□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은 금융기관 또는 일반 사업자가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을 하도록 규정

##### ○ 등록대상 전자금융업(법 제2조)

- 전자자금이체업 :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기관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지급지시를 하거나 추심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
- 직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 :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미리 저장된 금전적 가치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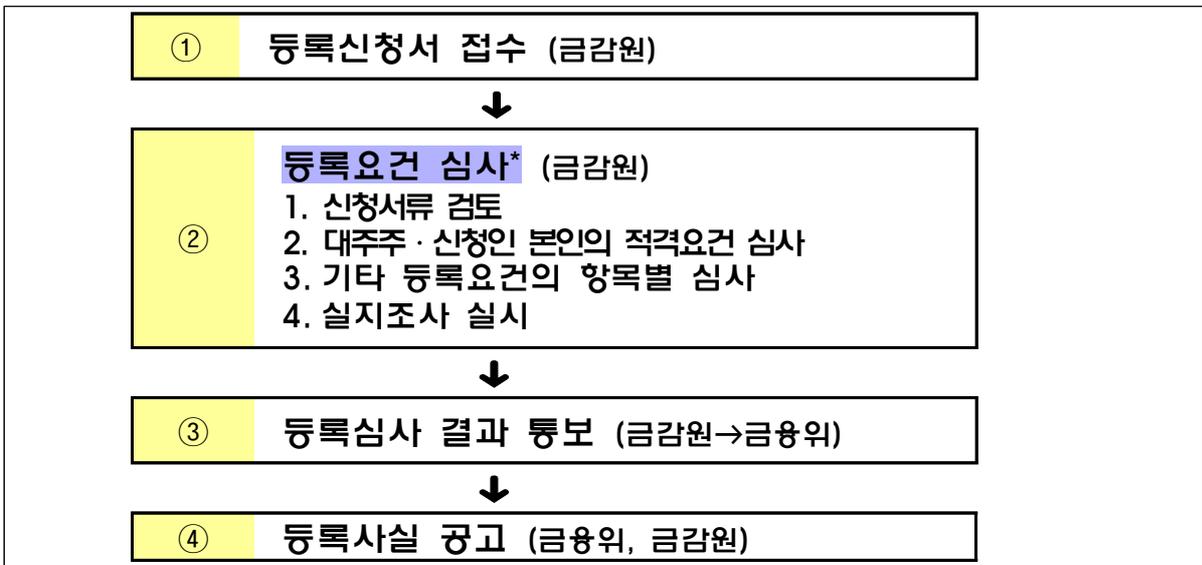
- **결제대금예치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 **전자고지결제업** :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 II.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및 심사기준

### 1. 등록절차 흐름도



\* 소요기간 : 신청으로부터 20일 (제출일 및 실사에 소요되는 기간 제외)

### ※ 전자금융업 등록 등 신청 준비시 금감원의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 이용 가능

#### <인허가 사전 상담창구 운영 개요>

- (상담내용) 인허가 신청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심사요건·절차, 인허가 매뉴얼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 사항 상담
- (상담방식) 유선,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
- (신청전화) 02-3145-8312 (감독총괄국 감독혁신조정팀)

※ 사전상담은 필수 선행절차가 아니며, 신청인은 사전 상담없이 심사부서로 직접 연락가능

## 2. 주요 심사요건(요약)

요 건	개 요	근거법규		
		법	시행령	규정
법인격	- 상법상 회사 등	§30②		
신청업종의 적정성	- 전자금융업종	§28, §29	§20	
자본금	- 최소 자본금	§30, §31① i	§17	§42의2
재무건전성	- 부채 비율	§31① iii	§18	§51
전문인력	- 전산 인력	§31① ii		§50① i
물적설비	- 전산설비, 통신장비, 프로그램, 보안장비 등	§31① ii		§50①
대주주	- 대주주 적격성	§32,	§18③, §19,	§49, §54

### 3. 단계별 세부내역

<b>1. 등록신청</b>	○ 금감원에 등록 신청서(공문) 접수	
<b>2. 등록요건심사</b>	<b>심사요건</b>	<b>확인서류</b>
<b>법인격</b>	○ 상법상 회사 등	-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
<b>신청업종</b>	○ 신청 업종의 적정성	- 사업계획서(3년간 예상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 수지계산서, 결제구조, 영업 내용 및 방법, 이용자 보호방안 포함) 등
<b>자본금</b>	○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	- 자본금 납입 증명서 등
<b>재무건전성</b>	○ 부채비율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회계법인이 확인한 재무건전성 입증서류 등
<b>전문인력</b>	○ 2년 이상 경력의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 인력별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전체이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급여이체내역(고용기간 전체),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b>물적설비</b>	○ 전산설비, 통신장비, 프로그램, 보안장비 등의 적정성	- 전산기기 목록, 전산기기 구매 임대 계약서 등 물적시설 설비 현황 (전자금융업자 등록 신청 세부양식 5. 물적 시설 설비 현황의 “제출서류” 참고)
<b>대주주 요건</b>	○ 등록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주주(주요출자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주요출자자 현황, - 관련부처 사실조회 회보서 등
<b>3. 심사결과 통보</b>	○ 금감원이 금융위에 심사 결과 통보	
<b>4. 등록사실 공고</b>	○ 금융위 관보 공고, 금감원 홈페이지(e-금융민원센터) 게시	

## 4. 등록 심사기준

### 1. 자본금 요건

- (심사 요건)** 「전자금융거래법」 §30, §31① i, 시행령§17, 규정 §42의2, 세칙§8의3에 따른 자본금
- (확인 서류)**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거래은행에서 발행한 주식납입금 보관 증명서, 자본금 통장 잔고증명서 등)

#### <자본금 요건>

전자금융업 구분	최소자본금
<input type="checkbox"/> 전자자금이체업	30억원
<input type="checkbox"/>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input type="checkbox"/>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0억원
<input type="checkbox"/>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10억원(3억원**)
<input type="checkbox"/> 결제대금예치업(ESCROW)	10억원(3억원**)
<input type="checkbox"/> 전자고지결제업(EBPP)	5억원(3억원**)

\* 1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최소자본금은 합산(50억원 한도)

\*\* '16.6.30.부터 소규모 전자금융업(PG, Escrow, EBPP)의 최소자본금을 완화 (단, 분기별 전자금융거래금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 2. 재무건전성 요건

- (심사 요건)** 「전자금융거래법」 §31①iii, 시행령§18, 규정§51에 따른 재무건전성
- (확인 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규정§51에 따른 재무건전성 입증서류(회계법인의 확인서 포함)

## 전자금융업 등록시 재무건전성 세부 기준

- ◆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지 여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재무건전성 기준 상이 (시행령 §18, 감독규정 §51)

금융위설치법상 검사대상기관O (시행령§18①)	금산법 적용 금융기관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등의 요건이 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산법 적용제외 금융기관	신청인 부채비율 200% 이내
금융위설치법상 검사대상기관X (시행령§18②)	신청인의 대주주가 기업집단인 경우	신청인 부채비율 200% 이내 & 대주주 기업집단 부채비율 200% 이내
	신청인의 대주주가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신청인 부채비율 200% 이내
	정부 등이 소유·출자한 경우	신청인 부채비율 1,500% 이내

### <부채비율 산정식>

$$\text{◆ 산식} = \{ \text{부채총액} - (\text{미상환발행잔액}^1) + \text{고객예수금}^2 \} / \text{자기자본} \times 100$$

- \* 1)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2) PG, Escrow, EBPP,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미정산잔액

※ 부채비율 산정시점은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말(또는 분기말) 대차대조표 내지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월말 대차대조표를 사용

---

### 3. 인적 요건

---

- **(심사 요건)** 「전자금융거래법」 §31① ii, 규정 §50① i 에 따라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 신청당시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산 전문인력 5인 이상 확보

- **(확인 서류)** 인력별 고용(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전체이력),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급여이체내역(고용기간 전체),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 경력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및 연락처 포함,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

### 4. 물적 요건

---

- **(심사 요건)** 「전자금융거래법」 §31① ii, 규정 §50①에 따라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물적설비를 갖추는 것

-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갖추는 것

- 전산장애 발생 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

-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

-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

-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 수립 등

- **(확인 서류)** 전산기기 목록, 네트워크 구성도 등 물적설비 현황

## 5. 등록 결격 사유

- **(심사 요건)** 「전자금융거래법」 §32, 시행령 §18③, §19, 규정§49, §53, §54에 따라 등록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주주(주요출자자)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대주주(주요출자자)의 범위 >

<b>최대주주</b>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기준 주식의 수 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본인
<b>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b>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b>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b>	예) 배우자, 자녀 등
<b>주요주주</b>	자기계산으로 10%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주주가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등록이 말소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주주가 등록의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주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회사 및 그 회사의 대주주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주주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주주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확인 서류)** 주요출자자 현황, 관련부처 사실조회 회보서



## 2. 전자금융업자 등록 신청 세부양식

### 전자금융업자 등록 신청 세부양식

**<작성요령>**

각 항목별 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 및 내규 등은 별첨으로 제출  
 ※ 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및 기재내용을 누락 없이 제출한 경우에만 등록 심사가 가능합니다.

구 분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작성자					
확인자					

#### I. 회사의 개황

1. 상 호 (국문) (영문)	
2. 대표이사 성명	
3. 회사 설립연월일	년 월 일
4. 납입자본금	억원
5. 주소	(본점) (전산센터)
6. 대표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7. 직원현황	전체: 00명 IT인력: 00명 (아웃소싱 인력 제외)
8. 영위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	
9. 회사의 연혁 및 설립이후 주요변동 사항	

- ◆ 관련 조항 : 「전자금융거래법」 §28, §29, §30, §31① i, 시행령§17, §20, 규정§42의2, 세칙§8의3
- ◆ 관련 서류 : 정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본금 납입 증명서(주거래 은행에서 발행한 주식납입금 보관 증명서 또는 자본금 통장 잔고증명서) 등

## II. 재무건전성 현황

### 1. 부채비율

(단위: 백만원)

회사명*	자본	부채	부채비율	기준일자	비고 (관계)

※ 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동법 제2조제2호)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에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도 기입, 해당사항 없을 경우 등록 신청 회사만 작성

#### <참고>

$$\text{◆ 산식} = \{ \text{부채총액} - (\text{미상환발행잔액}^1 + \text{고객예수금}^2) \} / \text{자기자본} \times 100$$

- \* 1)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2) PG, Escrow, EBPP,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미정산잔액

◆ 관련 조항 : 「전자금융거래법」 §31① iii, 시행령 §18, 규정 §51

◆ 관련 서류 :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규정 §51에 따른 재무건전성 입증 서류(회계법인의 확인서 포함) 등

### 2. 주요출자자 현황

구분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의 경우)	지분율
최대주주(1호)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1호-가목)			
	최대주주인 법인의 사실상지배자(1호-가목)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1호-나목)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는 출자자(2호)				
	예) 배우자, 자녀 등			
주요주주(3호, 4호)				
	자기계산으로 10%이상 주식을 보유한 자(3호)			
	임원의 임면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4호)			

◆ 관련 조항 : 「전자금융거래법」 §32, 시행령 §18③, §19, 규정 §49, §54

◆ 관련 서류 : 주요출자자 현황, 신용정보조회결과

### Ⅲ. 사업계획

#### 1. 3년간 예상 사업계획서

※ 영업내용 및 방법, 결제 프로세스(도표), 이용자 보호방안 포함

#### 2. 3년간 추정재무제표

#### 3. 3년간 예상 수지계산서

※ 등록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에 관한 3년간 예상 사업계획서, 수지계산서 등을 추산하여 작성

### Ⅳ. 인력현황

전산전문인력(전산경력 2년이상) 수 : 00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요 전산경력	전산경력 합계	비고

◆ 관련 조항 : 「전자금융거래법」 §31① ii, 규정 §50① i

◆ 관련 서류 : 전산전문인력 고용(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경력 확인이 가능한 담당자 및 연락처 포함) 또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전체이력),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급여이체내역(고용기간 전체), 4대 보험사업장가입명부

## V. 물적 시설 설비 현황(「전자금융거래법」§31① ii, 규정§50①)

항 목	제출서류
<b>①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갖출 것</b> 1.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전산기기, 어플리케이션 서버, db서버, 웹서버, 저장장치 및 출력장치 등 갖출 것	- 전산기기 목록 - 전산기기 구매·임대 계약서
2. 대외 금융회사, 가맹점 또는 지점 등과 자료의 송·수신 등을 위한 통신제어장치, 통신서버, 통신회선 등 전자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내·외부 통신망 구축	- 통신기기 및 통신회선 목록 - 통신기기 구매·임대 계약서 및 통신회선 이용 계약서 - 네트워크 구성도
<b>② 전산장애 발생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장치 구비</b> 3. 백업장치를 구비하고 중요도에 따라 프로그램, 데이터, 로그 등 전산자료를 정기백업 및 안전지역에 소산	- 백업장치 목록 - 백업장치 구매·임대 계약서 - 백업절차서 (백업 대상, 백업 주기, 보관 기간 포함)
4. 자연 재해, 인적 재해, 기술적 재해, 전자적 침해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마비 방지, 자료 손실 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 수립	- 업무지속성 확보방안
5. 중앙 처리장치, 데이터저장장치 등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망에 대하여 이중화 또는 예비장치를 확보	-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회선 등의 이중화 구성도
<b>③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갖출 것</b> 6. 주요 업무별·기능별 각종 프로그램을 갖출 것	- 프로그램 현황
6-1. 전자금융거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하여 보관할 것	- 전자금융거래기록 현황 (전자금융거래기록 보관방법, 보관기간 및 보관절차 등)
7.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시 통제방안 마련	-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b>④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 확보</b> 8.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등록·변경·폐기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외부사용자에게 사용자계정을 부여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	- 계정 및 비밀번호 부여 절차 및 관리현황
9. 담당업무에 따른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 등 접근 권한 통제	- 전산자료 접근권한 부여 절차 및 관리현황
9-1. 전산원장 변경 통제	- 전산원장 현황, - 전산원장 변경 절차
10.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입 통제	- 전산자료 반출입 관리 대장

항 목	제출서류
11.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을 금지(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	- 이용자 정보보호대책,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변환·이용·삭제 절차
12.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정보 조회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 또는 조회내용, 접속방법 등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도록 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	- 이용자 정보 이용 기록 및 보관 현황(계획)
13.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DMZ)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	- DMZ을 포함한 네트워크 구성도
14. 공개용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은 업무 관련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아이디·비밀번호 이외에 추가인증 수단을 적용	- 공개용 웹서버 이중인증 적용 현황
15. 개인정보의 유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	- 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
16. 공개용 웹서버가 해킹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취약점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조치 강구	- 전자금융업무 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
<b>5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 구축</b>	
17.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	- 정보보호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VPN 등) 구축 현황
18.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무선통신망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	- 망분리 현황
19.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마련	- 악성코드 감염 방지 프로그램 현황 및 복구절차서
<b>6 전산실 안전성 확보 및 적절한 보안대책 수립</b>	
20. UPS, 항온항습기, 자가발전설비, 자동소화설비, 접지 시설 등 안정적인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 설비 확보	- 전산실 설비 목록
21. 화재, 수해 등의 재해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 대책 수립·운영	- 비상대책
22. 전산실, 전산자료보관실,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장소 등 보안관리가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설치장소를 보호구역 설정	- 보호구역 지정 현황
23. 전산실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며 상시출입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그 밖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하며 출입자 관리기록부 기록·보관	- 전산실 출입절차, - 전산실 출입자 관리기록부
24. 전산실의 규모,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무인감시 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시스템을 설치하여 사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	- 출입자 감시장치 운영현황
25. 전산실 출입문은 2중 안전장치로 보호하며 외벽이 유리인 경우 유리 창문을 통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	- 전산실 배치도

## VI.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시 구비 서류

※ 전자금융감독규정 §14의2④,⑤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터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함(2023.1.1.시행)

서류명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보고서
2. 위탁계약서(안) 사본
3.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제3조의2에 따라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4. 업무위탁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사본
5. 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6. 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7. 정보처리업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위탁계약 상대방(재위탁 예정시 재위탁계약 상대방 포함)에 관한 사항
9. 전산사고 및 정보유출 등 발생시 피해자 구제절차
10.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 중요도 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11. 업무 연속성 계획
12. 안전성 확보조치
13.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회의록 포함) - 자체 중요도 평가 결과,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 결과, 자체 업무 위수탁 기준

## VII.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1. 클라우드서비스컴퓨팅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 위치
2. 재위탁 또는 재위탁의 변경 등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동의를 필요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 데이터에 관한 사항
4. 위수탁 계약 및 재위탁 관련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등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통보가 필요한 사항
5. 감독당국 또는 내외부 감사인의 조사·접근(현장방문 포함) 수용 의무
6. 계약의 파기 또는 종료, 기타 위탁업무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위탁업무의 이전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7. 위탁 및 위탁업무 관련 준거법 준수의무 및 자율규제에 대한 협조
8. 비상대응훈련(재해복구전환훈련 포함), 취약점 분석·평가, 침해사고대응훈련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9. 위탁업무 모니터링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송 정보에 대한 정보보호 의무 및 서비스 연속성 보장 등의 보안 요구사항
11. 재위탁 관련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관리·감독 의무에 관한 사항
12. 재위탁 또는 재위탁 변경에 따른 보안리스크 증가 등 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원위탁자의 계약해지 권한 보유에 관한 사항

### 3.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 1. 회사의 개황 및 사업계획

점검 항목	점검 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가? -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불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 신청 회사의 상호가 적절한가? - 은행법, 여전법 등에서 금지하는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신청서에 모든 항목, 등록 신청일, 신청인의 서명·기명날인이 누락 없이 기재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신청서 세부양식상 ④자본금(기본재산) 항목에 납입자본금을 기재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신청서 세부양식의 각 항목이 누락 없이 모두 기재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신청서 세부양식의 I.회사의 개황 부분이 등록신청서상 내용과 동일한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신청서 세부양식의 주요출자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재되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하였는가?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본 제출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기부등본은 현재 유효사항이 아닌 말소사항 포함으로 제출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각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3년간 예상 사업계획서, 3년간 추정 재무제표, 3년간 예상 수지계산서 등을 추산하여 작성하였는가?	

## 2. 자본금 요건

점검 항목	점검 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업종에 따른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또는 잔액(잔고)증명서를 제출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잔액(잔고)증명서의 잔액확인일이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등기 일자와 일치하는가?	

## 3. 재무건전성 요건

점검 항목	점검 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인의 부채비율이 200%이내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인의 대주주가 기업집단인 경우, 신청인 및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이 각각 200%이내인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청인이 업종을 추가 하는 경우 부채총액에서 미상환발행잔액(선불업)과 고객예수금(PG, ESCROW, EBPP)은 제외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말 또는 직전 월말 기준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에 따른 재무건전성에 대해 입증서류(회계법인의 확인 등)를 제출하였는가?	

## 4. 인력 요건

점검 항목	점검 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2년 이상 경력의 전산인력 5명을 확보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근로)계약서는 사용자 및 근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직증명서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대표이사 직인 포함하여 발급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경력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 및 연락처를 기재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은 전체이력으로 제출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전체내역으로 제출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는 제출하였는가?	

## 5. 물적 요건

점검 항목	제출 서류	점검 결과
<p>1.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전산기기, 어플리케이션 서버, DB서버, 웹서버, 저장장치 및 출력장치 등 갖출 것</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기기 목록에 웹서버, WAS서버, DB, 스토리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기기에 대한 구매, 임대,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었는가?</p>	<p>전산기기 목록, 전산기기 구매·임대 계약서</p>	
<p>2. 대외 금융회사, 가맹점 또는 지점 등과 자료의 송·수신 등을 위한 통신제어장치, 통신서버, 통신회선 등 전자금융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내·외부 통신망 구축</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신기기 목록에 IDC 네트워크(인터넷 라우터, 백본 스위치, VPN, 인터넷 회선 등)과 사무실의 네트워크 장비(스위치, VPN, 인터넷 회선 등)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통신기기에 대한 구매, 임대,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계약 및 통신회선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부통신망은 다른기관의 내부통신망과 분리되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금융서비스 통신구간은 암호화 통신 또는 전용선(VPN)을 이용하고 있는가?</p>	<p>통신기기 및 통신회선 목록</p> <p>통신기기 구매·임대 계약서, 통신회선 이용계약서</p> <p>네트워크 구성도</p>	
<p>3. 백업장치를 구비하고 중요도에 따라 프로그램, 데이터, 로그 등 전산자료를 정기백업 및 안전지역에 소산</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백업장치를 보유하고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백업장치 구매, 임대 등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백업 절차서에 백업 대상, 백업 주기, 보관 기간, 복구 방법 등을 포함하였는가?</p>	<p>백업장치 목록, 백업장치 구매·임대 계약서, 백업절차서</p>	
<p>4. 자연 재해, 인적 재해, 기술적 재해, 전자적 침해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마비 방지, 자료 손실 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 수립</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에 비상시 대응절차, 재해 복구 계획,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모의훈련 실시계획,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p>	<p>업무지속성 확보 방안</p>	
<p>5. 중앙 처리장치, 데이터 저장장치 등 주요 전산장비 및 통신망에 대하여 이중화 또는 예비장치를 확보</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장애 발생 시에도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전자금융거래 정보가 유실되지 않도록 서버, 데이터베이스,</p>	<p>주요 전산장비·통신회선 등의 이중화 구성도</p>	

점검 항목	제출 서류	점검 결과
네트워크를 이중화 구성하였는가?		
<b>6. 주요 업무별·기능별 각종 프로그램을 갖출 것</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금융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사업 개시 전 완료 가능한 단계인가?	프로그램 현황	
<b>6-1. 전자금융거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생성하여 보관할 것</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관하는가? - 보관방법(디스크 또는 테이프) 보관기간(5년 또는 1년) (5년 보존 대상) 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금액,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출금동의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년 보존 대상)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전자금융기록 현황 -전자금융거래 기록 대상, 보관방법, 보관기간, 보관절차	
<b>7.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시 통제방안 마련</b>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를 문서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로그램 형상관리 시스템 및 절차를 구축하였는가?	프로그램 등록·변경·폐기 절차	
<b>8.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개인별로 부여하고 등록·변경·폐기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외부사용자에게 사용자계정을 부여하는 경우 적절한 통제장치 마련)</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용자(내부직원) 계정 및 비밀번호 부여 체계 및 절차를 문서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용자 계정은 개인별로 부여, 퇴사 이후 삭제,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있는가?	계정 및 비밀번호 부여 절차 및 관리현황	
<b>9. 담당업무에 따른 전산자료의 입력·출력·열람 등 접근권한 통제</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자료 접근권한 부여 절차를 문서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자료 접근권한 부여 시 담당업무에 필요한 최소	전산자료 접근권한 부여 절차 및 관리현황	

점검 항목	제출 서류	점검 결과
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가?		
<b>9-1. 전산원장 변경 통제</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원장의 범위를 지정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원장 변경 절차에 변경 권한자 지정, 변경 전후 내용 자동 기록 및 보존, 변경 내용의 정당성 여부 확인을 포함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원장을 직접 접근하여 조회·수정·삭제·삽입하는 경우 작업자 및 작업내용 등을 기록하여 5년간 보관하는가?	전산원장 현황, 전산원장 변경 절차	
<b>10.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입 통제</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의 반출·입 절차를 문서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자료 반출입 관리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가?	전산자료 반출·입 절차	
<b>11. 이용자 정보의 조회·출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사용을 금지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정보를 변환하여 사용하고 테스트 종료 즉시 삭제)</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변환 및 파기 절차를 문서화 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용자 정보 변환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변환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있는가?	이용자 정보보호 방안,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이용 절차	
<b>12. 단말기를 통한 이용자정보 조회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 또는 조회내용, 접속방법 등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 기록되도록 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b> <input checked="" type="checkbox"/> 내부직원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변경 시, 직원ID, 조회·변경 일시, 조회·변경 내용, 접속 IP·프로그램 등의 접속방법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 기록되고, 그 기록이 1년 이상 보존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이용자 정보 이용 기록 및 보관 현황	
<b>13. 공개용 웹서버를 내부통신망과 분리하여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DMZ)에 설치하고 네트워크 및 웹 접근제어 수단으로 보호</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금융서비스의 WEB서버와 WAS가 분리되고, WEB서버는 공개망에, WAS 서버와 DB 서버는 내	네트워크 구성도	

점검 항목	제출 서류	점검 결과
부망에 위치하는가?		
<p>14. 공개용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은 업무관련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아이디·비밀번호 이외에 추가인증 수단을 적용</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공개망에서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의 관리자 계정에 대해서 이중인증을 적용하고 있는가?</p>	공개용 웹서버 이중인증 적용 현황	
<p>15. 개인정보의 유출,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조치</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부저장매체 통제(차단 또는 사용기록), 정보 유출 차단·탐지 시스템(DLP) 구축, 데이터 암호화(DRM, DB암호화)를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의 유출, 위변조를 위한 보안조치를 수립하였는가?</p>	개인 정보유출 방지 대책	
<p>16. 공개용 웹서버가 해킹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취약점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조치 강구</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금융업무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취약점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였는가?</p>	전자금융업무 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	
<p>17. 전산자료 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PS/IDS), 가상사설망(VPN) 등 보안 장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가?</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안 관제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는가?</p>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현황	
<p>18.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 및 접속 금지하고,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스템 개발자, 운영자, 보안담당자의 PC를 물리적으로 망분리 하였는가?</p>	망분리 현황	

점검 항목	제출 서류	점검 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금융업무 담당 직원의 PC를 논리적으로 망분리하였는가?		
<b>19.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마련</b> <input checked="" type="checkbox"/> 모든 PC에 Anti-Virus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어 작동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Anti-Virus 프로그램의 주기적 갱신 및 감염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악성코드 감염 방지 프로그램 현황 및 복구절차서	
<b>20. UPS, 항온항습기, 자가발전설비, 자동소화설비, 접지 시설 등 안정적인 전산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 설비 확보</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센터에 UPS, 항온항습기, 자가발전설비, 자동소화설비, 접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전산실 설비 목록	
<b>21. 화재, 수해 등의 재해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 대책 수립·운용</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센터의 위치가 화재, 상습침수, 진동피해 등에 취약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가?	비상대책	
<b>22. 전산실, 전산자료보관실,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장소 등 보안관리가 필요한 정보처리시스템 설치장소를 보호구역 설정</b>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호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가?	보호구역 지정 현황	
<b>23. 전산실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며 상시출입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하고, 그 밖의 출입자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도록 하며 출입자 관리기록부 기록·보관</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실 출입에 대한 책임자 승인절차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있는가?	전산실 출입절차, 전산실 출입자 관리기록부	
<b>24. 전산실의 규모, 설치장소 등을 감안하여 무인감시카메라 또는 출입자동기록시스템을 설치하여 사후확인 가능하도록 조치</b> <input checked="" type="checkbox"/>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	출입자 감시장치 운영현황	
<b>25. 전산실 출입문은 2중 안전장치로 보호하며 외벽이 유리인 경우 유리 창문을 통하여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b>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센터 입구 및 전산실의 출입구 위치 및 출입 통	전산실 배치도	

점검 항목	제출 서류	점검 결과
제가 걱정한가?		

## 4. 기타 참고사항

### 가. 전자금융관련 법령 안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 나. 전자금융업 등록현황 조회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 금융민원 >  
등록·신고 >  
[전자금융업등록현황](#)

### 다. 기타 전자금융 관련 게시판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공통업무 > [정보기술\(IT\)](#)

## IV. 유권해석

### 1. 선불전자지급수단 양도를 통한 송금의 전자자금이체 해당여부

#### 법령해석 회신문 (150001)

<p>질의요지</p>	<p>(1) (주)oo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oo 토스 서비스 이용 회원의 '비회원'에 대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처리를 위해 (주)oo이 금융회사에 비회원 계좌로의 거래지시를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p>
<p>회답</p>	<p>(1)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2) '모바일머니'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가정할 때, (주)oo이 당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모바일머니' 환급 처리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지시'를 하는 행위 자체는 '전자자금이체'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이유</p>	<p>(1)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토스 서비스의 '모바일머니'가 (주)oo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며,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 이상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합니다.(2)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단순히 (주)oo은 금융회사에 비회원 계좌로의 거래지시만을 행하며, 전자적 장치에 의한 자금의 이체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경우 전자자금이체 업무 수행자는 '금융회사'로 보아야하며, (주)oo이 전자자금이체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3) 다만,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거래의 효과가 '전자자금이체'에 해당할 경우 '전자자금이체업자'로 규율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인 바 향후 영업을 함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2.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전금업 등록 물적·인적요건

### 법령해석 회신문(160683)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담당자 (직위, 성명)	목정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973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선불업 영위와 관련한 정보처리를 위해 제3자의 전산설비 및 전산인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p> <p>○ 그 제3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면 선불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정보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p> <p>○ 위탁된 처리와 관련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은 선불업 등록을 위한 전산설비 및 인력 구비요건 등의 충족 여부 판단시 함께 고려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15. 7.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금융회사 등의 제3자에 대한 전산설비 및 정보처리 위탁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짐</p> <p>○ 따라서 동 규정 제4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별도의 명시 없이도 전자금융업자의 전산설비 및 정보처리 업무 제3자 위탁이 가능하며,</p> <p>○ 위탁시 위탁된 처리와 관련된 전산설비 및 인력 등을 전자금융업 허가 또는 등록시 함께 고려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함</p>					

### 3. 통신판매중개업자의 PG업 등록 필요 여부

#### 법령해석 회신문(160862)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담당자 (직위, 성명)	송용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971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또는 ‘오픈마켓’)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이 필수인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input type="checkbox"/>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이 일반상품 판매거래에서 결제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관련한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는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input type="checkbox"/> 동법 제28조 제2항에 의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다만,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관련하여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전자지급거래의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됩니다(동법 제28조 제3항 제2호).					

## 4. 오프라인 PG 허용 여부

### 법령해석 회신문(170316)

<p>질의요지</p>	<p>□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가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지?</p>
<p>회답</p>	<p>□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가 결제대행서비스 제공영역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데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p> <p>□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결제대행업체가 대행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하여야 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의 대행을 요청한 자(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가 동일하게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p>
<p>이유</p>	<p>□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요소를 모두 갖추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지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p> <p>□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는 결제대행업체를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행할 수 있는 거래의 종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p> <p>○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결제대행업체가 오프라인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별도로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제1호는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제2호는 결제대행업체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의 대행을 요청한 자(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이하 '결제대행하위사업자'라 합니다)의 정보를 직접 수집·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하여야 하며, 다른 결제대행업체의 신용카드 거래를 다시 대행하는 등 결제대행업체가 결제대행하위사업자의 정보를 직접 수집·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에 따른 거래를 대행할 수 없습니다.
-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위에 있으므로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만을 설치·이용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6조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는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서명, 비밀번호, 생체정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결제대행업체 및 결제대행하위사업자가 신용카드회원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용카드등에 관한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는 등으로 인해 카드회원등이 손해를 입을 경우 결제대행업체가 해당 카드회원등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5. EBPP 말소 후 1년 이내 ESCROW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 법령해석 회신문(180410)

담당자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담당자 (직위, 성명)	사무관 송용민	연락처	02-2100-2971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전자고지결제업'의 등록을 말소하였다가 1년 이내에 '결제대금예치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 제1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p>					
회답 / 이유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제1호는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로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법인의 대주주를 명시하고 있습니다.</p> <p>○ 이 조항은 전자금융업자의 사업계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러 전자금융업 중 특정한 전자금융업에 대해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특정 업에 대해 일정기간 허가 또는 등록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그러므로, 여러 전자금융업 중 하나인 특정 전자금융업(전자고지결제업)의 등록을 말소하고 1년 이내에 다른 전자금융업(결제대금예치업)을 등록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32조제1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p>					

6. 지급결제정보 송수신 없이 정산만을 수행하는 오픈마켓이 PG업 등록이 필요 여부

법령해석 회신문(190382)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담당자 (성명, 직위)	윤동욱 사무관	연락처	02-2100-2971
질의 요지	<p>결제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이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KSNET)는 이커머스 쇼핑몰(이하 A)에 판매를 위해 입점한 사업자(이하 C)의 정산 대금을 A로부터 수취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li> <li>○ 이커머스 쇼핑몰로부터 지급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신하여 그 정보를 토대로 정산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li> </ul> <p>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li> <li>○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li> </ul>					
회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하므로,</li> <li>○ 귀사는 이커머스 쇼핑몰로부터 정산대금을 수취하는 등 자금의 이동에 관여를 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정산업무를 행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li> </ul>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함.</li> <li>○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금의 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고(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않음)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의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행할 수 있음</li> <li>□ 귀사는 이커머스 쇼핑몰로부터 이용자의 구매대금을 수취하는 등 자금의 이동에 직접 관여를 하고 가맹점에 정산을 하는 업무를 행하고 있으므로, 전자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li> </ul>					

## 7. 선불업 등록 면제

### 법령해석 회신문(200473)

<p>질의요지</p>	<p>□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p>
<p>회답</p>	<p>□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p> <p>○ 그러나,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총 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이유</p>	<p>□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p> <p>*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접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 사업 개시한 경우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 단순평균으로 하며, 사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함</p>

◆ 인허가 사례  
6-(1)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신 청 회 사	OOOO	신 청 일	2014.09.12
처 리 부 서	IT감독실 IT감독팀	완 료 일	2014.10.02
신 청 내 용	<p>□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으로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바 있는 OOOO는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추가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제33조에 의거 전자금융업 등록을 신청</p>		
심 사 내 용	<p>□ 우리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및 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금융위에 심사의견을 송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금융업 등록신청 전 비공식적 협의단계에서 신청자와 면담을 통해 필요서류 및 처리절차를 안내</li> <li>○ 전자금융업 등록신청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다음 사항 보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주주 목록 제공시 전금법 시행령 §18 ③를 참고하여 제출</li> <li>- 제출서류 중 재무제표는 회계법인 확인 후 제출</li> </ul> </li> <li>○ 전자금융업 허가 등록 요건 심사 및 첨부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금요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등 확인</li> <li>- (재무건전성 요건) 재무제표 확인</li> <li>-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li> <li>- (대주주요건) 신용불량,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한 처벌사실 등을 대외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li> </ul> </li> </ul>		

## V. 관련 법규

### 전자금융거래법

§28, §30~33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5, §17~20, §30, 시행령 별표

### 전자금융감독규정

§42, §48, §49, §50, §51, §54, 감독규정 별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전자금융, 신용정보, 신용평가

## (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설립 허가

### I. 개요

#### 1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업무

##### 1 고유업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할 수 있게 하는 업무(법 제2조제9호의2, 시행령 제2조제21항)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고유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조)

##### 2 겸영 및 부수업무

- **(겸영업무)**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자문·투자일임, 금융상품자문업, 대출의 중개·주선, 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등

※ 비금융업무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 자유로운 겸영 허용

- **(부수업무)** 데이터 분석·컨설팅, 정보계좌 업무, 정보관련 권리(예: 프로파일링 대응권) 대리행사 업무 등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연수·교육·출판, 금융상품 광고·홍보, 본인인증 및 식별확인 업무 등

◆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겸영업무 또는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에 신고해야 함(법 제11조, 제11조의2)

## 2 허가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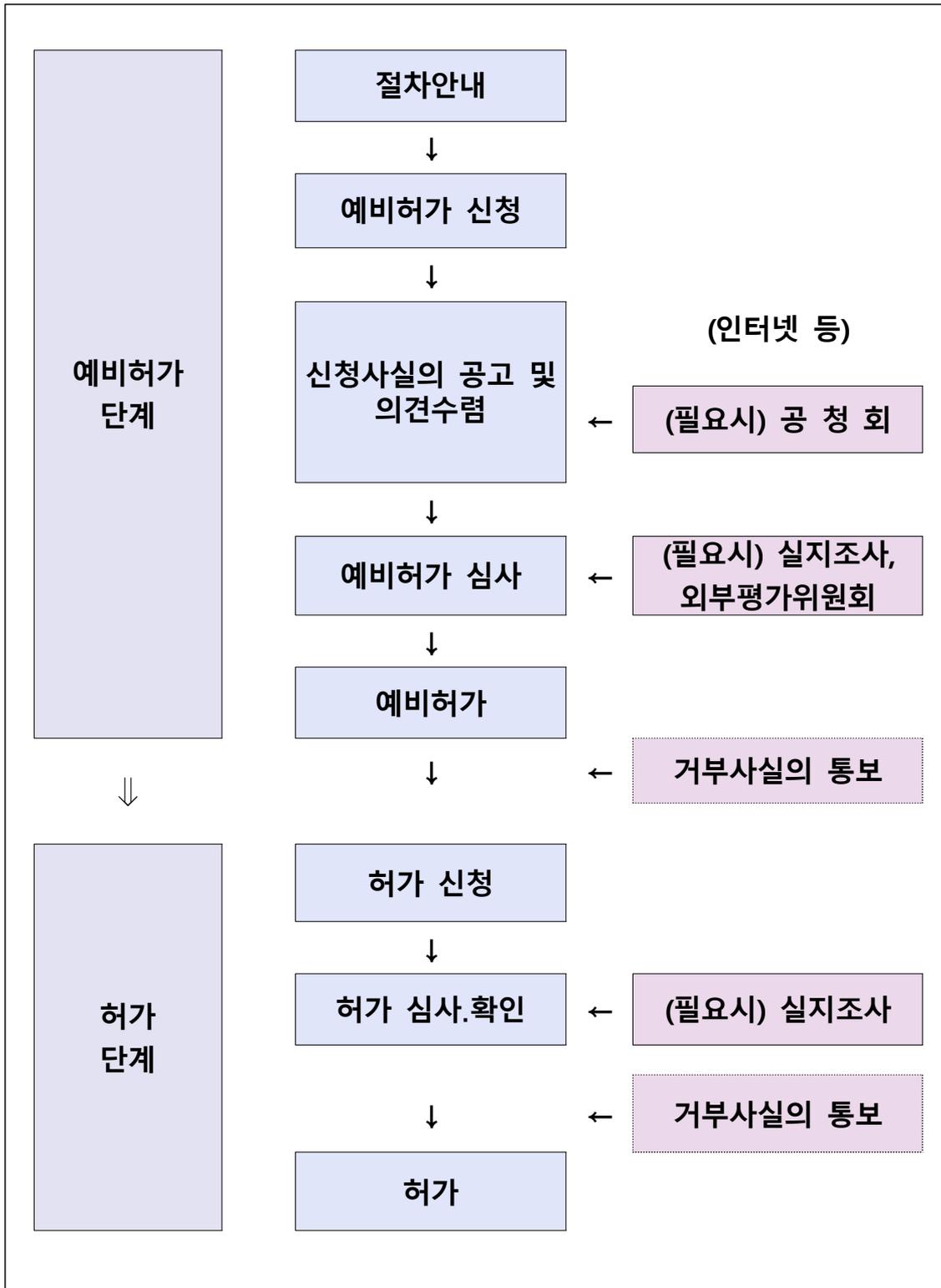
- '20.8.5.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 허가제로 운영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고유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집하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가 아니거나, 수집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 대상이 아님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의 예시(허가 불필요)

- 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 (ㄱ)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 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ㄴ)기업신용정보만을 처리하는 경우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금융회사 등)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 \* 예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신용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등 없이) 직접 제출받았거나, 금융거래과정에서 직접 생성하게 된 개인신용정보만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
  
- ③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나,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 \* 예 :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이를 개인신용정보주체에게 조회·열람 등 제공하지 않고 내부 신용평가 등에만 활용하는 경우
  
- ④ 개인신용정보를 저장·접근하지 못하는 단순 가계부 어플 개발
  - \* 정보주체가 직접 입력한 개인신용정보를 단순 관리할 수 있는 UI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가 금융회사 등 상거래기업의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정보주체 이외에는 입력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접근·조회할 수 없는 경우
  
- ⑤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경우

## II. 허가 절차

### < 허가절차 흐름도 >



## 1 개요

-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 허가는 예비 허가와 본 허가로 구분
  -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도 등 구조조정,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예비허가 신청시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2 예비허가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의 심사기간은 2개월이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

### ① 예비허가의 신청

- 예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허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접수(감독규정 <별표1의2>의 구비서류 첨부)

### ②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 수렴

- 금융위는 예비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는 위 내용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음

-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 ③ 예비허가 신청내용의 심사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허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 금융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해 이해관계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및 실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④ 예비허가 결정 및 통지

- 금융위는 신청인의 예비허가 신청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
- 예비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함
- 예비허가는 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허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허가권자의 의사표시이며, 허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 3 본 허가

□ 신용정보업 본 허가의 심사기간은 3개월(예비허가를 거친 경우 1개월)이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

#### ① 허가 신청서의 접수

- 신청인은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접수(감독규정 <별표1의2>의 구비서류 첨부)

#### ② 허가

- 금융위는 신청인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며 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금융감독원장은 허가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금융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 심사시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함
-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법 제14조제1항제10호)

### Ⅲ. 허가요건 및 심사기준

#### 1 허가요건 구성

요건	개요	근거법규		
		법	시행령	규정
자본금 요건	-최소 자본금 5억원	§6② 1호의4		
물적 요건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보안체계의 적정성	§6① 1호	§6① 5호, ② 2호	<별표2>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수입·지출 전망의 타당성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 체계의 사업계획 추진 적합성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 체계의 이해상충 방지 등 건전 영업 수행 적합성	§6① 2호	§6③	
대주주 적격성 요건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 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6① 3호	§6④ <별표1의2>	§7 <별표2의2>
임원자격 요건	-선임(예정) 임원이 「금융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	§6① 3호의2, §22①, 지배구조법 §5	지배구조법 시행령 §7	
전문성 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무 수행에 충분한 전문성	§6① 4호		

## 2 심사 기준

### 1 자본금 요건

- (허가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함
- (점검항목) 자본금 납입 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 (심사방법) 등기부 및 재무제표,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확인

### 2 물적 요건

- (허가요건 및 점검항목) 신용정보의 처리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2])를 모두 갖춰야 함

점검항목(규정 <별표 2의 허가요건>)	물적설비 현황표 작성 참고자료* * 관련 내규, 품의문서 등 참고자료의 내용을 필수 내용 위주로 본문에 작성하고, 해당 문서는 별첨으로 할 것
<b>1. 시스템 구성</b>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 DB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 서버 시스템 나.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다.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S/W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운영 관련 내규 주요 내용</li> <li>■ 시스템 구성도(개념도), 시스템 구성에 대한 상세 설명 (다른 서비스 관련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마이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표기)</li> <li>■ 서버 등 시스템 자산목록 (자산명, 스펙, 설치OS, 장비 용도 및 설치 장소 등 상세 정보 포함)</li> <li>■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목록 (자산명, 수량, 설치 OS, 용도 및 설치 위치 등 상세 정보 포함)</li> <li>■ 소프트웨어 자산목록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및 WEB/WAS/DBMS 어플리케이션 등, 자산명 및 용도 등 상세정보 포함)</li> <li>■ 전산실, 전산센터 등의 물리적 주소 및 역할</li> </ul>

<p><b>점검항목(규정 &lt;별표 2의 허가요건&gt;)</b></p>	<p><b>물적설비 현황표 작성 참고자료*</b></p> <p>* 관련 내규, 품의문서 등 참고자료의 내용을 필수 내용 위주로 본문에 작성하고, 해당 문서는 별첨으로 할 것</p>
<p>2. 백업 및 복구시스템을 갖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업 및 복구 관련 내규 주요 내용</li> <li>■ 백업 및 복구 시스템 구성도 및 개념도, 각 구성에 대한 상세 설명 기재 (다른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마이데이터 관련 백업 및 복구 시스템을 표기)</li> <li>■ 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련 시스템, 프로그램, 스토리지, 테이프 등 관련 자산목록 (자산명, 스펙, 용도 및 설치 장소 등 상세 정보 포함)</li> <li>■ 원격소산지, 재해복구센터 등의 물리적 주소 및 역할 기재</li> </ul>
<p>3. 내외부 네트워킹 등 통신시스템 구성 등을 갖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운영 관련 내규 주요 내용</li> <li>■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개념도, 업무망/인터넷 망 등 각 구성에 대한 상세 설명 (다른 네트워크 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마이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표기)</li> <li>■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및 통신 시스템 자산목록 (자산명, 스펙, 용도 및 설치 위치, 장비 이중화 여부 등 상세 정보 포함)</li> </ul>
<p><b>2. 보안체계</b></p>	
<p>1.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 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을 갖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호시스템 등 보안장비 운영 관련 내규 주요내용</li> <li>■ 정보보호시스템 구성도 및 개념도, 정보보호시스템 구성에 대한 상세 설명 (공통 시스템이 포함된 경우 마이데이터 업무 관련 시스템을 표기)</li> <li>■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목록 (FW, WAF, IPS, IDS, Anti-DDoS, 매체제어, 백신 등 자산명, 수량, 용도 및 설치위치 등 상세정보 포함)</li> <li>■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종류별 보안정책 설정 화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현황 등 상세 설명</li> </ul>
<p>2.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계약서 사본, 외부시설·서비스 이용 약정서(SLA 협약서 등) 사본</li> <li>■ 위탁계약서 등에 신용정보법 §17 등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 관련 법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용정보법규, 정보처리 업무 위탁규정 등 관련 법규 조항 및 위탁계약서 조항별 비교표 등)</li> </ul>

<p><b>점검항목(규정 &lt;별표 2의 허가요건&gt;)</b></p>	<p><b>물적설비 현황표 작성 참고자료*</b></p> <p>* 관련 내규, 품의문서 등 참고자료의 내용을 필수 내용 위주로 본문에 작성하고, 해당 문서는 별첨으로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처리 업무 수탁사 이용 현황(수탁사명, 계약 체결일, 이용목적 및 정보 제공 범위 등 포함), 외부 시설(IDC센터 등) 이용 현황</li> <li>■ 위탁계약시 관련 부속서류(예: 보안관리약정서, 보안서약서 등)</li> <li>■ 수탁자 관리·감독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안점검, 개인신용정보보호 교육 실시결과 등)</li> </ul> <p>※ (참고사항) 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계약서, 개인신용정보보호 약정서 등에 표하단 별표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p>
<p>3. 직무분리 기준을 수립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분리 기준(겸직 금지 직무 포함)이 포함된 내규 등 근거 문서 주요내용, 개인신용정보 접근권한 부여 기준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내규 주요내용</li> <li>■ 조직도(마이데이터 관련 부서 표기), 임직원 업무 분장표(마이데이터 업무 관련자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담당 업무 등을 기재)</li> </ul>
<p>4.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밀번호 관리 관련 내규 주요 내용</li> <li>■ 비밀번호 생성 규칙 설정 화면 (PC 등 단말기, 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어플리케이션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첨부하고 각 설정 규칙에 대한 설명)</li> </ul>
<p>5. 비상계획, 재해복구 훈련 실시 체계를 갖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CP/DRP가 포함된 내규 주요내용</li> <li>■ 업무연속성계획(BCP)/재해복구계획(DRP), 비상대응 조직 구성·운영현황 등 관련 자료 설명</li> <li>■ 비상계획, 재해복구훈련 실시 계획 및 훈련 실시 결과 품의문서 사본 및 주요내용 (마이데이터 관련 시스템 포함 여부 표기 및 최근 실시한 훈련 결과 등을 포함)</li> </ul>
<p>6. 서버, 단말 등에 대한 접근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버,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방안이 포함된 내규 등 근거문서 주요내용</li> <li>■ 서버, 단말 등에 대한 접근통제 상세 절차 (서버/DB 및 단말기 접근통제 관련 시스템 및 솔루션 정보, 접근통제시스템 별 운영 화면 및 설명 포함)</li> <li>■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 설치 보안프로그램 목록 및 주요 기능 설명</li> </ul>

<p><b>점검항목(규정 &lt;별표 2의 허가요건&gt;)</b></p>	<p><b>물적설비 현황표 작성 참고자료*</b></p> <p>* 관련 내규, 품의문서 등 참고자료의 내용을 필수 내용 위주로 본문에 작성하고, 해당 문서는 별첨으로 할 것</p>
<p>7.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마련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구역별 출입통제 절차가 포함된 내규 등 근거문서 주요 내용</li> <li>■ 사무실, 전산실 및 DR센터 등 보호구역(통제구역/제한구역 등) 지정 목록, 출입통제 장치 목록</li> <li>■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보호구역 별 출입 통제절차 상세 설명</li> </ul>
<p>8. 주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기록 유지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관련 내규 등 근거 문서 주요내용</li> <li>■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등 주요 시스템 종류별 접속로그 항목 및 로깅항목에 대한 설명 (대상 시스템, 로그시스템, 로그보존기간, 접속기록 정보 등 포함)</li> <li>■ 시스템 종류별 접속기록 로깅 화면 및 해당 화면에 대한 설명</li> </ul>
<p>9.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같은 규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8항을 준용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개념도) 및 설명 (망분리 대상 시스템, 망연계솔루션 등 망분리 관련 장비를 표기하고, 망분리 방식(논리적/물리적) 및 범위(업무망/인터넷망 등) 등을 포함)</li> <li>■ PC 등 단말기 구성 방식 및 설명 (물리적 망분리 대상 단말기, 논리적 망분리 대상 단말기 등이 구분 가능하고, 사용 목적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li> <li>■ 무선통신망 이용현황 및 비인가 무선망 보안대책 (WIPS 설치 위치 및 운영 현황 등)</li> </ul>
<p>10. 안전한 물리적 보안설비 (통신회선 이중화, CCTV 등)를 갖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보안지침 등 관련 내규 주요내용, 보안설비 배치도 및 구성에 대한 설명</li> <li>■ 보호구역 별 전산실 보호설비 및 보호장치 목록 (CCTV, 통신회선 이중화, 화재감지기, 항온항습기/UPS, 하론소화기 등)</li> </ul> <p>※ 보호구역 별로 작성시 전산실, 제2전산센터, 원격소산지, 재해복구센터 등 전산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모두 포함하여 각각 작성</p>
<p>11. 안전한 백업대책을 갖출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업관리지침 등 백업운영 관련 내규 주요 내용</li> <li>■ 백업 및 복구계획서, 백업관리대장, 자산반출입대장</li> <li>■ 백업 및 소산목록 (백업 대상 시스템 및 데이터, 백업 주기, 백업방식 및</li> </ul>

<b>점검항목(규정 &lt;별표 2의 허가요건&gt;)</b>	<b>물적설비 현황표 작성 참고자료*</b> * 관련 내규, 품의문서 등 참고자료의 내용을 필수 내용 위주로 본문에 작성하고, 해당 문서는 별첨으로 할 것
	절차, 백업 장소 등 포함) ■ 최근 실시한 백업 및 복구 테스트 결과 문서 및 백업 실시 결과서에 대한 설명
12. 안전한 데이터 암호화 처리 방침 및 암호처리 시스템 구축 할 것	■ 데이터 암호처리 관련 시스템 목록 (시스템명, 제품명, 암호화 방식 및 알고리즘, 사용 목적 및 기능 등 설명 포함) ※ 예: DRM, DB암호화, VPN, E2E 등 ■ 암호처리시스템 별 관리자 정책 설정화면 및 설명 ■ 암호화관리지침, 암호키관리지침, 암호키관리대장 ■ 암호화 처리 결과 샘플(예: DB암호화 처리 화면 캡처)
13. 외부에서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 및 인증수단(VPN 등)을 적용 할 것	■ 원격접속 관련 내규 주요내용 ■ 원격 접속계정 발급 절차 및 이용절차 (인증방법, 인증수단, 통신구간 암호화 등 포함) ■ 원격접속기록에 대한 모니터링 점검 결과(최근)

**※ 업무 위탁 또는 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위수탁계약서 등에 포함될 사항**  
(2. 보안체계의 2호 요건, 신용정보법 §17 등 관련)

1. 위탁 계약서 등에 포함될 주요 기재사항
1.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26①에 관한 사항
2.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의 방지 및 안전한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수탁자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21 관련 [별표4] 신용정보제공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 중 '3.수집된 신용정보 처리 위탁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경우 아래 기재된 사항 1) 제공되는 신용정보의 범위 및 제공·이용 목적 2) 제공된 신용정보의 업무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앞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3) 제공된 신용정보의 이용자 제한 및 전담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간 신용정보 송수신시 정보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5) 신용정보의 사용·보관 기간 및 동 기간 경과 후 신용정보의 폐기·반납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7)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8) 신용정보 처리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한 보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1)~10)까지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소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4. 감독당국 또는 내외부 감사인의 조사·접근(허가 실시조사, 현장방문, 현장검사 등 포함) 수용 의무
5. 그 밖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등 업무 위탁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계약서에 반영해야할 사항

2. 제출 서류
1. 위탁계약서 사본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시)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관련) 1)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결과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 결과 3)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4)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조치의 수립·시행 내역

- (심사방법)** IT 및 정보보호 관련 내규 및 절차 마련 여부, 본인 신용정보관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성 및 보안체계 구축 적정성 등을 서면심사를 통해 점검하고,
-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가 실제 시스템 구성 및 보안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지조사에서 확인

### 3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 (허가요건 및 점검항목) 사업계획의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
  -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등 건전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해야 함(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허가요건	점검항목
<p><b>1. 수입·지출 전망의 타당성</b> (시행령 §6③ 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및 서비스의 경쟁력 및 혁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다양성을 제공하는 등 정보주체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신용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li> <li>- 서비스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이 다른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서비스에 비해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li> <li>- 겸영업무 영위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겸영업무의 영위에 법적·사실적 제약이 없는지 여부</li> </ul> </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개시 후 수입·지출 전망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장 전망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가입자 확보 등 영업 시나리오를 설정</li> <li>- 영업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향후 2년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추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투자·인력총원·마케팅 등 초비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li> <li>☑ 손익 추정결과를 추정 재무제표에 일관성 있게 반영</li> <li>☑ 사업계획과 추정재무제표의 내용이 일치하고, 추정 영업손익·비용의 증감이 일관성을 유지</li> <li>☑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 규제준수 비용을 반영</li> </ul> </div>

허가요건	점검항목
<p><b>2.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의 사업계획 추진 적합성</b> (시행령 §6③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확보 방안 및 영업과의 연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li> <li>-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법 §22의9 ③,④)에 따라 신용정보의 수집 및 통합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운용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li> </ul> </li> </ul> <p>* 데이터 API 구축(21.8월) 이전 신청자는 해당 업무체계에 대한 구축계획을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주체가 접근할 수 있는 고유한 서비스 채널 운영 여부(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li> </ul>
<p><b>3.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의 건전경영 수행 적합성</b> (시행령 §6③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내용 및 방법이 관련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예) 영업내용 및 방법이 법 §22의9①에 따른 행위규칙 준수에 적합한지 여부 등</li> <li>■ 임직원의 법규 준수, 위험관리 및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여부* (예)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 등 준법 전담조직, 내부통제기준 등</li> <li>■ 적정한 신용정보 보호체계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보호·관리인 지정 등 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적정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li> <li>- 사용자 100만명 이상의 대형 사업자의 경우 금융보안원의 보안 관제 가입 또는 가입예정 여부(사용자 100만명 이상 확보시 1년 내 가입)</li> <li>- 정보보호 부문 인력 및 예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여부</li> </ul> </li> <li>■ 금융소비자를 위한 충분한 보호체계 구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방지 체계 마련 여부(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금융상품 추천·권유 알고리즘 운영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포함)</li> <li>- 본업 및 겸영업무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민원 등에 대한 적절한 접수·대응 체계 구비 여부</li> <li>- 신용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체계 구비 여부 (예) 피해현황 파악, 감독당국 보고, 피해 확산 방지조치 등</li> </ul> </li> </ul>

**(심사방법)** 사업계획서, 예상 수지계산서 등을 통해 위험관리,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

## 4 대주주 적격성 요건

□ (심사대상) 신청인의 대주주(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 ① 최대주주(법 제2조제18호가목)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가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② 주요주주(법 제2조제18호나목)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소유한 자
-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심사요건) 심사대상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 심사대상의 법적 실체(금융기관, 내국법인, 내국인, 외국법인,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또는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에 따라 각각의 심사요건을 규정

\* 세부 심사요건은 시행령 <별표1의2>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확인

- (심사방법)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및 확인서, 국내외 소관 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확인

\* 검찰청, 경찰청, 한국신용정보원, 예금보험공사 등 국내 기관과 해외 본국 감독기관 등

## 5 임원자격 요건

- (심사요건) 임원\*이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이사, 감사, 집행임원(법 제2조 제18호 나목)

결격사유
①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 감사 또는 감사위원
2.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3.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
4. 각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

## 결격사유

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 ⑦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 (심사방법) 임원 및 임원 예정자의 결격 여부를 사업계획서, 경력증명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6 전문성 요건

- (심사요건) 신용정보 활용·보호 및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

- (심사기준) 신용조회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금융업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한 경험이 있거나,

- 관련 전문인력 고용 등을 통해 신용정보 산업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심사

## IV.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 1 허가신청서 양식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90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법인의 목적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없음
2. 재무제표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4. 그 밖에 별표 1의2의 해당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계	
	그밖의 시설	

## 2 허가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 성명(대표자) : 신청인 회사의 대표자
- 상호 또는 명칭 : 신청인 회사의 명칭
-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신청인 회사의 소재지를 기재
- 법인의 목적 : 정관상 법인의 목적 등 기재
- 업무의 종류 :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를 기재\*
  - \* (기재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
- 인력에 관한 사항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채용 직원 수
-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 체계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수행을 위해 도입한 전산 시스템에 대한 설명, 회사의 전산 체계 등을 기재\*

\* 예비허가 신청시에는 설비 등의 구축 계획을 기재해도 무방하나, 본허가 전까지는 실제로 구축한 물적 설비 현황을 기재

### **[설립예정 회사]**

- (신청인) 발기인(전원 또는 대표) 또는 법률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신청
- (상호, 본점 소재지) 상호는 가칭으로 기재, 본점 소재지 등은 향후 임대차 계약 체결 예정 장소 등을 기재
- (정관) 향후 법인 설립시 사용할 정관(案)을 제출

### 3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 감독규정 별표 1의2에 열거된 첨부서류 중 주요 서류에 대한 작성 요령 및 예시임

#### □ 사업계획서

- 허가신청의 개요, 물적설비 현황, 사업계획, 심사대상 대주주 현황 등 허가 심사 요건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심사를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는 필요시 별도 자료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본문에는 요약 내용을 기술

☞ 상세한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는 <참고 1> 자료 참조

#### □ 자본금 납입에 관한 서류

- 자본금 납입증빙 : 주금납입증명서, 주금납입통장 사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납입은행이 발급한 증명서 등

#### □ 임직원에 관한 서류\*

\* 회사 설립 전인 경우 : 임원선임 예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예정자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되, 예비허가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

- 임원의 이력서 : 사실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
-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 성명, 직위, 부서명 등 기재 후 직원의 상시고용 여부에 대해 확인

- 임직원이 법 제22조의8 및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필요시 확인서 제출로 대체)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 등록기준지 시·군·구청 등에 법인 명의 공문발송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

☞ 확인서 : <참고2> 확인서 서식 참조

## □ 내부관리규정에 관한 서류

-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부관리규정
  1. 규정 제23조의3 제2항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규정
  2. 규정 <별표3>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3.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행사 철회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4. 1호 내지 3호의 내부관리규정 외에 법 제22조의9의 행위 규칙 준수를 위한 내부관리규정
  5.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및 수행하는 업무
  6. 신용정보처리 위탁의 기준
  7. 그 밖에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절차
- 기타 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현황 및 규정 제출

※ 구비서류 관련 공통사항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 되어야 하는 서류 및 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됨

□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감독규정 별표 1 의2)

예비허가	(본)허가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신청서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신청서
- 정관(안)	-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재무제표
-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이사록) 사본	-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 계획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 출자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약서 (출자비율 5%미만인 개인출자자는 제외)	-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이사록) 사본
-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서	-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 확인서류
- 출자자가 금융회사인 경우는 당해 금융회사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및 당해 금융회사의 일반현황	- 자본금 납입증명 서류
- 출자자가(당해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출자자 중 최대 출자자에 한함)가 일반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외국인출자자인 경우 외국인의 출자가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 신청인이 이미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첨부 서류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 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
- 대주주가 대주주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	-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자료
-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직원에 관한 서류
	- 임원의 이력서
	-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 법 제22조의8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필요시 이를 확인하는 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제22조의9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 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 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예비허가	(본)허가
-임원(예정자 포함)이력서	

※ 사전협의시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양식 안내

<b>참고1</b>	<b>허가신청서 작성례</b>
------------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90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김본인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
	상호 또는 명칭	주식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 (전화번호) 02-4444-5555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10억원
법인의 목적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1. 개인신용분석 및 평가 용역제공 업무 2. 전산시설을 이용한 정보처리 및 용역제공 업무 등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2020년 8월 5일 신청인 주식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인)</div>				
금융위원장 귀하				수수료
※ 구비서류				없음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2. 재무제표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4. 그 밖에 별표 1의2의 해당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김본인(700101-1234567) 감사 이신용(700101-1234568) 이사 박관리(700101-1234569) 외 3명
인력에 관한 사항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담당직원 20명 (예비허가 취득 후 채용예정)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계	서버시스템, 백업 및 복구시스템, 통신 시스템 등(상세 목록은 별첨)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체계 (상세 목록은 별첨)
	그밖의 시설	사무실 1개소, 기타 집기

## 1. 신청 개요

회사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 :</li> <li>◆ 영문 :</li> </ul>		
소재지			
현재 영위중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허가신청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자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임원구성	직위	성명	주요이력
최대주주			
주주구성 <sup>1)</sup>	주주명	지분율	구분 <sup>2)</sup>

주1) 대주주요건 심사대상 및 5% 이상은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고 나머지는 통합하여 기타로 표시

2)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구분

3) 칸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삽입 또는 삭제하여 적절하게 조정

## 2. 자본금 현황

---

□ 자본금(202×.××.××. 신청일 현재) : 억원

- 납입자금의 조성 방법

### 3. 물적 설비 현황

\* 허가 심사 세부 요건 별(시스템 구성 3개, 보안체계 13개)로 작성하되, 시스템 구성 및 보안체계를 적절히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내규 및 문서의 핵심내용을 본문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구성도, 시스템 화면, 문서사본 등)는 편집하여 첨부

※ 내용이 많을 경우 추가 페이지 작성 가능

구성	> 시스템 구성																																																								
세부 요건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 DB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보안서버 등 서버 시스템 나.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다. 해당업무 영위를 위한 각종 S/W 프로그램																																																								
관련 내규	<input type="checkbox"/> 관련 내부규정 및 지침명 - 관련 조항 및 주요 내용																																																								
현황	<p>&lt;시스템의 종류 및 기능, 전체 시스템 구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도 사진 및 자산 목록표 등을 첨부하여 현황을 상세 기재하고, 관련 근거 문서(내규 전문, 품의문서 사본 등)는 별첨으로 첨부&gt;</p>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구성도(개념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8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center;">&lt;시스템 구성도(개념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B서버, 통신서버, 웹서버 등 서버 시스템 구성에 대한 상세 설명 작성</li> </ul>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자산 목록(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종류</th> <th>자산명</th> <th>CPU</th> <th>메모리</th> <th>설치OS</th> <th>용도</th> <th>설치 장소</th> </tr> </thead> <tbody> <tr> <td>DB서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AP서버</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input type="checkbox"/> 저장장치, 단말기 등 기타 주변장치 목록(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종류</th> <th>자산명</th> <th>CPU</th> <th>메모리</th> <th>설치OS</th> <th>용도</th> <th>설치 장소</th> </tr> </thead> <tbody> <tr> <td>저장장치</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PC</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단말기</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종류	자산명	CPU	메모리	설치OS	용도	설치 장소	DB서버							AP서버														종류	자산명	CPU	메모리	설치OS	용도	설치 장소	저장장치							PC							단말기						
종류	자산명	CPU	메모리	설치OS	용도	설치 장소																																																			
DB서버																																																									
AP서버																																																									
종류	자산명	CPU	메모리	설치OS	용도	설치 장소																																																			
저장장치																																																									
PC																																																									
단말기																																																									

구성	> 보안체계																								
세부 요건	1.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바이러스 및 스파이웨어 탐지 및 백신프로그램을 갖출 것																								
관련 내규	<input type="checkbox"/> 관련 내부규정 및 지침명 - 관련 조항 및 내용																								
현 황	<p>&lt;시스템의 종류 및 기능, 전체 시스템 구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도 사진 및 자산 목록표 등을 첨부하여 현황을 상세 기재하고, 관련 근거 문서(내규 전문, 품의문서 사본 등)는 별첨으로 첨부&gt;</p> <p><input type="checkbox"/>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자산 목록(예)</p> <table border="1" data-bbox="363 801 1396 940"> <thead> <tr> <th>자산명</th> <th>CPU</th> <th>메모리</th> <th>설치OS</th> <th>용도</th> <th>설치 장소</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정보보호시스템 구성도(개념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8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center;">&lt;정보보호시스템 구성도(개념도)&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호시스템 및 보안솔루션 구성에 대한 상세 설명 작성</li> <li>- (침입차단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의 설치 구간 별 주요 기능 및 역할, 방화벽 정책 변경 절차 및 방화벽 미사용 정책 점검 등 운영·관리현황</li> <li>- (침입탐지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 구간 별 주요 기능 및 역할, 탐지패턴 업데이트 주기 및 방법 등 운영·관리현황</li> <li>-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이동식 저장장치 별 설정 정책 설명, 프로그램 운영현황(차단 정책 변경 절차 등)</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8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center;">&lt;이동식저장장치 통제 프로그램 관리자 정책 설정화면&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프로그램) 백신관리서버 정책 설정 화면 및 상세 설명</li> </ul>	자산명	CPU	메모리	설치OS	용도	설치 장소																		
자산명	CPU	메모리	설치OS	용도	설치 장소																				

## 4. 사업계획 타당성

(1) 수입·지출 전망의 타당성	관련 내용
<p>① 당사 서비스의 경쟁력 및 혁신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의 차별성과 비교 우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영업무 영위 예정인 경우 겸업에 필요한 등록 및 허가 취득계획을 포함</li> </ul> </li> <li>■ 당해 서비스가 소비자 편익 및 데이터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점</li> </ul> <p>(별도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관련 내용 페이지를 부기, 이하 항목에서 동일)</p>
<p>② 영업 개시 이후 수지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상황에 대한 가정을 합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li> <li>■ 제시한 시장상황 하에서의 영업 시나리오에 따라 손익을 추정</li> <li>■ 손익 추정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추정 재무제표에 손익 추정결과를 일관되게 반영</li> </ul>
(2)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의 사업 계획 추진 적합성	관련 내용
<p>① 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확보 및 영업과의 연계계획의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li>■ 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의 구체적 방법을 포함한 업무 흐름을 서술</li> </ul>
<p>② 서비스 채널 운영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채널 운영 계획</li> <li>■ 메뉴 구성 및 UI, 가입 및 탈퇴 방법 등</li> </ul>

(3)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의 건전 경영 수행 적합성	관련 내용
① 영업내용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적 내용을 서술하고,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서술</li> </ul>
② 내부통제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 조직 및 관련 내규 등의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③ 신용정보 보호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 등의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④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발생 방지 체계 및 민원처리 프로세스 등 소비자보호 체계의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 5. 심사대상 대주주 현황

대주주 현황	주주명	구분 <sup>1)</sup>	의결권 있는 주식수	비율(%)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예) 배우자, 자녀 등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주요주주				

주 1)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외국인' 등으로 구분

※ 필요시 대주주 등 신청인의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도표 첨부

## 6. 임원 현황

구 분	임원1	임원2	임원3	임원4	...
성명					
생년					
직위					
등기여부					
담당업무					
학력					
주요 경력					
상근 여부 <sup>1)</sup>					
타회사 겸직 여부 <sup>2)</sup>					
주주와의 관계	주주명				
	관계 <sup>3)</sup>				
결격여부 자체점검 결과 <sup>4)</sup>					

주1) 상근, 비상근,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주2) 겸직회사명 및 직위를 기재(겸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주3) 대주주적격 심사 대상 대주주와 시행령 제2조 제2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본인', '특수관계자',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주4) 지배구조법 제5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적정 여부

## 7. 허가 신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

신용정보 활용·보호 및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	관련 내용
<p>① 인력 보유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인력 보유 등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② 관련 업무 영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 신청 전 신청인이 영위한 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 등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가. 임원 확인서

임원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 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 또는 감사위원</li> <li>2.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li> <li>3.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li> <li>4. 각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li> <li>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li> </ol>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본인은 상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 나. 대주주 확인서

### (1) 금융기관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기준이 없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금융기관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부채비율은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 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 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	
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당 사는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대표이사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2) 기금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당 기금은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기관장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3) 금융기관·기금 이외의 내국법인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건전한 신용질서나 금융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경우로서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기관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부채비율은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 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법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당 법인은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기관장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4) 내국인으로서 개인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5) 외국 법인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제재 목적으로 해당 외국 법인에 부과한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이나 등록의 취소·정지,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민사제재금 등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인허가 사례**  
**6-(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신 청 회 사	OOOO	신 청 일	2024.10.29.
처 리 부 서	디지털혁신국 디지털혁신감독팀	완 료 일	2024.12.22.
신 청 내 용	<input type="checkbox"/> 전자상거래,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등록한 바 있는 OOOO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신청		
심 사 내 용	<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금융위에 심사의견을 송부 <input type="checkbox"/>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신청 전 협의단계에서 신청자와 면담 및 이메일을 통해 필요서류 및 처리절차를 안내 <input type="checkbox"/>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다음 사항 보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주주 목록 제공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7, §11③를 참고하여 제출</li> <li>- 제출서류 중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금융소비자보호규정, 내부통제규정, 민원처리지침, 정보보안관리규정,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정보보호업무 연속성 관리지침, 수탁사 개인정보 점검 체크리스트 등 확인 후 보완 제출</li> <li>○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요건 심사 및 첨부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및 물적요건) 외부평가위원회 개최</li> <li>- (자본금요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등 확인</li> <li>- (재무건전성 요건) 재무제표 등 확인</li> <li>- (물적 시설 요건)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li> <li>- (대주주요건) 조세범처벌법, 지배구조법 등 관계 법률 위반으로 인한 처벌사실등을 대외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li> </ul> </li> </ul>		

## V.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7, 별표1의2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7, 별표1의2, 별표2, 별표2의2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전자금융, 신용정보, 신용평가

## (3)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허가

### I.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체계

#### 1 개요

- '20.2.4. 개정된 신용정보법(법률 제16957호, '20.8.5. 시행)은 개정 전 신용정보법(법률 제16188호)상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등 6개 단위로 세분하고,
  - 신용조회업과 신용조사업을 합쳐 신용정보업으로 분류하면서, 채권추심업은 별도 업무로 규정

####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체계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근거조항(법)
1. 신용정보업	①개인신용평가업	(a)개인신용평가업	§2 (8)
		(b)전문개인신용평가업	§5 ①
	②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2 (8의2)
	③기업신용조회업	(a)기업정보조회업	§2 (8의3) 가
		(b)기업신용등급제공업	§2 (8의3) 나
(c)기술신용평가업		§2 (8의3) 다	
④신용조사업		§2 (9)	
2. 채권추심업			§2 (10)

#### 2 신용정보업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은 ①개인신용평가업, ②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③기업신용조회업, ④신용조사업으로 분류

- ① (개인신용평가업)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sup>(a)</sup>개인신용평가업과 <sup>(b)</sup>전문개인신용평가업으로 세분

(a)개인신용평가업 :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 제공하는 영업(법 §2(8))

(b)전문개인신용평가업 : 개인신용평가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정보 및 종합신용집중기관에서 처리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영업(법 §5①)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영업(법 제2조 제8호의2)

③ (기업신용조회업) 생성·제공 정보의 종류에 따라 <sup>(a)</sup>기업정보조회업, <sup>(b)</sup>기업신용등급제공업, <sup>(c)</sup>기술신용평가업으로 세분

(a)기업정보조회업 :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통합·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영업(법 §2 (8의3) 가)

(b)기업신용등급제공업 :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영업(법 §2 (8의3) 나)

(c)기술신용평가업 :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영업(법 §2 (8의3)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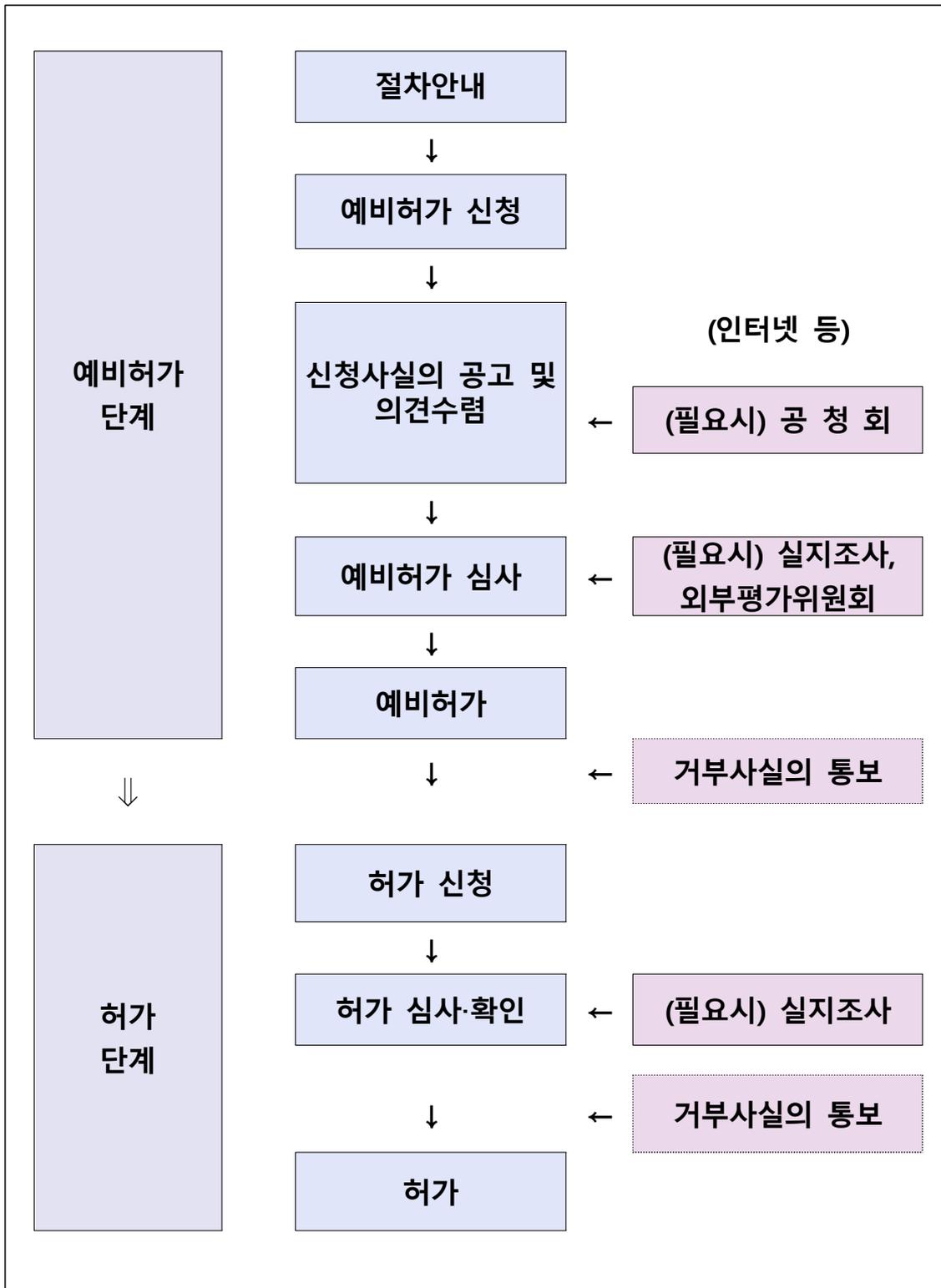
④ (신용조사업)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영업(법 제2조 제9호)

### 3 채권추심업

□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채무자의 변제금 수령을 통해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영업(법 §2 (10))

## II. 허가 절차

### < 허가절차 흐름도 >



## 1 개요

-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영위 허가는 예비 허가와 본 허가로 구분
  -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도 등 구조조정, 고객보호 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예비허가 신청시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2 예비허가

- 예비허가의 심사기간은 2개월이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

### ① 예비허가의 신청

- 예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허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접수(감독규정 <별표1의2>의 구비서류 첨부)

### ②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 수렴

- 금융위는 예비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신청일자, 신청인, 신청취지 및 내용,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 금융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사실의 공고와는 별도로 신청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는 위 내용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토록 할 수 있음

-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 ③ 예비허가 신청내용의 심사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인, 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하여 신청내용이 허가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 금융감독원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장은 신청내용의 확인을 위해 이해관계인, 발기인 및 경영진과의 면담 및 실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④ 예비허가 결정 및 통지

- 금융위는 신청인의 예비허가 신청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
- 예비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예비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함
- 예비허가는 허가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및 확실한 실행을 위하여 허가 이전에 예비적으로 행하여지는 허가권자의 의사표시이며, 허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 3 본 허가

□ 신용정보업 본 허가의 심사기간은 3개월(예비허가를 거친 경우 1개월)이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됨

#### ① 허가 신청서의 접수

- 신청인은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접수(감독규정 <별표1의2>의 구비서류 첨부)

#### ② 허가

- 금융위는 신청인의 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 통지하며 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 금융감독원장은 허가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며,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금융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 심사시 필요한 보완서류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위는 예비허가 또는 허가시 부과한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이행상황을 확인함
-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허가받은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법 제14조제1항제10호)

### Ⅲ. 허가요건 및 심사기준

#### 1 허가요건 구성

요건	개요	근거법규		
		법 <sup>1)</sup>	시행령 <sup>2)</sup>	규정 <sup>3)</sup>
신청주체 요건	-금융회사 50%출자 등	§5	§5	
자본금 요건	-업종별 최소자본금 충족 · 개인신용평가업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 기업신용조회업 · 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	§6② 1호 §6① 1호의2 §6① 1호의3 §6② 2호	§7	
인적· 물적 요건	-전문인력의 구비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보안체계 등	§6① 1호	§6①, ②	<별표2>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수입·지출 전망의 타당성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 체계의 사업계획 추진 적합성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 체계의 이해상충 방지 등 건전 영업 수행 적합성	§6① 2호	§6③	
대주주 적격성 요건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 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6① 3호	§6④ <별표1의2>	§7 <별표2의2>
임원자격 요건	-임원결격사유 해당 여부 · 신용조회업 : 지배구조법 준용 · 신용조사업 : 법 §22②의 요건 · 채권추심업 : 법 §27①의 요건	§6① 3호의2, §22, §27 지배구조법 §5	지배구조법 시행령 §7	
전문성 요건	-신청한 영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전문성	§6① 4호		

## 2 심사 기준

### 1 신청주체 요건

□ (허가요건) 영위하고자 하는 업의 종류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법 제5조)의 구비 여부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신청주체
① 신용정보업	(가)개인신용평가업	(a)개인신용평가업	금융기관 50% 이상 출자법인 등 <sup>주1)</sup>
		(b)전문개인신용평가업	제한 없음
	(나)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신용정보업자, 신용카드업자, 금융기관 50% 이상 출자법인 등 <sup>주2)</sup>
	(다)기업신용조회업	(a)기업정보조회업	상법상 주식회사 등
		(b)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금융기관 50% 이상 출자법인 등 <sup>주1)</sup>
		(c)기술신용평가업	개인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특허법인·회계법인 등 <sup>주3)</sup>
	(라)신용조사업		금융기관 50% 이상 출자법인 등 <sup>주1)</sup>
② 채권추심업			금융기관 50% 이상 출자법인 등 <sup>주1)</sup>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또는 자본시장법상 신용평가회사가 10%를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상기 내용에 불구하고 기업신용등급제공업((다)-(b)), 기술신용평가업((다)-(c))을 영위할 수 없음(법 §5④)

- 주1) ①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주2) ①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 제외), ② 기업신용등급제공업자, ③ 신용카드업자, ④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주3) ①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자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한국무역보험공사, ③ 번리사법에 따른 특허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 (심사방법) 법인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가서류 등을 확인

## 2 자본금 요건

□ (허가요건) 영위하고자 하는 업의 종류에 따른 최소자본금 충족 여부(법 제6조 제1항, 제2항)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최소자본금
① 신용정보업	(가)개인신용평가업	(a)개인신용평가업	50억원
		(b)전문개인신용평가업	5억원/20억원 <sup>주)</sup>
	(나)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50억원
	(다)기업신용조회업	(a)기업정보조회업	5억원
		(b)기업신용등급제공업	20억원
		(c)기술신용평가업	20억원
	(라)신용조사업		30억원
②채권추심업		30억원	

주) (5억원) 비정형 데이터 (20억원) 대량의 정형 데이터

- 여러 종류의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거나, 신용정보업과 채권추심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은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예) 개인신용평가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을 동시에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신용평가업 영위에 요구되는 최저자본금인 50억원을 갖춰야 함

□ (심사방법) 등기부 및 재무제표,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확인

### 3 인적 요건

□ (허가요건) 영위하고자 하는 업의 종류에 따른 전문인력 등 충족 여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인적 요건
① 신용정보업	(가)개인신용평가업	(a)개인신용평가업	상시고용인력에 전문인력 10명 이상 포함
		(b)전문개인신용평가업	상시고용인력에 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비정형데이터는 2명)
	(나)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상시고용인력에 전문인력 10명 이상 포함
	(다)기업신용조회업	(a)기업정보조회업	상시고용인력에 전문인력 2명 이상 포함
		(b)기업신용등급제공업	상시고용인력에 전문인력 10명 이상 포함
		(c)기술신용평가업	상시고용인력에 전문인력 10명 이상 포함
	(라)신용조사업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②채권추심업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	

[유의사항]

- 표 안의 전문인력 인원 수는 해당 업무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음(복수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특칙 적용)
  -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정보조회업을 함께 하는 경우 : 7명 이상 (단, 비정형데이터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함께 하는 경우 4명 이상)
  - 개인신용평가업·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기업신용등급제공업 중 하나 이상의 업을 하거나, 해당업무와 전문개인신용평가업·기업정보조회업을 함께 하는 경우 : 10명 이상
- 전문인력 :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 각목의 인력(다만 영위하고자 하는 업의 종류에 따라 각목의 인력 중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인력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시행령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

○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금융업과 신용정보법상 업무를 겸영 하는 경우, 전문인력 요건 충족 여부는 신용정보법상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기준으로 판단

\* (예) A카드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영위를 희망할 경우, A카드사 전체에 전문인력을 10명 보유하고 있더라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무를 담당할 직원 중 전문인력이 5명이라면 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판단

□ **(심사방법)** 예비허가 심사시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심사하고

- 본허가 심사시 당해 임직원의 채용 등 그 이행여부를 채용 계약서, 전문인력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으로 심사하고 예비허가 내용의 이행여부를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

**4 물적 요건**

□ **(허가요건)** 신용정보 처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감독 규정 별표2)를 갖추어야 함

-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

심사항목(규정 <별표 2>)	제출서류(예시)
<b>1. 시스템 구성</b>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등 통신구간 암호화 시스템 나. WEB서버(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다. 저장장치 라. 그 밖에 주변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자산 및 정보자산 목록(DB서버, 통신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서버, DBMS/WEB/WAS 어플리케이션 등 포함)</li> <li>■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li> </ul>
2. 백업 및 복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업 솔루션 및 백업 시스템 자산 목록, 스토리지 및 LTO 테이프 등 백업 및 복구 관련 설비 목록, 백업 및 복구 설비 운영현황</li> <li>■ 정보시스템 구성도 (재해복구센터 구성, 백업 및 복구시스템 등을 표기)</li> </ul>
3. 시스템 보안 및 시설 보안을 포함한 보안관리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보안지침, PC보안지침</li> <li>■ 정보보호시스템 및 정보보호솔루션 운영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구성도</li> </ul>

심사항목(규정 <별표 2>)	제출서류(예시)
	(서버접근제어, DB접근제어, NAC, DRM, DLP 시스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보안(시설보안) 지침, 전산실 등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현황(출입통제 시스템, CCTV 설치, UPS 및 항온항습기, 통신회선 이중화 등 시설·설비 보호장치 설치 현황 등 포함)</li> </ul>
<b>2. 시스템 성능</b>	
1. 보유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시스템, 네트워크장비, 웹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현황(CPU, 메모리 평균/최대 사용률, DISK(스토리지) 사용율 등, 평균 정보처리건수)</li> <li>■ 주요 시스템 성능 테스트 결과</li> </ul>
2. 온라인서비스 또는 공중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출 것	
3. 백업 및 복구작업이 최소한의 시간내에 가능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연속성관리지침, 업무연속성계획, 재해복구계획</li> <li>■ 백업 및 복구 관리지침, 재해복구모의 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 백업 및 복구 테스트 결과</li> </ul>
<b>3. 보안체계</b>	
1. 방화벽(Fire-Wall)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호시스템 목록(방화벽, WAF, IPS, IDS 등 네트워크보안장비 표기)</li> </ul>
2. 침입을 탐지·경고·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 구성도(방화벽, WAF 등 정보보호시스템 표기)</li> <li>■ 정보보안관계 실시현황</li> </ul>
3. 내부네트워크와 신용조회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운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 구성도(내부네트워크, 신용조회네트워크 등 주요 네트워크 구간 별로 망분리, 접근통제 방안 등을 설명)</li> <li>■ 망분리(내부망, 인터넷망, 신용조회망 등) 구축 현황</li> </ul>
4. 정보이용자 확인 체계(사용자 인증)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이용자) 보안지침, 시스템별 사용자(고객 등 이용자 포함) 추가 인증수단 적용현황</li> </ul>
5. 데이터 암호화처리 체계를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암호화 현황(암호화 대상 및 방식, 적용 암호화 알고리즘, 암호처리 시스템 운영 현황 등)</li> <li>■ 암호화 관리지침(암호키관리지침), 암호키 운영현황</li> </ul>
6. 외부침입 방지, 출입자관리 통제 및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리적 보안지침, 전산실 등 보호구역 출입통제현황(스피드게이트, 바이오인증 등 출입통제시스템, CCTV 설치, 출입관리대장 등)</li> </ul>

심사항목(규정 <별표 2>)	제출서류(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자산관리지침, 자산 및 자료 반출·입 절차, 자산 및 자료 반출·입 대장 등</li> <li>■ 데이터 반출·입 통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현황(DRM, DLP, 매체제어, 망간자료전송시스템 이용 현황 등)</li> </ul>
7. 백업 및 소산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업관리지침, 백업 및 소산계획, 백업 및 소산관리대장, 백업 및 소산 현황 (DR센터가 있는 경우 DR센터 포함), 백업 및 복구 테스트 결과</li> </ul>
<b>4. 운용능력</b>	
1. 시스템 운용능력을 갖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도, IT인력 업무분장표, IT인력비율 (시스템운영 인력, 프로그램개발인력 등)</li> <li>■ 시스템 운용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력의 자격요건(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사본 등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li> </ul>
2.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출 것	

-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

심사항목(규정 <별표 2>)	제출서류(예시)
허가받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메모리, 중앙처리장치, 디스크 용량 등을 갖춘 전산기기를 보유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기기 목록(서버,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어플리케이션 등 포함), 정보통신망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li> <li>■ 시스템 성능 테스트 자료</li> <li>■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수립과 관련된 정책, 지침, 절차 등 내규 및 보안대책 이행활동자료(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및 동 규정 [별표3] 관련)</li> </ul>

- **(심사방법)** IT 및 정보보호 관련 내규 및 절차 마련 여부, 본인 신용정보관리 업무 관련 전산시스템 구성 및 보안체계 구축 적정성 등을 서면심사를 통해 점검하고,
-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가 실제 시스템 구성 및 보안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실지조사에서 확인

## 5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 (허가요건) 사업계획의 수입·지출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
  - 사업계획상의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가 사업계획의 추진에 적합하고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등 건전한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해야 함(시행령 제6조제3항제2호)

허가요건	점검항목
<b>1. 수입·지출 전망의 타당성</b> (令§6③1호)	<b>신용조회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서비스의 경쟁력 및 혁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신용정보 산업의 부가가치 및 신용정보주체의 편익을 제고하는 등 신용정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li> <li>-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이 기존 신용조회업자의 서비스에 비해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li> </ul> </li> </ul>
	<b>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공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개시 후 수입·지출 전망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시장 전망을 추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가입자 확보 등 영업 시나리오를 설정</li> <li>- 영업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향후 2년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b>추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설투자·인력총원·마케팅 등 초기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li> <li><input checked="" type="checkbox"/> 손익 추정결과를 추정 재무제표에 일관성 있게 반영</li> <li><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계획과 추정재무제표의 내용이 일치하고, 추정 영업손익·비용의 증감이 일관성을 유지</li> <li><input checked="" type="checkbox"/>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 규제준수 비용을 반영</li> </ul> </div>
<b>2.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의 사업계획 추진 적합성</b> (令§6③2호 전단)	<b>신용조회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의 수집·활용·제공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의 확보 및 평가, 평가결과의 제3자 제공의 과정을 담당할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 체계가 사업계획 추진에 적합한지 여부</li> </ul> </li> </ul>

허가요건	점검항목
	<p><b>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의뢰 또는 추심채권의 수입 계획이 적정하고, 조사 또는 추심을 담당할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 체계가 사업계획 추진에 적합한지 여부</li> </ul>
<p><b>3.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의 건전경영 수행 적합성</b> (令96③2호 전단)</p>	<p><b>신용조회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내용·방법의 관련 법령 및 건전경영 수행에 적합 여부 (예) 법 제22조의4 내지 제22조의6에 규정된 신용평가시 준수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신용평가업무 운영체계 구비 여부,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 운영 등 평가대상과의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여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직원의 법규 준수, 위험관리 및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여부* (예)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 등 준법 전담조직, 내부통제기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한 신용정보 보호체계 구축 여부 - 신용정보보호·관리인 지정 등 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적정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정보보호 부문 인력 및 예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여부 - 신용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체계 구비 여부</li> </ul>
	<p><b>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내용·방법의 관련 법령 및 건전경영 수행에 적합 여부 (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추심 관계 법규 등의 준수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구비 여부 등</li> <li>■ 임직원 및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의 법규 준수, 위험관리 및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여부* (예)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 등 준법 전담조직, 내부통제기준, 교육실시 등</li> <li>■ 적정한 신용정보 보호체계 구축 여부 - 임직원 및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의 채무자 정보 취급에 대한 통제 기준 - 신용정보보호·관리인 지정 등 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적정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정보보호 부문 인력 및 예산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여부 - 신용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체계 구비 여부</li> </ul>

**(심사방법)** 사업계획서, 예상 수지계산서 등을 통해 영위하고자 하는 허가단위에 맞는 위험관리, 내부통제절차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

## 6 대주주 요건

### □ (심사대상) 신청인의 대주주(최대주주 및 주요주주)

#### ① 최대주주(법 제2조제18호가목)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가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 ② 주요주주(법 제2조제18호나목)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소유한 자
-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 임면 등의 방법으로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 (심사요건) 심사대상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어야 함

- 심사대상의 법적 실체(금융기관, 내국법인, 내국인, 외국법인, 기관 전용 사모펀드 또는 SPC인 경우)에 따라 각각의 심사요건을 규정

\* 세부 심사요건은 시행령 <별표1의2>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확인

### □ (심사방법)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및 확인서, 국내외 소관 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등을 통해 확인

## 7 임원자격 요건

- **(허가요건)** ①신용조회회사의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의 결격 사유, ②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임원은 법 제27조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임원 : 이사, 감사, 집행임원(법 제2조 제18호 나목)
- **(심사방법)** 임원 및 임원 예정자의 결격 여부를 사업계획서, 경력증명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 8 전문성 요건

- **(허가요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및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
  - **(신용조회업 - 공통)** 신용정보의 수집·가공·활용 및 신용평가에 대한 전문성 보유 여부
  - **(신규 신용조회업)** 사업계획 및 서비스의 경쟁력 및 혁신성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 금융거래내역 부족자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신용 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 서비스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이 다른 신용조회업자의 서비스에 비해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
  -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신용정보 취급 및 추심업무 수행에 대한 전문성 보유 여부
- **(심사방법)** 신용정보업·채권추심업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한 경험이 있거나,
  - 관련 전문인력 고용 등을 통해 신용정보 산업 및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심사

## IV.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 1 허가신청서 양식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90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법인의 목적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없음
2. 재무제표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4. 그 밖에 별표 1의2의 해당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인력에 관한 사항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계			
	그밖의 시설			

## 2 허가신청서 항목별 작성요령

- 성명(대표자) : 신청인 회사의 대표자
- 상호 또는 명칭 : 신청인 회사의 명칭
-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 신청인 회사의 소재지를 기재
- 법인의 목적 : 정관상 법인의 목적 등 기재
- 업무의 종류 :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를 기재\*
  - \* (기재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
- 인력에 관한 사항 :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 관련 직원 수
-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 체계  
: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수행을 위해 도입한 전산 시스템에 대한 설명, 회사의 전산 체계 등을 기재\*

\* 예비허가 신청시에는 설비 등의 구축 계획을 기재해도 무방하나, 본허가 전까지는 실제로 구축한 물적 설비 현황을 기재

### [설립예정 회사]

- (신청인) 발기인(전원 또는 대표) 또는 법률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신청
- (상호, 본점 소재지) 상호는 가칭으로 기재, 본점 소재지 등은 향후 임대차 계약 체결 예정 장소 등을 기재
- (정관) 향후 법인 설립시 사용할 정관(案)을 제출

### 3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및 작성요령

◆ 감독규정 별표 1의2에 열거된 첨부서류 중 주요 서류에 대한 작성 요령 및 예시임

#### □ 사업계획서

- 허가신청의 개요, 물적설비 현황, 사업계획, 심사대상 대주주 현황 등 허가 심사 요건 전반을 일목요연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심사를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는 필요시 별도 자료로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본문에는 요약 내용을 기술

☞ 상세한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는 <참고 1> 자료 참조

#### □ 자본금 납입에 관한 서류

- 자본금 납입증빙 : 주금납입증명서, 주금납입통장 사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등 납입은행이 발급한 증명서 등

#### □ 임직원에 관한 서류\*

\* 회사 설립 전인 경우 : 임원선임 예정자와의 협의를 거쳐 예정자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되, 예비허가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 함께 제출

- 임원의 이력서 : 사실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이력서를 제출
-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 성명, 직위, 부서명 등 기재 후 직원의 상시고용 여부에 대해 확인

- 임직원이 법 제22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필요시 확인서 제출로 대체)
  -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 등록기준지 시·군·구청 등에 법인 명의 공문발송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

☞ 확인서 : <참고2> 확인서 서식 참조

## □ 내부관리규정에 관한 서류

-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내부관리규정
  1. 법 제22조의5 제3항의 내부통제기준(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2. 법 제22조의6 제3항의 내부통제기준(기업신용평가업)
  3. 법 제22조의6 제4항의 이용자관리기준(기업정보조회업)
  4. 상기 1~3 이외에 법 제22조의4 내지 제22조의6에서 정한 행위규칙의 준수를 위한 내부관리규정
  5. 규정 <별표3>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6.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행사철회 등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7.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및 수행하는 업무
  8. 신용정보처리 위탁의 기준
  9. 그 밖에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인 절차
- 기타 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현황 및 규정 제출

### ※ 구비서류 관련 공통사항

- ◆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야 하며,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안됨

## □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감독규정 별표 1의2)

예비인·허가	인·허가
-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예비허가신청서	-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허가신청서
- 정관(안)	-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재무제표
-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이사록) 사본	-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출자자(또는 주주) 구성 및 자금조달 계획	-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지분을 기재한 서류
- 출자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출자확약서(출자비율 5%미만인 개인출자자는 제외)	- 발기인 총회의사록(이사회이사록) 사본
- 출자자의 출자자금 조달계획서	-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 확인서류
- 출자자가 금융회사인 경우는 당해 금융회사 인허가권자의 인허가서 사본 또는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및 당해 금융회사의 일반현황	- 자본금 납입증명 서류
- 출자자가(당해 법인이 금융회사가 아닌 출자자 중 최대 출자자에 한함)가 일반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 외국인출자자인 경우 외국인의 출자가 「외국환거래법」 등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 신청인이 이미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상기 첨부서류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가 법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 출자자(또는 주주) 관계가 법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 합작계약서(합작법인인 경우)	- 주요출자자가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
- 주요출자자가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서류	- 인력 및 물적시설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 인력 및 물적시설(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물적시설 포함)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자료
- 허가 신청한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임직원에 관한 서류
- 임원(예정자 포함)이력서	- 임원의 이력서
	- 직원의 상시고용을 확인하는 서류
	- 법 제22조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서류(필요시 이를 확인하는 각서 제출로 대체 가능)
	- 제22조제2항에 따른 내부관리규정
	- 회계처리·감사·조직관리 등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
	- 예비허가내용 및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 참고1

## 허가신청서 작성례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 90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 3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김○○	주민등록번호	700101-1234567
	상호 또는 명칭	주식회사 ○○○○○ (전화번호) 02-4444-5555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50억원
법인의 목적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함 1. 개인신용분석 및 평가 용역제공 업무 2. 전산시설을 이용한 정보처리 및 용역제공 업무 등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1. 개인신용평가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2. 기업정보조회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3. 기업신용등급제공업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2020년 8월 5일 신청인 주식회사 ○○○○○○(인)</p> 금융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2. 재무제표 3.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4. 그 밖에 별표 1의2의 해당 서류 및 이와 관련한 부속서류				수수료 없음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김○○(700101-1234567) 감사 이○○(700101-1234568) 이사 박○○(700101-1234569) 외 3명
인력에 관한 사항		개인신용평가업 담당직원 20명 기업정보조회업 및 기업신용등급제공 담당직원 20명 (예비허가 취득 후 채용예정)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계	서버시스템, 백업 및 복구시스템, 통신 시스템 등(상세 목록은 별첨)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체계 (상세 목록은 별첨)
	그밖의 시설	사무실 1개소, 기타 집기

# 1. 신청 개요

회사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문 :</li> <li>◆ 영문 :</li> </ul>		
소재지			
현재 영위중인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허가받고자 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허가신청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자본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ul>		
임원구성	직위	성명	주요이력
최대주주			
주주구성 <sup>1)</sup>	주주명	지분율	구분 <sup>2)</sup>

주1) 대주주요건 심사대상 및 5% 이상은 별도 구분하여 표시하고 나머지는 통합하여 기타로 표시

2)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로 구분

3) 칸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삽입 또는 삭제하여 적절하게 조정

## 2. 자본금 현황

---

□ 자본금(202×.××.××. 신청일 현재) : 억원

- 납입자금의 조성 방법

### 3. 물적 설비 현황

\* 허가 심사 세부 요건 별로 사업계획서 내 해당 내용, 관련 규정, 시스템 구성 및 보안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적절히 요약하여 핵심적 내용을 표 안에 기술 (내용이 많을 경우 추가 페이지 작성가능)

구성	> 시스템 구성
세부 요건	1. 시스템 구성에 다음 항목을 포함할 것 가. D/B서버, 통신서버, 보안서버 등 통신구간 암호화 시스템 나. WEB서버(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한함) 다. 저장장치 라. 그 밖에 주변장치
관련 내규	<input type="checkbox"/> 관련 내부규정 및 지침명 - 관련 조항 및 내용
현황	<input type="checkbox"/> 세부 요건 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서술하고, 관련 시스템 구성, 보안체계 구축 현황 등을 첨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100px; width: 100%;"></div> <p style="text-align: center;">&lt;관련 시스템 화면&gt;</p>

## 4. 사업계획 타당성

(1) 수입·지출 전망의 타당성	관련 내용
<p>[신용조회업]</p> <p>① 당사 서비스의 경쟁력 및 혁신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의 차별성과 비교 우위성</li> <li>■ 당해 서비스가 신용정보주체의 편익 및 신용정보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점</li> </ul> <p>(별도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관련 내용 페이지를 부기, 이하 항목에서 동일)</p>
<p>② 영업 개시 이후 수지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상황에 대한 가정을 합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li> <li>■ 제시한 시장상황 하에서의 영업 시나리오에 따라 손익을 추정</li> <li>■ 손익 추정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추정 재무제표에 손익 추정결과를 일관되게 반영</li> </ul>
<p>[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p> <p>① 영업 개시 이후 수지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상황에 대한 가정을 합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li> <li>■ 제시한 시장상황 하에서의 영업 시나리오에 따라 손익을 추정</li> <li>■ 손익 추정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추정 재무제표에 손익 추정결과를 일관되게 반영</li> </ul>
(2)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의 사업 계획 추진 적합성	관련 내용
<p>[신용조회업]</p> <p>① 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수집·활용·제공의 구체적 방법을 포함한 업무 흐름을 서술</li> <li>■ 업무 흐름에 따라, 각 업무를 담당할 조직과 업무 수행방법 등을 서술</li> </ul>

<p><b>[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b></p> <p>① 신용조사 의뢰 및 추심채권 수입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상 의뢰 고객군 및 고객 확보를 위한 영업 방법을 서술</li> </ul>
<p>② 조사·추심 담당 조직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할 조직구성, 인력요건 유지 등을 위한 조직운영방법 등</li> </ul>
<p><b>(3)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의 건전 경영 수행 적합성</b></p>	<p style="text-align: center;"><b>관련 내용</b></p>
<p><b>[신용조회업]</b></p> <p>① 영업내용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평가업무 수행의 핵심적 내용을 업무 흐름에 따라 서술</li> <li>■ 법 제22조의4 내지 제22조의6 등에 규정된 공정한 신용평가를 위한 행위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업무 절차 및 내부통제기준 등을 서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각 업무단위별 적용 법조에 규정된 행위규칙별로 누락 없이 각각 서술</li> </ul> </li> </ul>
<p>② 내부통제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 조직 및 관련 내규 등의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③ 신용정보 보호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 등의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b>[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b></p> <p>① 영업내용 및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조사 또는 채권추심 업무 수행의 핵심적 내용을 업무 흐름에 따라 서술</li> <li>■ 업무처리 담당자(임직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적법한 추심행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업무처리절차의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② 내부통제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통제 조직 및 관련 내규 등의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③ 신용정보 보호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대책 등의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 5. 심사대상 대주주 현황

대주주 현황	주주명	구분 <sup>1)</sup>	의결권 있는 주식수	비율(%)
최대주주				
주요주주				

주 1) '금융기관', '내국법인', '개인', '외국법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 '외국인' 등으로 구분

※ 필요시 대주주 등 신청인의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도표 첨부

## 6. 임원 현황

구 분	임원1	임원2	임원3	임원4	...
성명					
생년					
직위					
등기여부					
담당업무					
학력					
주요 경력					
상근 여부 <sup>1)</sup>					
타회사 겸직 여부 <sup>2)</sup>					
주주와의 관계	주주명				
	관계 <sup>3)</sup>				
결격여부 자체점검 결과 <sup>4)</sup>					

주1) 상근, 비상근, 사외이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주2) 겸직회사명 및 직위를 기재(겸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 기재)

주3) 대주주적격 심사 대상 대주주와 시행령 제2조 제2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본인', '특수관계자',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주4) 지배구조법 제5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적정 여부

주4) 지배구조법 제5조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 적정 여부

## 7. 허가 신청 업무에 대한 전문성

신용정보 활용·보호 및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	관련 내용
<p>① 인력 보유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합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인력 보유 등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p>② 관련 업무 영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허가 신청 전 신청인이 영위한 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 등에 관한 핵심적 내용을 서술</li> </ul>

**가. 임원 확인서**

임원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 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지배구조법 제2조제7호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p>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사 또는 감사위원</li> <li>2.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또는 행정처분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li> <li>3.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li> <li>4. 각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li> <li>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li> </ol>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
  -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본인은 상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 나. 대주주 확인서

### (1) 금융기관

####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재무상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기준이 없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과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상회할 것)	
금융기관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부채비율은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 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 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	
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당 사는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대표이사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2) 기금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당 기금은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기관장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3) 금융기관·기금 이외의 내국법인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건전한 신용질서나 금융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경우로서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당해법인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제2호다목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일 것. 부채비율은 그 소속기업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수정재무제표를 합산하여 산출(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 유상증자에 따라 자기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자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계법률 또는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당 법인은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기관장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4) 내국인으로서 개인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계법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근 5년간 부도발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은행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금융질서 문란정보 거래처 또는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직무정지를 받거나 금융회사 직원으로서 정직요구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5) 외국 법인

대주주 확인서

결격사유내용	확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이 제재 목적으로 해당 외국 법인에 부과한 활동·기능·영업에 대한 제한명령이나 등록의 취소·정지, 감독기관의 전체적인 제재수준, 위법행위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민사제재금 등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관계법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제외)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기관경고를 받은 후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주주 전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최근 5년간 파산절차·채무자 회생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대상인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서 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사실(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본금 납입자금은 주요출자자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	
첨부한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 진행 등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진행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지할 것을 확인함	

본인은 상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7조의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 ××. ××.

성 명 : (인)

<첨부> : 진행 중인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 **인허가 사례**  
**6-(3) 신용정보업 허가**

<b>신 청 회 사</b>	OOOO	<b>신 청 일</b>	2024.9.24.
<b>처 리 부 서</b>	디지털혁신국 디지털혁신감독팀	<b>완 료 일</b>	2024.12.8.
<b>신 청 내 용</b>	<input type="checkbox"/> OOOO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안신용평가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신용정보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신청		
<b>심 사 내 용</b>	<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업 허가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금융위에 심사의견을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정보업 허가신청 전 협의단계에서 신청자와 면담 및 이메일을 통해 필요서류 및 처리절차를 안내</li> <li>○ 신용정보업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 단계에서 다음 사항 보완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주주 목록 제공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7, §11③를 참고하여 제출</li> <li>- 제출서류 중 자회사 관련 서류, 예상 손익계산서 자료, 모형 검증방안, 신용정보의 수집·제공 계획 등 확인 후 보완 제출</li> </ul> </li> <li>○ 신용정보업 허가 요건 심사 및 첨부서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 및 물적요건) 외부평가위원회 개최</li> <li>- (자본금요건)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등 확인</li> <li>- (재무건전성 요건) 재무제표 등 확인</li> <li>- (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li> <li>- (대주주요건) 조세범처벌법, 지배구조법 등 관계 법률 위반으로 인한 처벌사실등을 대외기관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li> </ul> </li> </ul>		

## V. 관련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5, §6,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 §7, 별표1의2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7, 별표1의2, 별표 2, 별표2의2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전자금융, 신용정보, 신용평가

## (4) 신용평가업 인가

### I. 신용평가업 인가 개요

#### 1. 신용평가업 인가의 의미

-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신용평가업 인가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업 영위에 대한 인가를 의미

\* 신용평가업의 정의(자본시장법 제9조제26항)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 2. 신용평가업 영위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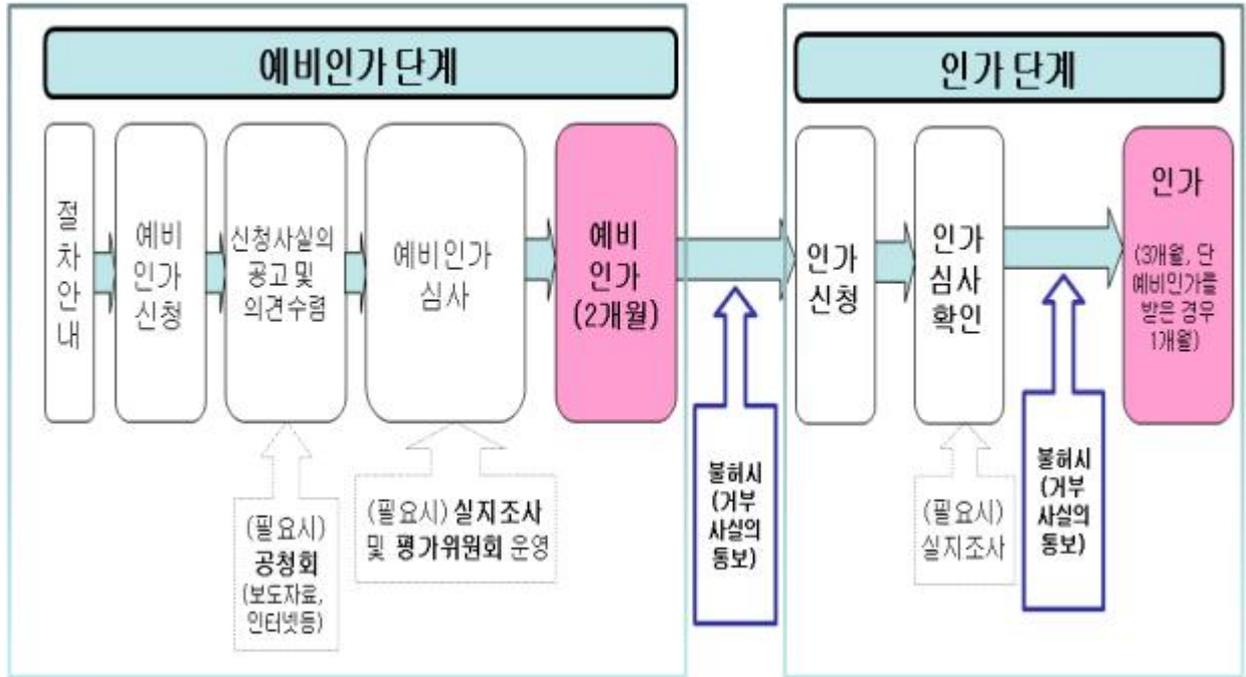
- 신용평가업 영위의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335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만 가능**
  -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과 동 법인이 최대주주인 법인 제외**

#### 3.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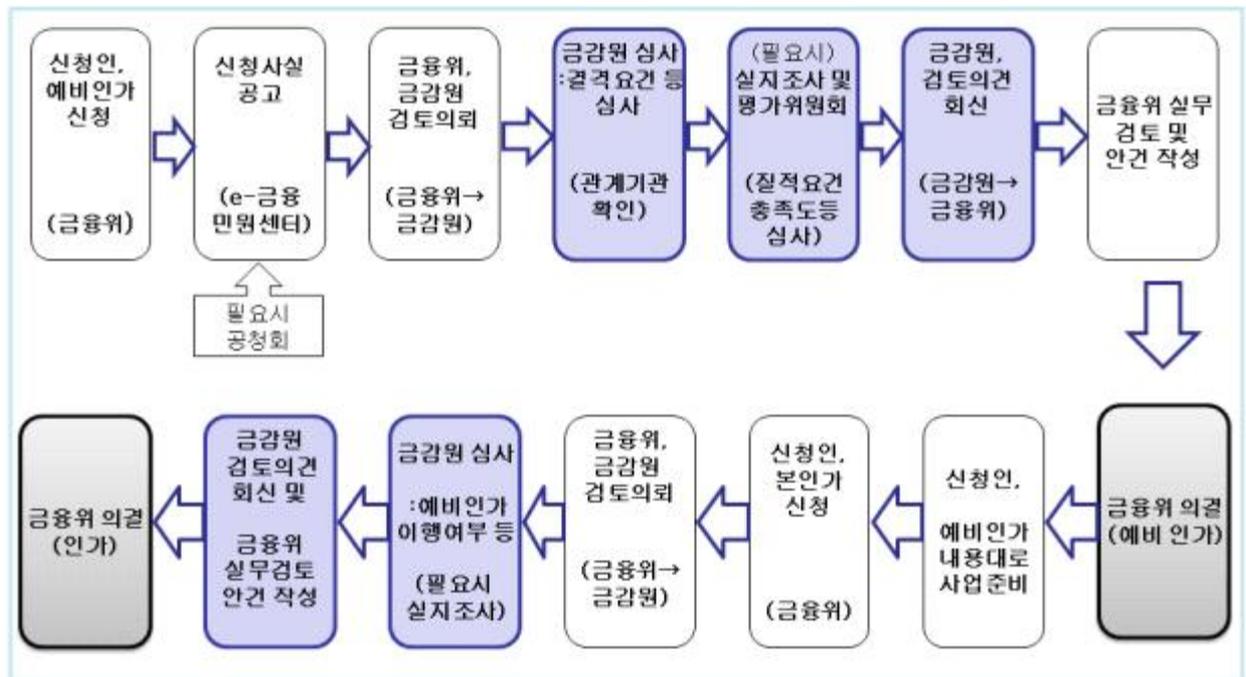
- 법 제335조의2에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 무인가 신용평가가 가능하도록 규정
  - 법 시행령 제324조의2에 따라 신용조회회사의 기업에 대한 조회업무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

## II. 신용평가업 인가 절차

### < 신용평가업 인가절차 흐름도 >



### 1. 인가 절차 일반



## 2. 단계별 세부 내역

### < 예비인가 단계 : 계획 심사 >

<b>1. 예비인가 신청</b>	○ 금융위, 신용평가업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		
<b>2. 신청사실공고</b>	○ e-금융민원센터, 신청사실 공고 (필요시 공청회)	
↓		
<b>3. 검토 의뢰</b>	○ 금융위, 금감원에 심사 검토 의뢰	
↓		
<b>4. 금감원 심사</b>	<b>심사요건</b>	<b>확인서류</b>
<b>법인격 요건</b>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예비인가신청서 등
<b>자기자본 요건</b>	○ 자본금 50억원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b>인력 요건 (전문인력·임원)</b>	○ 슈 제324조의3 제4항제1호,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21의2>에서 정하는 인력요건에 해당할 것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경력증명서, 인력 자격증, 확인서 등 -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b>물적 요건</b>	○ 슈 제321조의3제4항제2호,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21의2>에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b>사업계획 타당성 요건</b>	○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할 것,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평가업무의 영위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b>대주주 요건</b>	○ 슈 <별표13의2> 및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1의3>의 요건을 갖출 것	- 재무건전성 기준, 부채비율 기타 사실확인서 등 -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b>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 제324조의3제6항, 금융투자업규정 &lt;별표21의2&gt;에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구축할 것</li> <li>-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li> <li>- 적절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갖출 것</li> </ul>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	--	-------------------



**(필요시) 민간평가위원회\*를 통한 질적 요건 충족도 심사**

\*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5(인가업무의 수행)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평가업인가의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5. 심사결과 통보** ○ 금감원, 금융위에 심사·확인 결과 통보



**6. 예비인가여부 결정** ○ 금융위, 예비인가 여부 결정 및 통보(증선위 심의 필요)

**신청인, 예비인가 내용대로 사업 준비**

\* 법 제335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영 제324조의5 제4항)

### < 인가단계 >

**7. 인가신청** ○ 금융위, 신용평가업 인가 신청서 접수



**8. 검토 의뢰** ○ 금융위, 금감원에 심사 검토 의뢰



9. 금감원 심사	심 사 요 건	확인서류
<b>법인격 요건</b>	○ 상법상 주식회사 등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인가신청서 등
<b>자기자본 요건</b>	○ 자본금 50억원	- 등기부등본, 주금납입 증명서 등 *예비인가 이행여부 확인
<b>인력 요건 (전문인력·</b>	○ 슈 제324조의3 제4항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1의2>에서 정하는 인력요건에	- 경력증명서, 인력 자격증, 확인서 등

<b>임원)</b>	해당할 것	-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 (필요시)실지조사 *예비인가 이행여부 확인
<b>물적 요건</b>	○ 슈 제321조의3제4항제2호,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21의2>에서 정하는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 실지조사 *예비인가 이행여부 확인
<b>사업계획 타당성 요건</b>	○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운영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할 것,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평가업무의 영위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예비인가 이행여부 확인
<b>대주주 요건</b>	○ 슈 <별표13의2> 및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1의3>의 요건을 갖출 것	- 재무건전성 기준, 부채 비율 기타 사실확인서 등 - 신원조회 및 관련부서(처) 사실조회 회보서 - (필요시)실지조사 *예비인가 이행여부 확인
<b>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b>	○ 슈 제324조의3제6항,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1의2>에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 체계를 구축할 것 -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 적절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갖출 것	- 신청서상 사업계획서 등 심사 - (필요시)실지조사 *예비인가 이행여부 확인



<b>10. 심사결과 통보</b>	○ 금감원, 금융위에 심사·확인 결과 통보
--------------------	-------------------------



<b>11. 인가여부 결정</b>	○ 금융위, 인가 여부 결정 및 통보
--------------------	----------------------

### III. 신용평가업 인가 심사기준

#### 1. 최소자기자본 및 법인격

-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어야 하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 시행령 제324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 위 두 회사 중 하나가 최대주주인 법인

#### <참고>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① 법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1.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2. 은행
-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6. (삭제)
-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1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2.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② ~ ⑦ (생략)

## 2. 인력

□ 공인회계사 5명 및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명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 다만, 분석·평가하려는 증권\*의 발행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

⇒ 공인회계사 5명 및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것을 말한다.
-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

- 공인회계사 5인 및 증권분석·평가업무경력자 5인을 제외한 기타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대학원 등)이나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

- 증권분석·평가업무경력자는 영 제324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에서 증권 분석·평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것

<참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체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임원
4. 법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직무정지요구 또는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퇴임하거나 퇴직한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제재조치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해당 은행의 자회사등(「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회사등"이라 한다), 해당 은행의 자은행(「은행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자은행을 말한다. 이하 "은행의 자은행"이라 한다), 해당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은행지주회사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은행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

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라 한다)과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해당 금융지주회사 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거래규모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기업 등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④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라면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3. 설비

- 평가업무를 위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물적설비로 전산설비, 자료관리체계,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보안설비 등을 갖추는 것

\* 'V.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에서 규정 <별표 21의2> 참조

### 4. 사업계획

- 사업계획은 타당하고 건전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24조의3 제3항 및 규정 <별표 21의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할 것
  -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할 해칠 염려가 없을 것

\* 세부요건은 'V.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에서 규정 <별표 21의2> 참조

## 5. 대주주 요건

-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시행령 [별표 13의2] 대주주 요건〉

요건	구분
1. 대주주가「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p>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2배 이상일 것</p> <p>나. 재무상태가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적기 시정조치의 기준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해당 기준을 넘을 것</li> <li>2) 적용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적기 시정조치의 기준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업종과 유사한 업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넘을 것. 다만,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유사 업종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목·다목·라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li> </ol> <p>다. 자본금 납입자금은 대주주의 출자능력을 초과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순 차입(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어음·회사채 발행 등 부채성 조달자금을 포함한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출처가 명확할 것</p> <p>라.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사실이 경영하려는 업무의 건전한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li> <li>2)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li> <li>3) 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 경영 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li> <li>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li> </ol>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대주주가 제1호 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가목·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대주주가 내국인으로 개인인 경우	가. 제1호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대주주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기업인 경우	가. 제1호가목·다목 및 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본국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다. 최근 3년간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세부요건은 규정 <별표 21의3>에 적합하도록 할 것

## 6. 이해상충방지체계

- 신용평가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의 투자자·발행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
- 이해상충의 파악평가관리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및 정보교류 차단의 세부요건은 규정 <별표 21의2>에 적합하도록 할 것

## IV. 신용평가업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

### 1.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

금융투자업 규정 <별지 제18호의4>

#### 신용평가업 예비인가 신청서

##### 1. 상 호

###### ■ 첨부서류

- 1-1.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예비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예정)소재지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예정)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3.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 기재상의 주의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21의3 제1호나목의 자격을 말한다.

###### ■ 첨부서류

- 3-1.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4. 재무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4-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4-2.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증권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5-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 계산서 1부

####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 등 인력채용계획

- 시설계획(사무공간 배치계획,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을 기재

##### ■ 첨부서류

- 6-1.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1부
-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이 구비된 경우 그 임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 1부.

#### 7. 대주주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7-1. 예비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7-2. 대주주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 8-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8-2.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8-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 9. 그 밖의 기재사항

### ■ 첨부서류

- 9-1. 추진일정을 기재한 서류 1부
- 9-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9-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2. 인가 신청서 양식

<별지 제18호의5>

### 신용평가업 인가 신청서

#### 1. 상 호

##### ■ 첨부서류

- 1-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 1-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부
- 1-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인가신청의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 첨부서류

- 2-1.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 3. 대표자 및 임원

임원수 :   명(상근:   명, 비상근:   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주식수 (비율)	주요 경력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전문인력 여부	임원자격 적합여부

##### 기재상의 주의

- 1. 임원자격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별표21의3 제1호나목의 자격을 말한다.

##### ■ 첨부서류

- 3-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 3-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 4. 재무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4-1.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5-1.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 계산서 1부

####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 인력채용계획 이행 현황(예비인가를 받은 경우)
- 전문인력의 명단(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력, 전문자격내용 등)
- 물적설비 현황(사무공간 배치현황, 전산설비 내역, 보안설비 및 보완설비 등)

##### ■ 첨부서류

6-1.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6-2.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 7. 대주주에 관한 사항

##### ■ 첨부서류

7-1.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 및 비율을 기재한 서류 1부

7-2. 대주주가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첨부서류**

- 8-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 8-2.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 8-3.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9. 그 밖의 기재사항**

**■ 첨부서류**

- 9-1. 자본금납입증명서 등 예비인가시 부가된 조건이 있는 경우 이행관련 확인서류 각 1부
- 9-2. 예비인가 제출서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서류 각 1부
- 9-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9-4.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 예비인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 예비인가 신청서와 상위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및 제335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 V.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2, §335의3, §335의4, §335의5, §335의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4의2, §324의3, §324의4, §324의5

### 금융투자업규정

§8-19의2, §8-19의3, §8-19의4, §8-19의5, §8-19의6, 별표 21의2,  
별표 21의3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공 통

### (1) 금융회사의 타회사 주식 소유 승인(금산법)

#### 1.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승인 개요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에서는 금융 회사를 이용한 무분별한 기업결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 회사 및 그 금융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이하 '동일계열 금융회사')가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 하거나,
  -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 하고 동일계열 금융회사 및 동일계열 금융회사가 속한 기업 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
  - 다만,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회사 주식소유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후승인도 가능
- 상기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금융회사 및 동일계열 금융 회사가 주식의 추가취득을 통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25%와 33%를 초과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한편,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한도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법에 의하여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금산법상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됨

## II.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승인 절차 및 심사기준

### 1. 승인절차 흐름도



※ 소요기간 : 30일 (공정위 협의기간,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제외)

### 2. 승인 심사기준

당해 주식소유가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금융업 경영회사(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제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대상사업 경영회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업 등 경영회사 제외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

대주주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증권거래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최대주주·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인 사실이 없을 것



<붙임>

##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승인 신청내용

### 1. 출자(또는 인수)목적

- 출자 목적 및 기대효과 등

### 2. 출자대상 현황

- 영위업무
- 일반현황 : 설립연혁, 주주현황, 임직원 현황, 점포 현황, 시장점유율 등
- 재무현황 : 최근 사업년도말 요약 재무제표 등

### 3. 출자내역

- 취득주식수 및 취득금액
- 출자대상 회사의 주주 및 지분을 변동내역
- 출자회사의 순자본비율
- 주식가치 산정내역 등

### 4. 기타

- ※ 첨부서류 : 1. 출자대상 회사의 사업내용 및 재무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무제표, 정관 등)  
2. 출자회사의 사업내용 및 재무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재무제표, 정관 등)  
3.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 관련 확인서  
4. 출자 관련 이사회 결의 등 출자회사의 내부절차 경로 증빙서류  
5. 출자대상 회사 영위업무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장 고시)상 해당항목 증빙서류

## 2. 승인 신청 제출서류

승인신청서

첨부서류(예시)

- 출자대상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및 재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재무제표 등
- 출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및 재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재무제표 등
-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 관련 확인서
- 기타 승인심사를 위한 참고서류
  - 출자대상 회사 영위업무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장 고시)상 해당항목 증빙서류
  - 출자 관련 이사회 결의 등 출자회사의 내부절차 경로 증빙서류 등

## IV. 관련 법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은행업감독규정

§54

금융투자업규정

§2-14, 별표3

보험업감독규정

§5-13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15의2, §15의3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의4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15.

※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